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안내 ┃

본 매뉴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워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책임성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서비스 워칙 및 기준·절차 등의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름 통해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 및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해 보호대상아동(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아동복지법 제4조)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매뉴얼 활용범위

- 주 사용자 : 아동보호전담요워
- 참고 사용자

시·도 및 시·군·구(아동보호팀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워 포함), 읍·면·동 아동복지(사회복 지) 담당 공공부문 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등), 아동보호 관련 기관 담당자(지역상담기관, 아동학대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기타 지역사회 아동복지 관계자 등

◎ 매뉴얼 활용방법

- 매뉴얼은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되는 보호대상아동(가족)에 대한 상담. 보호계획 수립 및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업무 가이드라인임
- 매뉴얼은 아동에게 효과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함
- 참고 사용자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민간 담당자들은 아동보호 흐름과 절차를 인지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과 협업함

쪽	현행	개 정
5	2. 보호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방임 포함)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을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	2. 보호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성폭력·방임 포함)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을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
5	3. 피해아동 ③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제8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8항)	3.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제8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
12	2.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가. 원가정 보호(복귀) ●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2.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가. 상담 및 지도 의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18	● (즉각분리, 일시보호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재학대 우려 등으로 피해(의심)아동을 보호조치 시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하여 보호 ※ 응급조치나 즉각분리를 실시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일시보호의뢰서(서식 3)를 작성하여 일시보호시설, 쉼터 등 시설에 송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즉각분리(일시보호조치)된 보호 대상아동의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자체 인력, 보호시설, 학대피해 아동쉼터 내 상주 임상심리치료인력, 외부 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협조요청	● (즉각분리, 일시보호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재학대 우려 등으로 피해(의심)아동을 보호조치 시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하여 보호 ※ (삭제) 즉각분리를 실시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일시 보호의뢰서(【서식 3】)를 작성하여 일시보호시설, 쉼터 등 시설에 송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즉각분리(일시보호조치)된 보호 대상아동의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필수로 실시하고, 필요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자체 인력, 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내 상주 임상심리치료인력, 외부 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협조요청
18	(피해아동보호계획수립) (중략)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자체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활용함	● (피해이동보호계획수립) (중략)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자체사례 회의, 통합사례회의, 아동학대 전문가자문단을 활용함
19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보호조치가 결정된 경우 이동보호를 신청한 보호자 및 이동을 보호할 기관에 보호 조치 결정통지서(서식 25)를 7일 이내 송부 ※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결정통지서에는 '시설(기관명)' 제외하여 송부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보호조치가 결정된 경우 이동보호를 신청한 보호자 및 이동을 보호할 기관에 보호 조치 결정통지서(서식 25)를 7일 이내 송부 ※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결정통자서에는 '시설(기관명)' 제외하여 송부 ※ 수용자 자녀를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를 의뢰한 지방 교정 청 자녀지원팀 또는 교정시설에 보호결정(변경)통자서 송부
19	● (보호 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중 가정복귀 기능성 여부를 검토, 가정복귀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공유	● (보호 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중 가정복귀 기능성 여부를 검토, 가정복귀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공유

쪽	현행	개 정
	(중략) - 지자체 가정복귀 승인결정에 따라 아동은 귀가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결정 내용을 보호자에게 통보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함	(중략) - 지자체 가정복귀 승인결정에 따라 아동은 귀가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결정 내용을 보호자에게 안내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함
20	(원칙) 관할 시·군·구 결정기준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이며, 피해아동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 시·군·구는 보조 사례 관할(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참여) • (예외) 단, 피해아동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아동학대 신고현장(실거주지)에서 응급조치, 즉각분리 등 피해아동을 분리보호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실거주지 관할 시·군·구가 주 사례 관할(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례결정위원회 개최 등) * 위 예외사항 외에도 사례특성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시·군·구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관련 세부내용은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참고)	(원칙) 아동학대 사례 관할 기준은 피해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이며, 관련 지자체는 보조 사례 관할 • (예외) 단, 피해아동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응급조치·즉각분리 등 분리된 경우, 집단시설에서 발생된 사건, 출생미등록 아동 등 예외 상황 발생 시 실거주지 또는 사건발생자가 주사례관할이 될 수 있음(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참고) * 사례특성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시·군·구간 협의를통해 사례관할지 결정 가능
29	(가정위탁 보호절차 사례예시) (중략)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보호전담요원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5년 동안 자립수준평가에 대해 안내(전화, 내방, 가정방문 실시)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사후관리 후 아동의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사후관리 종료함	(가정위탁 보호절차 사례예시) (중략)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보호전담요원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5년 동안 자립수준평가에 대해 안내(전화, 내방, 가정방문 실시)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및 이동보호전담요원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후 아동의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사후관리 종료함
36	③ 친생부모 상담을 통해 욕구조사표(서식 4), 아동 상황점검표(서식 9), 친부모 상황점검표 (서식 8)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대면 필수), 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조치현황(서식 47)을 시·도에 매주 제출, 시·도는 취합하여 전월의 실적을 매월 10일까지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 상담이 시작된 때부터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매주 현황을 정리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상담 및 보호조치 현황을 전월 말일 기준으로 정리하여 익월 10일까지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③ 친생부모 상담을 통해 욕구조사표(서식 4), 아동 상황점검표(서식 9), 친부모 상황점검표(서식 8)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대면 필수), 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조치현황(서식 47)을 시·도에 매주 제출, 시·도는 취합하여 전월의 실적을 매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상담이 시작된 때부터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매주 현황을 정리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상담 및 보호조치 현황을 전월 말일 기준으로 정리하여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참조: 아동권리보장원)
44	7)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③ 입양기관은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를 인지하였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고(112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미배치 지역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입양대상아동 학대 사례개입 및 보고절차 (2024 입양실무매뉴얼)에 따라 신고, 보고, 조사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추진하여야 함	7)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③ 입양기관은 입양대상이동에 대한 아동학대를 인지하였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고(112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삭제), 입양대상아동학대 사례개입 및 보고절차 (2024 입양실무매뉴얼)에 따라 신고, 보고, 조사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추진하여야함

쪽	현행	개 정	
49	〈표 3〉 입양아동 관련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표 3〉 입양아동 관련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입양기관(○○ 주소지) • 아동 인수 및 친생자 입양신고(아동 인수 시에 현재 아동의 적응상태, 수유, 수면상태, 배변 및 목욕상황과 발달상태 등보고서 작성해서 전달. 아동의 예방접종 기록과 정기적으로체크한 신체 치수 기록 등함께 전달) ○○구청 사례결정위원회 • 양부모가 입양신고함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에 서면·사후심의로안건 상정 • 사례결정위원회는 입양완료에 따라 종결 및 사후관리 철저히할 것을 요청(양부모 주소지인 ◎◎구청에 사례이관)	입양기관(○○ 주소지) • 아동 인수 및 친양자 입양신고(아동 인수 시에 현재 아동의 적응상태, 수유, 수면상태, 배변 및 목욕상황과 발달상태 등보고서 작성해서 전달. 아동의 예방접종 기록과 정기적으로체크한 신체 치수 기록 등함께 전달) ○○구청 사례결정위원회 • 양부모가 입양신고함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에서면·사후보고• 사례결정위원회는 입양완료에 따라 종결 및 사후관리철저히할 것을 요청(양부모 주소지인 ◎◎구청에 사례이관)	
50- 64	-	마.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신설〉	
67	2. 아동보호서비스 수행 주체별 역할 (신설)	2. 아동보호서비스 수행 주체별 역할 가. 시·도 아동보호팀 아 아동보호팀장은 시·군·구 사례자문을 위한 전문가 풀을 모집·운영하고, 필요시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및 사례자문위원 파견을 지원함 아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시·군·구 보호아동 현황(보호아동 및 보호조치 현황,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현황,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아동보호서비스 수행관련 광역자치단체 간 조정·중재 역할을 수행함 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 또는시·군·구 간 해석이 다른 부분, 기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중재·조정하고 슈퍼비전을 제공함 나. 시·군·구 아동보호팀	
69	 ● 자격 및 경력 요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기본) 타 사례관리인력과 유사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및 일정기간 사회복지 업무 경력자로 설정 - (우대)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가능하도록 입양기관, 미혼부모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조건 관련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우선 준수하여 채용 	● 자격 및 경력 요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기본) 타 사례관리인력과 유사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및 일정기간 사회복지 업무 경력자로 설정 - (우대)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가능하도록 입양기관, 미혼부모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조건 관련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우선 준수하여 채용	

쪽	현행	개 정
		● 대체인력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단, 지자체에서 2회 이상 공고 후에도 근무자가 채용되지 않는 경우 3회차 공고부터 <u>"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u> <u>취득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 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채용 가능</u>
73- 74	4. 교육 ●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시·도/시·군·구 아동보호팀장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중 - 아동보호전담요원 기본교육(1차): 신규채용 인력 및 기 채용 인력 중 미이수자 대상 아동보호체계 개편 취지, 업무 프로세스 등 기초역량 강화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기본교육(2차): 기본교육(1차) 수료자 대상 현장 실무능력 강화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보수교육: 기본교육(2차) 수료자 대상 고난도 현장 사례 등 전문성 강화 지원 - 아동보호팀장 과정: 시·도/시·군·구 아동보호팀장 대상 아동보호팀 운영, 연계협력 등 현장 실무 교육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아동보호팀장은 1년에 최소 1회 이상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함	4. 교육 ●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시·도/시·군·구 아동보호팀장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중 -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자 입문교육: : 신규채용 인력 및 기 채용 인력 중 미이수자 대상 아동보호체계 개편 취지, 업무 프로세스 등 기초역량 강화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자 실무교육 : 입문교육 수료자 대상 현장 실무능력 강화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보수교육: 실무교육 수료자 대상 교난도 현장 사례 등 전문성 강화 지원 - 아동보호된장 과정: 시·도/시·군·구 아동보호팀장 대상 연차별 교육 운영(신규/경력), 시·군·구 아동보호팀 간 연계협력 등 현장 실무 교육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아동보호팀장은 1년에 최소 1회 이상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함
		교육 이수 기준 관련 유의사항 ①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 임용 후 6개월 이내 입문교육 필수 이수 및 입문 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 필수 이수 ② 아동보호팀장의 경우 연차별 교육과정 운영으로, 1년 미만 근무자는 아동보호신규팀장과정 필수 이수, 2년 이상 근무자는 아동보호경력팀장 필수 이수 ③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아동보호팀장은 연 1회 이상 교육 필수 이수 ④ 기간 내 교육 미이수 시 아동보호체계 평가 교육 실적 부문 감점 ⑤ 아동보호팀장 경력과정 이수 시 아동보호체계 평가 교육 실적 부문 가점 부여
77	◎ 사업비	● 사업비
	(중략) - 집행 기준 〈표〉	(중략) - 집행 기준 〈표〉

쪽	현 행	개 정
	서비스 제공비 ① 의료비 ② 의료비 ※ 학대피해(의심)아동을 포함하여 보호조치 결정 전, 보호 중, 사후관리 대상 아동에게 집행 가능 ※ 신규발생 아동 및 기존 사례관리 아동 모두 종합심리검사 실시 가능	서비스 제공비 ① 의료비 ① 의료비 ① 의료비 ② 의료비 ② 의료비 ※(삭제) 보호조치 결정 전, 보호 중, 사후관리 대상 아동에게 집행 가능 ※신규발생 아동 및 기존 사례관리 아동 모두 종합심리검사 실시 가능
86	다. 일시보호(서식 3) 보호자 부재 등 아동학대 이외의 사유로 아동을 긴급하게 보호할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일시보호조치, 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실시 (신설)	다. 일시보호(서식 3) ■ 보호자 부재 등 아동학대 이외의 사유로 아동을 긴급하게 보호할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일시보호조치, 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실시 - 시설 내 아동 간 갈등, 위탁부모 수술, 보호자의 갑작 스러운 사고, 체포·구금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긴급한 경우 시·군·구 판단하에긴급 일시보호 실시 - 시·도지사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내 긴급 보호 인프라를 사전에 확보하고, 관할 시·군·구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92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담당하는 아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피해아동이거나,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여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제6호에 따라 분리보호를 하고자 하는 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우선적으로 드림스타트에 연계 * 13세 이상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는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에게 의뢰하되 미배치 시·군·구는 드림스타트에 연계 •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피해 아동보호명령 청구에 따라 분리 보호하는 경우 사례결정 위원회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피해아동보호계획(개별 보호·관리 계획)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담당하는 아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피해아동이거나,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 받지 못하여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제6호에 따라 분리보호를 하고자 하는 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우선적으로 드림스타트에 연계 * 13세 이상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는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에게 의뢰하되 미배치 시・군・구는 드림스타트에 연계 ● 다만「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피해야동보호명령 청구에 따라 분리 보호하는 경우 사례결정 위원회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피해아동보호계획(개별 보호・관리 계획)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93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피해아동 관련 현장출동·동행해도 되나요?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학대조사 수행을 위해 관련교육을 받지 않았으므로 학대조사 수행불가 • 다만, 아동학대 현장조사 후 아동을 분리하여 일시 보호하는 경우 상담·건강검진 등 수행 지원 가능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피해아동 관련 현장출동·동행해도 되나요? • 아동학대 조사(현장출동 등)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 이므로(아동복지법 제66조 및 제2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이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조사(현장출동 등) 동행 불가 • 아동학대 현장조사 후 아동을 분리하여 일시 보호하는 경우 상담·건강검진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필요시 상담·건강검진 등 수행 지원가능

쪽	현행	개정
93	〈신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소재지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가 다른 경우,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발급을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발급하는 번호로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보장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책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 시 활용됨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아동보호 담당자는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해 전산관리번호 발급,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관리를 위한 행복e음 등록 일시보호 등 아동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의 의료급여 책정을 위해 별도의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를 발급하여야 함 보호출산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시 지역상담기관소재지 아동보호담당자는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료급여 담당자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발급 사실을 통보하고, 아동이 전산관리번호로 수급중이던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주민등록번호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함
97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원가정 및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또는 보호조치 변경을 위한 재평가) 주기를 설정 하고, 원가정외 보호기관 담당자와 논의하여 보호대상 아동과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지원(아동복지법 제15조의5) 및 원기정 지원(복귀)계획 수립 ※ 원활한 면접교섭 이행을 위해 형제·자매는 가급적 동일 시설 및 지역 내 배치 고려, 아동보호팀-보호기관 간 피해아동 관련 특이사항 등 정보 공유 협력 〈신설〉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원가정 및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점검(또는 보호조치 변경을 위한 재평가) 주기를 설정하고, 원가정외 보호기관 담당자와 논의하여 보호대상 아동과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지원(아동복지법 제15조의5) 및 원가정지원(복귀)계획 수립 ※ 원활한 면접교섭 이행을 위해 형제·자매는 가급적 동일 시설및 지역 내 배치 고려, 아동보호팀-보호기관 간 피해아동관련 특이사항 등 정보 공유 합력 ※ 원가정(가족) 연락 두절 등 면접교섭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경우, 시·군·구에서는 정보 주체(보호자 등)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연락처 수집 및 활용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 ※ 연장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의사에 따라 면접교섭 지원 계획및 원가정 점검 계획 선택적으로 수립
	- 보호조치 변경 등 필요시 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보호조치 변경 등 필요시 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98	● 보호조치 유형 - 원가정 보호: 아동을 원가정내에서 보호하며, 아동과 그 가족에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지원, 필요시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 의뢰 및 이관 - 원가정외 보호 - 입양: 유기 아동 등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 대해 영구적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조치 - 가정위탁: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하며, 지속적인 원가정 지원을 통해 가정내 복귀를 목표로 하는 보호조치	● 보호조치 유형 - 원가정 보호: 아동을 원가정내에서 보호하며, 아동과 그 가족에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지원, 필요시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 의뢰 및 이관 - 원가정외 보호 - 입양: 유기 아동 등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 대해 영구적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조치 - 가정위탁: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하며, 지속적인 원가정 지원을 통해 가정내 복귀를 목표로 하는 보호조치

쪽		개 정
7	※ 2세 이하(36개월 미만) 보호대상아동은 가정위탁 우선 배치 - 공동생활가정 :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의 시설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 아동양육시설 :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 등의 보호가 어려울 시 고려하는 보호조치 - 아동치료시설 :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시설 및 요양원 등의 입원·입소를 결정	※ 2세 이하(36개월 미만) 보호대상아동은 가정위탁 우선 배치 - 공동생활가정 :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의 시설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 아동양육시설 :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 등의 보호가 어려울 시 고려하는 보호조치 - 아동치료시설 :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시설 및 요양원 등의 입원·입소를 결정 - 기타 아동 관련 복지시설: 장애, 친족 성폭력 피해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관련 보호시설로 보호계획 수립(종결 후 사후관리)
98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관련 동의 (친부모 등 보호자) (중략) - (아동)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에게는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충분하게 설명하여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부적응최소화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관련 동의 - (친부모 등 보호자) (중략) - (아동) 최초 분리조치 및 전원조치 시 반드시 서면을 통해 아동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분리 보호 및 개별 보호 관리계획 수립 시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서식 10-1) ※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에게는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충분하게 설명하여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부적응 최소화
99	(신설)	** ** ** ** ** ** ** ** ** ** ** ** **

쪽	현행			개 정		
100	참고 이동관련 복지시설(생활시설)의 종류		참고 🔊 아동	관련 복지시설(생활시	설)의 종류	
	관련 법령	시설종류	비고	관련 법령	시설종류	비고
		(중략)			(중략)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1조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시설에 보호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해당 부서(청소년담당 부서)로 사례이관(공문)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1조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시설에 보호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해당 부서(청소년담당 부서)로 사례이관(공문)
	성폭력방지법 제12조	성폭력피해자 일반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성폭력·성매매피해지 원시설에 보호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해당	성폭력방지법 제12조	성폭력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성매매피해지 원시설에 보호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해당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제9조	특별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청소년 지원시설	부서(성폭력·성매매 피해지원담당부서)로 사례이관(공문)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제9조	성매매피해자청소년 지원시설	부서(성폭력·성매매 피해지원담당부서)로 사례이관(공문)
		(중략)			(중략)	
101	〈신설〉		4 전 (성폭력 : 한 친족 성폭력 : 및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는 한 해당 보호시설 및 위치 등은	의료:법률지원 연계, 취 = 보호시설 넓은 외부 비공개로 운영	보호시설) 년을 대상으로 상담, 보호 취학진학 및 취업프로그램 명 중이기에, 관련 연락처 호시설 담당 부서 또는	
104	다. 수행방법 ◎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 유형과 보호기관, 장·단기 목표를 설정 하는 등 구체적인 개별보호·관리계획(저식 11)에 대해 현장 실무자와 협의 및 조정 - 특히, 원가정 외 보호기관(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내용, 방법(제공 횟수 및 시간) 등을 확인 및 협의		유형과 보호 개별보호·관리 및 조정 - 특히, 원가정 제공 가능한	기관, 장·단기 목표를 라계확([저식 11])에 I 형 외 보호기관(서비스 서비스의 내용, 방법(아동에게 적합한 보호 설정 하는 등 구체적인 대해 현장 실무자와 협의 소 제공기관) 담당자에게 제공 횟수 및 시간) 등을 리계획을 충분히 설명	
105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제6호 (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입양 등)의 분리보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담당		(친족, 가정위		15조 제1항 제2호~제6호 료기관, 입양 등)의 분리	
107	 ● (심의 방법)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호조치 결정 -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그 		출석으로 개의 보호조치 결 - 아동의 보호	의하고 출석위원 괴뱐 정 (중략) 호조치 등에 대해 충	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분히 의견을 들을 수 아동보호전담요원, 그	

쪽	현행	개 정
	외 아동보호를 의뢰받을 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여 의견 개진 가능 ※ 위탁가정 연계 및 배치 등 아동의 가정형 보호 추진을 위한 보호기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등 사례결정위원회 참석 가능	외 아동보호를 의뢰받을 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여 의견 개진 가능 ※ 위탁가정 연계 및 배치 등 아동의 가정형 보호 추진을 위한 보호기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가정위탁지원 센터 담당자 등 사례결정위원회 참석 권고
114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 아동보호 요청 (중략) - (양육시설, 치료시설 등) 시설입소(이용)신청서 (서식 40) 또는 아동입원 의뢰서 (서식 41) 송부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 아동보호 요청 (중략) - (양육시설, 치료시설 등) 시설입소(이용)신청서 (서식 40) 또는 아동입원 의뢰서 (서식 41) 송부 ※ 전문치료기관 및 요양소(5호) 보호조치 시 해당 시설로 전압신고가 불가한 경우, 5호 조치를 결정한 시·군·구에서 주사례관할 담당
118	〈신설〉	다. 주요 점검 사항 (중략) ③ 아동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여부 및 자립지원 현황 파악 (15세 이상) ③ 가족돌봄 현황 점검 - 보호중인 아동의 가족돌봄 여부, 주기 등 현황 점검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 보호조치 변경 필요성 검토 등
118- 119	라. 수행방법 ② (양육상황점검) 서비스 제공기관(원가정 외 보호기관)의 사례관리를 모니터링하여, 아동 및 원가정의 상황을 파악 (직접 방문이 원칙이며, 필요시 유선 상담을 통해 파악) - (아동)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하되 보호아동이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 기관 등 기타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아동 등 점검 대상자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동행하여 방문 권고 - 방문상담 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인 경우, 위탁부모·시설담당자 등 보호자를 제외하고 독립된 장소, 또는 외부 장소(카페 등)에서 아동과의 단독·대면상담을 진행하여 아동의 상황(만족여부, 구성원 관계 등) 및 실제 욕구를 확인 ※ 외부 상담 시, 아동보호체계 구축지원 사업비 활용	라. 수행방법 ● (양육상황점검) 서비스 제공기관(원가정 외 보호기관)의 사례관리를 모니터링하여, 아동 및 원가정의 상황을 파악 (직접 방문 원칙, 아동의 상황・및 심라상태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유선 상담 가능) - (아동)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하되보호아동이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 기관 등 기타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아동 등 점검대상자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동행 방문・합동 점검권고(통합 사례회의 활용)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육상황 점검을 위해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있음('아동복지법 시행령」제21조의3) - 방문상담 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인 경우, 위탁부모·시설담당자 등 보호자를 제외하고 독립된 장소, 또는 외부 장소(카페 등)에서 아동과의 단독·대면상담을 진행하여 아동의 상황(만족여부, 구성원 관계 등) 및실제 욕구를 확인
	〈신설〉 - 분기별 대면 양육상황점검 외에도, 상시적인 비대면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아동과의 소통 지속을 통한 라포	※ 외부 상담 시, 아동보호체계 구축지원 사업비 활용 - 가출 등 아동의 보호체계 이탈 시 경찰을 통한 아동 소재지 파악, 원가정·보호기관(시설, 위탁 등) 간 연락

쪽	현행	개 정
	형성될 수 있도록 함 (삭제)	체계 유지 및 지속 모니터링 실시
		참고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예규)
		제11조(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찾는실종이동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보호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실종 아동 등을 인계한다.
		- 아동학대 의심 신고 등 아동의 안전 및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시 양육상황점검을 통한 아동 상황 파악 및 원가정외 보호기관과의 협력 필수
120	● (18세 이후 보호기간 연장)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개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이동이 18세 이상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가능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규정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표현되어 있음	● (18세 이후 보호기간 연장)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개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라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가능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규정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표현되어 있음
	- (절차)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은 아동이 보호 조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서식 16)를 제출, 시·군·구(아동보호전담 요원)는 보호연장 기간에 보호 일시중지 사유 발생 또는 소멸 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함을 안내 ※ 24세까지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아동의 연장 의사만 확인되면(사후·서면심의) 추가 조건없이 승인하여야 함	- (절차)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은 아동이 보호 조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서식 16)를 제출, 시·군·구(아동보호전담 요원)는 보호연장 기간에 보호 일시중지 사유 발생 또는 소멸 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함을 안내 ※ 24세까지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아동의 연장 의사만 확인되면 추가 조건없이 승인하여야 함(사후·서면 보고)
	- (연장시 양육상황점검) 보호기간 연장 시 시설(가정위탁) 외 거주지(대학교 기숙사, LH 임대주택 등)에서 거주 하더라도 양육시설(가정위탁) 주소지에서 양육상황점검 실시하되, 필요시 공동사례관리로 아동 소재지에 양육 상황점검 요청 가능	- (연장시 양육상황점검) 보호기간 연장 시 시설(가정 위탁) 외 거주지(대학교 기숙사, LH 임대주택 등)에서 거주하더라도 양육시설(가정위탁) 주소지에서 양육상황 점검 실시하되, 필요시 공동사례관리로 아동 소재지에 양육상황점검 요청 가능 ※ 연장 아동의 경우 면접교섭 지원 계획 및 원가정 점검 계획은 아동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립
120-	● (18세 이후 재보호조치) ~	◉ (18세 이후 재보호조치) ~
121	(중략)	(중략)

쪽	현행	개 정
	- (접수·상담)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재보호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재보호 신청 대상자와 유선 또는 내방으로 접수상담을 실시(서식 1)하며, 1주 이내 재보호조치 신청자에 대한 욕구조사(서식 4)를 위한 방문상담 실시 ※ 접수상담 전 행복이음, 보호종료확인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과거 보호조치·종결 이력을 확인해야 함	- (접수·상담)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재보호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재보호 신청 대상자와 유선 또는 내방으로 접수상담을 실시(서식 1)하며, 1주 이내 재보호조치 신청자에 대한 욕구조사(서식 4)를 위한 방문상담 실시 ※ 접수상담 전 행복이음, 보호종료확인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과거 보호조치·종결 이력을 확인하고, 보호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2)를 재확보해야 함
121	- (재보호계획수립) 접수상담, 전담기관 사후관리 상담 내역 등을 근거로 사례회의를 거쳐 보호유형 등에 대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 서식 11 ※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신청인의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파악 후, 자립지원전담 기관에 재보호조치 의견서(서식 24-1)와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필요시 재보호조치 신청인의 동의 하에 맞춤형 자립 지원 요청 가능	- (재보호계획수립) 접수상담, 전담기관 사후관리 상담 내역 등을 근거로 사례회의를 거쳐 보호유형 등에 대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 서식 11 ※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신청인의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파악 후, 자립지원전담 기관에 재보호조치 의견서(서식 24-1)와 자립수준평가서 (자립지원업무매뉴얼 서식 15)를 공문으로 요청하며 필 요시 재보호조치 신청인의 동의 하에 맞춤형 자립지원 통합서 비스 요청 가능
122	- (양육상황 점검, 생계급여 개별 지급 등)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보호기간 연장아동에 준하여 운영	- (양육상황 점검, 생계급여 개별 지급 등)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보호기간 연장아동에 준하여 운영 ※ 재보호조치 전 대상자 상담 시 재보호조치 이후의 지자체 양육상황점검 의무 및 협조에 대해 사전 안내 필요
122	- (재보호의 종결) 보호연장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종료하되, 보호종료 신청 및 보호종료 내역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수당 담당 부서에 통보할 때에 재보호 종료자임을 안내(자립수당 지급 기간 산정 등 참고)	- (재보호의 종결) 보호연장과 동일한 절치를 거쳐 종료하되, 보호종료 신청 및 보호종료 내역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수당 담당 부서에 통보할 때에 재보호 종료자임을 안내(자립수당 지급 기간 산정 등 참고) ※ 재보호 종료 대상자 명단은 재보호조치 시 담당 사후관리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송부
126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이동 생계급여 지급 제도 개선 개요) • 18세 이후 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 아동양육시설 입소 상태에서 기숙사 등 별도 거주가 가능하나, 실거주지와 무관하게 생계급여가 시설생계급여로 시설장에게 지급 • 보호연장 기간 별도 거주 시 자립생활 경험이 가능하도록, 생계급여를 보호연장이동 개인에게 직접 일반생계급여로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중략)	참고 ▷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생계급여 지급 제도 개선 개요 • 18세 이후 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 아동양육시설 입소 상태에서 기숙사 등 별도 거주가 가능하나, 실거주지와 무관하게 생계급여가 시설생계급여로 시설장에게 지급 • 보호연장 기간 별도 거주 시 자립생활 경험이 가능하도록, 생계급여를 보호연장아동 개인에게 직접 일반생계급여로 지급 가능 (중략)
131	〈신설〉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시 친권자(친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의 보호자 의견 청취는 필수적 절차 규정임. 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의 부모 쌍방이 누구인지 확인되며, 소재파악도 가능하다면 친권자인

쪽	현행	개 정
		부모 쌍방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재파악 불가 시(행복e음을 통한 연락처 조회 시 연락처 조회 불가 등) 소재불명조사복명서로 갈음
135	① 원가정 복귀로 인한 종결(피해아동이외 아동, 18세 미만) (중략) - 양육 환경 점검 결과 가정복귀가 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군·구에서는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심리 치료 등 필요한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함. (중략)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종결심사서 작성 및 사례결정 위원회에 보호종결 안건 상정 및 결정 - 그간의 양육상황점검결과 및 면접교섭결과, 원가정외 보호기관 의견서, 가정복귀 점검표, 가정복귀 체크리스트 등을 바탕으로 시·군·구 사례회의를 실시 후 종결심사서 작성 ※ 부모의 성품·행실 불량 등으로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당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속 보호 필요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자 등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주체는 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 ② 원가정 복귀로 인한 종결(피해아동) (중략)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리평가 및 면담, 가정방문 및 양육계획 확인, 행위자의 법적 처분 유형 및 기간 등 양육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자 의사, 가정복귀 요건, 양육환경 점검 등을 통해 가정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가정복귀계획 수립하고, 가정복귀 프로그램 진행 ● 가정복귀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공연계 사례회의 실시 ※ 필수 참석자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당 사설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장	1) 원가정 복귀로 인한 종결(피해이동이외 아동, 18세 미만) (중략) - 양육 환경 점검 결과 가정복귀가 이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군·구에서는 이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심리 치료 등 필요한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동의서(세월 21-1) 확보 (중략) ● 이동보호전담요원은 종결심사서 작성 및 시례결정위원회에 보호종결 안건 상정 및 결정 - 그간의 양육상황점검결과 및 면접교섭결과, 원가정외 보호기관 의견서, 가정복귀 점검표, 가정복귀 체크리스트 등을 비탕으로 시·군·구 시례회의를 실시 후 종결심사서 작성 ※ 부모의 성품·행실 불량 등으로 이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속 보호 필요 ※ 보호대상이동의 보호조치 결정, 변경, 종결(가정복귀 등) 결정 권한은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에 있음(아동복지법 제12조) 2) 원가정 복귀로 인한 종결(피해아동) (중략)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리평가 및 면담, 가정방문 및 양육계획 확인, 행위자의 법적 처분 유형 및 기간 등 양육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함 ※ 공공연계사례회의 통해 가정복귀가 피해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가정복귀를 재신청하더라도 가정복귀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결정일로부터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해당 가정에 미복귀 결정 내용과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선시항을 안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신청 유예기간을 설정한 경우 해당 기간 고지)
	※ 공공연계사례회의 통해 가정복귀가 피해아동의 복리에 반한 다고 판단하여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가정복귀를 재신청하더라도 가정복귀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결정일로부터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해당 가정에 미복귀 결정 내용과 사유 를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선사항을 안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신청 유예기간을 설정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자 의사, 가정복귀 요건, 양육환경 점검 등을 통해 가정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복귀계획 수립하고, 가정복귀 프로그램 진행 가정복귀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공연계 사례회의 실시 ※ 필수 참석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당 시설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장
	해당 기간 고지)	

쪽	현행	개 정
138	3 보호 연령 초과로 인한 종료(자립지원) (중략) ※ (연령도래) 18세에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졸업예정일로 부터 3개월 전까지	3) 보호 연령 초과로 인한 종료(자립지원) (중략) ※ (연령도래) 18세에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학령기 등 아동의 상황을 고려, 가급적 보호 연장 후 졸업 시점에 종결 (졸업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보호종료 신청서 제출)
138	③ 보호 연령 초과로 인한 종료(자립지원) (중략) -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보호조치 종료(퇴소) 신청서 제출 지후 관할 자립자원전담기관과 함께 보호종료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보호종료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사후관리계획서 작성 및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동의서(제작 21) 확보하여 보호종료예정일 3주 전까지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제출 - (보호종료 점검회의): 원가정 외 보호기관(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이함께참여하여주거·진학·취업 등 자립준비상태를 점검, 자립지원전담기관은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종료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주요 사후관리 내용, 방법·주기등) ※ 사후관리동의서등 확보시 자립자원전담기관이 보호종료후 5년간 사후관리를 담당함을 안내(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사후관리동의서공유)	(중략) ②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보호조치 종료(퇴소) 신청서 제출 직후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함께 보호종료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보호종료 점검회의를 개최 완료하고, 자립 지원전담기관은 사후관리 계획서 작성 및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세식 21) 확보하여 보호종료예정일 3주 전까지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제출 (보호종료 점검회의): 원가정 외 보호기관(자립지원전담요원)를 가지 원전담기관은 하는 원리를 점검,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요원 등), 자립자원전담기관, 아동이 함께 참여하여 주거·진학·취업 등 자립준비 상태를 점검, 자립지원전담기관은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계획을수립(주요 사후관리 내용, 방법·주기 등) ③ 취업 등 아동의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소가 먼저이루어진 경우,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는 해당 사실을즉시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공유하고 퇴소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주이내 보호종료 점검회의를 개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사후관리계획서 및 사후관리동의서를 확보하여 시·군·구 아동보호템에 제출 ※ 사후관리 동의서 등 확보 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보호종료후 5년간 사후관리를 담당함을 안내(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사후관리 동의서 공유)
139	3 보호 연령 초과로 인한 종료(자립지원) (중략)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호종료된 직후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보호종료 내 역 통보	3) 보호 연령 초과로 인한 종료(자립지원) (중략) 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호종료된 직후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보호종료통 지서 송부(서식 25)
146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및 자립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연령도래로 인한 종결 시 원가정복귀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대상(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기준 충족한 경우) • 15세 이후 조기종료된 자의 경우 18세가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조기취업, 대학 조기진학)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18세 이전(보호종료 직후 포함) 신청 및 지급 가능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및 자립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연령도래로 인한 종결 시 원가정복귀와 상관없이 모두지급대상(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기준 충족한 경우) • 15세 이후 조기종료된 자의 경우 18세가 도래하는 시점부터 5년간(22세까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조기취업, 대학 조기진학)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급 가능 • 예시) ①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쪽	현행	개정
		판단되는 경우로,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②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하였으나 가정학대 등으로 타시설에 재입소한 경우, ③ 보호 조기종료된 자로서 법 시행('24.2.9) 이전에 만 18세가 되었으나, 조기 입학·취업 등으로 지원이필요한 경우, ④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되었으나 만 18세 이전(보호종료 직후 포함) 지급해야할 사정이 있는 경우 등
147	〈신설〉	타 법시설 입소로 조기 종료 후 원가정 복귀한 경우 자립지원이 불가하나요?
		* 보호종료 사유가 타 법상 시설 입소인 경우, 추후에 원가정 복귀해도 원칙적인 조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대상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불필요)
147- 148	〈신설〉	조기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면 어떤 지원을, 얼마동안 지원하는 건지?
		(장리수당·의료비 지원) 원칙 조기종료아동 요건(예외적 대상자도 심의 거친 경우 가능) + 보호종료 시점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요건*까지 충족 시 * 단, 자립수당·의료비 지원 지침(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에 따라 2년 이상 연속 보호 요건 미충족시에도 예외적으로 사결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지원기간) 18세부터 22세까지 5년간 지급(60개월) ② (전담기관 사후관리*) 원칙 조기종료아동 대상자 요건충족 시(예외적 대상자도 심의 거친 경우 가능) * 일반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초기상담을 거쳐 자립지원통합서비스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18세부터 22세까지 5년간 지원 (자립정착금) 지방이양사업이므로 지자체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자립수당과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권고
148	(신설)	조기 보호종료아동 지원 관련 시·군·구 아동보호팀과 자립수당 담당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아동보호팀) - (조기종료사유-타 법상시설입소) 타 법상 시설입소로 종료된 경우 15~17세까지 연 1회 사후관리 → 18세 도래 시점에 ①자립지원전담기관 명단 통보, 사후관리 연계 및 ②자립수당·의료비지원 신청 안내 - 조기종료사유-원가정복귀 원가정복귀로 종료된 경우 1년간 4회 사후관리 → 18세 도래 시점에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결위 안건 상정·심의하여 ①자립지원전담기관 명단 통보, 사후관리 연계 및 ②자립수당·의료비지원 신청 안내 * 17세 원가정 복귀한 경우 사후관리 기간(1년) 중 아동보호팀이 판단 가능하겠으나, 이보다 이른 나이에 원가정 복귀한 경우에는 본인이 자립수당 신청한 경우 판단 가능 - (자립수당 담당자) 조기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

쪽	현행	개 정
		의료비지원 신청 시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 결정 -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보호팀에서 18세가 도래한 조기 보호종료 아동 명단을 통보하면 사후관리 실시
148	〈신설〉	조기종료아동 대상자에 해당하나, 18세 이후에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신청하는 경우 지원 기간은?
		• 신청 시점부터 22세까지만 지원 가능 • 장래에 18세 도래하는 조기종료아동(원칙적 대상자)의 경우 18세부터 전체 5년 기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신청 안내 등 철저
148	〈신설〉	일시쉼터·단기쉼터 입소 시에도 타 법상 시설 입소로 종결할 수 있나요?
		• 최초 보호조치 시 3개월 미만 보호 필요 등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단기쉼터 입소 가능(이 경우에도 사후관리 5년 실시) 단,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임에도 입소할 시설 부족, 업무회피 목적 등의 이유로 단기 타 법 시설 입소 및 종결 금지
151	 가. 수행주체·시기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 전담인력 -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대상자에게 연 1회 이상 사후관리(자립수준평가)와 생활, 주거, 진로·취업 등 전 분야 자립지원을 실시하되, 가정위탁지원센터·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원가정 외 보호기관과지속적 협력체계 유지 - 분기별 익월 10일 이내 시도에서 제공받은 사후관리대상자 명단에 대상자별 사후관리실시 현황(사후관리유무, 날짜 또는 연락두절여부 대상자 특이사항)을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가. 수행주체·시기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 전담인력 -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대상자에게 연 1회 이상 사후관리(자립수준평가)와 생활, 주거, 진로·취업 등 전 분야 자립자원을 실시하되, 기정위탁자원센터·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원가정 외 보호기관과지속적 협력체계 유지 - 분기별 익월 20일 이내 시도에서 제공받은 사후관리대상자 명단에 대상자별 사후관리실시 현황(사후관리유무, 날짜 또는 연락두절여부 대상자 특이사항)을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151- 152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대상자가 전담기관과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아동과의 연락 시도, 아동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 공유하는 등 전담기관 협조 필요 ※ 전담기관과는 연락두절이나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후관리 연락에는 응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대상자에게 향후 전담기관 사후관리에 응하도록 안내 ※ 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대상자의 보호 중 이력 확인, 시·군· 구 복지서비스 연계 등 협조 요청 시에도 상시 협조체계 유지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대상자가 전담기관과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아동과의 연락시도, 아동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 공유하는 등 전담기관 협조 필요 ※ 전담기관과는 연락두절이나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후관리연락에는 응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대상자에게 향후전담기관 사후관리에 응하도록 안내 ※ 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대상자의 보호 중 이력 확인, 시·군·구 복지서비스 연계 등 협조 요청 시에도 상시협조체계 유지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대상자의 거부로 인한 사후관리종료 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지자체 아동보호팀에 사후관리 종료(해지) 보고서 송부 ※ 지자체 자립 업무 담당자는 5년간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급

쪽		현 행	개 정				
			현황 지속 관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연 1회 연락 시도 및 아동 상황 모니터링 실시(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모니터링 제외)				
153	참고	》 시·도 전담기관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참고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대상자 중 정기적 사후관리·신청·발굴을 통해 맞춤형 시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대상자	대상	사후관리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초기상담을 거쳐 자립지원통합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재(수시 선정)			
	내용	(절차) 초기상담 → 욕구사정 →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 실행 → 점검 및 평가 → 종결 (지원) 생계·주거·진학·취업·의료 등에서 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민관 자립지원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비(긴급생계비, 임대료, 자격증 취득비 등) 지원	내용	(절차) 초기상담 → 욕구사정 →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 실행 → 점검 및 평가 → 종결 (지원) 생계·주거·진학·취업·의료 등에서 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민관 자립지원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비(긴급생계비, 임대료, 자격증 취득비 등) 지원			
	방법	각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초기상담 진행 후 대상자로 선정 ※ 시·도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자 인원(예산) 배정	방법	각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초기상담 진행 후 대상자로 선정 ※ 시·도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자 인원(예산) 배정			
157	나. 수현 ● 타 발리 - 필와 가 가존 타 발 도래 전담 ● 타 발 전대	등복지법 외 타 법상 시설에 입소한 아동행방안 법 시설 입소에 따른 사후관리(보호종결 사유별 사후 시점 28) 실시 입시 사례회의를 거쳐 아동보호체계로 재진입(전문정위탁 등) 검토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 중이던 아동이 15세 이후에 법상 시설로 전원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중 18세 시점에 아동에게 자립지원 제공(이후, 3. 자립지원 1기관 사후관리로 연계) 법 시설 입소 후에도 시설 종사자, 담당부서 공무원, 과의 연락체계 유지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른 를 위해 필요시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함	나. 수현 ● 타 변 관리 - 필의 가 기존 타 변 전담 - 조기 아당 현황 지원 ※ 조 조기 아당 한당 이당 이당 이당	등복지법 외 타 법상 시설에 입소한 아동 행방안 법 시설 입소에 따른 사후관리(보호종결 시유별 사후 비 점검표 서식 28) 실시 입시 사례회의를 거쳐 아동보호체계로 재진입(전문 정위탁 등) 검토 이동보호체계에서 보호 중이던 아동이 15세 이후에 법상 시설로 전원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중 18세 비 시점에 아동에게 자립지원 제공(이후, 3. 자립지원 함기관 사후관리로 연계) 비종료된 아동의 18세 도래 1개월 전까지 시·군·구 등보호전담요원은 사후관리동의서 확보 및 사후관리 회 수립을 위해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이 함께 참여 들 회의를 개최하고, 자립지원대상자 연계 의뢰 공문과 네 과거 실시한 사후관리점검표(타 법시설입소)를 자립 원전담기관에 송부 후 지자체의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기종료아동의 사후관리계획 및 사후관리 동의서 지자체 공유 법 시설 입소 후에도 시설 종사자, 담당부서 공무원, 라과의 연락체계 유지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른 나를 위해 필요시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함			
165- 166		례결정위원회 구성 원회 구성)	보호를 위해 필요시 정시 소동일 수 있도록 함 다.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쪽	현 행	개 정
	(중략) -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보호 관련 실무경험이 많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중략) -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보호 관련 실무경험이 많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위촉
166	라.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중략) ◎ (개최주기) 사전심의 의무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 의무안건>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보호조치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 제5호의 보호조치된 아동의 보호목적달성·연령도달로 인한 보호조치 종료·퇴소조치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2호~ 제4호의 보호조치된 아동이 보호자의 가정복귀 신청에 따라 원가정 복귀하는 경우 * 아동 및 보호자의 가정복귀 의사확인, 양육환경 점검,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등 가정복귀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필수 심의	라.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중략) ◎ (개최주기) 사전심의 의무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함 참고 ◎ 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 의무안건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보호 조치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2호~제5호의 보호조치된 아동의 보호목적달성·연령도달로 인한 보호조치 중료·퇴소조치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2호~제4호의 보호조치된 아동이 보호자의 가정복귀 신청에 따라 원가정 복귀하는 경우 * 아동 및 보호자의 가정복귀 의사확인, 양육환경 점검,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이수 등 가정복귀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필수 심의 • 아동복지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는 경우
168	● 중장기 보호조치의 경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가 의무 사항이나, 그 보호조치가 상담·지도(제1호) 또는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제2호)인 경우 안건 상정 제외 가능함 〈신설〉	● 중장기 보호조치의 경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 의무 사항임 - 즉각분리(일시보호) 중인 피해아동의 상담·조사, 건강 검진, 보호계획 수립 등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보호조치 결정이 된 피해아동의 사례관리를 담당함
168- 169	 ● 중장기 보호조치 변경의 경우 - 가정형 보호 전환(예 : 시설→가정위탁), 연령도달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시설 전원조치 등보호조치 변경은 사후· 	 ● 중장기 보호조치 변경의 경우 - 가정형 보호 전환(예: 시설→가정위탁), 연령도달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시설 전원조치 등보호조치 변경은 사후·

쪽	현행	개 정
	서면심의 가능 ※ 동일 위탁가정에 대한 위탁유형 변경(일반가정위탁↔전문 가정위탁)은 사후 서면심의 가능하며, 위탁가정 내 주앙육자 변경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위탁부모 자격 요건 확인 후 사례결정위원회 사후·서면심의통해 결정)	서면심의 가능 ※ 동일 위탁가정에 대한 위탁유형 변경(일반가정위탁↔전문 가정위탁)은 사후 서면심의 가능하며, 위탁가정 내 주양육자 변경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위탁부모 자격 요건 확인 후 사례결정위원회 사후·서면심의통해 결정) - 보호중인 아동이 면접교섭 지원 계획 외 시·군·구와 상의 없이 타 시설·가정 등에서 실거주하여 보호시설 (가정)에서 실질적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하여 보호유형 변경 및 종결 검토 실시
169	 ● 보호조치 종결의 경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호조치를 종결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가 의무 사항이나, 그 보호조치가 상담·지도(제1호) 또는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제2호)인 경우, 안건 상정 제외 가능함 ※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지도(제1호) 또는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제2호) 보호조치 종결을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하는 경우, 그밖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피해아동 종결심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안건 설명함 	 ● 보호조치 종결의 경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호조치를 종결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가 의무 사항임〈삭제〉
	(중략) - 입양동의 철회에 따른 원가정 복귀 및 의 경우 사후·서 면심의 가능하며, 입양 성립에 따른 보호조치 종결은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제외(법원 결정사항 단순보고) ※ 이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4호와 제6호 병행 조치되었던 경우, 종결심사 시에도 함께 보고	(중략) - 입양동의 철회에 따른 원가정 복귀 및 의 경우 사후·서 면심의 가능하며, 입양 성립에 따른 보호조치 종결은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제외(법원 결정사항 단순 보고)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4호와 제6호 병행 조치되었던 경우, 종결심사 시에도 함께 보고 ※ 원기정에서 양육중인 입양대상이동의 입양 동의 철회로 인한 종결 시 사후·서면 보고 가능
169	〈신설〉	바. 기타사항 및 참고자료(서식) ● 아동복지법 제19조에 따른 개별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은 사후·서면심의 가능하며 아동복지법령 및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함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시 필요에 따라 서식 1~8호 활용
170- 178	〈신설〉	[서식 1] 심의·의결시 체크리스트(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서식 2] 가치충돌 상황 및 확인사항(예시) [서식 3]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요청서 [서식 4]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서식 5] 사례결정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양식

쪽			현 행					개 정	개 정			
						[서식 6] 회의개최 시 필요서류 체크리스트(참고용) [서식 7] 위촉 승낙서 [서식 8] 보안서약서						
179	1. 원가?	정복귀 프	프로그램 개요 (중략)			1. 원가?	정복귀 3	프로그램 개요 (중략)				
	(당독) ● (대상) 원가정복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이동 및 보호자 - (기본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제5호에 의해 보호조치 된 아동이 동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가정 복귀하는 경우 ※ 일시보호 등 보호아동의 분리보호 기간에 따라 축약 적용 가능						● (대상) 원가정복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자 - (기본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제5호에 의해 보호조치 된 아동이 동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가정 복귀하는 경우 ※ 일시보호 등 보호아동의 분리보호 기간에 따라 축약 적용 가능					
	타법		설치된 시설에서	력 쉼터, 장애인 너 가정으로 복귀		쉼터,	장애인	(폭력 피해자 특 쉼터 등 타 법(귀하는 경우 선	에 의해 설치된			
192	1.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업무 개요 - (개선)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주체를 민간에서 지자체 (시·군·구 자격결정 → 읍·면·동 발급)로 일원화하고, 온라인 발급(정부24)도 '24년 내 추진 예정											
196	〈신설〉						급해야 6 기보호종 당하지 않 라서 읍단 회 후 보 보호종료 직인 필 20년 이 경우에 현	료아동은 보호종료 할아 시스템 상 보 변동 행정복지센터 호종료확인서 수 확인서 내에는	문확인서 자격 결정 호종료 확인서 발급 에서 관련 정보(보 기 발급* 필요 지자체장(시장·군 난 시스템 미등록 등 설, 가정위탁 자	형 대상자에 급이 어려움 호기간 등) 수·구청장) 등 예외적인 원센터에서		
204				후견 직무에 관합 지정여부 확인	한 법률〉 지정취소			- 미성년자의 회	후견 직무에 관 지정여부 확인	한 법률〉 지정취소		
	보호시설	의 종류	미성년후견인	방법	방법	보호시설	의 종류	미성년후견인	방법	방법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보호시설의 장 (법 제3조제1항)	위탁아동의 기본증 명서에 지정여부가 가짜다지않기때문에, 입소한 적 있는 모든 보호시설마다 확인	지방자치단 체장이 지정 취소 (법 제7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보호시설의 장 (법 제3조제1항)	위탁아동의 기본증 명서에 지정여부가 기째되지 않은 경우, 입소한 적 있는 모든 보호시설마다 확인	지방자치단 체장이 지정 취소 (법 제7조)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	보호시설의 장이 법원에 하기를 신청 하여 법원의 하기를 받이야 함(법 제3 조제3항, 시행령 제3조제2항)	위탁아동의 기본증 명서 후견인 기재사 항 확인	지방자치 단체장이 법원에 허가의 취소를 청구 (법 제7조)	설치·운영 하는 보호시설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	보호시설의 장이 법원에 하기를 신청 하여 법원의 하기를 받이야 함(법 제3조 제3항, 사항령 제3조 제2항)	위탁아동의 기본 증명서 후견인 기재 사항 확인	지방자치 단체장이 법원에 허가의 취소를 청구 (법 제7조)		

쪽		현행					개 정				
	보호시설의 종류		미성년후견인	지정여부 확인 방법	지정취소 방법	보호시설	의 종류	미성년후견인	지정여부 확인 방법	지정취소 방법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가	고아인 미성년자	보호시설의 소재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정하는 자(법 제3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1항)	위탁아동의 기본증 명서에 지정여부가 가짜다(양) 때문에, 지방자단체에 지정 여부 확인 ※ 보호시설의 소재 지와 관할 지방 자치단체가 불 일치하는 경우 유의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가	고아인 미성년자	보호시설의 소재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정하는 자(법 제3조제/항, 시행령 제3조제/항)	생구 확인 ※ 보호시설의 스패지아 과하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정 취소 (법 제7조)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법원에 하가를 신청하여 지정에 관한 법원의 하가를 받아야 함(법 제3조 제3항, 사항령 제3조 제1항, 제2항)	위탁아동의 기본 증명서 후견인 기재 사항 확인	지방자치 단체장이 법원에 허가의 취소를 청구 (법 제7조)	설치·운영 하는 보호시설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	지방자는[체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법원에 하기를 신청 하여 지정에 관한 법원의 하기를 받아야 함(법 제3조제3항,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위탁아동의 기본	지방자치 단체장이 법원에 허가의 취소를 청구 (법 제7조)	
210-			록 작성(「민법」	제942조 제1항,	제943조,	4) 재산조사와 목록 작성(「민법」 제942조 제1항, 제943조,				제943조,	
211	제94	4조)	/ * 7 1 1			제944조)					
	(중략) - 재산목록은「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www.gov.kr) 또는「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http://cmpl.fss.or.kr) 조회결과를 활용하여 제출								거래 조회		
				아동보호서비	I스 서식(신설 및	변경)				
220-	서시 1	<u>저스</u> 사디	·지(전수상담)								

220- 서식 1 접수상담지(접수상담)

348 서식 10-1 분리보호(전원)에 관한 설명 확인 및 아동 동의서 〈신설〉

서식 15 양육상황 점검표

서식 21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연령 도래)

서식 24-1 아동 재보호조치 의견서 〈신설〉

서식 28 사후관리 점검표

서식 57 피해아동보호계획(변경)서

CONTENTS

M1부 **아동보호** 서비스의 이해

Ι.	.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요	3
П.	3. 이용보호시미스 선물세계 구표 대용 . 서비스 주요 대상 용어 정의	5 5 5
Ш	5. 원가정 외 보호기관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3.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4.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5.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6.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 6 ·· 7 ·· 7 ·· 7 ·· 8 ·· 9 ·· 9
IV.	.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1. 개요 2.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3. 발생 원인별 보호조치 주요사항	11 12
V	. 아동보호서비스 수행인력·기관별 역할분담방안 1.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2. 아동보호서비스 수행 주체별 역할 3. 아동보호 추진체계(예시)	65 67
VI	.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및 지원 1. 채용	69 70 72 73 74

^{제2부} 아동보호 서비스의 절차

I. 아동보호서비스 절차별 주요내용 ·······	81
II. 상담·조사·사정 ·································	84 84 85
Ⅲ. 보호계획 및 결정 ······· 1. 개요 ···································	
IV. 보호조치	·사례관리 ······· 113
V. 종결 ···································	134
VI. 사후관리 ····································	······· 149 아동 ····· 150 ····· 151

CONTENTS

제3부 **부록**

I.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	161
II.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1.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개요 2.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세부 절차 3.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표준내용(예시)	179 180
Ⅲ. 채무 위기아동 등에 대한 법률지원(상담·소송) 안내 1. 지원체계 ····································	189 189
Ⅳ.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 ····································	192
V. 입양기관 현황 ······	197
VI.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현황 ······	198
VII.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안내서 ···································	199

제4부 **서식**

Ⅰ. 아동보호서비스 서식

[서식	1] 접수상담지(접수상담)220
[서식	2]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24
[서식	2-1] 입양대상아동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26
[서식	3] 일시 보호 의뢰서
[서식	4] 욕구조사표230
	5] 위기아동 조기발굴 체크리스트 240
[서식	6]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서(친권 관련) 242
[서식	6-1]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서(상속 관련) 243
[서식	7]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44
[서식	8] 친부모 상황 점검표245
[서식	9] 아동 상황 점검표251
[서식	10] 아동보호동의서〈신설〉 257
[서식	10-1] 분리보호(전원)에 관한 설명 확인 및 아동
	동의서(신설) ····· 258
[서식	11] 개별보호·관리계획서 ······ 260
[서식	12] 아동카드 264
[서식	13] 서비스 제공 계획서(신설)267
[서식	14] 면접교섭 일지(결과보고서)(신설)269
[서식	15] 양육상황 점검표 271
[서식	16]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275
[서식	16-1] 보호연장아동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 276
	16-2] 재보호조치 신청서277
[서식	16-3] 재보호조치 신청 위임장 279
	17] 가정 복귀 점검표280
[서식	18] 가정복귀 점검 체크리스트 〈참고용〉 284
[서식	19] 가정 복귀 의견서 287
[서식	20] 종결심사서(사례결정위원회 상정) 289
[서식	21]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연령 도래) 291
[서식	21-1]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원가정복귀(비학대)/
	조기종료아동) 293

CONTENTS

[서식	22]	양육계획서(보호자용)	294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사례회의록	
[서식	24-	1] 아동 재보호조치 의견서	299
[서식	25]	보호결정(변경, 종료) 통지서	300
[서식	26]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302
[서식	27]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303
[서식	28]	보호종결 사유별 사후관리 점검표	304
[서식	29]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309
[서식	30]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310
[서식	31]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312
[서식	32]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313
[서식	33]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314
[서식	34]	위탁부모 추천서	315
[서식	35]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316
[서식	36]	소재불명조사복명서	317
[서식	37]	가정위탁가족 동의서	318
[서식	38]	아동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 정보조회 동의서	319
[서식	39]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320
[서식	39-	1] 가정형 보호 추진 기록지	321
[서식	40]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323
[서식	41]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	324
[서식	42]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325
[서식	43]	입양동의서	326
[서식	44]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327
[서식	45]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330
[서식	46]	입양 상담 후 원가정양육 결정 아동 모니터링 결과	331
[서식	47]	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조치 현황	332
[서식	48]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335
		입양동의 철회서	
[서식	50]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337
[서식	51]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	338
[서식	52]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339
[서식	53]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341
[서식	541	실종아동등 인수확인서	343

	[서식 55]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344 [서식 56]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345 [서식 57] 피해아동 보호계획(변경)서 346 [서식 58] 가정복귀 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피해아동) 349 [서식 59]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아동보호전담요원용) · 350 [서식 60] 가정환경 조사서(아보전용) 351 [서식 60-1] 가정환경 조사서(일시보호) 354 [서식 6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의심 체크리스트 · 356
표목차	〈표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26 〈표 2〉실종아동 보호·지원 관계기관 추진체계 27 〈표 3〉입양아동 관련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46 〈표 4〉사정 시 고려사항 90 〈표 5〉사례회의 종류 105 〈표 6〉사례결정위원회 보고 사항 체크리스트(예시) 108 〈표 7〉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업무분장 114 〈표 8〉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123 〈표 9〉아동보호조치 재평가 시 점검 123 〈표 10〉자립지원 관련 서비스 154 〈표 11〉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주요비교 155
그림목차	〈그림 1〉아동보호 업무 흐름도82 〈그림 2〉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 역할83

Ⅳ.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0

VI.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및 지원

V. 아동보호서비스 수행인력·기관별 역할분담방안

제1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이해

이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요

01 추진 배경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및 원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 등 지자체 역할이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인력 부족으로 현실에서 미작동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보호조치 종료 후 사후관리 등
- 아동을 시설 등에 보호 의뢰한 후 민간기관 위주의 보호가 지속되고, 보호자 의뢰가 없는 경우 아동 상황 변경에 따른 보호조치 변경 및 원가정 복귀 절차가 지자체 내에 부재

02 추진 경과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16.3. 개정, 18.3. 시행)
 - ※ 아동의 원가정 보호원칙,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양육상황 점검,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등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제정 및 지자체 배포('17.6.)
- 피해아동 및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중앙-지방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국정과제 반영('17.7.)
-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첫 번째 핵심과제로 하여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19.5.)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원가정 복귀 등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아동보호전담요원(334명) 시·군·구 배치('20.10.~')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21.1.)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190명) 추가 배치 추진(~'21.10.), '22년부터 191명 추가 배치하여 전국에 총 715명 배치
- 국가의 아동·청소년 양육·보호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국정 과제 반영('22.3.)

03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주요 내용

- 아동에 대한 개별보호계획 수립 및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보호를 실시하고 적절성 평가 및 변경하는 환류체계 구축
 - (상담 및 가정조사) 보호조치 결정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 환경에 대한 조사
 - (개별보호·관리계획)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반영한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양육상황 점검) 가정과 분리되어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아동보호조치 변경 필요성 및 종결 여부 지속적으로 확인
 - (사후관리) 연령도래 및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아동의 분리 사유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가정 방문 및 필요한 조치 수행
-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아동에 대해 전문적·개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 (보호조치) 아동의 분리보호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 보호조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조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호유형 및 필요한 지원에 대해 논의
 - (보호조치 변경 및 종결) 피해아동 등에 대한 가정복귀가 적절한지 여부 등 아동의 보호목적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보호조치 종결을 결정
-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 및 자원투입 범위를 한정된 자원을 가진 개별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확대
 - (통합정보시스템) 아동에 대해 지자체-민간 간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아동 중심의 사례관리 지원
 - (원가정 복귀 지원) 지자체-민간 간 협력을 통해 아동이 원만하게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아동-부모 간 만남 및 연락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 도입

서비스 주요 대상 용어 정의

01 아동

-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를 말하며,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나이로 계산
 -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한 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
- 다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보호(아동복지법 제16조의3)

02 보호대상아동

-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성폭력·방임 포함)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을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
- 넓은 의미로는 빈곤이나 부모의 수감·실직 등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높은 취약 아동을 포괄(이하 '취약 아동'이라 함)
 - ※ 빈곤 가구 아동,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 부모의 수감·알콜중독·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방임되고 있거나 방임 위기에 있는 아동, 저소득 다문화 가정 아동 등

03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제8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
-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라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하는 책무를 부담

05 원가정 외 보호기관

- 원가정 외 보호기관이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위탁가정 포함), 입양기관(위탁가정 포함) 등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에게 보호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
- 넓은 의미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포괄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0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조치 결정 등 아동보호 전 과정에 걸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조제3항)
- 아동보호는 '시급성'과 '시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선 보호 후 행정 처리' 원칙에 따라 보호(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호 원칙)

TIP

- 보호자가 특정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으로 배치를 요구하는 경우, 보호자의 요구는 아동 배치 시 최대한 고려하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아동의 보호는 최대한 아동의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보호자의 요구가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의 배치 요구 수용하되, 보호자의 요구가 아동 보호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호조치 결정

0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 아동의 경우 대부분 원가정 안에서 성장할 때 아동의 이익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으므로 워가정 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원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은 취약 아동(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상담,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가족 해체를 예방하여야 함
 - ※ 보호자가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시설 입소나 입양기관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우선 원가정에서 보호 가능한 지 여부를 살펴보고, 가능한 경우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서비스 연계·지원 등)
- 아동을 가족의 보호로부터 분리할 때는 가능하다면 일시적이고 최소한의 기간에 한해야 하며, 분리 결정은 주기적으로 다시 검토
 -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 시에도 해당 아동이 최대한 조속히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

참고 🤊 아동의 '원가정 보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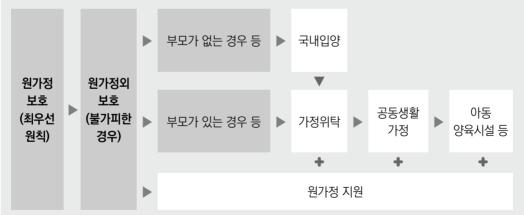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아동복지법 개정, '16.3.22./'18.3.23. 시행)

03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 아동을 불가피하게 분리 보호하는 경우, 아동의 개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와자유를 최소한으로만 제한하는 순서로 대안양육 유형을 결정하여야 함
 - ※ (UN대안양육지침 21조) 시설 양육의 활용은 그 환경이 아동 개인에게 특히 적절하고, 필요하며, 건설적이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 즉, 분리보호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형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참고 🔊 원가정 보호 원칙과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다음 순으로 조치 고려 187 국내 입양(부모가 없는 경우 등) \rightarrow 가정위탁 \rightarrow 공동생활가정 \rightarrow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조치 실시



04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가 상담,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보호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함
 -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됨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 보호자와 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

05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 취약 아동(가구)의 경우 빈곤, 질병, 이혼 등 복합적 욕구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단순 신청에 의한 급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 및 가구에 대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 또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단전, 단수, 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아동학대 정보, 의무 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자료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 발굴·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발굴·예방 체계를 활성화함(e아동행복지원시스템)

06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 보호자 등의 신청 또는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가구)을 발견한 경우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통합 상담을 실시하는 등 보호자가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방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여러 번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등에게 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보호자가 희망하는 시간·장소 등을 최대한 반영
- 또한, 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경우 가족과의 접촉 및 재결합 가능성을 촉진하고 아동의 생활에 대한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아동이 살아온 가정에서 최대한 가까우 환경에서 보호

참고 5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의 4대 기본원칙

-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국가(196개국)가 비준한 인권협약
-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 만장일치 채택('89.11.20.)
- 우리나라는 '91.11.20. 비준
- (2조: 비차별)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함
- (3조 : 아동 이익 최우선)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6조 : 생존·발달권)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함
- (12조 : 아동 의견 존중)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함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01 개요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 ① 아동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 \rightarrow ②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rightarrow ③ 원가정 복귀 \rightarrow ④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입양 등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실시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원가정을 통한 보호가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에 의한 보호를 추진(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 ※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시설형 보호 실시
 -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아동이 원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복지 급여 및 서비스 등을 최대한 연계·지원하도록 함
 - 원가정에서 보호가 적합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실시하되, 원가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아동이 조속히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 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서비스 제공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상황점검을 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15조의3)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상담 및 지도

-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 주요 내용 :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연계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드림 스타트에 우선적으로 연계
 - 13세 이상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는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에게 의뢰하되 미배치 시·군·구는 드림스타트에 연계



지족에 의한 보호·양육

- 법적 근거: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 ◎ 주요 내용: 「민법」제777조제1호(8촌 이내의 혈족) 및 제2호(4촌 이내의 인척)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칫족의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드림 스타트에 연계(13세 이상은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
 - 다만, 아동을 보호할 친족의 가정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 신청 가능

가정위탁

- 법적 근거: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 ◉ 주요 내용 :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 일반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 중 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 경계선 지능(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 등으로써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의 일시보호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참고



라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 법적 근거: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4호
- 주요 내용: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 복지급여 연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및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이 어렵거나 위탁가정의 부족 등 가정위탁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고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또는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장애인 등록 아동의 경우 장애인 부서로 의뢰하여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보호하도록 조치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보호되기 전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임시보호 가능

참고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절차



※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17p~) 참고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 ◎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5호
- 주요 내용 :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킴



-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입양특례법
- 주요 내용: 보호대상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 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친생부모가 입양을 결정하기 전.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으로 양육 및 정부 지워 등에 관하 정보를 친생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입양 외 다른 양육 대안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자발적인 입양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입양의뢰 된 아동은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됨

참고 🦠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개요

〈개념〉

- (사업목표)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법령)「아동복지법」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 (사업대상) 0~12세 이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등)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다만, 13세 이상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연령도래 종결시점(12세 이후)의 위기 개입,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 지속적인 사례관리 필요 아동(사례회의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하에 최대 15세까지 연장가능
 - 13~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사례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요 원)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 청소년 지원 기관 등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 실시
 - ※ 13~18세 미만의 취약계층아동은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에게 우선 의뢰하되, 특화분야 아동복지 교사 미배치 시·군·구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수행

〈주요 내용〉

- (사업내용) 아동통합사례관리
 - 대상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기초정보, 아동의 양육환경 및 발달상태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정기적 점검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지원
- (수행주체) 전국 229개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부서에 배치된 보건·복지·교육 분야별 전담공무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사업수행
- (영역별 지원내용) 보건·복지·교육 등 사전 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

영역	지원내용 예시	
신체/건강	건강검진 및 예방, 성장발달 스크리닝, 구강교육, 심리검사, 정신건강 서비스, 산전산후관리, 영양교육 등	
인지/언어	기초학습지원, 영유아 가정방문 교육, 경제교육, 인터넷 중독예방, 소방 및 안전교육, 독서지도 등	
정서/행동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 예방, 다문화 관련 교육, 진로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등	
부모/가족 통합지원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애착증진 프로그램 등	

- 사례관리 중 아동학대 의심·피해 발생 시 조치사항
 - (학대의심아동) 경찰(112)또는 시·군·구 긴급전화로 신고. 신고 이후 시·군·구(아동보호팀)를 통해 아동 및 가족의 현재 상황, 학대판단 여부 등 확인
 - (학대판단아동) 아동보호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례회의를 통해 개입방향, 기관 간 역할, 드림스타트 종결여부 등을 논의

2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2021.12.30. 시행>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12.29.〉
-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2. 「민법」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 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6.3.22., 2020.12.29.〉

-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 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 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20.12.29.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20.12.29.〉
 - 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12.29.〉
 -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03 발생 원인별 보호조치 주요사항



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

● (신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112)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로 신고

참고 🦠 아동학대 의심사례(예시)

〈아동, 보호자, 가정 내 관찰〉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신체적 상흔이 관찰되거나, 상흔에 대한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고함, 욕설을 퍼붓거나 무시하는 등)가 관찰되는 경우
- 보호자에 대한 아동의 태도 : 대화 과정 중에 보호자 눈치를 과도하게 보거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경직(긴장)된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 눈빛·표정·언어 등으로 보호자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경우
- 청결 상태 : 머릿니, 손·발톱 등에 묵은 때, 가정 내 쓰레기 등 방치
- 기타 영양결핍이 의심될 정도의 발육부진, 마른 체형, 계절·날씨에 맞지 않는 옷차림 등이 관찰될 경우

〈주변인 보고〉

- 아동(초등 이하)이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음(집 밖에 오래 서 있는 등)
- 싸우는 소리(고함, 욕설, 폭력 등)나 아동 우는 소리가 자주 들림
- 평소 아동의 옷차림이 남루하거나 집 안팎에 위험한 물건 방치 또는 냄새(악취)가 나는 것 같음
- (현장출동 및 조사)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신고되거나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현장출동 및 조사 실시
- (응급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은 아동학대범죄 현장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
 - 보호시설·의료기관에서 72시간 이내(토요일·공휴일 포함되는 경우 4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에서 보호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아동의 가정복귀 여부 또는 추가 보호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아동의 보호근거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등 조치하여야 함
 - 경찰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학대가 우려되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설담당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상시 협의 통해 관할 내 피해아동이 입소 가능한 보호시설(위탁가정 포함)을 파악해야 함
- (즉각분리, 일시보호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재학대 우려 등으로 피해(의심)아동을 보호조치 시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하여 보호
 - ※ 즉각분리를 실시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일시보호의뢰서(서식 3)를 작성하여 일시보호시설, 쉼터 등 시설에 송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즉각분리(일시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필수로 실시하고, 필요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자체 인력, 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내 상주 임상심리치료인력, 외부 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협조요청
 - ※ 아동학대사건의 특성상 사전에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분리보호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분리보호 후 빠른 시일 내에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을 진행
 - ※ 피해(의심)아동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서 일시보호 중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의 보호조치 결정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실시하며, 부득이하게 일시보호(즉각분리)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시보호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필수 심의대상임(일시보호연장 심의시 가정복귀 및 장기보호 전환 여부도 검토해야 함)
 - ※ 최초 일시보호조치 결정 및 일시보호(3개월 미만) 후 추가적 분리보호가 아닌 원가정복귀인 경우 심의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필요시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가능함
- (피해아동보호계획수립)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조사내용 등을 통해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가정상황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서식 57 피해아동보호계획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자체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아동학대 전문가자문단을 활용함
 - ※ 피해이동보호계획 수립 시 대상자들에 대한 조치계획 뿐만 아니라 대상자별 각 문제 및 욕구 등에 따른 지원계획도 포함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가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 또는 관련기관들과의 회의를 진행하여 서비스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연계 실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피해아동보호계획서를 공유하여야 함
 -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아닌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불필요하나,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을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피해아동 보호계획 공유
- (중장기 보호조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공유받은 피해아동보호계획을 바탕으로 친부모 상황점검표(서식 8), 아동 상황점검표(서식 9)를 작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하여 보호조치 결정
 - ※ 학대행위자가 친부모인 경우 친부모상황점검 생략가능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보호조치가 결정된 경우 아동보호를 신청한 보호자 및 아동을 보호할 기관에 보호조치 결정통지서(서식 25)를 7일 이내 송부
 - ※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결정통지서에는 '시설(기관명)' 제외하여 송부
 - ※ 수용자 자녀를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를 위뢰한 지방 교정청 자녀지원팀 또는 교정시설에 보호결정(변경) 통지서 송부
- (사례관리계획/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초기면접 및 사정 등 통해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 등에 대한 사례관리계획을 수립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공유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에 공유,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서식 13) 수립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
- (사례관리/양육상황점검·원가정점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분리보호 된 아동에 대하여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보호조치된 아동의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
 - ※ 아동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에는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 방문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 및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조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개별보호·관리계획 '관찰된 보호자 특성' 또는 '관찰된 아동의 특성'란에 기입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안내함
 - 장기보호조치가 이뤄진 후 일정기간이 초과하였으나 가정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과 함께 사례관리 종결여부를 결정하고, 지자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등 종합적 검토 통해 사례종결 여부를 결정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종결 이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속 관리
- (보호 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중 가정복귀 가능성 여부를 검토, 가정복귀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공유
 -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 종결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보호자의 가정복귀 의사 확인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공유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양육환경 점검 내용, 가정복귀 프로그램 결과, 공공연계 사례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가정환경조사서 작성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제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청
 - 지자체 가정복귀 승인결정에 따라 아동은 귀가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결정 내용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함
 - ※ 사례결정위원회는 피해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가정으로 복귀 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인이 가정복귀를 재신청하더라도 가정복귀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결정일로부터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의결하도록 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해당 가정에 미복귀 결정 내용과 사유를 충분히 설명함(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106p, 181p)
 - ※ 피해아동이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의한 분리보호 후 원가정복귀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제외



- (원칙) 아동학대 사례 관할 기준은 피해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이며, 관련 지자체는 보조 사례 관할
- (예외) 단, 피해아동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응급조치·즉각분리 등 분리된 경우, 집단시설에서 발생된 사건, 출생 미등록 아동 등 예외 상황 발생 시 실거주지 또는 사건발생지가 주사례관할이 될 수 있음(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참고)
- * 사례특성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시·군·구간 협의를 통해 사례관할지 결정 가능

보호절차

피해아동 분리보호 사례예시

신고·접수

112접수

- 아동의 친부가 가정 내에서 아동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로 신고 접수
- 경찰은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학대신고 내용을 통보하며, 필요시 현장출동 동행 요청

아동학대 조사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 실시
- 아동 가정은 친부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3인 가정으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피해 (의심)아동(중2/여)과 학대행위(의심)자인 친부를 분리하여 조사
- 신고 당일 친부는 아동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사실을 알게 되어 훈육을 하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아동의 온몸을 폭행했다고 진술함. 아동의 몸을 관찰했을 때 허벅지, 팔에 멍 등 상흔이 확인됨. 또한 평소 친부는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손바닥을 이용해 아동의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도 확인됨. 평소 아동 가정은 친부의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알코올 문제, 아동의 비행문제(술, 담배)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정 내 갈등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을 확인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조사 결과 학대로 의심되는 멍 등 상흔이 발견되었고, 아동의 분리보호 의사가 확인되고,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을 분리보호 조치하기로 판단하여 학대피해아동 쉼터로 인도
- 경찰은 친부의 성행 교정 및 양육 태도 개선 등 위해 임시조치(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를 검찰에 신청하였고 수사 개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친모, 학교 담임교사 등과 추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아동의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응급조치 효력 종료 전(72시간 이내)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일시보호 실시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보 호계획수립 (피해아동, 아동학대 행위자 조치)

지자체 아동보호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자체사례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판단여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추후 개입 방향 등 논의(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 아동은 현재 가정 복귀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며, 학대행위자인 친부의 학대 발생 요인이 소거되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시설에 중장기 보호(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제4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공유 및 아동보호전담 요원에게 공유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 설명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자에게 보호사실 서면 통보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례결정위원회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공유

보호절차 피해아동 분리보호 사례예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피해아동보호계획 통보 전이기 하나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유받은 피해아동보호계획을 바탕으로 초기면접 및 사정을 통해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공유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이를 아동보호전담 요원에게 공유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사례관리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상시적인 사례관리 진행상황을 공유하여 필요한 획 수립 및 지자체 자원 연계(아동의 원활한 시설적응 및 아동 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지원, 친부 서비스 제공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수탁프로그램 제공, 정신건강증진센터 통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연계. 가정 내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친모에 대한 양육기술프로그램, 심리상담 등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 친부는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어 보호처분(6개월 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위탁) 결정 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보호처분에 따른 상담위탁 프로그램을 제공 • 10개월 후. 친부는 지자체에 가정 복귀를 신청하였으나 아동이 가정 복귀를 거부하는 상황임에 따라 시설에서 지속 보호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보호전문기관 • 15개월 후 아동. 아동 부는 주기적인 면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 사례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과의 논의 통해 사례관리를 종결 및 종결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최종적으로 사례를 종결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 사례종결 전담요원에게 사례관리 종결 및 사례종결 됨을 안내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의 양육상황점검을 계속 실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양육상황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방문 및 유선상담 등을 통해 아동과 아동 부의 주기적 면회 여부 및 관계개선, 점검 보호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여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함 • 36개월 후. 아동과 아동 부의 관계가 원만해져 가정복귀하기로 함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복귀 의사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공유하였고,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실시 및 결과 제공을 요청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복귀 이후 3개월 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사후관리 진행하고 이후 단독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함(사후관리 총 1년) 원가정 복귀 아동보호전문기관 후 사후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양육상황점검, 2개월 간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가정복귀 절차를 진행하여

재학대 발생 가능성, 안전한 양육환경 마련 등 면밀한 검토 이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가정환경

• 사례결정위원회 통해 가정복귀 결정이 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 복귀 후 3개월 간(월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수행하여 적응상태 및 아동 안전 등을 확인함

조사서를 제출함



빈곤 및 양육의 어려움으로 보호 의뢰된 아동(비학대)

- (발굴·접수상담) 빈곤 및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의뢰된 경우 최초 발견 담당자(읍·면·동,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가 접수(초기)상담(서식 1)실시
 - ※ 보호자(부모)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이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실제 원인인지와 함께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의지도 동시에 면밀히 파악
 - ※ 접수상담은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초기상담지 등 사용 가능
 - 접수상담 결과 아동의 긴급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의뢰하여 일시보호시설(일시위탁)입소(이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후속조치 실시)
 - 복합적 욕구·문제가 있거나 부모상담 및 양육지원, 서비스제공 등으로 가정해체 예방이 가능할 경우 드림스타트로 의뢰
 - 긴급지원 및 경제적 지원으로 가정해체 예방이 가능할 경우 읍·면·동 등으로 의뢰
- (욕구 조사) 읍·면·동(또는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에서 실시한 욕구조사(서식 4)를 참고하며, 욕구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접 작성(위기아동 조기발굴 체크리스트 (서식 5)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접 작성)
- (가정환경조사 및 점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친부모 상황 점검표(서식 8), 아동 상황 점검표(서식 9) 작성 및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심리검사 실시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등 입소 전 건강검진, 심리검사 의무화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보호팀 내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보호조치 유형 및 기간, 서비스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동의 보호유형 및 서비스 계획을 담은 개별보호·관리계획(서식 11) 작성 및 아동보호동의서 (서식 10) 수령
 -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관련 사례회의 시 원가정 외 보호기관 참여요청 가능
- (사례결정위원회)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조치 결정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경우 보호자 및 보호기관에 보호결정사실을 통보(서식 25)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원가정 외 보호기관(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입양 등)은 개별 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서비스 제공 계획(서식 13) 수립 후 시·군·구 보고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읍·면·동, 타 사례관리기관, 원가정 외 보호기관 등과 협력하여 방문 또는 유선으로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서식 15)을 실시(최소 3개월 주기)

보호절차

빈곤의 어려움으로 분리보호 사례예시

발굴·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방법①)

•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퇴거 명령을 받은 부가 부채 상환을 위해 원양어선에 취업하게 되어 자녀(첫째 10세, 둘째 8세)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민센터에 방문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전화문의(방법②)

• 모의 사망, 부의 원양어선 취업으로 자녀 양육에 공백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청에 전화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보호전담요원

접수상담

- 3년 동안 위암으로 투병 중이던 모가 병세 악화로 사망함
- 모의 투병기간 동안 부는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모를 간병해 왔으며, 고액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대출로 해결하다 대출금 연체로 2주 전 담보 주택에서 퇴거 명령을 받음
- 부는 부채 상환을 위해 원양어선에 취업할 예정이며, 원양어선 재직기간 동안 자녀들을 돌봐 줄 수 있는 주변 친인척이 없어 2년간 자녀들을 맡길 곳을 찾고 있음
- 부는 가족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커 부채만 해결되면 자녀들과 함께 살 계획임

아동사정 및 가정조사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은 접수상담 결과로 대상 가구의 사례관리 필요성 확인
- 아동의 분리보호 요청 관련 아동보호전담 요워에게 의뢰

아동보호전담요원

-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 욕구조사 및 아동과 친부모 상황점검 실시
-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보호조치 방안 모색 ※ 방문일정조율로 방문 최소화

개별보호· 관리계획 초안 작성

아동보호전담요원

- 부의 부채상환 및 자립 시 까지 아동 보호가 필요하므로 가정위탁보호(2년) 조치
- 아동들의 환경 변화 최소화를 위해 전학 없이 보호 가능한 위탁가정에 배치
- 모의 사망 및 부와의 갑작스런 이별로 심리 정서적 불안이 높은 아동들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1년)
- 신속하고 안정적인 원가정 복귀를 위해 아동과 부의 정기적 교류 지원(2년)

시·군·구 사례회의

아동보호전담요원(필요시 타 사례관리 관계자 참여)

- 개별보호·관리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아동보호팀, 읍·면·동 접수상담자, 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과 사례회의 실시
- 사례회의 결과 동일 위탁가정 내 형제 배치 필요성 도출

보호조치 결정 (사례결정 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 사례회의 결과를 사례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 확정
- 아동 2명 모두 가정위탁보호 결정(동일한 위탁가정 배치)
- 원가정 복귀를 위해 아동과 친부, 위탁가정의 정기적 교류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확정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원가정 외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에 공유



보호절차

빈곤의 어려움으로 분리보호 사례예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하여 시·군·구 보고
- 위탁아동들이 전학 없이 배치 가능한 위탁가정 연계 및 친해지기 프로그램 실시
- ○○시 아동용품구입비로 아동 필요물품 구입(이불세트, 의류, 식기도구, 아동도서)
- 심리치료비 지원으로 위탁가정 인근에 ○○심리치료센터 주 1회(1년) 인지치료 등
- 분기 1회 친부와의 교류(유선 등) 지원(직업 특성 상 상시 연락 어려울 수 있음)

가정위탁지원센터

- (일시(위기) 위탁) 3일 이내 보호가정 방문 점검, 이후 주 1회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사례관리수행
- •(일시(그외), 일반(친인척외) 및 전문위탁) 보호조치 후 2주 이내, 일반(친인척) 위탁의 경우 2개월 이내 위탁가정 방문 등을 통해 적응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후 연 4회 이상 가정방문 또는 전화상담 으로 사례관리 실시

양육상황 점검

- 연계한 심리치료센터의 아동 변화정도 보고(월 1회)를 통해 아동들의 변화상태 확인
- 부의 휴가(연 1회) 시 아동들과의 교류 지원, 원가정 복귀 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 배치초기 1개월 이내 가정방문 실시(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와 동행 가능)
- 개별보호·관리계획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 분기별 양육상황 점검 모니터링(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와 동행 가능)
- 위탁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및 심리치료 진행에 따른 불안감 해소 확인
- 원가정 복귀 가능성 모니터링

보호아동

재평가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보호전담요원

- 가정위탁보호 2년 완료
- 친부의 부채 상환 및 원양어선 퇴사 후 국내 재취업 완료
- 아동들과 친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애착관계 유지 및 원가정 복귀 준비 완료
- 사례회의(아동보호전담요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실시하여 원가정 복귀 의견 제시
- 원가정 복귀 점검표(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원가정 복귀 의견서(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자는 양육 계획서 작성

종결

사례결정위원회

• 아동보호 목적을 달성하여 원가정 복귀 의견을 사례결정위원회 상정 및 복귀 결정

사후관리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보호전담요원

- 원가정 복귀 후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최소 6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공동수행 하고 이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단독으로 수행함(가정방문, 내방, 전화)
- 아동이 원가정 복귀는 하였으나 한부모가정인 친부가 양육과 근로를 병행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드림스타트로 서비스연계



다 미아 또는 유기로 신고된 아동

- (경찰신고, 건강검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 하는 사람 등은 경찰(실종아동찾기센터 182번)에 지체없이 신고 등 조치 후 건강검진
 - * '실종아동등'의 범위에 유기되거나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포함
 - ** 보호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아동·장애인복지·정신보건시설 등)
 - ※ 신고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재
 - 지자체의 장(시·군·구)은 아동의 신상을 기록한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서 (서식 51)를 작성하여 경찰 제출 및 신고 접수서를 5년간 보존
 - ※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피해의심아동으로 신고접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개입
 - ※ 실종아동의 복귀절차를 완료한 경우 신고 접수서를 지체없이 폐기하고 폐기책임자 및 폐기에 관한 최종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
 - 지자체 이외의 자가 아동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은 신고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시·군·구에 보호의뢰
- (일시보호) 시·군·구는 건강검진 후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일시 보호 의뢰서 서식 3) 등에 일시보호
 - 보호시설(일시보호센터 포함)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상카드(서식 52) 작성하여 지자체의 장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 각각 제출
 -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 신상카드(서식 53)를 작성하여, 실종아동 등에 대한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에 송부하며, 실종아동 등으로 확인될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 함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무연고 아동)은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경찰청장·지자체의 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실종아동의 보호자 확인 시 신속히 실종 아동의 가정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 등 인수확인(서식 54)
 - ※ 다만,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 등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장과 협의하여 가정복귀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보호계획 수립) 시·군·구는 원가정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성본창설 및 후견인 선임을 진행하고, 보호계획 수립 후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보호조치 결정
 - ※ 해당 아동의 성본 창설이 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의료·생계급여, 양육수당,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보호자 확인) 유기 등 아동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유기아동의 부 또는 모 등 보호자의 신원을 확인(실종아동 등 인수확인서 서식 54)한 경우. 시·군·구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
 -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 보고 또는 경찰 조사 등에 의해 보호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유선 또는 대면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아동의 성본창설이나 미혼모(부) 지원, 아동 양육 교육 연계 등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
 - ※ 아동복지시설 보고 시 아동 주소지 시·군·구, 경찰 조사 등에 의해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보호자 주소지 관할 시· 군·구(읍·면·동)에서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
 - ※ 아동의 성본창설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16.5.29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적극 설명

〈표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16.5.29 개정〉

내용	규정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 변경	「가 족관 계 등록법」 제14조, 제15조	기존 증명서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모두 표시	현재의 신분관계만 표시되는 '일반증명서'를 기본 적으로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표시되는 '상세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표시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 가능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게 그 사실을 공유하고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의뢰 등 조치(상담결과 등 송부)
- 의뢰받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등(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조)의 방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부모 교육이나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연계·지원함
 - ※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 의뢰 또는 협력하여 수행하되, '욕구조사표(서식 4)' 등 활용

(TIP)

- 부모가 없는 경우 등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유기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5호 보호조치를 하면서 제6호(입양)를 병행하여 조치하여 추후에라도 영구적인 가정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
 -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아동기본증명서, 아동 의료 관련 서류, 아동카드, 입양대상아동확인서, 입양대상 아동 배경보고서를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보호본부)에 전자문서로 송부하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은 해당 아동의 정보를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에 등록한 후 입양기관을 배정

〈표 2〉 실종아동 보호·지원 관계기관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정책 수립 및 시행 무연고아동 등 신상카드 DB 구축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예방·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 등의 가족지원 기타 필요 사항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고시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실종신고 접수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 대상물 채취 관계 장소 출입·조사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에 실종 아동 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 신상카드 작성·제출여부 지도·감독 관계 장소 출입·조사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	경찰관서에 실종아동 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 신상카드 작성 제출
다중이용시설의 장	실종아동 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 연 1회 실시 경찰관서에 교육실적 보고



보호절차

미아 또는 유기아동 사례예시

발굴·접수

경찰

- 공원 공터에서 울고 있는 여자 영아 목소리를 듣고 인근에 사는 주민이 경찰에 신고
- 경찰은 즉시 출동했으며, 시·군·구에게 유기아동 발생정보 공유 및 인계

접수상담

시·군·구(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개입)

• 아동을 인계받은 시·군·구는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여 건강검진 실시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일시보호 의뢰서 작성 및 일시보호시설장에게 아동 일시보호 요청

일시보호

시·군·구(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개입)

•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 7일간 보호 의뢰함 (보호조치 전까지 아동은 일시보호 상태 유지)

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시설은 아동을 일시 보호하며 아동 건강, 행동 등 체크함
-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시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필요시 유전자 검사 의뢰)

보호계획

시·군·구(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개입)

- 시·군·구는 아동이 유기된 점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작성
- 보호계획 수립 전 아동의 건강검진 결과 몸무게 미달, 영양부족상태임을 확인함

자체사례회의

시·군·구(필요시 타 사례관리 관계자 참여)

- 보호계획을 바탕으로 아동보호팀 자체 사례회의 실시
- 회의결과 아동이 영아인 점을 고려하여 가정위탁보호로 의견도출(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 보호전담요원에게 사례이관)

보호조치결정 (사례결정 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 회의결과를 토대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가정위탁보호로 결정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에게 맞는 위탁부모 추천 요청(최근 6살 아동을 3년 정도 가정위탁한 뒤 원가정 복귀시킨 위탁부모에게 아동양육을 요청)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보호계획을 가정위탁지원센터(원가정 외 보호 기관)에 공유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계획 수립하여 시·군·구 보고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에 영아인 점을 고려하여 ○○시 초기정착지원금, 결연지원금 및 영유아 관련 지원 서비스 연계

보호절차	사례예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이트대기	 아동을 가정위탁 배치 후 가정방문 등 아동의 사례관리 실시 * 연 1회 이상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동행 방문 가능 위탁부모와 함께 정기적인 검진 동행함 		
양육상황점검	아동보호전담요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사례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실시 * 연 1회 이상 가정방문을 통한 양육상황 점검 실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와 동행 가능 분기별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함(유기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원가정 점검 제외)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보호전담요원		
	7101147122417902222222		
보호아동 재평가	1년이 지난 시점 아동의 부모를 찾을 수 없어 아동에 대해 장기보호 필요성이 고려되어 현재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장기보호 가능성 확인함		
보호아동 재평가	• 1년이 지난 시점 아동의 부모를 찾을 수 없어 아동에 대해 장기보호 필요성이 고려되어 현재		
보호아동 재평가 종결	• 1년이 지난 시점 아동의 부모를 찾을 수 없어 아동에 대해 장기보호 필요성이 고려되어 현재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장기보호 가능성 확인함		
	1년이 지난 시점 아동의 부모를 찾을 수 없어 아동에 대해 장기보호 필요성이 고려되어 현재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장기보호 가능성 확인함 사례결정위원회 아동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했으며, 재학 중 미용자격증 취득하여 졸업 후 집 근처 미용실에		
	1년이 지난 시점 아동의 부모를 찾을 수 없어 아동에 대해 장기보호 필요성이 고려되어 현재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장기보호 가능성 확인함 사례결정위원회 아동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했으며, 재학 중 미용자격증 취득하여 졸업 후 집 근처 미용실에 취업함 아동의 연령도래(18세)로 인해 종결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 상정하여 종결함(아동보호		



미아·유기 등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지자체 조치사항

특이사항이 발생 되지 않아 사후관리 종료함

-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입소자 중 무연고자 점검 철저
- ※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청의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한 일제 점검 시 해당 시설의 입소·전원·퇴소 신상카드 제출현황 파악 등 지자체에서 적극 협조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후 아동의

- 공무원의 관계 장소 출입·조사(실종아동법 제10조)
-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질문
-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실종아동 등의 가족 등을 동반 가능
-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

참고 🤊 성본창설

- 유기아동 등을 발견한 사람 또는 발견 통지를 받은 경찰 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즉시 소지품, 발견 장소, 발견 연월일시, 성별, 출생추정 연원일, 아동 상태 및 보호자 관련 사항 등 그 밖의 상황을 조서(또는 신상카드)에 기록하여야 함. 이 때 조서를 신고서로 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 •시(구)·읍·면의 장은 시(구)·군 아동복지 담당 등을 통해 유기아동 발견 시 아동복지법 제15조상 보호조치 결정을 위해 보호계획을 수립,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야 함
- ※ 시(구)·군 의뢰 시 조서(또는 신상카드)는 해당 시(구)·군 및 보호조치한 시설 등의 관할 시(구)·군에 각각 송부
- 시(구)·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 % 성본창설의무가 있는 시(구)·읍·면의 장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등의 관할 시(구)·읍·면에 아동의 성본창설을 요청할 수 있음
- 성본창설을 위한 절차 예시
- (아동보호과) 관할 경찰서에 '요보호 아동(기아)의 성본창설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 붙임파일: 요보호아동 현황 및 요보호아동 성본창설 기록내용
- ❷ 경찰서에서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상황 보고서' 공문 회신
 - * 붙임파일: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상황)보고서, 기아발견조서
- **③** (민원행정과) 관할 가정법원에 '요보호아동 성본창설 협조요청' 공문 발송
- 4 가정법원에서 '성본창설 허가 심판문' 공문 회신
- 6 (아동보호과) 일시보호시설 등에 성본창설 심판문 공문 발송
 - ※ 아동의 성본 창설은 관련 법령에 의해 후견인 지정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이전 또는 동 절차와 병행해 추진
 - ※ 아동의 성본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찾은 경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고,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2

성본창설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 제52조(기아)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 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 ③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민법

-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후견인)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① 보호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른 후견인 지정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의 장이 확인 공고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후견인의 지정취소 등)

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법원에 그 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5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민법」 제928조, 제932조, 「아동복지법」 제19조, 제20조)

- (후견개시)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 행사 불가능 시 미성년후견인 선임
- (청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은 친권자 및 후견인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 선임청구
- (임시 후견인)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이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음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친권자 및 후견인이 없는 아동 발견

- 친권자 사망 또는 친권행사 제한 및 상실로 친권행사 전부 또는 일부 불가능
- 후견인 미지정 및 후견인 지정취소 등

발견↓

- 자치단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및 검사
- 아동복지시설의 장
- 학교의 장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 법원 직권↓

법원

• 청구에 따른 후견인 선임

• 법원 직권으로 후견인 선임

<미성년후견인 선임 이후 절차>

심판결정

- 법원: 결정문 및 재판서 등본 송달
- 후견인 : 미성년후견개시 지자체 신고, 아동의 재산목록 법원제출 ▶ • 후견인 : 연 1회
- 시(구)읍·면사무소: 미성년 후견개시 신고서 접수, 아동의 기본증명서에 후견인 공시

후견인 직무 수행

* 우선인 · 언 T외 후견사무보고서 법원제출

후견인 직무종료

발견↓

- 후견인 : 관리 계산, 긴급사무 처리. 미성년후견 종료 신고
- ・시(구)읍·면사무소: 미성년후견 종료 신고서 접수 및 종료 통지 ※ 아동이 성년도달로 인한 종료 신고 제외

참고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절차 및 지정 취소

• 후견인 지정절차

미성년자	보호시설 설치·운영주체	후견인 지정절차	필요한 서류
	국가·지자체	따로 없음 법에 따라 시설장이 후견인이 됨	-
고아인 미성년자	국가·지자체 외의 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후견인지정신청서 제출 [후견인 지정을 받은 후] 부양의무자확인 공고문 제출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후견인지정신청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부양의무자확인 공고문
	국가·지자체	① 가정법원에 후견인 지정허가 신청서 제출 ②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 제출 ③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후견인지정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기타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 부양의무자확인 공고문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	국가·지자체 외의 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후견인지정신청서 제출 [후견인 지정을 받은 후] 가정법원에 후견인 지정허가 신청서 제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 제출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후견인지정신청서 후견인지정서 후견인지정허가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기타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 부양의무자확인 공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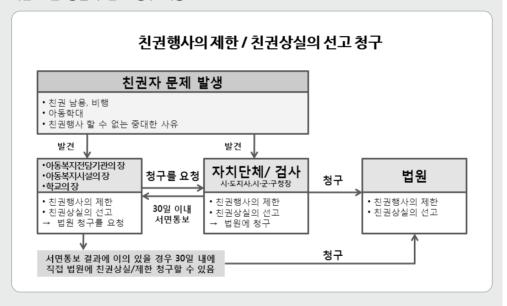
• 후견인 지정취소

- 1.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 법원의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으로 후견인이 되었으므로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 지정을 취소함
- 2.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 ① 법원의 후견인 지정허가의 취소를 청구
 - ② 보호시설의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청구권자임
 - ③ 후견인 지정을 허가한 가정법원에 후견인 지정허가의 취소를 청구
 - ④ 허가가 취소되는 후견인을 절차에 참가시켜야함. 또한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그 후견인이 즉시항고 할 수 있음

※ 출처: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7년

참고 o 친권제한·상실 선고의 청구 관련 법령

- · 친권 제한 또는 상실 선고의 청구 및 청구 요청(「아동복지법」제18조)
- (청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자에게 친권남용, 아동학대 및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
- (청구요청)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
- (서면통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요청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시행규칙 별지 11호)으로 통보
- (이의제기) 서면통보 결과에 이의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 청구 가능



-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친권제한·상실 선고 청구 심의(「아동복지법」제12조)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다음 사항의 심의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운영
 -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종료(퇴소)조치, **친권행사 제한 및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대상아동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라 보호자가 입양으로 의뢰한 아동

〈친생부모 상담 후 보호조치 절차〉

친생부모	. →	입양기관		
	입양기관으로 우선	역할	행정사항	
지자체로 우선 방문 또는 유선문의 하는 경우	방문 또는 유선문의 하는 경우	 최초 방문(유선) 상담 진행 지자체 상담 의무화 안내 친생부모 주소지(필요시 실거주지) 지자체 연락처 등 안내 	 친생부모 최초 상담기록지 작성 및 지자체 전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의사 확인 친생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 	

	주소지	실거주지	
역할		주체	
상담	주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실거주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입양동의 및 아동 인도	주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실거주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일시보호	입양기관 또는 일시보호시설	입양기관 또는 일시보호시설	
<u>보호조</u> 치 결정	주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주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입양아동 보호	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	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	

행정사항
 욕구조사표, 아동·친부모상황점검표 및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수령
아동의 의료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 관련 서류 수령친생부모 상담기록지 및 입양동의서 작성
 아동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입양기관에 의뢰하되, 불가피한 경우관내 또는 관외 보호시설에 의뢰 아동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에서 일시보호조치 의뢰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입양 기관이 ACMS등록 그렇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 아동권리 보장원에 아동카드 등 아동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보장원에서 ACMS 등록
• 아동의 보호를 의뢰한 기관에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아동 관련 서류(아동카드, 아 동의 의료기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 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생부모 상담기 록지, 입양동의서 등 공유

1) 입양동의 전 친생부모 상담(지자체, 입양기관)

-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 입양특례법 제1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목적 : 친생부모가 입양을 결정하기 전,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으로 양육 및 정부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친생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입양 외 다른 양육 대안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자발적인 입양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지자체 역할: 친생부모(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을 의뢰한 친생부모에게 원가정 양육 지원과 입양에 대한 상담 제공(대면 필수)
 - ※ 친생부모(아동)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지 또는 타 시·군·구에 입양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상담 진행하고 주소지에 협조 요청(다만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은 주소지에서 담당)
 - ※ 입양기관으로부터 입양기관을 먼저 방문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인수받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지체없이 친생부모에게 연락하여 상담 제공
 - ① 원가정 양육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 우선 진행
 - 경제적 지원, 양육지원, 아동 일시보호 등 친생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원가정 보호 가능성 또는 추후 원가정 복귀 가능성 파악(임신 중일 경우, 임신·출산, 출생신고 등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안내)
 - 친생부모가 미혼모·부인 경우 : 미혼모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혼모자 시설이나 가족센터 등 연계
 - ☞ 원가정양육을 위한 추가상담 필요시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상담체계 연계(가족센터, 미혼모자가족복지 시설,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등)
 - 출산 후 숙려기간 동안 독자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친생부모의 경우, 친생부모와 아동을 모자시설에 의뢰하여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 전국 미혼모자시설 현황: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참조
 - ☞ 자녀양육 관련정책 및 서비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및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② 입양절차, 입양의 동의 및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입양기관 안내 등 입양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제공
 - 입양 동의 후에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친생부모에게 안내
 - ③ 친생부모 상담을 통해 욕구조사표(서식 4), 아동 상황 점검표(서식 9), 친부모 상황 점검표(서식 8)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대면 필수), 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조치현황 (서식 47)을 시·도에 매주 제출, 시·도는 취합하여 전월의 실적을 매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상담이 시작된 때부터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매주 현황을 정리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상담 및 보호조치 현황을 전월 말일

기준으로 정리하여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참조 :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 ☞ 친생부모를 상담한 시·군·구와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시·군·구가 다른 경우 친생부모를 상담한 시·군·구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상황을 확인하여 관할 시·도에 제출하고, 친생모와 친생부를 상담한 시·군·구가 다른 경우, 처음 상담을 시작한 시·군·구에서 친생부모의 상담 현황 및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상황을 확인하여 시·도에 제출
- ※ 서식 47 은 별도 첨부한 엑셀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 ※ 친생부모가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친생부모 상담확인서(서식 45)를 친필로 작성·서명하도록 하며,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시 제출
 -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시 아동의 출생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가 제출되어야 함을 친생부모에게 주지시켜야 함
 - 친양자 입양신고 효과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 입양허가 이후 양친이 친양자입양신고(입양특례법 제15조)를 하면, 친생부모의 가족 관계등록부에는 아동기록이 삭제되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기재됨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기족 관계등록예규)」 제3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에 따라 친양자가 성년자인 경우 발급 가능
 - 아동이 입양 전 사망하게 되면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아동기록이 계속 유지 되고, 입양 후 파양되면 다시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됨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시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동 기록이 유지됨을 친생부모에게 분명히 전달하여야 함
 -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친생부모를 대상으로 심문 또는 조사관 조사를 요구·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함
- ④ 상담 후 친생부모가 원가정 양육 결정시,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위한 추가 방문 계획을 설명하고, 원가정 양육 결정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친생부모를 상담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방문 결과(서식 46)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분기별 취합하여 아동권리 보장원에 제출(방문 결과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경우,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친생부모 상담확인서(참고서식8) 작성시, 추가 방문 계획을 설명하고 서명 날인
 - 원가정 양육 결정 이후, 친생부모가 거주지(주소지) 변경한 경우에는 ① 최초 상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친생부모와 방문 일정 등 상의 후 거주지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인계(그간 상담내용 및 방문 일정 등), ② 거주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내용 확인, 모니터링 및 결과 제출
 - ☞ 방문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기타운영비 항목) 사용 가능(1회 100천원 이내)
- ⑤ 친생부모(아동)주소지(또는 실거주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입양기관은 입양의뢰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도 받아야 하며,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 ☞ 입양에 동의했더라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 입양절차
-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 양친이 될 사람에 관한 정보
- ⑥ 친생부모가 먼저 입양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경우,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에게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시·군·구 상담이 필수적임을 알리고, 친생부모의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친생부모 최초 상담기록지[참고서식 7-2])을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워에게 전달할 것임을 안내
 - ※ 만약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실거주지 또는 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안내하고, 상담을 받기 원하는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친생부모 최초 상담기록지[참고서식 7-2] 제공

| 입양기관의 의무 |

- 친생부모의 이름, 연락처, 주소지, 실거주지 등 기본 사항 파악하여 친생부모 최초 상담기록지 작성[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7-2]
- (친생부모의 동의 하에) 해당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친생부모 최초 상담기록지를 공유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친생부모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
- 친생부모가 본인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담을 희망하는 지자체(주소지 또는 실거주지)를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 연락처 제공하고 대면상담 받도록 안내

2) 보호자의 입양 동의 및 아동 일시보호

- ※ 법적근거: 입양특례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① 보호자의 입양 동의 및 아동 인도
 - 원가정 양육 관련 상담 후 친생부모가 입양을 원할 경우, 친생부모는 친생 부모(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면하여 친생부모 상담기록지(서식 44), 입양동의서(서식 43), 친생부모 상담확인서(서식 45)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2)를 작성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인도
 - ※ 만약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대면이 어려운 경우, 상담을 받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의 대면을 통해 입양동의서 작성 및 아동 인도
 - ※ 친생부모가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친생부모 상담확인서를 친필로 작성·서명하도록 하며, 입양동의서와 함께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시 제출
 - 입양동의서를 작성한 친생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어 긴급하게 보호를 요청한 경우, 친생 부모(아동) 주소지 시·군·구에서 아동을 일시 보호하여야 하며, 입양기관이나 아동일시보호 시설 및 양육시설 등에 아동의 일시보호 의뢰
 - •이 때, 입양기관에 우선 보호조치 의뢰 후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 일시보호시설 또는 아동 양육시설 등에 의뢰

- 입양기관에 보호조치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친생부모는 입양동의서와 아동의 혈액검사결과지, 예방접종기록지를 구비하여 입양기관(사무소 포함) 종사자와 만나 아동을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하고,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에게 입양 확정판결 전까지 아동 면접 가능하며, 가정법원 절차 진행 중에 친생부모에 관한 보정명령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친생부모는 추후 아동의 입양진행 결과(입양이 확정되거나 입양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 등)를 문의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해 추가 상담 진행
 - ※ 만약 주소지가 아닌 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상담을 실시하여 입양동의서를 받고 아동 인수를 할 경우. 해당 시·군·구(관내 입양기관 또는 일시보호시설·양육시설 등)에서 일시보호조치
 - ※ 입양기관은 가정법원 절차 진행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친생부모와 직접 상담 등을 통한 보완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친생부모 관련 보정요청이 있을 경우, 친생부모와 직접 연락하거나, 친생부모 상담을 실시한 지자체의 협조를 통한 추가상담 진행
- 입양기관에 보호되는 아동의 경우, 입양기관은 위탁가정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생계급여, 양육수당, 영이수당 및 아동수당 등 수급 신청하고, 위탁가정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수급권 책정 및 지급
 - * 입양기관은 입양기관 소재지 시·군·구(입양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아동 발생 보고(입양기관→입양담당부서), 위탁 가정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통보(입양담당부서→위탁가정 소재지 관할 시·군·구) 하는 것으로 급여 신청 갈음 가능(입양 동의 후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일시보호 하는 경우 및 위탁가정 소재지 변경시에도 동일 적용). 다만, 아동수당의 경우 위탁부모가 주소지 지자체에 수당 지급 신청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
 - * (의료급여 관련) 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을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함과 동시에 동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부서(통합조사팀 등)에 의료급여수급권을 직권으로 신청하고, 신청내역을 통합조사팀과 의료급여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2항, 당해연도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 이 때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부서는 신속히 의료급여를 책정함으로써 수급권 취득일 소요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 해소에 노력하여야 함
 - * 의료급여 개시일은 국민기초(시설)수급자로 선정된 날임
- 유기아동의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후견인과 상담을 통해 입양 의사 확인
 - * 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후견인에게 입양의 법률적 효력, 입양 동의 요건 등 상담을 실시하고 후견인 상담기록지(입양실무매뉴얼 서식 7-1), 상담확인서(입양실무매뉴얼 서식 8-2), 입양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확보한 후 아동 인도

② 입양 동의 시 유의사항

- 입양동의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함
 - ☞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 ☞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상담 시, 입양정보공개동의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지 않도록 유의 (입양정보공개동의서는 입양 후 입양인이 가족찾기를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친생부모가 정보공개동의 의사를 통보하는 서식)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생부, 친생모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생부의 소재불명이 증명되지 않는 한 '친생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고지하여 양친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친생부(미혼부) 또는 친생모(미혼모)만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했을 경우, 친생부모 양측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친생부모 중 한쪽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친생부(모) 입양동의서 미첨부 사유서(입양실무 매뉴얼 8-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제출
 - ☞ 생물학적 친부가 인지청구를 할 경우 동의권을 주장할 수 있음
- 유기아동으로서 친권자가 없는 경우, 친생부모의 친권 상실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친생 부모의 직접적인 입양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증명이 될 만한 서류: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경찰관서의 행방불명 신고 후 사건 사고사실 확인원 발급
- 친생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입양동의일 현재 19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이 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면 부모 양쪽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친권자(단독 또는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친생부모의 법정대리인 중 일방이 소재불명인 경우, 증빙서류(주민등록말소자 초본, 경찰관서의 행방불명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를 소명자료로 제출, 다른 일방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입양동의를 받아야 함
- ③ 입양 동의 시 제출 서류 및 물품
 - 입양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다음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출생신고 증빙서류 등(아동의 기본증명서, 아기수첩, 아동의 출생 당시 의료기록, 친생부모 정보가 기록된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생부모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아동소유 물품(물품인계리스트 작성 필요)
 - 이 때, 친생부모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 입양의뢰시 입양기관 필요 구비 서류 목록(입양실무매뉴얼 p.28-30 참조)

3) 아동 보호조치 결정 및 인수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친생부모 상담 내용 및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결정
 - 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카드, 개별보호·관리계획(초안)을 작성하고 시·군·구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보호유형 및 개별보호·관리계획 논의
 - ※ 아동카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서식 12]
 - * 시·군·구 사례회의시, 입양기관 종사자가 참석하여 향후 입양진행절차 등을 논의할 수 있음
 -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입양) 및 개별보호·관리계획 결정
 - ※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는 기급적 빠른 시일 내 개최하며, 보호조치의 적시성을 고려하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보호조치 의뢰 후 기급적 2주 이내 개최하도록 노력함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보호조치(입양) 결정 후 아동의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을 입양 기관 또는 양육시설 등에 보호 의뢰
 - ※ 입양대상아동은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 우선 원칙(아동이 일시보호시설에 있을 경우 입양기관으로 보호조치 변경)이며, 입양기관이 아닌 양육시설 등에 보호 의뢰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및 제4호의 조치 병행 결정이 필요함
- 아동 주소지 시·군·구의 보호조치(입양) 결정에 따라 입양기관으로 보호 의뢰한 경우, 입양기관으로 전입신고 가능
 - ※ 시·군·구는 아동보호 의뢰기관에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아동 관련 서류(아동카드, 아동의 출생 당시의 의료 기록지, 아동의 기본증명서, 친생부모 정보가 기록된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생부모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욕구조사표,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서 등 공유
 - 이 때, 아동의 입양기관 보호가 어려워 양육시설 등에 초기 보호 의뢰하거나, 시설 보호 중 입양 병행조치가 결정된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기본증명서, 아동 의료 관련 서류, 아동카드, 입양대상아동확인서, 입양대상아동 배경보고서를 아동권리 보장원에 전자문서로 송부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해당 아동의 정보를 입양정보통합 관리시스템(ACMS)에 등록한 후 입양기관을 배정
 - ※ 자세한 서류는 2024 입양실무매뉴얼〈입양의뢰 시 입양기관 필요 구비 서류 목록〉참고
 - * 입양기관이 아닌 양육시설 등에 보호 의뢰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및 제4호의 조치 병행 결정 필요
 - 아동을 배정받은 입양기관은 ACMS를 통해 아동의 서류를 확인하고 입양절차 진행 시 필요한 추가 서류와 ACMS에 등록한 아동의 정보에 관한 서류 원본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
 - ※ 입양기관은 아동을 배정받은 후 1개월 내 후속 추진 현황을 아동권리보장원에 공유
 - ※ 향후 입양인이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등 입양정보를 요청할 경우「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아동권리보장원으로 문의)

-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 ※ 법적근거: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는 양자가 될 자격(입양특례법 제9조)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입양기관의 장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장
 - 발급권자: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서 확인·발급
 -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또는 아동양육시설에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발급
- 단, 입양대상아동으로 보호조치 결정 후 아직 입양기관 또는 양육시설 등에 보호의뢰 전인 아동의 경우 결연 등 입양절차 진행을 위하여 입양기관 배정 후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주소지 시·군·구에 입양대상아동확인서 발급 신청
 -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내용에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결과(부양의무자 출현 여부) 포함
- 입양기관의 장은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입양대상아동확인서가 발급된 아동)을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됨.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입양대상이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며, 친권자가 입양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입양기관은 입양대상아동의 인적사항, 친생부모 배경, 아동발달, 진료상황 및 상담자의 관찰과 의견 등을 아동배경보고서에 기록함
 - ※ 친생부모의 상담기록, 입양 전 양육담당자인 위탁부모, 보육사 상담을 통해 작성함

참고 🄊 입양특례법(제22조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로 될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

- 아동 주소지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입양절차 완료 전까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입양기관이 아동에 대해 작성한 아동양육상황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받아 양육상황점검 실시
 - ※ 입양대상아동이 입양기관이 아닌 양육시설(아동보호시설 등)에서 보호중인 경우, 아동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중인 아동에 대해 아동양육상황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
 -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친생부모 등과

재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보호조치 변경: 입양절차 진행 중단, 아동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원가정 복귀 또는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을 포함
 - 입양대상아동 상황변경 보고(위탁가정 변경 등)를 받은 관할 시·군·구(입양담당부서)는 위탁 가정 주소지 시·군·구의 생계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업무 소관 부서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문 제목을 '00년 0월 생계급여/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 자격정비 요청(입양대상아동)'로 통일

5) 입양 동의 철회

- ※ 법적근거: 입양특례법 제12조제5항~제6항,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 입양동의의 철회시기 및 절차
 - 입양기관에 아동을 인계한 후라도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이 있기 전에는 입양동의철회가 가능함
 - 입양동의를 철회하기 원하는 친생부모는 입양 의뢰할 당시 상담을 진행한 지자체에 문의하여 입양동의 철회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는 현재 아동의 주소지 지자체에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철회서를 전달
 - ※ 입양동의 철회서(서식 49) 제출 시 친생부모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친생부모(미혼모)에게 원가정양육지원(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및 드림스타트 등 연계,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집행 가능
 - 친생부모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현재 아동의 주소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복귀점검표'를 작성하고 원가정 복귀 조치 이후 사례결정위원회 사후 심의 가능
 - ※ '가정복귀 의견서'는 아동을 보호중인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서 작성하는 공통서식이나, 입양기관 또는 양육시설에서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던 중에 입양철회 및 원가정 복귀 조치가 된 경우에는 '가정복귀 의견서' 작성을 생략
 - 입양기관은 입양동의의 철회에 따른 아동보호 비용을 입양기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상담 후 친생부모가 원가정 양육 결정시,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위한 추가 방문 계획을 설명하고, 원가정 양육 결정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친생부모를 상담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방문 결과(서식 46) 제출(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경우,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친생부모 상담확인서(참고서식8) 작성시, 추가 방문 계획을 설명하고 서명 날인
 - 원가정 양육 결정 이후, 친생부모가 거주지(주소지) 변경한 경우에는 ① 최초 상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친생부모와 방문 일정 등 상의 후 거주지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인계(그간 상담내용 및 방문 일정 등), ② 거주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내용 확인, 모니터링 및 결과 제출

☞ 방문 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기타운영비 항목) 사용 가능(1회 100천원 이내)

6) 사후관리

- 입양기관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후 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연 6회)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하여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입양기관은 입양가정에 입양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한 사후관리 이루어진다는 것과 목적, 방법, 횟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서비스 제공 후에는 양부모로부터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서식 50)를 수령해야 함
 - ※ 이사·연락처 변동 등 고지, 가족관계 변화 등 증명서 제출 요구에 응할 것을 미리 안내
 - 입양기관은 아동 주소지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전월 진행된 사후서비스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당월 10일 이전에 제출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
 - 입양가정이 희망하는 경우 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동행하여 해당 입양가정에 대한 가정방문 또는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입양허가 후 아동 주소지가 타 시·군·구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주소로 사례이관하여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함

7)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 입양기관은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를 인지하였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고(112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입양대상아동 학대 사례개입 및 보고절차(2024 입양실무매뉴얼)에 따라 신고, 보고, 조사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무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추진하여야 함

8) 파양

- 아동 주소지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아동을 일시보호조치 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재보호조치 하여야 함
 - 시·군·구 입양업무 담당 부서(아동보호 담당 부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파양청구심판 확정 내용에 대한 세부 파양 현황(입양허가일자, 아동 성별, 파양사유, 파양확정 판결일자, 파양 후 조치현황, 특이사항)을 파악하여 매월(익월 10일까지) 단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 ※ 입양업무 담당 부서는 가족관계업무 담당 부서의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 파악하고, 대상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9) 입양알선곤란 아동 및 재입양의뢰 아동

- 입양기관은 입양알선이 곤란한 아동 및 재입양 의뢰된 아동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양기관 주소지 시·군·구에 제출하며, 시·군·구(아동 보호전담요원)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재보호조치 하여야 함(입양특례법 제24조)
 -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고를 받은 입양알선곤란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를 변경한 경우, 해당 아동의 정보가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보고한 입양기관에 변경된 조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 재입양 의뢰된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15], 국내 입양 진행기록지[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16], 입양 알선이 곤란한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14]
 - 입양기관 주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 의뢰된 아동의 입양대상아동 확인서를 발급한 지자체에 공동 사례관리 요청, 입양대상아동확인서를 발급한 지자체에서는 가정위탁 또는 시설 입소 의뢰 등 수행, 입양기관 주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례결정 위원회의 보호조치 변경 후, 입소가 확정된 시설 주소지 지자체로 사례 이관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아동보호양육 의뢰(전출·입 등)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수용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적극 조치함

〈표 3〉 입양아동 관련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구분			
 아 동 상황	'문 담당	진행순서	
VIO 0 8	E6		
	입양기관	① 친생부모 초기 상담(유선 또는 대면, 친생부모 초기 상담기록지 작성) ② 친생부모 주소지(필요시 실거주지 또는 친생부모가 상담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연락처 제공하고 대면상담 받도록 안내 ③ (친생부모의 동의하에) 해당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친생부모 최초 상담기록지[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7-1] 공유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친생부모에게 직접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	
입양의뢰 아동 시·군·구		④ 친생부모 추가 상담 실시(유선 및 대면(대면 1회 이상 필수)) - 원가정 양육 및 정부지원 등 정보 제공 - 필요시 입양기관 동행 방문 협조 요청 - 주소지 시·군·구에서 상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실거주지 또는 타 시·군·구에서 실시 가능 ※ 상담 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 첨부 ⑤ 친생부모가 작성한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입양 동의서를 제출 받고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친부모 상황점검표 등을 작성 ⑥ 입양동의서를 작성한 친생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어 긴급하게 보호를 요청한 경우 입양기관, 가정위탁,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양육시설 등에 일시보호 의뢰 ※ 의뢰한 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을 하도록 안내 ⑦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보호조치 결정 및 아동에 대한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아동 주소지) - 입양 결정(입양대상아동): 입양 허가 전까지 보호 장소 결정	
입양대상 아동	입양기관 등 아동의 보호를 의뢰받은 기관	⑨ 아동의 보호− 시·군·구에서 입양기관 및 양육시설 등으로 아동보호를 의뢰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전입신고 및 아동 보호 및 아동배경보고서 작성	
		※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친권의 효력은 정지) • 입양기관이 아동을 인수할 경우 후견인이 되나, 입양허가 전 친부모가 귀가 의사를 밝히면 친권이 살아나고 후견직무가 종료됨 • 입양기관은 시·군·구에 후견인 증명발급을 공문으로 신청하고 시·군·구가 이를 승인하여 발급함	
		 ⑩ 입양대상아동의 아동양육상황보고서 매월 작성 및 분기별 시·군·구 제출 등 양육상황 점검 협조 ※ 사망, 학대(의심 포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해 및 중질환 등 중대한 사항에 따른 변동 발생 시 시·군·구 보고 그 외 아동보호 방법·장소·아동 거주지 변경, 양육자 변경 등 아동의 상황에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시·군·구 보고 	

구분		TIMA	
아동상황	담당	진행순서	
	시·군·구	 ⑧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아동의 주소는 보호의뢰기관) 및 아동의 인수 친생부모의 아동 보호가 가능한 경우 친생부모가 우선적으로 보호, 불가능한 경입양기관 및 양육시설 등에 보호 의뢰 입양기관이 아닌 타 양육시설 등에 보호 의뢰할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전요원은 아동기본증명서, 아동 의료 관련 서류, 아동카드, 입양대상아동확인, 입양대상아동 배경보고서를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보호본부)에 전자문서로 송하고,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보호본부)은 해당 아동의 정보를 입양정보통합관시스템(ACMS)에 등록한 후 입양기관을 배정 ⑩ 입양대상아동의 양육상황점검 실시 (위탁가정) 입양기관이 제출한 아동양육상황보고서를 통해 입양대상이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학대(의심) 상황을 보고 받은 경우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아동학대 신고 (양육시설 등)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보호 시 직접 방문 실시하고, 입양가주소지와 상이할 경우 시설 주소지 아동보호전담요원에 협조 요청 ⑫ 입양아동이 친양자 입양신고(가정법원 허가)된 경우 입양기관 주소지 아동보호전요원은 심의 종결함(사후·서면보고) 이후 양부모 주소지 시·군·구로 이관 	
Olorol =	입양기관	① 입양아동의 인도 및 입양기관 주소지 시·군·구 보고 ③ 입양 성립 후 사후관리(1년) 및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아동 주소지 시·군·구 제출 (전월 진행된 사후서비스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당월 10일 이전에 제출)	
입양완료 아동	입양 부모	⑫ 친양자 입양 신고(가정법원의 허가서 첨부)	
VIO	시·군·구 (입양 부모 주소지)	③ 입양 성립 후 입양기관이 제출한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통해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이행상황 모니터링(1년) -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의심) 상황을 보고 받은 경우 지체없이 아동학대 신고	

보호절차	입양의뢰 사례예시	
	입양기관(○○ 주소지)	
임신 중 입양문의	 임신 8개월 된 ♡♡(21세)(이하 친생모)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키울 수 없다며 출산 후 입양을 의뢰할 수 있는지 전화 문의함 친생모는 현재 친구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으며, 가족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될까봐 직장 문제라고 둘러대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함. 현재 직장은 퇴사한 상태로 수입은 없음. 친구 도움으로 병원 진료를 한 차례 받았지만, 정기진료는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입양기관은 현재 상황과 건강상태에 대해 묻고, 출산(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및 아동을 직접양육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미혼모부 지원정책, 가족센터 등에 대해 안내 입양의뢰는 주소지 시·군·구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한다면 현재 거주중인 시·군·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아동 출생 후 입양숙려기간(7일) 동안 친생모가 직접 양육 후에 가능하다고 안내함 친생모는 임신기간 40주, 3.4kg 여아를 ◇ ◇ 병원에서 출산했으며, 시·군·구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신청하여 산후조리원 7일간 있었음 	
	입양기관(○○ 주소지)	
접수상담, 친생부모 상담	 출생 후 8일 시점에 친생모가 입양기관에 직접 방문함. 숙려기간동안 많은 고민을 했으나 도저히 아동을 혼자서 책임질 형편이 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알릴 수 없다며 아동을 입양보내기 원함 친생모는 주소지가 너무 멀고 고향에 알려지기 싫어 현재 거주중인 □□구청을 통해 입양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입양기관에서는 친생모의 주소지, 실거주지, 연락처, 상담을 원하는 시·군·구 등을 파악하여 친생부모 초기 상담기록지를 작성하고 친생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직접 연락할 것임을 안내함 입양기관은 친생부모 초기 상담기록지를 해당 □□구청에 송부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친생모 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함 	
(입양동의)	아동보호전담요원(□□구청)	
	 이틀 후 실거주지 아동보호전담요원(□□구청)은 친생모와 직접 대면하여 추가상담(욕구조사, 긴급복지지원 제도, 아동양육비 등 양육관련상담 및 입양정보제공)을 진행함 친생모가 입양을 보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여 □□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동의서,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친생모로부터 아동의 기본증명서, 의료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음 □□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부의 정보를 파악하여 친생부의 동의를 받고,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친부모 상황점검표 및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작성 	
	□□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의 인도 및 일시보호	 친생모가 취직 준비로 더 이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호조치 결정 이전까지 관내 위탁가정으로 일시 보호 의뢰 및 생계·의료급여 등 지급이 되도록 조치 □□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친생모의 주소지인 △△시청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입양 의뢰 아동 발생 사실을 통보하면서 입양동의서, 친부모 상황점검표,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및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에 관한 서류를 인계함 	
개별보호·	△△시청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계획 초안 작성	• △△시청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인계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보호·관리계획(입양) 초안을 작성	
	△△시청 아동보호전담요원(필요시 타 사례관리 관계자 참여)	
시· 군· 구 사례회의	• 개별보호·관리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아동보호 업무담당 팀장, 입양기관 담당자와 사례회의 실시 및 입양으로 의견도출, 아동이 영어인 점을 고려하여 입양 전까지 입양기관에서 관리하는 위탁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의견 수렴

보호절차	입양의뢰 사례예시
	△△시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조치결정	• 사례회의 결과를 사례결정위원회에 상정, 개별보호·관리계획 확정 및 입양결정 • 입양을 의뢰할 입양기관에 해당 아동의 정보를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안내 • 아동의 보호를 의뢰한 입양기관의 주소지인 ○○구청으로 관련 서류를 사례이관
	입양기관(○○ 주소지)/○○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
양육상황점검	 입양기관은 아동배경보고서(인적사항, 친생부모 배경, 아동발달, 진료상황 및 상담자의 관찰과 의견)를 작성하여 ○○구청에 보고 ○○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기관으로부터 예비 양부모 상담내용 및 입양진행상황을 공유받고, 필요시 입양 기관과 협조하여 입양기관에서 관리하는 위탁가정에 방문 및 양육상황 점검
	입양기관(○○ 주소지)
양부모결연	• 예비양부모의 입양 신청 후 가정조사 및 개인 상담을 진행함. 양부모의 서류 준비 및 가정방문, 양부의 회사로 불시 방문 등 실시 후 입양가정 승인 완료함
	가정법원
입양허가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에 예비양부모의 입양 서류를 접수 후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짐 가사조사관은 예비 양부모가정 방문, 상담진행 후 재판부는 신문기일 지정 예비 양부모 가정법원 출석(아동과 예비양부모 적응 상황 모니터링) 가정법원의 입양판결 확정
	입양기관(○○ 주소지)
~ 7d	• 아동 인수 및 친양자 입양신고(아동 인수 시에 현재 아동의 적응상태, 수유, 수면상태, 배변 및 목욕상황과 발달상태 등 보고서 작성해서 전달. 아동의 예방접종 기록과 정기적으로 체크한 신체 치수 기록 등 함께 전달)
종결	○○구청 사례결정위원회
	• 양부모가 입양 신고함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에 서면·사후 보고 • 사례결정위원회는 입양완료에 따라 종결 및 사후관리 철저히 할 것을 요청
	(양부모 주소지인 ◎◎ 구청에 사례이관)
	(양부모 주소지인 ⊚ ○구청에 사례이관) 입양기관(○○ 주소지)
사후관리	
사후관리	입양기관(○○ 주소지) • 사후 상담 및 가정 방문(1년 내에 총 6회의 사후보고서 작성. 3회는 가정방문 실시) •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상황, 이름 변경 상황 등 확인 • 사후 관리 시마다 아동의 건강상태 파악, 예방접종 기록 확인, 아동이 안정적으로 적용하는지, 학대나 방임 정황 없는지 확인 • 양부모에 대한 대면교육(아동학대예방, 영유아 양육, 입양아동의 특성 등) 실시 (사후서비스 제공확인서 발급) • 입양기관은 전월 진행된 사후서비스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당월 10일 이전에 제출하여

사후관리 진행(입양기관은 사후관리 진행 후 10일 이내에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 기관별 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참고

〈아동 보호 절차도〉

절차(프로세스)	업무 내용(해야할 일)	업무 주체
① 보호출산 이동 발생 (신청인 출산)	■ 신청인의 출산 사실을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공유	지역상담기관→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이상) 도과 이후, 보호출산 최종 결정	
② 아동의 지자체 인도	■ 신청인이 직접 아동을 지자체(아동보호팀)에 인도	신청인→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② 이승의 자자에 라도	■ 아동을 인도해 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장에 요청	신청인(→지역상담기관)→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downarrow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군구청장이 아동의 최초 미성년후견인으로	자동 지정
	■미리 확보해 둔 일시보호 인프라로 아동 보호	일시보호 인프라 소재지 사군구
③ 아동 일시(긴급)보호	■ 건강검진, 아동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의료급여 등 급여 담당자
\downarrow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 의료기관은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정보를 출산 후 14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으로 통보 ■ 심사평가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중앙상담지원기관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역상담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 통보	지역상담기관→심사평가원→ 중앙상담지원기관→지역상담기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읍면(가족관계등록관서)
\downarrow		
② 출생등록, 성본창설 [*]	■ 태어난 아동을 출생등록하고, 성과 본을 창설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읍면(가족관계등록관서)
	* 성본창설(가정법원 허가) 완료 시까지 약 1~3개월 소요	
④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1개월 이내 개최, 최대 3개월 안에 개최하여 최종 보호 조치 결정 (가정형 보호 우선 검토) * 참석범위: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아동보호 담당자 외에도 지역상담 기관장, 일시보호 소재지 담당자도 기급적 참석할 수 있도록 함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군구에서 개최
\downarrow		
⑤ 최종 보호조치, (필요시) 사례이관	■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보호조치 ■ 필요시, 사례 이관 및 후견인 변경 선임** * (예) 입양대상아동 결정 및 입양기관 인도 시, 또는 최종 보호조치 결과 아동의 보호 시·군·구가 달라지는 경우 ** 「시설미성년후견법」,「입양특례법」등에 따라 후견인 변경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 최종보호 사군구
\downarrow		
❸ 성본창설 완료, 통보	■ 법원의 성본창설 허가 결정 결과를 공유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읍면(가족관계 등록관서)→지역상담기관→지역상담 기관 소재지 사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아동의 현재 보호자
<u></u>		
◆ 아동의 주민등록*	■ 성본창설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주민등록	아동의 현재 보호자
* 성본창설 완료 후, 아동의 주민등록 당시	l의 보호자(시설관리인, 위탁부모 등)이 주민등록 실시	

※ ①~⑤ 절차 와 ①~② 절차 는 병행하여 진행

◎ 보호출산 아동 발생

- 보호출산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경우 지역상담기관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지역상담기관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담당자(아동보호전담요원 등)에게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함.
 -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일시, 성별, 희망 보호조치 등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사실을 전달받은 시·군·구 아동보호담당자는 숙려기간 종료 후 아동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 출생 사실을 전달받은 즉시 일시보호 시설 등 아동 보호 인프라를 확보·준비*하여야 함.
 - * 보호출산 아동의 특성에 의해 아동복지법 외 타 법 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위해,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아동의 보호체계 준비 필요

◎ 숙려기간

- 보호출산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로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면서 보호출산 결정을 위한 숙려기가*을 가져야 함
 - * 출산일 불산입, 신생아실 입원 등 생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기간은 숙려기간에서 제외
- 위기임부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숙려기간 조기 종료 가능, 숙려기간 조기 종료가 발생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담당자(아동보호전담요원 등)에게 아동의 인도 및 보호 요청
- 아동 인도 및 후견인 선임
 - 보호출산 신청인은 숙려기간 이후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해 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지역상담기관 담당자는 보호출산 신청인의 인도 의사를 알게된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에게 인도 의사를 알려야 하며, 만약 시·군·구청장(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이 보호출산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아동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은 지역상담기관 담당자, 보호출산 신청인과 논의하여 아동 인도를 위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지역상담기관 담당자 및 신청인과 함께 만나 아동을 인도받아야 함.
- 아동이 시·군·구청장에게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받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 후견인이 됨.
 - ※ 시·군·구청장 개인이 아닌 행정기관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므로, 기관 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후견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참고 🏿 후견인이 수행하는 업무 예시

- 보호출산 아동의 입양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을 위한 입양 동의
- 아동의 수술, 입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사항 및 의료기관 서류 발급
- 기본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
- 여권 발급 신청
- 각종 사회보장급여(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신청 등
- 시·군·구 아동보호담당자는 일시보호시설 및 양육시설 등에 아동의 일시보호 의뢰, 이후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및 아동상황점검, 건강검진, 심리검사 실시,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사회보장급여(생계·의료 급여 등) 신청
- 시·군·구청장의 미성년 후견인 개시신고
 - 시·군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후견인 개시 신고를 위해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6호)를 작성하여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
- 이 경우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에는 보호출산 아동 인도 과정에서 작성된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서'의 사본과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 및 후견 개시 보고'와 관련하여 실시한 내부공문의 사본을 첨부
 - ※ 관련 서식은 당해연도「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 안내」서식 참고

참고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후견인 개시 신고 시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 작성 방법

- 미성년자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정보를 작성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
- 후견인 : 성명 대신 직명(OO시장, OO군수, OO구청장)을 기재하고, 기관의 주소를 작성
- * 주민등록번호 등 기관과 무관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음
- 후견감독인 : 미기재
- 신고인 : 성명 대신 직명(OO시장, OO군수, OO구청장 또는 보호시설의 장)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실시('자격'란은 ① 미성년후견인에 '○'표시)
- 개시일자 및 원인 :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 받은 일자를 기재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인도'라는 문구(또는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문구)를 작성
- •취임일자 및 원인:보호출산 아동을 인도 받은 일자를 기재하고, '③법정'에 '○'표시
- 심판일자: 미기재
- 기타사항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약칭)에 따른 보호출산 이동의 후견인의 개시 신고'라는 문구를 기재
- 제출인 : 미성년후견인이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를 미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 그 제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 (예시)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 ◎ 보호출산 아동 긴급 보호
 - 보호출산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이 신생아라는 점을 감안, 아동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 및 돌봄 인력 사전 확보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신생아 긴급 보호 인프라 부족 또는 과부하 발생 시 아동이 즉시 보호될 수 없는 위험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신생아 돌봄 인프라 파악하고 산하 시·군·구 간 협조체계 구축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즉시 미리 확보한 신생아 돌봄 인프라를 활용하여 아동을 긴급 보호하고, 긴급보호 중인 기관 또는 시설과 협력하여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참고 🔊 보호출산 아동 긴급 보호비 지원

- (지원내용)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지역상담기관 소재)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보호출산 신생아(약 300명)를 보호하여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원(주별 25만원)
- (지원대상) 긴급보호 인프라*
 - * 일시보호시설, 영아양육시설, 전문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 등뿐 아니라 아동의 특성에 의해 아동복지법 외 타 법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도 포함
 - ※ 긴급 보호비는 아동이 최종 보호되기 전까지 돌봄을 위한 비용으로, 생계급여와 중복되지 않음
 - ※ 가정위탁으로 일시보호하는 경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신생이 긴급 보호비를 지원받으며, 일시보호 기간동안 전문아동보호비 중복 지급 불가
- (지원금액) 일시보호 주수×주 25만원을 계산하여 지급
- (지급주체) 지역상담기관 관할 시·군·구
- (지급기간) 일시보호 종료시까지(3개월이 상한이나, 일시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연장기능)
 - ※ 일시보호기간 연장 시에 진행하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긴급보호비 지원 연장여부도 함께 고려
- (지급방법) 매월 20일까지 일시보호시설 인프라 계좌로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의 성본창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생계·의료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서 아동 긴급 보호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소재지(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산후조리원 등) 관할 시·군·구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지급

-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 보호조치를 위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발급하여야 하며,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의 의료급여 책정을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별도 발급
-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 등은 아동 의료급여 책정을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발급한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해당 전산관리번호 통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는 아동 보호조치 시 직접 발급한 전산관리번호와 통보받은 전산관리번호를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함께 관리

◎ 보호조치 결정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긴급 보호한 즉시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가급적 인도 후 2주 이내(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3개월 이내)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및 보호조치 결정
 - 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아동 일시보호 중인 시·군·구(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아닌 경우)의 아동보호 담당자 및 지역상담기관장도 해당 사례결정위원회에 가급적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 입양대상아동 지정을 위한 입양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와 아동의 입양전 보호에 대한 시설보호(4호), 가정위탁(3호), 병원 및 전문치료기관(5호) 보호조치 중 하나를 병행 결정할 수 있음
-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입양기관, 위탁가정, 시설 등으로 아동 인도, 아동을 보호할 기관에 보호조치 결정통지서(서식 25)를 7일 이내 송부
 - 타 시·군·구로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시 아동보호서비스 사례이관 진행, 사례를 이관받은 시·군·구는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 아동 관련 정보(서류) 공유
- 이후 아동의 보호유형 및 관계 법령(입양특례법, 시설미성년후견법 등)에 따라 후견인 변경 가능, 후견인이 변경·선임되지 않은 경우 기존 지역상담기관 시·군·구청장의 미성년 후견인 직무는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유지됨

◎ 성본창설 및 주민등록

- ※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관련 상세 절차는 당해연도「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안내」 "VI.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 2.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 4.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참조
- ① 성본창설 등의 완료: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으로부터 출생기록 통보서를 송부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사실 통보
- ② 주민등록: 아동을 현재 보호하고 있는 시설 관리자, 위탁부모 등 아동이 속한 세대(시설)의 세대주(관리자)는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신고(주민등록번호 부여) 진행

- * 보호 결정 통지서(또는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성본창설 허가서 등의 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신고
- ** 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은 관리자가 신고
- 전입신고: 다만,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이후 아동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아동을 보호하게 될 자(시설 관리자 등)는 아동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이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법정대리인(후견인)의 확인을 받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 후견인이 시·군·구청장인 경우, 후견인 확인 및 신분증명서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 아동담당 부서에서 '보호출산 아동 전입신고 관련 후견인 확인 사항 통보' 공문을 신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발송하는 것으로 갈음(이때,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서' 사본 및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 및 후견 개시 보고' 사본 첨부)
 - 만약, 성본창설 및 주민등록이 완료된 아동에 대해 아직 사례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긴급 보호 중인 경우,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해당 아동의 전산관리번호에 책정된 사회보장 급여 중지^{*},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사회보장급여 새롭게 책정^{**}
 - * 퇴소 처리(일시보호시설 등 시설보호인 경우) 또는 급여 중지 신청(가정위탁 등 시설보호가 아닌 경우)
 - ** 입소 처리(일시보호시설 등 시설보호인 경우) 또는 신규 급여 신청(가정위탁 등 시설보호가 아닌 경우)

참고 🤊 (일시)보호조치 유형별 신고의무자

- (입양기관) 「입양특례법」에 따라 아동이 입양기관으로 인도된 경우 입양기관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 시설 관리인 등이 주민등록(전입신고)의무 수행
 - * 「국내입양에관한 특별법」시행('25.7.19.) 이후에는 입양대상아동 보호유형(가정위탁, 시설 등)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신고)의무 수행 필요
- (위탁가정) 위탁부모가 세대주(동거인)로서 주민등록(전입신고) 의무 수행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시설 관리인 등이 주민등록(전입신고) 의무 수행
- ③ 주민등록번호 통보: 아동이 주민등록 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주민등록신고에 따라 아동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지체없이 아동을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 및 해당 보호아동의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통보, 아동보호 담당자는 통보받은 후 지체없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및 시·읍·면의 장에게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사실 통보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로부터 아동 주민등록번호 통보받은 해당 아동의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는 아동이 부여받은 전산관리번호 중지 처리 및 아동의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연계 조치
 - 전산관리번호로 수급 중이던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주민등록번호로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 경우 아동을 보호하게 된 시·군·구청장은 아동 명의 통장개설 후

사회보장급여를 아동 명의 통장으로 이전

•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는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의료급여 담당자 등 전산관리번호 발급 담당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발급 사실 통보

참고 🤊 성본창설, 주민등록(전입신고) 주체별 역할

구분	업무 주체
①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 기록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읍·면(가족관계등록관서)
② 성본창설 완료, 통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읍·면(가족관계등록관서) → 지역상담기관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 → 현재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
③ 주민등록	현재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자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④ 주민등록 사실 통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현재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자 및 아동보호 관할 시·군·구 담당 →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 및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읍·면의 장 → 지역상담기관
⑤ 전입신고	아동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아동을 보호하게 될 자 → 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⑥ 전입신고 사실 통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아동 보호하게 된 자 → 아동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참고 5 보호조치에 따른 아동 인도 및 아동보호 사례 이관

-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아동 인도 후, 해당 기관· 시설·가정이 소재한 시·군·구로 아동보호서비스 사례 이관
 - 만약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시점까지 아동에 대한 성본창설 및 주민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례 이관 연기 및 아동 긴급 보호 연장 가능
 - 다른 시·군·구로 사례를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여전히 보호출산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 다만, 최종 보호조치 결정 이후 보호유형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후견인 적절하게 지정 및 변경 가능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사례 이관 시점에서 보호출산 아동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급여 중지 처리
 - * 만약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서 발급한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별도의 전산관리번호)에 사회보장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사회보장급여 중지 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통보
 - ※ 추후 다른 시·군·구로 사례가 이관되기 전에 입양 허가 완료, 보호출산 철회 등 보호조치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를 종결하고,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사례 이관

참고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 관리

- 보호출산 아동의 태어난 직후의 접종 기록(B형간염 1차, BCG 등)은 일반적인 아동과 같이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서 임시신생아번호로 접종기록 관리
-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보호자 정보는 일반 아동과 달리 산모의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구분코드 8번)와 지역상담기관의 연락처·주소 입력(관계값은 '관리번호' 입력)
-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의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즉시 관할 보건소로 예방접종 관리시스템 내생모 신원정보로 등록된 보호자 정보에 대한 수정 요청(관할 보건소는 질병관리청으로 수정 요청)
- 출생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접종하는 B형간염 2차 등을 접종하여야 하나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성본창설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접종기록 관리
 -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임시신생아번호와 아동 전산관리번호^{**}가 서로 연계되도록 처리
 - *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가정위탁센터에서 관할 보건소와 협의, 그 밖의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가 관할 보건소와 협의
 - **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의료급여 책정을 위해 발급한 전산관리번호
- 보건소 담당자는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의 임시신생아번호를 아동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변경,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의 아동 보호자 정보를 아동의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 변경
 - * 시설장 또는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등
 - ** 임시신생아번호 발급 시 입력했던 기존 보호자 정보는 관할 보건소에서 삭제 처리
- 추후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 발급된 경우, 임시신생아번호 또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접종받은 이력이 주민등록번호로 이관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내 인적정보 정정
 - 성본창설 후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완료 이후 관할 보건소에 주민등록 사실 안내
 - * 아동의 전산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보건소에 제공
 - 해당 보건소 담당자는 아동의 전산관리번호 인적의 접종력이 주민등록번호로 이관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 공문 송부
 - * 질병관리청은 보건소로부터 받은 공문을 근거로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내 인적정보 변경 조치 수행
 - ** 보건소에서 전산관리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직접 전환 가능하도록 조치 후 관련 내용 공문 안내 예정



참고 🤊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 임신·출산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산부 140만원) • 청소년 산모(19세 이하) 120만원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은행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산모건강관리	•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공 등	• 보건소/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에게 급여·비급여 일부 지원	• 주민센터/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부서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 • 건강관리사 파견(바우처)	 주소지 관할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출산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대상자) 자녀 1인당 70만원 • (1~6급 여성장애인) 자녀 1인당 100만원	• 주민센터/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부서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할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미혼모 시설 (기본형)	•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숙식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해당 시설 및 지자체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간 사용가능한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	• 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양육·돌봄

•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월 20만원)·추가 아동양육비·학용품비· 시설입소자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증명서(중위소득 60%)	 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아동양육비(월 35만원)·검정고시·학습비·고교생 교육비·자리지원촉진수당·한부모가족 증명서(중위소득 72%)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런 위기사유(이혼, 실직, 질병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	• 주민센터/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부서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사회적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 환경성질환 어린이 진료 지원 등	• 시·도및시·군·구청환경업무부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2284-1813, 1819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거점기관)	• 출산·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급	 주민센터/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주거급여 상담센터 ☎ 1600-0777 		
가족역량강화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등에게 시례관리, 자녀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등 제공 및 서비스 연계	 가족센터 고객센터 ☎ 1577-9337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관계 없음) 대상 급여·비급여 일부 지원	• 보건소/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중위소득 180% 이하 영어(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음)에게 검사비 지원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대상 의료비 등 지원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중위소득 180% 이하 영아(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음) 대상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바우처) 		
아동수당	•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원 지급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대상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 비용지원	·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바우처)	• 보건소 및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 86개월 미만 취약전 아동에게 월령에 따라 월 10~20만원의 수당 현금 지급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www.bokjiro.go.kr)	
영아수당지원	• '22년 출생아부터 0~1세 아동 영아수당 지원 -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아동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가, 나, 다형) 지원 中 택 1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에게 통합서비스 제공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누리집(www.dreamstart.go.kr) 	
아이돌봄서비스	•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주민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센터 1577-2514, 누리집(idolbom.go.kr)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지역아동센터 지원	• 방과후 마을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보호, 교육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지역연계 등 프로그램 운영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	 주민센터/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가사·간병 방문지원	• 질병·생활고 등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바우처)	• 주민센터/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 복지·보건·고용 등 연계·제공하여 탈빈곤 및 자활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 자녀돌봄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프로그램 운영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고객센터 ☎ 1577-0756, 누리집(central.childcare.go.kg)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공동육아나눔터	• 대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이웃과 함께 자녀돌봄 장소 제공, 프로그램 운영, 돌봄품앗이 지원 등	• 가족센터 고객센터 ☎ 1577-9337, 누리집(www.familynet.or.kr)	
초등돌봄교실	•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품앗이 활동지 원 등	재학(입학예정) 초등학교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 시설·주거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등	• 시·군·구청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지원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공공주택 지원	 주택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영구임대, 매입·전세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 시·군·구청/각 시·도 도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누리집(www.lh.or.kr)	



· 교육·취업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학생 미혼모 대안 교육 위탁교육기관	•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대상 위탁 교육 지원	 해당기관, 시·도 교육청 대안 교육 담당자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여성창업 등 지원	• 새로일하기센터 상담전화 ☎ 1544-1199,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saeil.mogef.go.kr)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중등 3학년) 대상 급식, 보충학습, 상담, 체험활동 등 운영	 주민센터/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 (www.youth.go.kr/yaca/index.do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02-330-2831~4 	
자녀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주민센터/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교육비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9~18세) 대상 상담·치료, 보호, 교육, 자립지도 등 지원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031-333-1900, 누리집(www.nyhc.or.kr)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대학 재학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누리집(www.kosaf.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5~69세 이하의 한부모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4개월부터는 80% 지급		

• ਜਲ- ਖੇਡ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양육비 상담, 합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 면접교섭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무료법률 구조를 통해 소송비용 등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근로장려금	•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홑벌이 가구 등에게 근로장려금 지급	• 매년 5월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자녀장려금	•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18세 미만 부양자녀 가 있는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지급	모바일 손택스앱 및 ARS ☎ 1544-9944	
소액보험 (저소득층아동보험2)	• 한부모가족의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친권자) 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이면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에게 무료보험 가입	 서민금융콜센터 ☎ 1397 아동보험2 전담센터 ☎ 02-3471-5116 카카오톡 채널(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www.kinfa.or.kr) 	
미소금융	•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 저금리로 대출		
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 주민센터/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이 꾸준히 근로하여 통장 유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청년저축계좌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참여하면서 매월 일정금액 저축 시 장려금, 수익금 지원	• 자활센터/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기	E
---	---	---

• 기타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지원	• 출생신고 과정 지원 • 친자검사비 지원(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스포츠 강좌 이용권	• 5~18세 유·청소년 •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 02-410-1298~9, 누리집 (svoucher.kspo.or.kr)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10만원)	• 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 1544-3412, 누리집(www.mnuri.kr)	
4대궁 종묘 조선왕릉 무료입장	•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시 시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종묘·조선왕릉 무료 입장	• 문화재청 궁능서비스기획과 ☎ 02-6450-3837	
	• 건강보험료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복지용 쌀 할인 지원(기준가격의 60~92% 할인)	• 주민센터	
요금감면	•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	 주민센터/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전기) 한국전력공사 123(가스) 해당 지역 가스공급사 고객센터 	
	• 에너지바우처(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센터/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이동통신요금 감면	 주민센터/각 해당 이동통신사대리점 복지할인 전용 ARS ☎ 1523, 고객센터 ☎ 114 	
	• 과태료 50% 이내 감경	• 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기초생활수급자면제, 한부모가족 80% 감면)	• 한국교통안전공단 ☎ 1577-0990	
	• 수도요금 감면	• 주민센터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출처: 2022년 한부모가족 정책 정보 안내서 (여성가족부)

아동보호서비스 수행인력·기관별 역할분담방안

01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71

시·도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 (추진배경) 국가 아동보호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보급하고,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 기술 지원 및 종사인력에 대한 수퍼비전을 수행할 인프라 필요
- (추진목표) 시·도가 관내 아동보호체계의 총괄 역할 수행, 시·군·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문제는 시·도에서 해결하는 상향식 아동보호체계 구축
- (기능 및 역할) 지자체별 환경에 적합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 지역 간 아동보호서비스 격차 해소 지원
 - (정책)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을 시·도 단위 정책으로 수립 및 지원, 정책 기획 및 개발 ※ 시·군·구 아동보호체계(아동학대대응 포함) 구축·운영 총괄,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사업 등
 - (평가) 시·군·구 아동보호체계 내실화 및 성취도 제고를 위해 시·군·구 평가지원 ※ 시·군·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실적 관리 등
 - (사업지원) 시·군·구별 환경 분석 및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아동보호팀 기능·역할 수립 지원, 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 ※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파악,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친권제한·후견인 선임·채무상속 등 법률적 이슈 대응 지원, 자문 제공,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시·군·구간 사례 조정 등
 - (교육)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아동보호 전문인력(아동보호 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 기타 유관기관 등) 종사자 교육 ※ 아동보호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자체 맞춤형 교육, 슈퍼비전 자문단 운영 등
 - (연계)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다양한 시설·자원의 현황조사 및 발굴, 지역사회 아동보호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여건에 맞춘 민·관 협력사례 발굴 ※ 일시보호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가정 외 보호자원 관리·감독, 문제행동·ADHD·고난도 아동, 보호출산아동 등 보호가능한 관내 인프라 풀(pool) 관리, 광역단위 법원·경찰청·교육청·전담의료기관 등 협업체계 관리 등
 - (연구·통계) 지역사회 아동보호 관련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데이터 생성,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아동보호 사업을 개발·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타) 위의 내용 이외 지역사회 아동보호사업 수행·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Ⅰ 시·군·구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 (목적) 시·군·구는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관내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초기상담, 일시보호, 보호조치, 사후관리 등 유기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 궁극적으로는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 또는 보호기관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성장·발달토록 하는 데 기여
- (구성) 아동보호전담요원, 보호대상아동 담당공무원(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입양, 자립 등)및 학대전담공무원이 서로 연계해서 업무 수행하도록 통합적인 조직 구성
 - 다만, 지자체별 인력규모를 고려하여 ①아동학대대응팀(학대조사) 아동보호팀(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또는 ②아동보호팀(학대조사 및 아동보호서비스) -아동 지원팀(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등 두 개 이상의 팀으로 아동보호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
 - * 두 개 이상의 팀으로 분리하는 경우에도,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은 과에 속하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수적
 - ** 아동학대대응팀. 아동보호팀. 아동지원팀 등 아동보호전담조직의 이름은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사용

〈시·군·구 아동보호팀 신설안(한 팀으로 구성하는 경우)〉

아동권리과

아동친화정책팀

- 아동복지 종합계획
- 아동 놀권리(놀이터 등)
- 아동참여권 확대 사업
-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
-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 아동수당
- 아동급식
- 아동안전관리 등

아동보호팀

〈학대조사공무워〉

- 아동학대조사 및 초기 대응
- 경찰, 법원, 병원 등 협업
-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

〈아동보호전담요워〉

- 가정외 보호 필요 아동
- 초기상담, 아동사정, 가정환경조사
- 원가정 복귀 지원
- 개별보호계획수립 및 사례회의
- 보호아동 양육상황점검

〈보호대상아동 담당공무원〉

- 입양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그룹홈 지원·점검
- 디딤씨앗통장, 자립지원사업 운영

드림스타트팀

〈공무원〉

- 드림스타트 사업 계획 수립
- 지역자원 발굴·연계
- 프로그램 구성·진행
- 홍보, 센터 운영 지원
- 인력관리 및 예산, 회계관리

〈사례관리사〉

- 가정내 지원 필요 아동
- 저소득 아동 가정 방문
- 서비스연계 및 사후관리
- 맞춤형 서비스 제공관리

66 |

02 아동보호서비스 수행 주체별 역할



시·도 아동보호팀

- 아동보호팀장은 시·군·구 사례자문을 위한 전문가 풀을 모집·운영하고, 필요시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및 사례자무위원 파격을 지원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시·군·구 보호아동 현황(보호아동 및 보호조치 현황,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현황,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아동보호서비스 수행 관련 광역자치 단체 간 조정·중재 역할을 수행함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군·구 간 해석이 다른 부분, 기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중재·조정하고 슈퍼비전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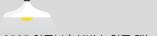
시·군·구 아동보호팀

- 아동보호팀장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이 서로 협력하여 아동을 중심으로 유기적·통합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 또는 사업수행인력 간 해석이 다른 부분, 기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중재하고 슈퍼비전을 제공함
-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은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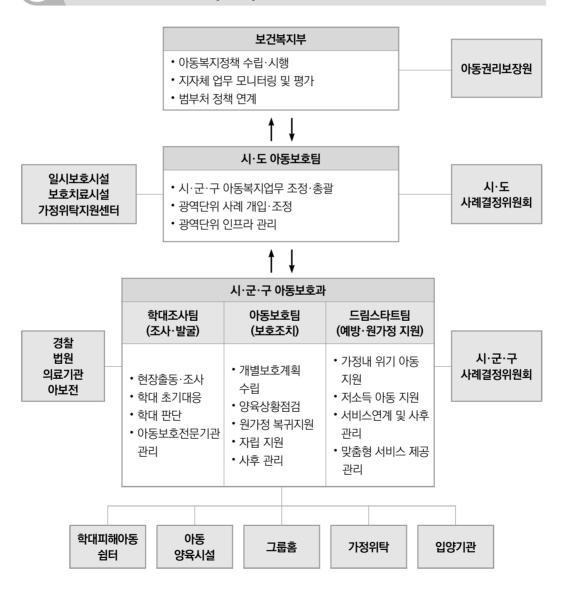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자

- 읍·면·동에서 보호자의 의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경우, 초기 상담(서식 1 : 접수상담지)을 수행하고,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 아동복지시설이 직접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읍·면·동 또는 시·군·구 아동보호팀을 통해 초기상담 및 지원받도록 안내
 - 초기상담 결과 아동의 분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팀으로 연계
 -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의 분리보호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가정방문 하는 경우, 기존 상담자가 방문 동행하는 등 협조하며, 불필요한 추가상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인적사항 등 상담결과를 포함하여 의뢰함



- 초기상담 결과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으나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연계
- 초기상담 결과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으나 해당 가구에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고난도 사례라고 판단한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연계

03 아동보호 추진체계(예시)



VI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및 지원

01 채용

1) 채용 원칙: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 시 채용절차 지체 없이 시행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퇴직, 임신, 출산 등의 사유 발생 시 시·군·구는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등 공백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음
- 임신·출산을 앞둔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 권고

2) 채용 기준

- 자격 및 경력 요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기본) 타 사례관리인력과 유사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및 일정기간 사회복지 업무 경력자로 설정
 - (우대)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가능하도록 입양기관, 미혼부모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조건 관련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우선 준수하여 채용
- 대체인력 자격기쥬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단, 지자체에서 2회 이상 공고 후에도 근무자가 채용되지 않는 경우 3회차 공고부터 <u>"사회복지사</u> 1급 자격증 취득자" 또는 <u>"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u> 이상"으로 완화하여 채용 가능

3) 채용 형태: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이 원칙임

참고 🤊 채용 관련 참고사항

-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7.7.20)
 -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 연차별 정규직 전환 추진
-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퇴사후 무기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경우 포함)의 인건비는 조직관리 기준의 기준인건비(총액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편성·운영 가능(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1898(2017.5.26.))
- ③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등 적용(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99(2012.12.13.))
 - ※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12.1.16.)」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사업에 포함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 35시간 미만의 근로형태 채용 불가
-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 사례관리의 연속성(보호대상아동과의 친밀감·신뢰감 형성)을 위해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하며, 계약 만료 시 장기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함

4) 채용 절차

●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및 근로자간의 계약관계로서, 지자체는 복지부 예산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02 업무수행 및 권한 부여

1) 업무수행

-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상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 외 타 업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주의
 - * 행정보조 등 기타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여 보호대상아동 상담·조사,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양육상황점검,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고유한 아동보호서비스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 보호대상아동 담당공무원(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입양, 자립 등) 및 학대전담공무원과 연계해서 업무 수행하도록 조직 구성 및 전담요원 배치
 - 시·도 및 시·군·구는 아동보호팀을 설치하여 학대조사,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입양·자립 등 아동보호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함
 - 다만, 지자체별 인력 규모를 고려하여 ^①아동학대대응팀(학대조사) 아동보호팀(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또는 ^②아동보호팀(학대조사 및 아동보호서비스) -아동지원팀(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등 두 개 이상의 팀으로 아동보호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

〈지자체 아동보호팀 신설안 (한 팀으로 구성하는 경우)〉

아동복지과

아동친화정책팀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팀	
아동복지 종합계획 아동 놀권리(놀이터 등) 아동참여권 확대 사업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조사 및 초기 대응 · 경찰, 법원, 병원 등 협업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상황 확인	(공무원) · 드림스타트 사업 계획 수립 · 지역자원 발굴·연계 · 프로그램 구성·진행 · 홍보, 센터 운영 지원 · 인력관리 및 예산, 회계관리	
・ 아동수당 ・ 아동급식 ・ 아동안전관리 등	(아동보호전담요원) · 가정외 보호 필요 아동 · 초기상담, 아동사정, 가정환경조사 · 원가정 복귀 지원 · 개별보호계획수립 및 사례회의 · 보호아동 양육상황점검	(사례관리사) · 가정내 지원 필요 아동 · 저소득 아동 가정 방문 · 서비스연계 및 사후관리 · 맞춤형 서비스 제공관리	
	《요보호아동 담당공무원》 · 입양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그룹홈 지원· 점검 · 디딤씨앗통장, 자립지원사업 운영		
6-7명 (공 5-6, 아동복지교사 1)	7-9명 (공 5-6 + 전담요원 2-3)	6-7명 (공 1-2 + 사례관리사 4-5)	

(2) 업무 권한

◎ 신분증 발급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관련 기관 방문 시 업무 수행을 위한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시·군·구청장이 신분증 발급하고, 크기 및 형태 등은 공무원증과 동일

◎ 각종 권한 부여

-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포털(새올행정) 및 전자결재 사용 권한, 공공기관용 외부 메일 계정(시·도 및 시·군·구), 행복e음 ID 부여
 - * 행복e음 권한 부여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세부지침 참고

03 복무

(1) 복무 원칙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 준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소속 지자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2) 준수사항

- 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함
- ②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 이탈 금지
- ③ 근무 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됨.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④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 ⑤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종사자로부터 증여 금지
- ⑥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 겸직 금지

(3) 근무 조건

- 주 5일 근무이며, 상근 1일 8시간(09:00~18:00)
 - * 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일 7시간 근무

(4) 출장

●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내·관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장 명령 및 이에 따른 경비 지급

(5) 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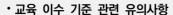
-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 및「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보장
 - 그 외에 휴가, 휴일, 초과근무 등 근로시간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및 「근로기준법」을 따름
 - 다만,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휴가 부여 가능(「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근 및 휴일근로), 제57조(보상휴가제))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가능

(6) 정년

◎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

04 교육

-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시·도/시·군·구 아동보호팀장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중
 -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자 입문교육 : 신규채용 인력 및 기 채용 인력 중 미이수자 대상 아동보호체계 개편 취지, 업무 프로세스 등 기초역량 강화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자 실무교육 : 입문교육 수료자 대상 현장 실무능력 강화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보수교육 : 실무교육 수료자 대상 고난도 현장 사례 등 전문성 강화 지원
 - 아동보호팀장 과정 : 시·도/시·군·구 아동보호팀장 대상 연차별 교육 운영(신규/경력), 시·군·구 아동보호팀 간 연계협력 등 현장 실무 교육 지원
- ◎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아동보호팀장은 1년에 최소 1회 이상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함



- ①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 임용 후 6개월 이내 입문교육 필수 이수 및 입문 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 필수 이수
- ② 아동보호팀장의 경우 연차별 교육과정 운영으로, 1년 미만 근무자는 아동보호신규팀장과정 필수 이수, 2년 이상 근무자는 아동보호경력팀장 과정 필수 이수
- ③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아동보호팀장은 연 1회 이상 교육 필수 이수
- ④ 기간 내 교육 미이수 시 아동보호체계 평가 교육 실적 부문 감점
- ⑤ 아동보호팀장 경력과정 이수 시 아동보호체계 평가 교육 실적 부문 가점 부여

05 보수

- 원칙: 사업예산 규모(단가)를 최소기준으로 하여 보수를 결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추가지급 권장
 - 연봉책정은 신규임용 대상자의 경력, 임용 전 보수 수준,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함(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p.198)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법령(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최소 2년을 갖춘 전문인력인 점을 고려하여, 최소 공무직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채용을 권고함
 - 시·도의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업무지원 총괄, 교육, 지역 매뉴얼 관리 등 역할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채용을 권고함
 - 불가피하게 인건비 집행차액이 발생한 경우, 국비지원기준 한도 내에서 특수직무수당, 명절수당 등 보전수당 또는 기타 가능한 형태로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인건비 보전하여 국비지원기준(보조사업 교부조건) 반드시 준수
- ◎ 퇴직급여: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06 예산 운영

(1) 예산운영 기본 원칙

지원 방식: 지자체 경상보조(서울 50%, 지방 80%)

- 예산 편성 및 집행은 관련 법령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 집행·정산 및 정보공시 등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 사업예산의 집행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의 목적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 *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당초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업무를 부여 시 사업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2)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 인건비: 기본금(사회보험본인부담금 포함), 시간외수당,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금으로 구성
 - 기본급: 단일급 지급('25년 기준, 약 월 225.9만원)
 - 시간외 수당 : 월 10시간 이내 지급하며, 지급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비로 적극 편성

ㆍ시간외 수당 관련 유의사항

- 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및 근로기준법 내 근로시간 규정 및 연장근로제한에 관한 규정 준수
- ② 지자체는 시간외 근무대장을 관리하여 수당 지급 조치
- ③ 사전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급범위를 알 수 있도록 안내
- ④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준용 가능 (단, 지자체의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될 경우, 초과분은 지자체 부담)
-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시간외 수당 관련 유의사항

- 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및 근로기준법 내 근로시간 규정 및 연장근로제한에 관한 규정 준수
- ② 지자체는 시간외 근무대장을 관리하여 수당 지급 조치
- ③ 사전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급범위를 알 수 있도록 안내
- ④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준용 가능 (단, 지자체의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될 경우, 초과분은 지자체 부담)



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제8조. 제13조~제23조)

(13 - Figure 3117 (10 - 1 10 - 2 1		
구분	개념	
퇴직금 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금 산정방법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일 기준 최근 3월간의 임금/최근 3월간의 일수 재직일수 = 입사일(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사 일까지 기간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운용하도록 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제도 - (확정급여형)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확정기여형)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급여수준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② 퇴직금의 지급기준 및 관리

- (지급대상자)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아동보호전담요원
- (지급시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적합하도록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 종료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 가능
- (퇴직급 적립) 무기계약 등 계약종료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적합하도록 지자체 실정에 맞게 준용하되 지자체에 별도의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적립 가능
- 다만, 지자체에서 자체로 제정한 규정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인 경우 따로 적립하지 않을 수 있음
- (중간정산)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나, 다음의 사유(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어 지급받은 경우, 중간 정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는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참고하고 운용

③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법 보칙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개별 법령 준수
- ※ 주의: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적립금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부담 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개인에게 지급 불가

⊚ 사업비

- 편성 기준: 전담요원 인력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비 편성
 - 단, 전담요원 미배치 지역도 아동의 의료비 및 서비스 연계비 등 서비스 운영비 명목으로 최소한의 예산 지원
- 집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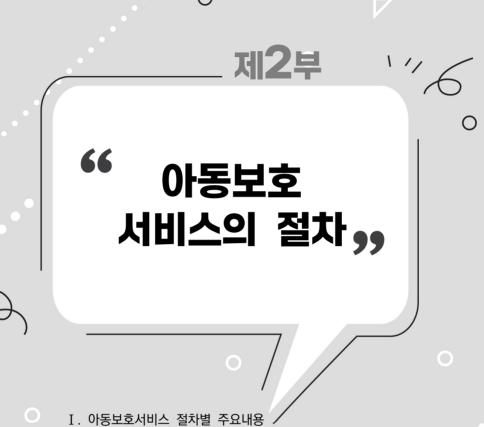
항목		세부 내역	예산비율
기본 운영비	①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 전담요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심의 수당	0% ~ 70%
	② 여비 및 교육훈련비	• 전담요원 업무수행과 교육 이수에 필요한 여비(출장비 등), 교육비 ※ 전담요원 업무수행 위한 출장비는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집행	
	③ 기타운영비	호신용품 등 전담요원의 안전 및 소진 예방 관련 소요 비용 ※ 워크숍 개최, 소진 예방 교육 강사료 등 집행 가능 전담요원 질병·상해보험 의무가입비 ※ 단, 지자체에서 단체보험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아동 및 보호자의 대면상담에 필요한 식대·다과비 ※ 상담자의 식대·다과비 포함 아동보호업무 전용 공용폰 및 전자기기 이동통신 요금 ※ 공용폰 1대당 월 3만원 이내 지출, 단말기 구입비와 통신 요금을 연동하는 경우 1대당 월 5만원 이내 지출(전담요원 1인당 1대한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용차량 운영 경비 ※ 사적 목적의 운행 및 경비 지원 금지	
서비스 제공비	① 의료비	• 보호대상아동의 장애 진단 진료비, 정신과 심리진단 및 심리치료비등 건강검진·심리검사 비용 및 의료비 ※ 보호조치 결정 전, 보호 중, 사후관리 대상 아동에게 집행 가능 ※ 신규발생 아동 및 기존 사례관리 아동 모두 종합심리검사 실시 가능	
	② 서비스 연계·제공비	• 보호대상아동과 원가정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서비스 · 프로그램 연계 또는 제공 ※ 보호 중(면접교섭 등), 보호종료 후 등 현재 보호절차와 무관하게 집행 가능 ※ 부모교육, 기족방문, 기족활동프로그램 비용 지원 등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부록 ॥.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참고	30% ~ 100%
	③ 기타지원비	• 의료비, 서비스 연계·제공비 외 대상자 지원을 위한 기타 지원비(생활 지원, 교육훈련비, 그밖에 보호대상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해 필요한 항목) ※ 자원연계를 위한 기관방문, 양육상황점검차 가정방문 시 필요한 물품 구매비 포함	

[※] 시·도의 경우 기본운영비와 서비스 제공비 항목의 예산 비율 관계없이 집행 가능

- 사업비 집행 시 참고사항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대한 타 사례관리사업 및 아동복지사업 등 타 공공·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 및 원가정 지원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례회의 및 내부 결재 절차 거쳐 사업비 집행하되, 지원대상자가 타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지원받는 항목과 중복 여부 확인
 - 원칙적으로 사업비는 관련 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생필품 등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1인당 지원 상한액은 없으나, 사업비가 모든 아동에게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유의
 - 아동보호서비스(학대 포함) 관련 아동·보호자 대면상담, 사례회의, 간담회, 교육 등 추진 시 식대 및 다과비 1인 2만원 이내 집행 가능
 - 상담·조사·점검·사후관리 등의 목적으로 아동·보호자 가정 방문 시,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1회 20만원 이내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출 불가항목
 - 시설유지 관리비 및 사무용품 구매비(책상 등 사무기기)
 - 지자체 공무원의 사례회의, 간담회 등 참석 수당
 -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급여

⊚ 그 외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적극 편성 (예시: 아동 및 보호자의 상담에 필요한 식대·다과비의 경우 '사무관리비'로 편성 등)
- 단, 사업비 보조금은 경상보조금 성격으로 자산취득성격의 지출은 불가하며 부적정 지출 시 반환 조치(예시 : 노트북 등 전자기기 구매 등)



- Ⅱ. 상담·조사·사정
- Ⅲ. 보호계획 및 결정
- Ⅳ. 보호조치
- V. 종결

0

0

VI.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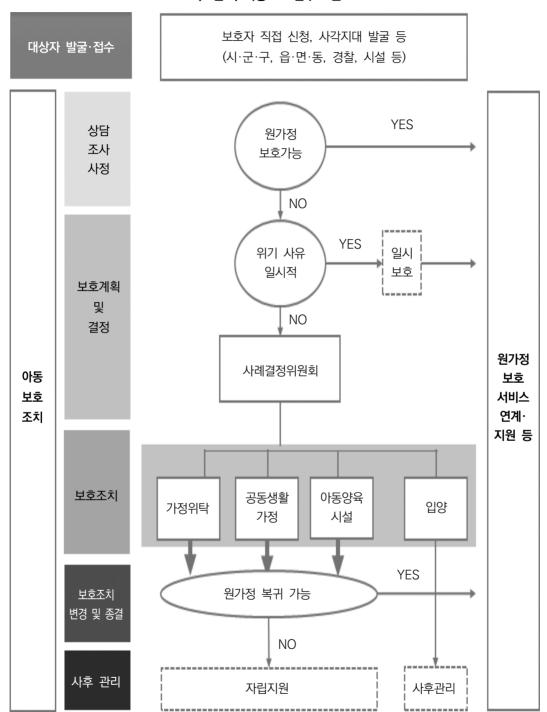
제1부 이동보호서비스의 절차

아동보호서비스 절차별 주요내용

- 1단계: 상담·조사·사정
 - (접수상담) 최초 방문자를 통해 기초정보 파악 및 상담결과에 따른 대상자 접수, 서비스 연계
 - (일시보호) 접수상담 과정에서 긴급하게 아동을 분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아동을 즉시 일시보호시설 또는 일시위탁가정 등에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보호
 - (욕구조사 등) 아동과 가정의 문제 및 욕구를 파악, 보호서비스 제공 및 방향 등 사정
- 2단계: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상담·조사·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조치 유형 및 보호기간, 사례 관리 등 계획을 수립
 - (보호결정)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
- ◎ 3단계: 보호조치
 - (서비스계획 수립 및 제공) 아동의 분리보호 시 원가정 외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 가정, 양육시설, 입양기관 등)과 협업하여 아동에 대한 서비스계획을 수립 및 제공
 - (양육상황 점검) 아동의 분리보호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황, 원가정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호조치 및 서비스 제공 계획 변경 필요성 검토
- 4단계: 보호조치 종결
 - 양육상황 점검결과 보호조치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종결
- ◎ 5단계 : 사후관리
 - 보호종료 후 아동의 가정 방문 및 서비스기관(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청소년복지기관 등) 연계 등 해당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지도·관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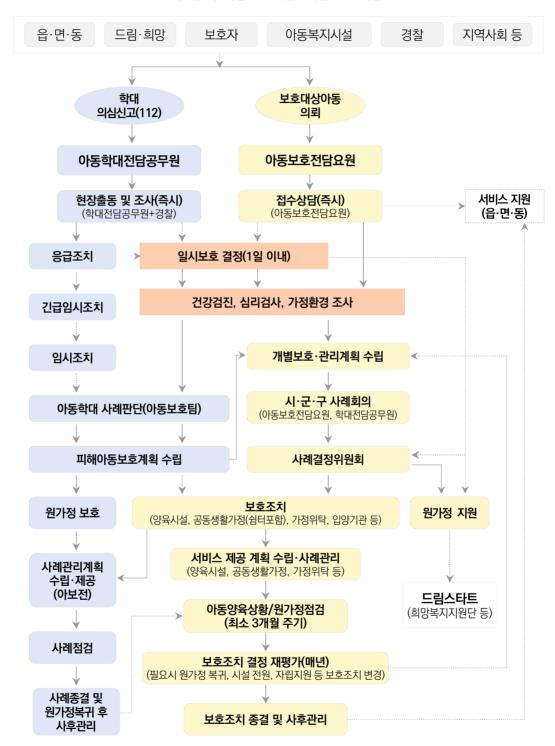


〈그림 1〉 아동보호 업무 흐름도



※ 보호조치시 원가정 보호 및 가정형 보호(가정위탁·입양)를 먼저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시설형 보호를 하는 경우에도 양육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가정형 보호로 보호조치 변경 노력

〈그림 2〉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 역할



Ⅱ 상담·조사·사정

01 개요



- (목적) 아동 및 부모(보호자)의 보호의뢰 사유 및 주요 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한 개별보호·관리 계획 수립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판단 근거 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상담을 통해 아동과 가정의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분리보호 필요성 및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파악함
 - ※ 필요한 경우 최초상담 이후에도 유선 가정방문 등을 통해 추가조사 하되, 불필요한 방문은 가급적 최소화

02 수행주체

- 보호대상아동의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주로 실시
 -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실시
 - 그 외 보호자로부터 보호 의뢰를 받은 읍·면·동,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대상아동을 발견한 담당자 또한 초기(접수)상담 및 욕구조사 가능
 -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타 사례관리기관 등으로부터 보호 의뢰를 받은 경우 기존 접수상담 및 욕구조사 결과로 접수 상담 및 욕구조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해 친부모 상황 점검표 (서식 8) 및 아동 상황 점검표(서식 9) 등 필요한 사항은 추가 조사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이 직접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 및 원가정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상담받도록 안내
 - ※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아동복지시설은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에 상담 의뢰
 - ※ 다만, 시설에서 유기 등의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우선 해당시설에서 보호 후 24시간 이내 관할 시·군·구에 보고

03 수행시기

- 보호자 및 원가정 외 보호기관으로부터 아동 보호신청을 받은 경우
 - 보호신청 받은 경우 즉시 접수상담 실시하되. 조사·사정은 접수 상담 후 1주 이내 실시

04 수행방법



접수·상담 (서식 1)

- ◎ (보호자 직접 의뢰) 보호자가 유선 또는 내방하여 보호의뢰 하는 경우 접수상담지를 바탕으로 보호의뢰 사유 및 가구 내 주요 문제 등에 대해 상담 실시
 -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아동의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경우, 아동 및 보호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선 읍·면·동(또는 드림스타트)으로 의뢰
 - 아동에 대한 방임, 폭력 등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상담내용 전달 및 신고
 - 학대로 의심되지 않으나 양육의지가 결여되고 분리보호에 대한 의지가 강하여,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문 상담 실시
- (읍·면·동 및 시·군·구 타 부서로부터 의뢰)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기존 사례관리 아동 중 원가정에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로 의뢰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분리보호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가정방문하는 경우 기존 담당자가 방문 동행하는 등 협조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의뢰 시 불필요한 추가상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인적사항, 욕구조사결과 등을 포함하여 의뢰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작성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공유받은 피해아동보호계획을 바탕으로 친부모 상황 점검표(서식 8), 아동 상황 점검표(서식 9)를 작성
 - ※ 학대행위자가 친부모인 경우 친부모 상황점검 생략 가능
- (보호기관으로부터 의뢰)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등 최초상담 보호기관의 상담내역 또는 욕구조사를 활용, 불필요한 가정방문 또는 의뢰인의 내방 최소화
 - 친생부모가 접수상담을 입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에게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시·군·구 상담이 필수적임을 알리고,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워에게 대면상담 받도록 안내
 - ※ 입양기관은 필요시 실거주지 또는 타 시·군·구에 입양의뢰 및 상담 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

참고 🔊 입양기관의 의무

- 친생부모의 이름, 연락처, 주소지, 실거주지 등 기본 사항 파악하여 친생부모 최초 상담기록지 작성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7-1]
- (친생부모의 동의하에) 해당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친생부모 최초 상담기록지를 공유하여 아동보호전담 요원이 친생부모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
- 친생부모가 본인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담을 희망하는 지자체(주소지 또는 실거주지)를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 연락처 제공하고 대면상담 받도록 안내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수령 (서식 2)

●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통계 구축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수령함



다 일시 보호 (서식 3)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유기 등으로 보호조치 결정전까지 아동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적합한 위탁가정 등에 일시 보호의뢰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즉각분리(일시보호)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자체 인력, 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내 상주 임상심리치료인력, 외부 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협조요청
 - ※ 부득이하게 일시보호(즉각분리)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시보호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필수 심의대상임(일시보호연장 심의시 가정복귀 및 장기보호 전환 여부도 검토해야 함)
 - ※ 최초 일시보호조치 결정 및 일시보호(3개월 미만) 후 추가적 분리보호가 아닌 원가정복귀인 경우 심의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필요시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가능함
 - ※ 일시보호 후 장기보호조치로 전환할 경우 아동학대공무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피해아동보호계획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건 상정할 수 있도록 협조함
- 보호자 부재 등 아동학대 이외의 사유로 아동을 긴급하게 보호할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일시보호조치, 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실시
 - 시설 내 아동 간 갈등, 위탁부모 수술,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고, 체포·구급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긴급한 경우 시·군·구 판단하에 긴급 일시보호 실시
 - * 긴급 일시보호는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며, 긴급 일시보호 이후 지체없이 보호조치 변경 실시
 - 시·도지사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내 긴급 보호 인프라를 사전에 확보하고, 관할 시·군·구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참고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정의)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일시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사업대상) 전문적 돌봄 필요 아동(즉각분리·응급조치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 경계선지능아동 등
-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및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이후 재참여 시 50만원) 등 지원

2

욕구조사 및 아동·친부모 상황점검 사전 준비사항

-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방문상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및 욕구조사 및 아동·친부모 상황점검 등을 위한 일정 협의
- 대상가구의 특성 및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2인 동행 방문 준비
 - ※ 초기관계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통 반장, 시 군 구 공무원 등 동행 협조
 - ※ 보호대상아동 이외 가구원에 대해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경우 가급적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과 방문일정을 협의하여 동행 방문
- ◎ 접수상담 및 기존 서비스 제공 이력 등을 바탕으로 사전정보를 숙지하고, 질문시항을 미리 준비

Ol

욕구조사표 (서식 4)

- ◎ (목적) 아동과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총 10개 욕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권익보장) 조사
- (조사방법) 직접 의뢰받는 경우 가정방문하여 실시하되,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경우 기존 자료 활용 가능(단, 필요시 별도 욕구조사 가능)
- (욕구파악) 대상아동 및 필요시 가족 구성원의 욕구와 주요 원인, 원인 제공자 등에 대해 파악
- (주변 환경 파악) 가족의 경제 상황, 주거상황, 건강상태, 심리사회적 특징, 장애물과 함께 사회 관계망에 대한 파악
- (잠재적 자원) 욕구영역별로 야기되고 있는 주요 문제 완화 또는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강점 등 잠재적 활용가치가 있는 자원에 대한 파악



바 아동 상황 점검표 (서식 9)

- ◉ (목적) 분리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의 욕구와 강점 및 문제행동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호유형을 결정
- (정신건강·의료적 욕구) 아동의 장애 및 질병 유무 및 정신건강 상태 등을 확인함
- ◉ (사회적 욕구) 아동의 또래 관계 및 성인과의 관계가 연령 및 아동의 정서적 성숙도에 맞게 적절하지를 확인
- ◎ (교육적 욕구)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보호조치로 인한 전학 가능성 확인

(TIP)

- 학습부진,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및 특수교육배치 여부 파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을 파악
- 관할 구역 내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지원가능성 파악
- 아동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않고 기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학 조치 등은 가급적 배제함
- (취약점) 아동의 섭식상태, 충동조절, 발달장애, 학습의욕 등을 파악
- ◉ (분리보호 관련)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호조치 될 가능성 여부 및 아동의 보호 희망형태를 파악하고 보호조치 필요성 여부 평가

사 친부모 상황 점검표(서식 8)

- ◉ (목적) 친부모상황(가정 및 주변환경, 양육태도, 보호조치)을 파악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보호역량 및 보호자(부모)의 강점을 파악함
 - 부부관계, 직업 및 소득 정도, 부채여부, 자립가능성, 알콜 등 약물문제
 - 부모의 현재 및 과거의 지지체계, 가족사, 자기보호와 성숙 등의 영역에서 강점을 파악
- (작성방법)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가정방문을 통해 점검
 - ※ 아동을 의뢰받을 당시 이미 친부모가 사망·연락두절되어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중인 경우 현 보호자를 대상으로 친부모상황점검 실시
 - ※ 학대행위자가 친부모인 경우 친부모상황점검 생략가능

(TIP)

부모역량 사정 시 부모의 자립가능성을 파악함. 부모의 일시적인 경제문제나 양육환경 문제가 해결될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보호가 가능하다면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예시: 희망복지지원단 연계를 통한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특히 부모의 자립이 지체되어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장기보호 되지 않도록 하여 아동의 원가정 복귀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를 적극 격려할 필요가 있음

(TIP)

- · 입양 의뢰한 친생부모 상담 시 고려사항
- 미성년 친생부모, 혼외자 등의 경우에는 상담에 거부감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 결정, 장소 선정. 면담환경 조성 등에 최대한 배려(필요시 입양기관 담당자와 동행하여 실시)
- 최대한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답변 강요 등은 지양
- 부모 등 보호자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에도, 아동의 입양과 직결된 부분은 향후 아동의 건강권·알 권리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과 비밀보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친생부모에게 설명하여 최대한 기록될 수 있도록 함
- ◎ (가정환경 등) 가정의 경제 상황, 결혼 상태 등을 파악
 - ※ 일부 사례에서는 재혼 등의 이유로 인해 아동이 부부 및 새 가족관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보호자(부모)는 주로 다른 사유로 아동을 보호해주길 요청하기 때문에 최근의 가족관계 변화 등에 주의를 기울여 사정할 필요가 있음
- (주변 환경)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또는 가정위탁 가능성 여부, 아동 및 보호자의 현재 및 과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를 파악
- ◎ (아동학대 여부) 보호자(부모)의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며, 학대 정황 발견 시 아동학대 신고
- (양육태도·의지) 양육태도, 아동과의 관계, 자녀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 및 변화가능성 등을 파악함

참고 🤊 양육태도 점검 시 참고사항

- 아동에게 애정을 자주 표현하는가?
- 아이에게 잘못을 꾸중할 때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노력을 하는가?
- 아동이 실수할 경우 엄하게 훈육하는가?
- 자녀의 사생활을 잘 인정하는가?
- 체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예: 아동은 매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아동의 연령이나 정서적 성숙도에 맞지 않는 지나친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가?
- 아동이 행동에 꾸지람의 기준이 일관된 태도를 갖고 있는가?
-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 혼자 의사결정 하도록 하는가?

-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 ◉ (자녀의 보호배치 예상기간 및 가정복귀 시점)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보호배치 예상기간 및 가정복귀 시점을 파악함
 - ※ 부모(보호자)에게 아동의 보호배치 예상기간 및 가정복귀 시점에 대해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의서(예: 가정 위탁보호동의서)를 작성하게 함. 이때 구상권 청구(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키도록 함
- ◎ (지속적 연락 여부)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지속적으로 연락해야 함을 안내하고, 연락을 끊어 버리는 경우,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추후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표 4〉 사정 시 고려사항

구분	아동	부모(보호자)	환경
1) 우선적 고려사항	 아동안전 장애여부 특수욕구 가정보호우선조치 대상자 (2세 미만) 한국 국적 취득여부 	아동학대 여부 양육의지 보호역량 가정환경 (경제상황, 주거환경 포함) 자녀의 보호배치 예상 기간 및 가정복귀 시점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여부	•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가능성 여부 • 사회적 자원
2) 기타 고려사항	 보호배치에 대한 인지 및 참여 교육적 욕구 사회적 욕구 문화적 욕구 강점 및 취약점 	• 부모의 성장배경 • 지속적인 연락여부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건강검진, 심리검사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는 관내 보건소, 의료기관, 일시보호 시설 등과 연계 시행 가능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등 입소 전 건강검진, 심리검사 의무화

참고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방법(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 가. 심리검사는 상담 결과와 아동의 가정환경 및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아동의 지능·인지·정서·행동 및 발달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종류의 검사를 선별하여 실시한다.
- 나. 심리검사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심리검사 결과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기관에 알려 아동보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심리검사 진행 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 🔊 수용자 자녀 아동보호서비스 연계 및 보호조치 절차

- 보호자 수감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자녀 발생 시 교정청 수용자 자녀지원팀은 수용자의 자녀 보호 의사, 주변 보호 체계 확인 후 관할(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팀으로 보호 의뢰
 - ※ 수용자가 자녀에게 수용 사실을 알리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아동에게 보호자의 수용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
 - ※ 보호의뢰 시 필요 구비서류: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의뢰 공문, 아동 보호조치 신청서(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수용자의 자녀 보호 거부, 친인척 보호 등 분리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 복지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사례관리 실시
- 주말·야간에 아동 방임 및 안전 우려 등 위급한 경우 학대 신고를 통한 일시보호 실시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인계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자의 수용 기간 등 보호 의뢰 사유와 아동·친부모 상황점검 결과를 종합,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보호조치 결정 ※ 친부모 상황점검, 아동보호동의서 수령 등 필요시 수용시설 협조를 통한 보호자 대면 실시
- 아동·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접견, 전화, 편지 등 대면/비대면 면접교섭 지원
 - * 근거법령: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5조, 제66조(법무부 예규)



Q&A

상담·사정·조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담당하는 아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피해아동이거나,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 받지 못하여「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제6호에 따라 분리보호를 하고자 하는 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우선적으로 드림스타트에 연계
- * 13세 이상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는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에게 의뢰하되 미배치 시·군·구는 드림스타트에 연계
- 다만「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에 따라 분리 보호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피해아동보호계획(개별보호·관리 계획)에 따른 양육상황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일시보호가 가능한 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아동일시보호시설, 제53조의2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일시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가정위탁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인근의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일시보호 가능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 가능



아동의 주소지와 일시보호하는 시설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관할 시·군·구는 누구인가요?



-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가 주 사례관할로서 상담·가정환경 조사, 보호계획 수립, 사례결정위원회 심의까지 수행하고 장기보호조치 주소지에 이관하는 것이 원칙임
- * 아동의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은 필요시 일시보호시설 주소지 시·군·구도 보조 사례관할로서 협조 가능
- 필요시 시·군·구간 협의하여 일시보호시설 소재 시·군·구가 주 사례 관할이 될 수 있음



건강검진은 어떤 항목을 검사받으면 되나요?



-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되, 「건강검진기본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강 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실시
- * 기본검진, 전염성 질환(결핵, B형간염, 피부질환),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피해아동 관련 현장출동·동행해도 되나요?



- 아동학대 조사(현장출동 등)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이므로(아동복지법 제66조 및 제2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이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조사(현장출동 등) 동행 불가
- 아동학대 현장조사 후 아동을 분리하여 일시 보호하는 경우 상담·건강검진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필요시 상담·건강검진 등 수행 지원 가능



입양의뢰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 또는 친생모만 등재되어있을 경우, 친생부모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 입양 동의를 하지 않은 친생부 또는 친생모가 추후 인지 청구를 통해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양측의 동의를 받도록 안내
- 다만, 연락두절 또는 소재 미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생부 또는 친생모의 동의만으로 입양 진행



외국인 부모의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출생신고 안내 → 직접 양육 시 지원 안내 → 보호조치 안내(입양, 가정위탁, 시설)
- ② 외국아동 출생확인(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국/영문 출생확인서 발급),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신고서를 해당 국가 대사관에 출생신고 및 해당 국가 법률상 보호조치 요청
 - ※ (참고) 미등록 외국인도 시설보호 가능(단, 지방비 또는 민간자원 필요)
- ③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아동을 학대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 신고
 - ※ (참고) 출입국 관리법 제25조의4, 아동의 비자확인 관련 정보는 하이코리아, 대한민국 비자포털 등 활용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소재지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가 다른 경우,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발급을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발급하는 번호로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보장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책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 시 활용됨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아동보호 담당자는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해 전산관리번호 발급,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관리를 위한 행복e음 등록
- 일시보호 등 아동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의 의료급여 책정을 위해 별도의 사회보장전산관리 번호를 발급하여야 함
- 보호출산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아동보호담당자는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발급 사실을 통보하고, 아동이 전산관리번호로 수급중이던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주민등록번호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①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출생자
 - 아동이 혼인 중에 태어난 경우에는 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 아동이 혼인 외 출생자(사실혼관계 포함)라면 모의 국적과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 해당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외국인 출생신고 방법에 따라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함
 - * 혼외자는 출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체류자격 부여 불이행으로 범칙금 부과되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 대사관에 방문하여 자녀의 출생신고, 여권발급 신청
 -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자인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은 후(성년이 된 경우) 법무부 장관의 국적 취득의 통보 또는 귀화허가의 통보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음 다만, 아동이 출생하기 전에 한국인 부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했다면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의 출생신고로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됨
- ②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출생자
 - 아동이 혼인 중에 태어난 경우에는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사이에서 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모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 할 수 있음
 -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경우(사실혼 포함), 한국인 모에 의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모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고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할 수 있음 이때 아동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의 인지가 있기 전에는 친부가 누구인지 알고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음.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 신고에 따라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야함
 - * 출생등록 실무안내서〈보편적출생신고 네트워크, 2022〉발췌

III 보호계획 및 결정

01 개요

보호계획 및 결정 사후관리 상담·조사·사정 보호조치 종결 • 아동보호 및 • 접수상담 • 개별보호·관리 • 사후관리 • 종결 서비스 제공계획 • 일시보호 계획 수립 • 자립지원 수립 • 욕구조사/상황점검 • 사례회의 • 양육상황점검 및 • 건강검진/심리검사 • 보호조치 결정 재평가

- (보호계획수립)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상담·조사 및 건강검진, 심리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사례회의를 거쳐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보호유형 등에 대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
- (보호계획 결정)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호조치 결정

02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가 주체

- 보호대상아동의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작성
 - 보호대상아동의 주소지에 적절한 보호 장소가 부재할 경우 우선 보호대상아동 주소지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여 타 시·군·구에 의뢰
 - ※ 보호대상아동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 시· 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협조요청
- 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총괄하여 수립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보호를 의뢰할 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등)과 협업하여 작성
 - ※ 아동을 보호하게 될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수행시기

● 접수상담 및 아동·친부모 상황점검 등을 통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행 방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전 준비사항
 - 지자체 내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 및 민간기관 자원을 파악
 - 원가정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친부모)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확인
 - 입양의 경우, 해당 시·군·구에 입양기관 소재 여부, 미소재 시 협조 가능 입양기관 사전 파악

◎ 목표 설정

- 단기(1개월)와 장기(1년 이내)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목표달성 가능성 및 구체성, 측정가능성, 대상아동의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립
- (단기목표) 아동 보호조치 후 1개월 이내에 달성 가능한 목표 수립,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설정하고, 개입시기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 ※ 다만,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단기목표는 입양아동의 보호방법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장기목표) 아동보호 조치 후 1년 이내의 개입을 통해 아동의 상황 변경 또는 아동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목표 수립 ※ 양육상황 점검 주기에 맞추어 단기·장기 목표 달성 시기 결정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및 예시

- 접수상담, 욕구조사, (친부모·아동)상황점검 등을 종합하여 욕구 영역별로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
- 접수상담, 욕구사정 내용을 근거로 대상자의 변화목표가 논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고려
- 보호조치의 장단기목표, 서비스 개입 목표, 제공서비스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설정하기
- 대상자 변화를 장단기목표로 수립하되 대상자 관점으로 목표 기록하기

욕구영역	우선순위	단기목표	장기목표
안전	1	원가정 분리조치	대리양육으로 아동안전 확보
건강	8	건강검진 실시	해당 나이 신체 평균 도달
가족관계	6	주1회 부모상담 실시	정기적 부모 상담으로 가족 간의 관계개선
사회적 관계	5	학교 집단따돌림교육 실시	또래관계향상프로그램 참여로 교우관계 개선
경제	4	디딤씨앗통장 가입	매월 5만원 입금 연 180만원 저축하기
교육	2	학습지 신청	매월 학습지 지원 및 향상정도 점검
생활환경	3	난방기구 설치	벽지 및 창호 교체로 주거환경 개선, 책장·책상 지원으로 아동의 공부방 확보

- 개별보호·관리계획 작성(서식 11)
 - 접수상담, 욕구조사, 아동·친부모상황점검의 종합평가를 기록
 - 보호조치 유형, 적정 보호 기간을 결정하고 보호조치로 인해 전학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 아동이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않고 기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학조치 등은 기급적 배제
 - ※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보호계획서(서식 57)를 작성하고 이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아동학대 처벌법 제47조에 따른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서를 공유받아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을 갈음함
 - 욕구 영역별 개입목표(단기, 장기)를 수립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우선순위 및 개입시기 결정, 욕구 영역별 서비스 내용, 서 비스 주기 등을 명시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원가정 및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또는 보호조치 변경을 위한 재평가) 주기를 설정하고, 원가정 외 보호기관 담당자와 논의하여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지원(아동복지법 제15조의5) 및 원가정 지원(복귀)계획 수립
 - ※ 원활한 면접교섭 이행을 위해 형제·자매는 기급적 동일 시설 및 지역 내 배치 고려, 아동보호팀-보호기관 간 피해아동 관련 특이사항 등 정보 공유 협력
 - ※ 원가정(가족) 연락 두절 등 면접교섭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정보 주체(보호자 등)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연락처 수집 및 활용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
 - ※ 연장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의사에 따라 면접교섭 지원 계획 및 원가정 점검 계획 선택적으로 수립
 - 보호조치 변경 등 필요시 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하여 시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 보호조치 변경 등 아동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외한 단순한 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사례회의를 통해 변경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조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부터 확인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 「관찰된 보호자 특성」란에 기입함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함



• 보호조치 유형

- 원가정 보호: 아동을 원가정내에서 보호하며, 아동과 그 가족에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지원, 필요시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 의뢰 및 이관
- 원가정외 보호
 - 입양 : 유기 아동 등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 대해 영구적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조치
 - 가정위탁: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하며, 지속적인 원가정 지원을 통해 가정내 복귀를 목표로 하는 보호조치
 - ※ 2세 이하(36개월 미만) 보호대상아동은 가정위탁 우선배치
 - 공동생활가정 :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의 시설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 등의 보호가 어려울 시 고려하는 보호조치
 - 아동치료시설 :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시설 및 요양원 등의 입원·입소를 결정
 - 기타 아동 관련 복지시설 : 장애, 친족 성폭력 피해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관련 보호시설로 보호계획 수립(종결 후 사후관리)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관련 동의
 - (친부모 등 보호자)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보호조치에 따른 급여 변경 등 개별보호· 관리 계획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동의를 구함(서식 10)
 - ※ 부득이한 경우 구두 확인 후 사후 서면 보완
 - ※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아동) 최초 분리조치 및 전원조치 시 반드시 서면을 통해 아동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분리 보호 및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시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서식 10-1)
 - ※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에게는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충분하게 설명하여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부적응 최소화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자 상담 및 동의서·신청서 수령시 아동보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례결정 위원회에 있음을 알리고, 보호자의 희망과 달리 아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참고 🤊 면접교섭 지원

- 「아동복지법」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1. 12. 30.]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관한 사항
- 2.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 3.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
- 4. 아동과 아동의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21. 12. 30.]
-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1조의6(보호대상아동 면접교섭 방법) [시행일: 2021, 12, 30.]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 시설이 제11조의2 제4호에 따른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 5 수용자 자녀 아동보호서비스 연계 및 보호조치 절차

- 보호자 수감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자녀 발생 시 지방교정청 수용자 자녀지원팀 혹은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자녀 보호 의사, 주변 보호 체계 확인 후 관할(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 요원)으로 보호 의뢰
- ※ 수용자가 자녀에게 수용 사실을 알리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아동에게 보호자의 수용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아동보호절차가 진행되는 전과정에서 수용자 자녀의 신원보호에 유의
- ※ 보호의뢰 시 필요 구비서류: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의뢰 공문, 아동 보호조치 신청서(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단, 휴일 또는 야간에는 유선으로 의뢰 가능
- 수용자의 자녀 보호 거부, 친인척 보호 등 분리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 복지서비스(희망 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사례관리 실시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자의 수용 기간 등 보호 의뢰 사유와 아동·친부모 상황점검 결과를 종합,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보호조치 결정
- ※ 친부모 상황점검, 아동보호동의서 수령 등 필요시 수용시설 협조를 통한 보호자 대면 실시
- 아동·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접견, 전화, 편지 등 대면/비대면 면접교섭 지원
- * 근거법령: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5조, 제66조(법무부 예규)



참고 🔊 아동관련 복지시설(생활시설)의 종류

관련 법령	시설종류	비고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시설에 보호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해당 부서(장애인담당 부서)로 사례이관(공문)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1조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시설에 보호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해당 부서(청소년담당 부서)로 사례이관(공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네이진(중正)
성폭력방지법 제12조	성폭력피해자 특별지원보호시설	성폭력·성매매피해지원시설에 보호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	성매매피해자청소년 지원시설	후 해당 부서(성폭력·성매매 피해지원담당부서)로 사례이관(공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시설에 보호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해당 부서(한부모담당 부서)로 사례이관(공문)

[※] 보호대상아동을 타 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 보호할 경우, 아동에게 해당 시설의 특성(받을 수 있는 서비스, 아동복지시설 보호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함

[※] 해당 부서(장애인·청소년시설, 성폭력·성매매 피해지원 시설, 한부모지원시설 담당)에 아동의 기본정보(학대피해 아동 여부, 부모의 접근금지명령 여부를 비롯한 원가정과의 관계 등) 및 입소상황, 향후 아동 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 필요성을 명시한 공문을 발송하여 사례이관하며, 사례이관 이후에도 해당 부서, 보호한 시설 및 아동과 연락체계 유지하여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참석 등 사례관리 협조함

[※] 타 법시설 입소 이후 5년 간 연 1회(최초 1주일 이내 방문 포함) 아동의 보호상황(아동의 건강, 주거 및 안전 등) 사후관리 실시(단, 아동이 18세에 도래한 경우 사후관리 종료)

[※] 이 외에도 담당 공무원·시설·아동과의 연락체계 유지하여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함

참고 🄊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 친족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의료·법률지원 연계, 취학·진학 및 취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보호시설
- 해당 보호시설은 외부 비공개로 운영 중이기에, 관련 연락처 및 위치 등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담당 부서 또는 아동보호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

작성에시 개별보호·관리계획

개별보호·관리계획서(피해아동보호계획서)

보호의뢰 사유									
		· □미아 [
		자 사망 □보호		경 □모의		□무모이온	□기타	사진	
신원 ※ 신원불 ■ 신원 확인		_	식성		182신고 □ 유	■ 무			
	성명 김영희								
아동		 수원시 OO구 (■ ♥[전화번호(3			
¥10	실거주지 동일			<i></i>		-)()()-xx		
	21111102					010 00			
	관계 모	성명 김지영		성별	마남	■ 여		1997년 9월 18일	
보호자		수원시 ○○구 ())로(00				(휴대전화번호)	
	실거주지 동일						010 - (0000 - 0000	
	□소년소녀가	구 □한부모기	가구	□부부중·	심가구 []조손가구	■미혼	고부가구	
가구유형	□공동체가구	□기타()						
	□장애인가구	□북한이팀	탈주민기	구 🗆	나문화가구				
	관계	성명	생녀	월일 (나여) I)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가능여부	
	외조모 한명순				』 1 8일 (51)		0	0	
가족관계	관계	성명	_	생년월일 (나이)		직업	동거여부	-	
	이모	김지희	-		 1일 (22)	학생	×	×	
	아동의 욕구(우	서스이							
	[1]안전	[2]건강]일상생 *	화 으지	[]가족관계	네 []사회적 관계	
	[3]경제	[3]교육		.]로00 []고용	Ξ Π/Ί	[]생활환]서되고 건계]법률 및 권익보장	
	[]기타()		.]—0		[1055	5 ι	165 × C-1-0	
) 노인자	에 무제	아동 연령	에 맞지 않	으 박유성		
육구 조사		의 집중력 부족				~11		5-1, 118-1 11211-	
결과	보호자의 욕구(
	[]안전	[]건강		 [4]일상생	활 유지	[3]가족관	계 []사회적 관계	
	[2]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경 []법률 및 권익보장	
	[]기타()					-		
	관찰된 보호자	가의 특성 : 모(건	김지영)의	의 정신적	건강(우울	증 치료)으로	로 일상생	활 어려움, 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외조모(에게 의	지하며 심	불함. 이로	인해 외조	모와 갈등	관계임	
	보호조치(아동	복지법 제15조))						
니중계칭									
보호계획	□상담·지도(1				보호·양육(•	■가정위틱		
	│□아동복지시: 	일(4호)	□선된	문지료기관	·요양소(5호	<u>5</u>) [□입양(6호	Ē)	

	타 법에 의	한 조치							
	□아동학대	내처벌법 4	17조()		□소년법	32조()	
	타 법에 의	해 설치돈	! 시설						
	□청소년与	력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실	널	□기타()	
	<u> </u>	일자	2021년 1월 2	4일	보호의	뢰 기관		: 경기가정위탁지원 루 : 가정위탁지원센	
	욕구영역	든	기목표		장기목	 E		 서비스내용	
	안전	안전한 주	- 거공간 확보	안전한	구거공간		가정위탁(2년		
	 건강	건강검진	및 영영제섭취	또래 0	ト동 성장빌	달도달	식단관리, 영양	제섭취, 운동(주3회((생(
아동 서비스	교육		역및 학습진단	학습지				원 및 학습도우미 지	
계획	경제		통장가입	디딤씨	'느 앗통장 매 [.] 80만원)	월 유지		한 관리 지속으로 자	
	경제	국민기초 책정	생활수급권	수급비	로 생활지	원	안전한 가정우	탁보호를 위한 생활	지원
		■가능	 ; □불가능		내면 가능	(대면 불기	F)		
면저그서	면접교섭 가능 여부	※ 면접	※ 면접교섭 불가능 사유 □면접교섭대상 모두 사망 □면접교섭대상 모두 연락두절 □유기 □미아 □법적 처분 및 학대 고위험군 □기타()						
면접교섭 지원계획			※ 비대면만 가능(대면불가)사유 □보호자 수감 □보호자 질병 □보호대상아동이 영아 □기타()						
	면접교섭 주기	■ 월 1	■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기타()					1	
	지원내용	모가	월 1회 내방 필	요					
		■ 가능							
원가정 점검	(원)가정복귀 가능 여부		※ 원가정복귀 불가능 사유 □보호자 사망 □보호자 연락두절 □입양대상아동 □유기 □미아 □기타()						
계획	원가성		※ 중복체크 가능 ■상담 ■사례관리 연계 □금품지급 □기타()						
		심리정서지원(우울증 치료)약 6개월~1년까지 지원, 추후 아동이 가정을 복귀하게 지원내용 아동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정기적 상담 및 사례관리 연계(아동양육 기술, 가족상담 상생활 유지를 위해 수급비 책정 등 지원							
담당자 의견	양육기술, 7	가 <u>족</u> 관계 : 맞는 학	기술 교육이 필요	요함. 이	동의 안전	적인 보호	조치(가정위탁)	로에 집중하며 이후 를 위해 수급비 책정 정기적인 보호자 성	정 및
수립	일일	202	21 년 1 월 24	. 일					
소속 경기도 수	- 원시청	직급((직위) 아동보호	호전담요	원	성명 홍	길동	(서명 또는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사례회의



수행주체

- 보호대상아동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팀 팀장이 참석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
 - 시·군·구 아동보호팀 팀장과 팀원(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시설담당공무원 등)은 전원 참석 원칙
 -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보호가 가능하거나, 분리보호가 필요하더라도 가구 내 다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참석 가능
 - 보호대상아동을 분리 보호하고자 할 경우 해당 보호조치 관련 기관(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 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계자) 참석 협조
 - 그 외 사례를 의뢰한 읍·면·동 담당자 또는 타 시·군·구로 아동을 보호 의뢰할 경우 해당 시· 군·구 담당자 참석 요청 가능



수행시기

-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변경·종결 결정,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해 실시
 - ※ 보호조치 변경 등 아동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외한 단순한 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사례회의를 통해 변경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결과 관련 논의 등 필요시 수시 개최



수행방법

- 접수상담, 욕구조사, 아동·친부모상황점검 등 사정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근거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하고 협의함
 - ※ 자료 공유 시 보호대상아동 및 가족구성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여부 확인,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삭제, 사례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한 회의자료 수거하여 파기
-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유형과 보호기관, 장·단기 목표를 설정 하는 등 구체적인 개별보호·관리계획(서식 11)에 대해 현장 실무자와 협의 및 조정
 - 특히, 원가정 외 보호기관(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내용, 방법(제공 횟수 및 시간) 등을 확인 및 협의하고,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충분히 설명

-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내에서 보호하되 조사·사정과정에서 나타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자원 연계 등 협의
- 보호조치 후에도 주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과 아동 및 가정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적절성 및 진행상황 점검
 - 사례회의를 통한 사례점검 시 서비스 개입 여부, 서비스 내용, 아동 및 가정의 변화, 장·단기 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내용 포함

〈표 5〉 사례회의 종류

보호조치 검토	모니터링(사례점검)	보호 변경/종결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사정 결과 공유 및 분석 보호조치 필요 여부 판단 (보호결정 시) 보호유형 및 보호기관 등 논의 (가정내 보호 결정 시) 서비스·자원 연계, 사례관리 이관 여부 논의 등 장·단기 목표 등 보호계획 논의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주기, 적절성 등 논의 아동의 욕구 및 태도 변화 등 점검 원가정 양육환경 변화 점검 및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 장·단기 목표 점검 및 신규목표 수립 	 재평가 결과 분석 및 보호조치 변경/ 종결 여부 판단 사례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아동 및 가족의 변화 논의 사후관리 계획 논의

04

보호조치 결정



수행주체

- ◎ 사례결정위원회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보호종료 등에 관련된 심의 업무 수행
 - 시·군·구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 등), 아동보호 전문기관,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의견 개진을 위해 참석할 수 있음
 - ※ 시례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운영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례결정위원회 전반적 운영 지원
 - 단,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드림스타트 등 관련기관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변경·보호종료 외의 일시보호 연장 등 안건상정이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함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서비스를 종결하거나 원가정 복귀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일시보호)로 조치된 학대피해아동의 즉각분리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시보호 연장이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드림스타트 등 관련기관)이 직접 안건상정
 -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6호(친족,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입양등)의 분리보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담당



나 수행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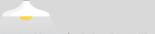
-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최하며, 학대피해 또는 긴급하게 보호해야할 사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우선 일시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보호조치의 적시성을 고려하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보호조치 의뢰 후 2주 이내 개최하도록 노력함
 -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의 일시보호(즉각분리)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시보호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최대 6개월까지, 6개월 초과 시 중장기 보호결정 필요) 연장할 수 있으며, 사례결정위원회 필수 심의대상임(일시보호연장 심의 시 가정복귀 및 장기보호 전화 여부도 검토해야 함)
 - ※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비공개 시설임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실거주지(쉼터 소재지)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선정하며 아동 주소지와 실거주지 간 공동 사례관리(양육상황점검 등) 진행
 - ※ 최초 일시보호조치 및 일시보호 후 추가적 분리보호가 아닌 원가정복귀인 경우 심의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필요시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가능함
 - 피해아동이 일시보호 후 장기보호조치로 전환할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 전담요워에게 피해아동보호계획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건 상정할 수 있도록 협조함
- 아동학대 사례판단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된 경우 안건으로 상정하여 진행
 - ※ 아동학대조사결과에 따른 현장판단(판단척도 사용), 자체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 결정이 어렵거나 모호한 경우, 또는 판단결과를 변경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사법기관의 결정, 추가증거 확보 등)에는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 가능함
 - ※ 관련한 세부내용은 아동학대대응 업무매뉴얼 참고



심의 내용 및 방법

- ※ 추가적인 내용은 제3부 부록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내용 참조
- (심의 내용)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수립한 개별보호·관리계획의 적절성을 심의, 최종 확정
 -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조치 여부, 보호조치 유형, 보호기간 등 적합성 논의 및 결정
 - 가정위탁 연계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고, 가정위탁 미연계 시 '가정형 보호 추진 기록지 (서식 39-1)' 등 가정위탁 연계 검토 사유 및 기록을 첨부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 ※ 시설보호(4호) 결정 및 변경 시 '가정형 보호 추진 기록지' 필수 첨부. 단, 일반가정위탁(친인척) 또는 이동의 거부 의사 등 가정위탁지원센터 연계 의뢰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내부(통합) 사례회의록으로 갈음 가능

- 보호대상아동 및 해당 가정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논의
- 시·군·구 또는 시·도 내에 사용 가능한 자원 확인
- 사례결정위원회 보고 시 〈표 6〉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안건 상정
- (심의 방법)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호조치 결정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적시에 아동의 보호조치 심의 및 보호조치 결정이 이뤄지도록 추진 ※ 보호대상아동을 타 시·군·구에 있는 시설로 보호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군·구와 협의 필요
 -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그 외 아동보호를 의뢰받을 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여 의견 개진 가능 ※ 위탁가정 연계 및 배치 등 아동의 가정형 보호 추진을 위한 보호기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등 사례결정위원회 참석 권고
- (결정 통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보호조치가 결정된 경우 아동보호를 신청한 보호자 및 아동을 보호할 기관, 아동에 보호조치 결정통지서(서식 25)를 7일 이내 송부
 - 보호조치가 결정된 경우, 실제 보호조치 날짜 이전에 아동에게 생활하게 될 보호기관 등 관련 사항을 설명하여 사전에 아동의 적응을 돕도록 노력함
 - 결정통지대상이 학대행위자인 경우, 보호결정통지서 상 '시설(기관명)' 제외하여 송부 ※ 심의결정이후 원가정 외 보호기관 사정으로 입소시일이 늦춰질 경우 일시보호시설과 보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함



〈표 6〉 사례결정위원회 보고 사항 체크리스트(예시)

주요 항목	실형	냉 여부	비고
1. 아동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는가?(만12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함)	예	아니오	
2. 아동상황점검표에 따라 아동의 기본적 욕구가 충분히 파악되었는가?	예	아니오	
3. 아동상황점검표 항목 이외에 추가적인 특이사항은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4. 친부모상황점검표에 따라 보호자의 상황이나 욕구를 충분히 파악했는가?	예	아니오	
5. 친부모상황점검표 이외에 보호자 상황, 가구 여건 등에 대한 상황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6.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및 보호조치 기간 수립 시 아동의 이익이 최대한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7.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시 가정형 보호(가정위탁, 입양)를 먼저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예	아니오	
8.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졌는가? 아닌 경우 언제부터 가능한가?	예	아니오	
9. 아동이 질병, 장애, 학대 등으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 내용이 보호계획에 반영되었는가?	예	아니오	
10.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후 점검 및 사후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예	아니오	
11. 원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예	아니오	
12. 아동 및 원가정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예	아니오	



・사례결정위원회 보고 사항 체크리스트(예시) 7번 항목 부가설명

※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경우, ●먼저 원가정 보호가 가능한지를 최우선 고려하고, ❷차선으로 가정형 보호 (입양, 가정위탁)를 고려하며, ❸원가정 보호 및 가정형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시설형 보호를 진행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15조)

· 시설형 보호를 하기까지의 고려사항(가상 시나리오)

- 원가정보호 가능 여부(1호): ex) 가정방문결과 가정환경이 두 아이를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고, A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가정 보호 불가한 상황으로 판단됨
- ⇒ 2-1 친인척보호 및 가정위탁 가능 여부(2호·3호): ex) □□시 시설담당공무원 및 □□도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22.2.4. 기준 아이를 맡을 수 있는 위탁가정이 □□시 및 인근 지자체에 없고, A가 오랜 기간 가족과 왕래가 없어 자녀를 맡아 가정위탁을 신청할 친족을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임
- ⇒ **2**-2 입양조치 가능 여부(6호): ex) A는 일시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때 까지만 자녀의 보호조치를 원하므로 입양은 고려할 상황이 아님
- ⇒ ❸ 시설입소 가능 여부(4호·5호): ex) 원가정 보호 및 가정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시 △△양육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양육상황 점검 등을 통해 가정형 보호로 보호조치 변경을 검토하도록 함. 사례회의('22.2.10)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함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시설부족, 타 지역 아동 등을 이유로 아동보호양육 의뢰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의뢰(전출·입 등)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운영
- 특히, 시·군·구는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자라도록 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있는「아동복지법」(제2조) 취지를 감안, 타 지역 아동이라는 이유로 관내 시설입소를 제한 및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 방지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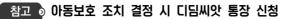
〈출처: 아동분야 사업안내 1〉

참고 🔊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사업(아동권리보장원 운영)

목적	• 심리·정서·인지·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내용	• 아동에게 필요한 상담·치료·아동-원가족간 교류 프로그램 등 - 아동 상담·치료비,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아동-원가족간 교류, 역량강화 프로그램비 지원 : 부모교육, 가족상담, 외식, 체험활동, 캠프 등
행정사항	 시설장 및 종사자는 아동이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전문가의 제안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 시·도 및 시·군·구는 관내의 시설아동 중 '아동양육상황점검' 등을 통해 심리·행동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아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신청방법	•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신청서류 제출(문서24) - 사업신청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사전검사 결과지, 치료사 자격증

참고 🔊 청소년 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대상	•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9세~18세) •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등
내용	•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힐링캠프 (4박5일), 대상특성화캠프(11박12일) 등 제공 • 상담·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검정고시 지원), 자립지도(직업 교육, 체험 활동 등) 지원
방법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교육청, 학교, 위(Wee)센터, 가족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을 통해 신청 ※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입·퇴교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대상	※ 기 <u>:</u> - (: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보장가구 아동, 기 가입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기초생활보장가구 아동 가입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연령기준) 12~17세 → 0~17세 				
지원기간	• 0~18	3세 미만까지(대	배칭은 18세, 본인적립	d은 24세	까지 저축가능)	
지원내용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본인명의 디딤씨앗통장에 적립 시 국가가 월 5만원 내에서 1:2매칭 지원 ※ 추가적립액: 기본매칭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 내에서 추가적립 가능(추가 적립액은 국가 매칭 없음)					
					지급구분	
		구분	요건	아동 적립금	정부매칭금	비고
DESTRICT	만기해지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	0	0	24세 이후 제한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기지급 및 조기인출	만기 지급	만기 후 적립 예금인출	18세 이상, 대학 생활비 지원	0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시	아동적립금 한도 내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2	조기인출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18세 이후, 적립금 아동적립금 한도 내 사용용도 충족시 2회까지 가능				
	적립금.					

참고 🤊 휴대폰 가입 곤란 아동 지원

대상	4세 이상의 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부재나 경제적 곤란으로 휴대폰 가입이 어려운 아동
지원내용	아동 명의의 휴대폰 가입 지원 스마트폰 무상 및 저가 지원 ※ 휴대폰은 통신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생계수급자) 월 28,600원 감면, (교육,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19,400원 감면 청소년요금제 사용 및 각종 휴대폰 인증 가능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 소액결제 원천 차단
구비서류 및 배송 기간	• 기본서류 : 가입신청서, 대리인신분증 원본 외 보호 종류별로 서류 추가 • 배송기간 : 배송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3일~5일 정도 소요
문의처	• (주)희망고리 • ☎ 02-943-1365, FAX: 0504-268-4488, www.hopeu.kr

Q&A

보호계획 및 결정



피해아동도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해야 하나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립한 피해아동보호계획으로 갈음 가능
- 필요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학대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대상으로 상담, 욕구조사, 아동상황점검 등 추가 실시



시·군·구 사례회의 운영 주체는 누구인가요?



- 아동의 주소지 기준 아동보호팀장 주관하에 진행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결과, 가정환경조사 등을 바탕으로 개별보호·관리계획 초안 작성 및 논의



시·군·구 사례회의 참석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시·군·구 내 아동 보호를 담당하는 팀원(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 가정위탁 담당 등) 전체 참석 필요
- 그 외 보호계획에 따라 ① 아동을 보호 의뢰할 시설 담당자, ② 아동 또는 가정에 사례관리를 의뢰(ex.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등)할 담당자, ③ (타 시·군·구 시설 입소 시) 시설 주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례회의 후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추가적으로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 아동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아동통합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가족센터,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각종 민간기관) 또는 한부모· 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연계. 단, 보호자 동의 필요



타 시·군·구로 아동을 보호의뢰 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주체는 누구인가요?



•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의 주소지에서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입소할 시설 주소지 시·군·구에 이관



피해아동이 학대외 사유로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인 피해아동의 학대 외 사유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전담요원이 협의하여 피해아동보호계획을 변경함
-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②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친부모·아동 상황점검 등 추가적인 사정을 통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아동학대전 담공무원에게 전달함.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계획 변경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며, ④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상정 및 보호조치 결정 후 양육상황점검 실시



입양대상아동(6호)의 보호조치 변경(3호, 4호) 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입양 알선 곤란 등으로 보호조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현재 후견인인 입양기관장(또는 시설장)의 동의를 받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를 변경(3호 또는 4호)함
 - * 입양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변경 시 친권자의 동의는 필수는 아님
- 이후 아동은 「보장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됨
- *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며, 입양동의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친권이 정지된 상태임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 시설입소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제6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2에 따라 동의받아 보호조치 실시
-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Ⅳ 보호조치

01 개요

보호조치 상담·조사·사정 보호계획 및 결정 종결 사후관리 • 개별보호·관리계획 • 접수상담 • 아동보호 및 서비스 • 종결 • 사후관리 • 자립지원 • 일시보호 수립 제공계획 수립 • 욕구조사/상황점검 • 사례회의 • 양육상황점검 및 • 건강검진/심리검사 • 보호조치 결정 재평가

- 사례결정위원회의 아동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수행
-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서는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서비스 이행상황, 양육상황 및 아동의 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02 아동의 보호 및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례관리

가 수행주체

- 원가정 외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입양기관 등)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제공, 사례관리
- 보호대상아동의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 담당공무원(시설, 가정위탁 등 담당공무원)
 - 필요시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연계지원

수행시기

- 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후
 - 다만, 아동학대 등 긴급한 보호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전 보호조치하는 경우, 우선 보호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가능



수행방법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 아동보호 요청
 - (공통) 심의 결과에 따라 위탁부모 및 아동복지시설장에게 아동 인도하고, 원가정 외보호기관에 접수상담지(서식 1),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결과, 아동·친부모상황점검결과(서식 8, 서식 9), 아동보호동의서(서식 10), 아동카드(서식 12), 개별보호·관리계획(서식 11) 송부
 -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신청서(서식 29),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서식 30) 송부 ※ 읍·면·동 및 시·군·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조치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서식 39) 발급 요청 시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내역을 반드시 기록·관리
 - (양육시설, 치료시설 등) 시설입소(이용)신청서(서식 40) 또는 아동입원 의뢰서(서식 41) 송부 ※ 전문치료기관 및 요양소(5호) 보호조치 시 해당 시설로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5호 조치를 결정한 시·군·구에서 주사례관할 담당
 - (입양) 아동보호를 의뢰한 입양기관 또는 양육시설 등에 아동에 대한 입양의뢰 및 입양대상아동 확인서(서식 42) 송부
 - ※ 부모가 없는 경우 등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5호 보호조치를 하면서 제6호(입양)를 병행하여 조치하여 추후에라도 영구적인 가정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
 - (급여 등) 보호조치에 따른 급여(아동수당, 기초생활급여) 수급 변동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 ※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가 아닌 타 시·군·구 양육시설(가정위탁 포함)에 보호조치할 경우, 심의 확정 후 시설 주소지 시·군·구에 사례이관하고, 이관받은 시·군·구는 보호시설에 아동정보 공유
-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 (서식 13)을 수립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하고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제공내용, 방법(제공횟수 및 시간)등 상세히 작성
 - 조속하고 안정적인 원가정복귀를 위한 원가정 지원 계획 및 아동과 원가정의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만남을 지원하기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계획 포함

〈표 7〉 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업무분장

아동보호전담요원	원가정 외 보호기관(가정위탁, 양육시설, 입양 등)
 아동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양육상황 점검(개별보호·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점검) 사례회의 개최(주관) 주기적인 사례점검 및 원가정 외 보호기관 모니터링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연계 원가정 지원(상담, 지원 등)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제공 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 사례회의 참여 원가정 지원(상담, 관계개선, 부모교육 등) 면접교섭지원

작성예시 아동카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아 동 카 드

※ []에는 하	l당되는 곳에 [™] √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유기 [] []보호자 빈 []부모 이혼 신원 ※ 불명	교·실직 []보 []기타 시 「실종아동법	마 []미아 [∨]가출 호자 사망 []보호자 	- '	[]보호자 수감 182신고			
[∨] 신원 홈	[인 [] 신	원 불명		[]유[V]	누		
	성명 ○□□					등록번호)))()()	000000
	등록기준지 충북 청주시 ○○구 00로 00-0				나이	11 세 ([]추정 [∨]확실)
아동	주소 충북 청주시 ◎◎구 ◇◇길 000						
	학교명 🛇	〉초등학교 4 학년	기타				
	발생 일시 🔾	시 ○○○○. 9.21		발생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00동 유흥가 근처		유흥가 근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_ " 모			000000-00	000	000	
보호자	주소 서울시 송파국	구 ◎◎로 00길 00				전화번호(010-×××	휴대전화번호) ×-xxx
	월수입	생활수준 220만원 []상	[]중 ——	등 [V]하 []수급자		주거 []자가	[]전세 [∨]월세
	관계 외조모	성명 △○○		생년월일 19××년 9월 2	2일(55	세)	직업 청소노동자
가족관계	관계 동생	성명		생년월일 20××년 8월 16일(5세)			직업 ◇◇어린이집
	관계 동생	성명	Ą	생년월일 20××년 8월 1	6일(5	세)	직업 ◇◇어린이집
보호조치 사항	날짜	20××년 10월 5일				등복지시설 문치료기관	입소 또는 요양소 입원
110	보호시설명	○○가정위탁지원센E	=	주소			

			(뒤쪽)	
가정환경 (성장 과정)	1. 동거 중 아동 출산 및 홀로 양육함 모(△□□)는 고등학교 때 부터 후 남자친구 동거 중 첫째 ○□□ 출산 - 태어난 지 백일이 될 무렵, 남자친구가 가출했고 이후 연락두절 2. 결혼 및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혼 - 혼자 아동을 양육 중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둘째 쌍둥이 ○○△, ○○□을 출산 - 남편의 사업부도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아동양육 문제, 가정폭력으로 결혼 2년 만에 이혼함 3. 첫째 아동과 모의 갈등으로 양육어려움 호소 -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늦은 귀가를 일삼았고, 이 때문에 모와 잦은 갈등 발생, 모에게 꾸중을 듣고 나면 화풀이로 동생을 때려 동생들이 오빠를 무서워 함 4. 양육의 어려움으로 아동을 외조모에게 보냄 - 모는 일방적으로 아동을 외조모가 살고 있는 청주로 보냄으로 갈등 고조됨 5. 외조모의 양육기술 부재 - 외조모는 아동을 어떻게 양육해야할지 몰라 아동을 거의 방임상태로 둠. 아동은 외조모 지갑에 손을 대기도 했는데 그러던 중 서울 친구들이 연락하여 가출함			
상담자 의견	아동과 모의 갈등이 깊어 관계개선이 필요(상담, 기족상담)하며, 외조모가 아동에 대한 양육의지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가정위탁하면서 아동상담, 기족상담 및 외조모에게는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여 원가정 복귀가 필요함			
지도·판정	1. 모와의 갈등 지속_해결의지 부족 - 아동은 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여 모에 대한 반항과 갈등이 커졌고 모가 동생만 감싸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음. 모와 함께 살기 싫다고 거부했으며, 계속 같이 있으면 가출을 계속 할 것 같다고 함 2. 가정환경 및 경제적 열악 - 모는 현재 상황(근무여건, 수입/집안환경, 부채 등)을 고려할 때 아동 셋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하다고 함 3. 양육어려움 - 모는 아동과 문제해결 없이 이대로 같이 살 경우 아동을 학대할 것 같고, 아동은 가출일 일삼을 것 같아 문제가 커질 것 같다고 함. 시간을 두고 관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함 - 외조모는 첫 손자에 대한 애착이 있으며, 자신의 잘못된 훈육에 대해 인지함 상담·교육을 받으며 주변에서 도와주면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함			
금품 지급사항	- 한부모 가족 물품지원			
		작성일	20××년 10월 5일	
소속 청주시청	직위 아동보호전담요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03 양육상황 점검 및 재평가



수행주체

- 보호대상아동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주기적으로 양육상황 점검(아동 양육상황 및 원가정 모니터링) 실시 ※ 원가정 주소지가 다른 경우, 원가정 주소지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원가정 모니터링 협조요청 가능
- 읍·면·동,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보호 담당자
 - 방문 동행, 자료 제출 등 양육상황 점검에 협조
 - ※ 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점검은 입양기관이 아동양육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되, 입양대상아동이 입양기관이 아닌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중인 경우,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양육상황점검 실시(보호자가 입양으로 의뢰한 아동 참고)



수행시기(점검시기)

- 보호조치 후 1개월 이내 방문하여 점검하고, 이후 분기별 점검 실시※ 예) '21년 10월 보호조치 → '21년 11월 1차 양육상황점검 → '22년 2월 2차 양육상황점검 …
 - 필요시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라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은 수시 실시 가능



주요 점검 사항

- 서비스 제공 계획의 달성수준 파악(양육상황 점검표 활용, 서식 15)
 -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정도(수립된 목표 일치성) ※ 특히 아동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아동 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아동 의견 반영
 -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양의 충분성,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 서비스의 품질과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서비스 제공 방법의 적절성 등 ※ 아동 상황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 상담 시 아동의 실제 욕구 등을 파악하도록 함
 - 아동의 욕구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욕구 재조사(건강검진, 심리검사 등) 또는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정 필요 여부 등
 - 서비스 제공여건, 서비스 제공자의 변화 여부,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연계 및 협력의 원활성 등

- ◎ 면접교섭이행여부 파악
 -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서 작성한 면접교섭일지를 바탕으로 면접교섭이행 여부, 면접내용, 아동소감 등
- 아동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여부 및 자립지원 현황 파악(15세 이상)
 -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서 1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수립해야 하는 자립지원계획 (아동복지법 제39조)의 수립 여부, 계획의 적절성 및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등
- 가족돌봄 현황 점검
 - 보호중인 아동의 가족돌봄 여부, 주기 등 현황 점검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 보호조치 변경 필요성 검토 등



- 아동 양육상황 점검사항
- 아동이 수립된 목표에 맞게 보호되고 있나?
- 아동의 삶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 아동이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
- 아동의 변화에 따라서 보호조치 또는 개별보호·관리계획 수정이 필요한가?
- 서비스 제공 상의 문제는 없나?
- 아동의 원가정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
- 아동과 보호자(친부모 등)와의 면접교섭이 진행되고 있는가?
- 15세 이상 아동의 경우 아동별 자립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

라

리 수행방법

- (양육상황점검) 서비스 제공기관(원가정 외 보호기관)의 사례관리를 모니터링하여, 아동 및 원가정의 상황을 파악(직접 방문 원칙, 아동의 상황· 및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유선 상담 가능)
 - (아동)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하되 보호아동이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기타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아동 등 점검대상자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동행 방문·합동 점검 권고(통합 사례회의 활용)
 -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육상황 점검을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3)
 - 방문상담 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인 경우, 위탁부모·시설담당자 등 보호자를

제외하고 독립된 장소, 또는 외부 장소(카페 등)에서 아동과의 단독·대면상담을 진행하여 아동의 상황(만족여부, 구성원 관계 등) 및 실제 욕구를 확인

- ※ 외부 상담 시, 아동보호체계 구축지원 사업비 활용
- 가출 등 아동의 보호체계 이탈 시 경찰을 통한 아동 소재지 파악, 원가정·보호기관(시설, 위탁 등) 간 연락체계 유지 및 지속 모니터링 실시

참고 5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예규)

- 제11조(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찾는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보호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실종아동등을 인계한다.
- 아동학대 의심신고 등 아동의 안전 및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시 양육상황점검을 통한 아동 상황 파악 및 원가정외 보호기관과의 협력 필수
- (원가정) 유선 상담 또는 사례관리 연계 시 연계기관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 ※ 입양대상아동 등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원가정 점검 제외
- (기타)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조사」시 시설담당 공무원은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작성한 최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 점검자에게 아동의 상황 등 정보 공유(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양육상황점검결과 공유)
 -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실태점검 시 필요한 경우 양육상황점검 동시 수행 가능
- (기타) 위탁가정 급여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가정위탁 아동 양육상황점검시 동행 방문 가능
- ◎ (타 시설 전원 아동)
 - 기존 시설보호아동이 관내 또는 관외 시설로 전원하는 경우, 전원 후 3개월 동안(전원 후 일주일 이내 시설방문을 포함하여) 월 1회 양육상황점검 실시
 - ※ 관외시설로 전원하여 타 지자체로 소관이 이관되는 경우, 기존 지자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가급적 동행하여 합동으로 양육상황점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보호조치 변경·종결 등)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아동의 욕구를 재조사하고, 보호목적 달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 및 보호조치 변경 또는 보호 종결을 실시

- 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결정(변경·종결)통지서(서식 25)를 보호자에게 송부
 - ※ 타 시·군·구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로 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주소지 시·군·구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및 사례이관하고, 이관받은 시·군·구는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 아동정보 공유
 - ※ 보호목적 달성으로 종결할 경우 종결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 ※ 친인척 가정으로 조치한 경우, 해당 가정의 양육 환경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가정환경조사서(일시보호)를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축약형 가정복귀 절차 적용,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후관리(1년) 실시
- 새로운 욕구 발견 등 단순한 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은 시·군·구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 점검결과 서비스의 종류, 횟수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재수립
- ◎ (18세 이후 보호기간 연장)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개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라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가능
 -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규정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표현되어 있음
 - (절차)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은 아동이 보호조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서식 16)를 제출,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보호연장 기간에 보호 일시중지 사유 발생 또는 소멸 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함을 안내
 - ※ 24세까지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아동의 연장 의사만 확인되면(사후·서면심의) 추가 조건없이 승인하여야 함 (사후·서면보고)
 - (연장시 양육상황점검) 보호기간 연장 시 시설(가정위탁) 외 거주지(대학교 기숙사, LH 임대주택 등)에서 거주하더라도 양육시설(가정위탁) 주소지에서 양육상황점검 실시하되, 필요시 공동사례관리로 아동 소재지에 양육상황점검 요청 가능
 - ※ 연장 아동의 경우 면접교섭 지원 계획 및 원가정 점검 계획은 아동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립
 - (추가 연장) 보호기간을 연장한 대상자가 25세 이상이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아동복지법」제16조의3의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 가능
 - (별도 거주) 보호기간을 연장한 대상자가 아동양육시설 외 거주지에서 별도 거주할 경우 (대학교 기숙사 등)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 신청 가능,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별도 거주 중인 연장 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계 및 정기적 연락 유지 필요
- (18세 이후 재보호조치)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사람이 재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 결정

- (개요)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사람이 18세 이상이 되면 다시 보호조치될 수 없었으나,「아동복지법」제16조의4가 신설됨('24.8.7. 시행)에 따라 재보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 * 아동복지법 제16조의4 및 시행령 제22조의2 규정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표현되어 있음
- (절차)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 중 재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기준 시·군·구에 재보호조치 신청서(서식 16-2)를 제출,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재보호조치 결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신규보호아동 보호결정과 동일하게 처리
 - ※ 대리인(친족,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장·종사자 및 위탁부모) 신청도 가능(서식 16-3)
- (접수·상담)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재보호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재보호 신청 대상자와 유선 또는 내방으로 접수상담을 실시(서식 1)하며, 1주 이내 재보호조치 신청자에 대한 욕구조사(서식 4)를 위한 방문상담 실시
 - ※ 접수상담 전 행복이음, 보호종료확인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과거 보호조치·종결 이력을 확인하고, 보호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2)를 재확보해야 함
 - ※ 접수상담을 통해 신청서에 기재된 재보호 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증빙서류 요청, 희망 보호 유형(지역, 시설유형 등)을 파악
- (재보호계획수립) 접수상담, 전담기관 사후관리 상담 내역 등을 근거로 사례회의를 거쳐 보호유형 등에 대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서식 11)
 - ※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신청인의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파악 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재보호조치 의견서(서식 24-1)와 자립수준평가서(자립지원업무매뉴얼 서식 15)를 공문으로 요청하며 필요시 재보호조치 신청인의 동의 하에 맞춤형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요청 가능
- (재보호결정)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후 자립전담기관의 재보호 관련 의견서(서식 24-1)를 제출받아(필수, 단,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대상자가 아닌 경우 생략 가능) 사례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재보호조치를 결정하고, 대상자 및 보호기관에 보호조치결정통지서 (서식 25)를 7일 이내 송부
 - ※ 재보호조치 대상자가 최초 보호종료 후 5년 이내로 자립수당·의료비 지원,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는 주소지의 자립수당 담당 부서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재보호조치 결정 사항 안내
- (재보호조치) 사례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장, 위탁부모에게 대상자 인도하고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 접수상담지(서식 1), 아동카드(서식 12), 개별보호·관리계획 (서식 11), 가정위탁보호신청서(서식 29) 또는 시설입소신청서(서식 40) 또는 입원의뢰서 (서식 41) 송부
 - ※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급 등 재보호조치에 따른 기초생활급여 수급 변동사항은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

-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보호기관은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하고 서비스를 제공
 - ※ 서비스제공계획(서식 13) 중 원가정 지원계획 및 면접교섭서비스 제공 계획은 미기재
- (재보호의 연장) 재보호한 대상자가 25세 이상이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에 따라 제16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서식 16)와 함께 제출한 경우 재보호기간 연장 가능
- (양육상황 점검, 생계급여 개별 지급 등)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보호기간 연장아동에 준하여 운영
 - ※ 재보호조치 전 대상자 상담 시 재보호조치 이후의 지자체 양육상황점검 의무 및 협조에 대해 사전 안내 필요
- (재보호의 종결) 보호연장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종료하되, 보호종료 신청 및 보호종료 내역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수당 담당 부서에 통보할 때에 재보호 종료자임을 안내(자립수당 지급 기간 산정 등 참고)
 - ※ 재보호 종료 대상자 명단은 재보호조치 시 담당 사후관리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송부

참고 🔊 재보호조치 대상자의 보호유형 결정 시 고려사항

- 재보호조치 대상자의 보호유형 결정 시 자립역량을 높이도록 <u>자립지원시설 입소를 우선 검토</u>하고, 입소가 곤란한 경우 1인실 등 독립된 생활공간을 갖춘 위탁가정·시설·기관 입소 검토
- 가능한 보호유형은 가정위탁(3호), 아동복지시설(4호), 전문치료기관·요양소(5호)이며, <u>대상자가</u> 기존에 보호종료된 위탁가정·시설·기관이 아니더라도 보호 가능
- 대상자의 상황<u>(희망하는 지역 및 보호유형, 재보호 사유 등)</u>과 가능한 보호유형 현황<u>(입소 현원, 독립생활공간 구비 여부, 보호 중인 아동 연령대·양육환경 등)</u>을 종합적으로 고려

〈표 8〉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점검결과	조치방안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신규 욕구 또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대상 아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예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등 문제 발생 현행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할 수 없거나 아동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 예시)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위탁 보호를 희망 할 경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희망할 경우 	욕구 재조사 보호계획 변경 보호조치 변경 아동학대신고 등
서비스의 종류, 양 및 횟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서비스 제공자의 여건 변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제공 계획 재수립
 부모 등 보호자의 상황이 호전되어 원가정 복귀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문제가 완화되었고, 아동과 결합을 희망하는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희망할 경우 	종결을 위한 평가

〈표 9〉 아동보호조치 재평가 시 점검

재평가 시 평가항목	점검내용
원가정 복귀 검토 (<mark>서식 17</mark> 가정 복귀 점검표)	 친부모의 양육 희망정도 아동의 가정 복귀 희망정도 원가정의 경제적 상황, 주거환경, 생활환경의 안정화 정도 친부모의 양육준비태도 주변의 평가정도
다른 양육시설 혹은 가정위탁으로 변경을 검토	 아동이 원가정외 보호(대리보호)에 대한 만족도 아동의 보호 목적 달성 정도 원가정 외 보호기관 담당자와 관계정도 원가정 외 보호기관(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또래관계 정도



• 소년법상 보호처분(제32조)을 받은 아동 관련 조치사항

- ① 보호처분 전 아동을 보호했던 주소지에서는 보호 일시중지, 보호처분 종료 후 보호조치 또는 종결 후 사후관리 실시
- ② 보호처분 전 아동을 보호했던 주소지에서는 보호 일시중지 후 감호위탁 된 시설과 연락체계 유지하며 아동 모니터링 실시(건강 및 생활환경, 처분 종료 및 위탁 기간 연장 여부 등(퇴소예정일), 기타 특이사항)
 - * 사례결정위원회 생략, 아동상황 모니터링 시 유선·메일 등 비대면 방법 활용 가능
- ③ 보호처분 전 아동을 보호했던 주소지에서는 보호처분 종료 전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 점검, 보호처분 종료 후 아동보호서비스 재개 또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변경) 또는 종결 후 사후관리 실시
- ④ 보호처분 중 18세 도래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종결 및 연장 여부 결정
 - ※ 형사처분(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보호중인 아동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동일 절차 적용. 단, 아동이 만 18세 이상(보호연장)인 경우 종결 후 사후관리(5년) 실시





ㆍ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중 아동의 보호조치 변경 시 절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 변경, 아동 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전원할 시설에 인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② 피해아동보호계획 변경요청서	④ 보호체계 변경 등 필요 조치 검토
피해아동 보호계획 변경 요청서	확인	(필요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송부	③ 아동보호전담요원 조치변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 청취)
⑨ 아동의 전원 조치 결정 내용	필요한 내용 공유	⑤ 아동 및 친부모 상황점검
확인 후 아동 직접 인도	⑥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하여	※ 피해아동의 경우
⑩ 변경된 피해아동보호계획서	전담요원에게 사례결정위원회	친부모상황점검 생략가능
바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안건 상정 요청	⑦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및
사례관리 계획 재수립	⑧ 변경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아동	심의 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호전담기관에 연계	및 해당 시설 통보

참고 🏿 보호조치 중인 18세 이상 아동 중 보호기간 연장사유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보호기간 연장	【법 제16조의3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가정 이동복지법 시행일('22.6.22.) 이후, 이동의 연장 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 사유 없이 25세 미만까지 지원 ※ 보호기간 연장 중 대상자가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할 경우 종결절차 따름 보호 일시중지: 군 복무 기간, 90일 이상 해외체류 다,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보호기간 추가연장	【법 제16조의3 제3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 ※ 보호 일시중지: 군 복무(입대 전·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보호기간에 포함), 2년 단순 휴학 - 단, 단순휴학은 연속 사용만 가능하며,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 - 단,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신청 관련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단순휴학으로 처리 -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 단,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동안 보호 기간 연장 - 단,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 시까지 보호기간 연장
	【법 제16조의3 제3항 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 ※ 중도 탈락할 경우 연장종료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26세 미만까지 지원 ※ 장애·질병 등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경우 • 26세 미만까지 지원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26세 미만까지 지원

참고 3 연장기간 중 보호 일시중지

- •24세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군 복무* 및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보호 일시중지
 - * 병역법 제18조2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말하며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 취업으로 간주 (단, 병역법 제19조 1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기간을 따름)
- 25세 이후, 대학입학으로 보호기간이 추가 연장된 경우 군 복무*, 2년 단순휴학**(단, 연속 사용만 가능)시 보호 일시중지
 - * 단, 입대 전·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 보호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연장 보호,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 신청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미제출 시 단순휴학 처리)
- ** 2년 이내(연속사용) 휴학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 질병·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 보호
- 보호 일시중지 사유 발생 시 익월부터 양육상황점검을 중단하고,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하여 연장 보호가 재개된 달부터 양육상황점검 재개
- 시설급여.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등 재정 지원은 각 사업 지침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름
-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보호 일시중지 처리 시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사례 관리를 통해 일시중지 기간 동안의 아동의 변동사항(주소지 변경 등)을 확인하여 일시중지 사유 소멸 이후 연장 보호 지원
- 단순휴학 종료로 보호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하여 대학에 복학할 경우 연장 보호
- * 일시중지 사유 소멸 후 대학에 복학하지 않는 경우 일시중지 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보호 종결 처리
-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 시까지 연장 보호

참고 5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생계급여 지급 제도 개선 개요

- 18세 이후 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 아동양육시설 입소 상태에서 기숙사 등 별도 거주가 가능하나, 실거주지와 무관하게 생계급여가 시설생계급여로 시설장에게 지급
- 보호연장 기간 별도 거주 시 자립생활 경험이 가능하도록, 생계급여를 보호연장아동 개인에게 직접 일반생계급여로 지급 가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시설 입소 자격은 유지하되 일반 생계급여 책정이 가능하도록 예외 처리되며, 관리행정동은 시설 소재 시·군·구로 유지
 - ※ 단, 보호연장아동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전입지에서도 대상자 정보 확인 가능

[담당자별 처리 업무]

- (양육시설의 장) 보호연장아동의 실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거주지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 '실거주지 변경신고서' 및 대상자 통장사본을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제출
 -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이 보장시설 생계급여 보조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생계급여 사업팀) 공문 접수 후 통합조사표에서 해당 대상자 조회, 통합조사표 입력(시설급여 중지, 일반생계급여 책정), 보장결정 및 대상자 통지

- (시·군·구 아동보호팀) 보호연장아동의 보호연장 정보, 실거주지 변경 정보, 생계급여 지급 관리 정보 입력, 통합조사관리팀·생계급여 사업팀 공문 발송
- ① 보호연장 신청·결정 단계: 모든 보호연장아동 대상
 - -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는 신규 연장아동에 한함(사후·서면심의)
 - ② 아동보호서비스관리 "보호결정/변경 탭 -연장"에 대상자의 보호연장 정보 입력^{*} (연장심의일자, 연장유형, 연장사유, 실거주지 유형 등)
 - * 연장 정보 입력은 신규 연장아동 및 기존 연장아동 중 개별급여 전환 대상자에 한함
- ② 보호연장 중 실거주지 변경 및 개별급여 지급 정보 관리 단계
 - 양육시설 보호연장아동의 (서식 16-1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 접수 ⇒ "보호결정/변경 탭 -연장"에 "생계급여 지급 관리" 정보^{*} 입력
 - * 시설 밖 실거주지 주소, 실거주지 변경 일자, 본인 계좌정보 등
 - ** 단, 계좌정보 검증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 계좌정보 등록 생략,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내부공문 발송 시 통장사본 첨부로 대체
 - ② "생계급여 지급 관리"정보 입력 및 관련 서류 첨부 후 저장
 - ※ 저장 시 아동보호서비스관리 통합조사시스템 간 정보 연계되나, 통합조사팀 담당자의 시설 급여 중지 및 일반생계급여 책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

〈생계급여 지급 관리 정보 저장 시 첨부서류(3가지)〉

- ①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 및 본인 통장사본(시설 밖 거주지 변경 시)
- ② 생계급여 자격 변경 요청 승인에 대한 부서장 내부결재 문서
 - *(예) 00시설에서 보호연장 중인 000이 실거주지를 시설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일반 생계급여 자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통합조사팀에 요청함을 승인한다.
- ③ 시스템 저장 직후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통합조사팀·생계급여팀*으로 생계급여 유형 변경조치 요청 공문 발송** 및 유선 확인(필수)
 - * 일반 생계급여 변경 시에도 시설입소 상태는 유지(현원 포함)
 - **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 통장사본, 생계급여 전환 요청 내부결재 문서 첨부
 - ※ 시설 밖에서 시설로 실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동일한 절차로 시설 생계급여 전환 가능
 - ※ 이동보호팀은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 접수 후 3일 이내 생계급여 지급 관리 정보 입력, 통합조사팀· 생계급여팀 공문 발송 절차 등 완료 조치
 -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 및 아동보호자립과-61(2024.4.2.)호 문서 참고



참고 🧿 재보호조치 및 재보호조치의 연장사유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재보호 조치	법 제16조의4 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재보호조치를 희망 하는 경우	• (공통) <u>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및 종결</u> 이력이 있고, 신청 시점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신청 시점에 아래 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만 24세까지 재보호 가능(중도에 사유가 소멸되어도 24세까지는 계속 보호) ※ 재보호기간 중 대상자가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할 경우 종결절차 따름
	법 제16조의4 제1항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 대학 재학증명서(재학 중), 대학 진학 관련 교육 기관 재원 증명서(진학 준비 중) ※ 군 복무, 휴학에 따른 보호 일시중지는 보호 기간 연장에 준하여 처리
	법 제16조의4 제1항제2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직업 관련 교육·훈련 증빙서류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장애·질병 등에 관한 사항 나. 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 관한 사항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해당 사항을 심의 ※ 정애·질병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 ※ 정신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우울, 불안 등 진단서 또는 소견서(심리), 주거지 여부·상 태(주거), 기초생활보장수급 내역(경제) - 단, 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은 증빙서류 없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이나 자립지원전담 기관과의 상담 내역을 통해 판단 가능 -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대상의 경우 신청자에 대한 의견서 서면 제출 필수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제2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 에서 퇴소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경우
재보호 기간 연장	법 제16조의4 제1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 ※ 군 복무, 휴학에 따른 보호 일시중지는 보호 기간 연장에 준하여 처리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법 제16조의4 제1항제2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 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 ※ 중도 탈락할 경우 종료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장애·질병 등에 관한 사항 나. 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 관한 사항	• 26세 미만까지 지원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제2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 26세 미만까지 지원



A&Q

보호조치



타 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로 아동을 전원조치 시 업무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 전원조치 사유 발생 시 현 아동 보호 주소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시설 변경 등 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
 - ※ 아동을 전원 조치할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필요
- ② 현 보호 주소지에서 사례결정위원회 통해 보호조치 변경 결정 및 전원조치 할 시·군·구로 사례이관
- ③ 사례를 이관받은 시·군·구는 전원 후 3개월 동안 월 1회 양육상황점검 실시(전원 후 일주일 이내 시설방문 포함)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 ① 아동을 응급조치 하였으나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아동의 중장기 보호 결정이 없었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및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에게 보고
- ② 중장기 보호 결정 됐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중인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행위자 및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되,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동행
- ③ 중장기 보호 결정 됐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종결한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종결회의 결과를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하며, 이후 아동보호전담 요원은 양육상황점검을 단독수행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 이외 전원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호대상아동을 타 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 보호할 경우, 아동에게 해당 시설의 특성(받을 수 있는 서비스, 아동복지시설 보호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함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의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전원 조치(종결) 결정
- ※ 전원조치시 해당 부서(장애인·청소년시설, 성폭력·성매매 피해지원시설, 한부모지원시설 담당)에 아동의 기본정보(학대피해아동 여부, 부모의 접근금지명령 여부를 비롯한 원가정과의 관계 등) 및 입소상황, 향후 아동 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 필요성을 명시한 공문을 발송하여 사례이관하며, 사례이관 이후에도 해당 부서, 보호한 시설 및 아동과 연락체계 유지하여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참석 등 사례관리 협조함
- ※ 타 법시설 입소 이후 5년 간 연 1회(최초 1주일 이내 방문 포함) 아동의 보호상황(아동의 건강, 주거 및 안전 등) 사후관리 실시(단, 아동이 18세에 도래한 경우 사후관리 종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시 친권자(친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의 보호자 의견 청취는 필수적 절차 규정임. 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의 부모 쌍방이 누구인지 확인되며, 소재파악도 가능하다면 친권자인 부모 쌍방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소재파악 불가 시(행복e음을 통한 연락처 조회 시 연락처 조회 불가 등) 소재불명조사복명서로 갈음



양육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에 대해 입양을 의뢰하는 경우 보호변경 심의는 어느 시·군·구에서 하나요?



-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주소지에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및 심의 진행
- 다만, 입양절차 진행에 따른 주소지 변경(ex 입양 전 사전위탁) 시, 변경된 보호 주소지로 사례이관하여 양육상황점검 등 실시



아동이 거주하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폐업·휴업 등) 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시설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50조의2)
- (시설 폐쇄·사업정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을 폐쇄·사업정지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아동복지법 제56조제2항)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상정



입양 관련 가정법원의 허가 후에도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 대상인가요?



-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으로 입양대상아동(법원 허가 전까지)을 의미
- 입양 성립 후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현황 모니터링 실시(1년간 6회)



대학졸업을 앞둔 보호대상아동이 졸업유예를 할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25세 미만까지는 대학 재학 및 졸업유예와 무관,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연장 가능
- 25세 이상인 경우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학교(대학원은 제외)에 재학 중임이 확인되는 경우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 보호





18세 연령도래 또는 연장종료 외에 원가정복귀나 타 법상의 시설 입소 사유로 보호종료된 사람도 재보호가 가능한가요?



• 아동복지법(16조의4)은 재보호 가능한 보호종료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재보호조치 대상자의 상황과 보호 중인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정 외 보호기관 선정 검토 필요



재보호조치시 서식은 기존 서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나요?



• 접수상담지(서식1), 욕구조사표(서식4), 아동상황점검표(서식9), 개별보호·관리계획서(서식11), 아동카드(서식12), 서비스제공계획서(서식13) 등 재보호조치에 필요한 서식은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작성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



24세에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 및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25세 이후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재보호를 해야 하나요?



• 25세 이후 재보호의 연장 사유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재보호 가능



재보호종료 후 다시 재보호조치가 가능한가요?



• 재보호는 법 제16조(18세 연령도래, 보호목적의 달성) 또는 제16조의3(보호연장)에 따라 보호종료된 자에 한하므로, 제16조의4에 따라 재보호종료된 자는 다시 재보호 불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 재보호조치되는 경우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을 중지해야 하나요?



- ① <u>원칙적으로 재보호조치가 된 이후부터 자립수당·의료비 지원은 지원 중지하고, 재보호조치 종료 후</u> 잔여 기간 지원 재개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접수 상담 시부터 대상자에게 자립수당 의료비지원 중지 예정임을 안내
 - <u>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재보호결정 직후 자립수당 담당 부서에 보호결정 통지서(서식25) 및</u> 자립수당·의료비지원 중지 요청을 내부문서로 공유
 - <u>해당 내용 공유받은 자립수당 담당 공무원은 자립수당, 의료비 지원 중지 처리</u>* *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개정 사항 참고
- ② 단, 의료비 지원에 한하여 건강 문제로 재보호된 경우 중지 없이 잔여기간 계속 지원 가능하되, 이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자립수당만 중지 요청
- ③ <u>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도 재보호 기간동안 중지(단, 보호연장아동에 준하여 보호연장아동</u>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 필요시 보호연장아동에게 제공되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은 가능)



조기보호종료 등의 사유로 보호종료 후 5년이 경과하여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4세가 되기 전이라면, 24세가 되기 전까지 재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 ğ
- 재보호조치 신청 가능함. 단, 25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보호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보호조치 가능
- WZ

보호종료 후 5년이 경과되어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기간이 종료된 사람이 재보호조치되는 경우 재보호 종료 시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을 추가로 받게 되나요?

-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음
- W/z

재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 심리·경제·주거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경우, 신청 전위탁가정·아동보호시설에서 우선 보호 후 재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재보호조치대상자 요청 시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이 희망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추후 추가 안내 예정)
- 47/2

재보호조치된 대상자 정보를 행복e음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 접수 상담부터 신규로 등록 필요 ※ 현재 재보호조치 대상 아동 중 사후관리 대상자의 경우, 사후관리 종료 후 행복e음 신규 대상자 등록·관리



보호계획 및 결정 사후관리 상담·조사·사정 보호조치 종결 • 접수상담 • 개별보호·관리계획 • 아동보호 및 서비스 • 종결 • 사호관리 • 일시보호 수립 제공계획 수립 • 자립지원 • 욕구조사/상황 • 사례회의 • 양육상황점검 및 • 보호조치 결정 재평가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목적(예시 : 원가정 복귀, 입양 등)이 달성되었거나 보호 연령이(18세) 달하였을 경우 보호종료(해당 시설 퇴소) 여부 결정

가 수행주체

- 보호대상아동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관련 기관과의 사례회의 →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 ◎ 사례결정위원회
 - 아동의 보호조치 종결에 대한 심의

수행시기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 등으로부터 해당 아동의 가정복귀 신청을 받거나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 된 경우
 - 다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함(아동복지법 제 16조의3, 동 매뉴얼 Ⅲ. 보호조치 참고)
- ◉ 입양은 법 원의 입양허가 후「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시 종결

참고 🤉 종결 시 고려사항

-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평가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 원래 수립했던 목표대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종결 후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부모의 양육환경 등 변화를 양적·질적으로 측정하여 종결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종결 시 사례에 따라 대상자에게 안내가 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으므로 별도 안내문 양식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임
- 욕구나 문제가 해결되어 종결된 대상자도 문제가 재발하거나 새로운 욕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서 대상자의 긍정적 변화 유지 여부 확인
- 종결 이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계 여부 확인

종결 유형별 수행방법

1) 원가정 복귀로 인한 종결(피해아동이외 아동, 18세 미만)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조치된 아동과 원가정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모색함
 - 원가정 복귀 시 원가정에 대한 충분한 점검 및 준비시간 확보하고, 귀가에 대한 상담을 거쳐 귀가 적합성 파악
 - 필요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부모교육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음(부록 Ⅱ.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참조)
- 아동의 보호자 등 가정복귀 신청자는 양육계획서(서식 22) 및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서식 27)를 아동의 보호 주소지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제출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원가정 외 보호기관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이 복귀하고자 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 환경, 부모의 문제(경제적·건강 문제 등) 해결 여부 등 점검
 -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원가정 외 보호기관(예: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의 사례관리를 수행 중인 기관(예: 가정위탁지원센터)은 원가정 복귀 의견서(서식 19) 및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서식 26)를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제출
 - 원가정 외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등) 의견 청취 후 7일 이내 가정 방문실시, 양육 환경 점검 후 가정 복귀 점검표(서식 17) 작성
 - ※ 가정복귀점검표 작성 시 가정방문을 통해 수집한 주거·양육 환경 사진 첨부 필수
 - ※ 아동의 원가정 주소지와 보호시설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아동의 원가정 주소지에 방문 협조
 - ※ 필요시 가정 복귀 체크리스트(서식 18)를 활용함
 - 양육 환경 점검 결과 가정복귀가 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군·구에서는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심리 치료 등 필요한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동의서(서식 21-1) 확보
 -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해당 가정에 미복귀 사유 및 개선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보호자와 함께 가정복귀 프로그램 진행 계획을 수립(구체적인 계획 및 소요 기간 고지 필수)
- ◉ 아동보호전담요워은 종결심사서 작성 및 사례결정위원회에 보호종결 안건 상정 및 결정
 - 그간의 양육상황점검결과 및 면접교섭결과, 원가정외 보호기관 의견서, 가정복귀 점검표, 가정복귀 체크리스트 등을 바탕으로 시·군·구 사례회의를 실시 후 종결심사서 작성
 - ※ 부모의 성품·행실 불량 등으로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속 보호 필요
 -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변경, 종결(가정복귀 등) 결정 권한은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에 있음 (아동복지법 제12조)

- 제출된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서식 27)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2일 이내 처리 ※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를 담당할 시·군·구가 다른 경우에는 종료 후 거주할 시·군·구로 사례이관
- 아동의 워가정 복귀 후. 아동보호전담요웍은 사후관리 실시(아동 주소지에서 시행)
 - 원가정외 보호기관은 보호자에게 아동 인계시 아동 보호기간 중의 서비스 제공내용, 아동의 발달상황, 생활기록, 의료기록, 교육기록 등 아동의 원가정복귀 후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공유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그간의 양육상황점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호자에게 공유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종료아동으로부터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서식 21-1) 확보 ※ 필요시 원가정 외 보호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

참고 🔊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아동복지법 제16조)

-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2. 개정 2020. 12. 29.〉

참고 🧿 퇴소조치 등(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영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6. 30.〉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장,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 7. 16., 2021. 6. 30.〉
-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에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2) 원가정 복귀로 인한 종결(피해아동)

- ※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2권 참고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및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종결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확인함)하고, 가정복귀 기본요건을 확인함
 - ※ 아동 및 보호자 방문상담을 통해 가정복귀 의사 확인(단, 의사소통이 불가한 아동의 경우 분리보호된 시설의 의견청취 필수)
 - ※ 보호자로부터 서식 58 가정복귀 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 서면 확인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리평가 및 면담, 가정방문 및 양육계획 확인, 행위자의 법적 처분 유형 및 기간 등 양육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함
 - ※ 공공연계사례회의 통해 가정복귀가 피해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가정복귀를 재신청하더라도 가정복귀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결정일로부터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해당 가정에 미복귀 결정 내용과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선사항을 안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신청 유예기간을 설정한 경우 해당 기간 고지)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자 의사, 가정복귀 요건, 양육환경 점검 등을 통해 가정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복귀계획 수립하고, 가정복귀 프로그램 진행
- ◎ 가정복귀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공연계 사례회의 실시
 - ※ 필수 참석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당 시설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장
 - ※ 공공연계사례회의 통해 가정복귀가 피해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가정복귀를 재신청하더라도 가정복귀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결정일로부터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해당 가정에 미복귀 결정 내용과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선사항을 안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신청 유예기간을 설정한 경우 해당 기간 고지)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양육환경 점검내용, 가정복귀프로그램 결과, 공공연계 사례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가정환경조사서 작성 후 관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제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가정환경조사서를 확인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청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양육상황점검표 및 가정환경조사 등 바탕으로 종결심사서 작성 및 사례결정위원회에 보호종결 안건 상정 및 결정(대면심의 필수)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결정 내용을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함
 - ※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피해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해당 가정에 미복귀 결정 내용과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 유예기간 필수 고지함.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개선사항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

● 아동의 원가정 복귀 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후관리 실시

참고 🤊 즉각분리(일시보호) 후 가정복귀 시

- 즉각분리(일시보호) 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었으나 중장기보호가 필요하지 않아 가정복귀하는 경우, 축약된 가정복귀 절차를 진행함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조치결정내용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공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복귀 의사 확인, 축약형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진행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가정 환경조사서 제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가정환경조사서 검토 및 사례회의 등을 통해 복귀여부 결정,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호자에게 통보함

3) 보호 연령 초과로 인한 종료(자립지원)

-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시·군·구청장(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심의를 통해 해당 아동의 보호를 종료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 또는 보호대상아동 본인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 달하여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연장된 보호기간 중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예정일 3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조치 종료(퇴소)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 서식 26)를 제출
 - ※ 보호종료 또는 보호연장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여 보호종료 전 3개월동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계획 수립 등 자립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함
 - ※ (연령도래) 18세에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학령기 등 아동의 상황을 고려, 가급적 보호 연장 후 졸업 시점에 종결(졸업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보호종료 신청서 제출)
 - ※ 보호종료 신청 정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제공된다는 점 반드시 아동에게 구두 안내 필수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조치 종료(퇴소) 신청서를 접수한 직후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보호종료 신청 내역 통보
 - ※ 아동 성명, 연령, 가정위탁 또는 입소 연월일, 보호종료예정일, 시설 정보(시설명, 전화번호, 주소)
-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보호조치 종료(퇴소) 신청서 제출 직후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함께 보호종료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보호종료 점검회의를 개최 완료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사후관리 계획서 작성 및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서의 21) 확보하여 보호종료예정일 3주 전까지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제출
- (보호종료 점검회의) 원가정 외 보호기관(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이 함께 참여하여 주거·진학·취업 등 자립준비 상태를 점검, 자립지원전담기관은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주요 사후관리 내용, 방법·주기 등)

- 취업 등 아동의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소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시설·가정위탁지원 센터는 해당 사실을 즉시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공유하고 퇴소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주이내 보호종료 점검회의를 개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사후관리계획서 및 사후관리동의서를 확보하여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제출
 - ※ 사후관리 동의서 등 확보 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를 담당함을 안내(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사후관리 동의서 공유)
 - ※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이 위 업무 수행
 - ※ 원가정 외 보호기관(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계획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공유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 계획서 및 사후관리동의서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 ※ 아동별 사후관리 계획서, 사후관리 동의서는 행복이음(종결)에 파일 첨부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공문 수신시 자립수당 담당자에게 공략 지정
 - ※ 연장보호아동의 종결심의도 사후·서면심의 가능하나,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①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경계선 지적기능(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대면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런 경우 보호종료로 심의결정 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등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호종료된 직후 관할 자립지원전담 기관에 보호종료통지서 송부(서식 25)
 - ※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중도에 보호종료 신청 의사를 철회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종결 심의가 되지 않은 경우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통보
- 자립지원·지역사회서비스 등 서비스 연계, 자립수당·자립정착금 등 지급 여부 등 확인
- 보호종료 후 아동의 주소지가 타 시·군·구로 변경되는 경우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 시·군·구로 사례이관
- 주소지가 타 시·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사례이관과 함께 기존 주소지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도 전출 내역 통보 (전입받은 시·군·구도 전입지 관할 전담기관에 전입 내역 통보)
 - ※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를 위해 사례이관 시 지자체간 시스템 이관 및 해당 지자체에 공문으로 송부함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처리(부록Ⅲ 참고)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의료비 지원,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30일 전 사전신청 가능하므로 자립지원 담당 공무원 협조를 통해 보호종료 전 사전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부모가 아동의 자립정착금을 받아 아동 자립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지급전 요건 부합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
- 보호 연령 초과로 종료되는 아동의 경우,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대학 장학금, 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안내
- 장애·질병 등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울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인 경우 등은 보호종료 직후부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 연계

4) 가정법원 허가로 인한 종료(입양)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시 입양을 진행(입양기관)한 시·군·구에서 종결(사례결정위원회 단순보고)하며, 이후 입양가정(양부모) 시·군·구로 사례이관
 ※ 종결일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일자
- 다만, 지자체 상담 및 입양철회 등으로 친생부모가 원가정 양육 결정시,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위한 추가 방문 계획을 설명하고, 원가정 양육 결정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친생부모를 상담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방문 결과(서식 46)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분기별 취합 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방문 결과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경우,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친생부모 상담확인서(참고서식8) 작성 시, 추가 방문 계획을 설명하고 서명 날인
 - 원가정 양육 결정 이후, 친생부모가 거주지(주소지) 변경한 경우에는 ① 최초 상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친생부모와 방문 일정 등 상의 후 거주지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인계(그간 상담내용 및 방문 일정 등), ② 거주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내용 확인, 모니터링 및 결과 제출
 - ☞ 방문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기타운영비 항목) 사용 가능(1회 100천원 이내)

5) 아동복지법(제52조) 외 타 법상 시설 입소로 인한 종결

● 시·군·구 아동보호팀으로 보호가 의뢰된 보호대상아동이 아동의 특성에 의해 아동복지법 외 타 법 시설(장애인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성폭력방지법·한부모가족법에 따른 거주시설· 쉼터 등)에서 보호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내부 사례회의에서 판단되는 경우, 사례결정 위원회 개최하여 "타 법상 시설 입소" 결정, 아동의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동의서(서식 21-1) 확보 ①최초로 보호되거나 ②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 중 타 법상 시설로 전원 모두 해당)

- 이 경우, 장애인·청소년·성폭력피해지원·한부모지원 담당 부서에 아동의 기본 정보(학대 피해아동 여부, 부모의 접근금지명령 여부를 비롯한 원가정과의 관계 등) 및 향후 아동 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 필요성을 명시한 공문 발송하여 사례이관 및 보호 종결
- 사례이관 이후에도 해당 부서, 보호한 시설 및 아동과 연락체계 유지하여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참석 등 사례관리 협조함
- 타 법상 시설이 관외에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함께 공문 발송하여 사례이관 확인
- 아동 거주지(타 법상 시설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이후 최초 1주일 내 시설 방문을 포함하여 5년간(단, 아동이 18세 도래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종료) 연 1회 사후관리 실시하여 아동의 보호상태 정기적으로 확인
- 특히 ❷의 사례에 해당하는 15세 이상의 아동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신규로 포함되기 때문에, 전원 전에 아동에게 18세 도달 시점에 자립수당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사후관리 도중 아동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자립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 유사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 18세 이전에도 조기 입학·취업 등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자립수당 등 지원 가능

작성예시 가정 복귀 의견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수 신:○○ 시장

		7	' 성 복	.귀	의견	서		
	아동명		추한나		Ą	d 별	여	
 아동	생년월일(연령)	2012. 8. 4	(11)세		보호조치일 2019.		2019. 4	l. 9
이공	주소	경기도 수원	경기도 수원시 ○○구 ○○길 000 3층					
	보호시설명	○○가정위틱	차지원센터					
	성명		추성진			성별		남
	거주상태	자기	ŀ/ 전세 /월세		아동	과의 관계		부
보호 예정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여부		×			장의 지속적(참 정도 등)	21	분기별 1회
	보호예정 거주지 주소	경기도 수원	경기도 수원시 ○○구 ○○길 000 3층					
	성명	성별	연령	-	관계	직업/학	학교	비고
가족	추성진	남	40		부	경찰	탈	
관계	공은숙	여	39	7	계모	业人	.}	
	추자연	여	5	1	동생	⊚⊚어란	빈이집	
	아동의 의사 아동은 부에 대한 원망(부모이혼)이 있었으나 계모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가정 복귀를 희망함. 부는 분기별 1회 이상 아동과 만남을 지켰고, 월 1회 이상 전화 통화함							
	거주예정 가정환경 방 3개, 아동방 별도, 빌라 입구에 CCTV 설치되어 있음. 아동복귀 계획 일정 보름 전에 아동과 함께 쇼핑하 며 필요물품(의류, 학용품, 침구류 등) 등 구입함							
의견	보호자의 양육 능력 및 태도 부와 계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부와 계모 모두 부모교육 참여, 양육환경점검 결과 문제상황 없음.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동안 위탁부모에게 아동의 특성 및 자녀양육태도 등을 상담받음							
	적극적으로 아동괴	재혼했는데 5 함께 사는 것	고가 교통사고로 에 대해 찬성하	로 사망 ! 하였고, 분	분리보호 1년	크이 지난 시점	범터 분기	였는데, 계모가 먼저 별 원가정과의 만남, 가능하다고 판단함

〈서비스 제공 최종 평가〉

아동은 위탁가정에서 2년 성장했으며, 위탁초기 6개월간 심리치료를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한 상태. 2년 동안 위탁부모는 아동이 미술에 관심이 높아 미술학원을 보내 미술대회 등 수상경력이 많음. 위탁부모는 부모교육에 참여, 아동과 함께 캠프, 나들이에 매년 참여함. 원가정 만남 시 아동과 함께 친부모 만남 동행하며 친부모에게 양육기술, 아동의 정보를 제공함

작성일 2022.07.17

가정 복귀 점검표

가정 복귀 점검표

작성일 0000.00.00

이동 성명(성별) 조정석 생년월일(연령) 2065.8.8.(7세) 보호자성명(성별) 조우주 생년월일(연령) 1986.6.24.(37세) 보호유형 가정위탁 보호기관(연락처) 〇〇가정위탁지원센터 이동과의 관계 부 보호예정 경기도 의정부시 보호조치일 2019.4.8 담당자 김미도				
성명(성별) 조정석 생년월일(연령) 2065.8.8.(7세) 보호자성명(성별) 조우주 호조치일 2019.4.8 담당자 김미도 이동과의 관계 부	1986 6 24 (37AI)		경기도 의정부시	00일 00, 5층
성명(성별) 조정석 생년월일(연령) 2065.8.8.(7세) 보호유형 가정위탁 보호기관(연락처) (○○가정위탁지원센터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새녀원의(여명)	0 -	보하면전	거주지 주소
성명(성별) 조정석 생년월일(연령) 2065.8.8.(7세) <u>1호</u> 유형 기정위탁 보호기관(연락처) (○○○ 주 주 주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사 사]	마
성명(성별) 조정석 생년월일(연령) 변호유형 가정위탁 보호기관(연락처) 호조치일 2019.4.8 담당자	보호자성명(성별)			아동부의 관계
성명(성별) 조정석 변호유형 가정위탁 한조치일 2019.4.8	2065.8.8.(7세)	OO가정위탁지원센터	(0000-0000)	김미도
성명(성별) <u>변호유형</u> 중조치일 2	생년월일(연령)	(단금8/18/12)	(〜片こ)に オス	담당자
	사 장 사	7LMOIE!	OH	2019.4.8
		记 () () ()	00 	보호조치일

ilal	명가항목 가족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이 있다. □ 언어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부부씨움 □ 심각한 갈등	ż		
2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이 있다.]어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부부싸움 □ 심각한 갈등	≅ Ò	第一	특0사항
		ਲ	정기상	
		>		과지에 미에 누두씨늄는 돌았으니 시즘씩 씨군니고 임
	부모에게 심각한 정신장애, 신체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			
	그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 지적장애(), 우울(), 기타(ਲ	어사	
	신체장애 : 장애종류(>	
	□ 질한명:			
	부모 중 최소 1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7	01 110	
머머파	: □ 직업:트레이너 □ 근로시간 13:00~21:00	5 >	선	
이러마	. 그 직업 : 마트종사자 🗆 근로시간 10:00~17:00	>		
	부모의 소득이 안정되고, 부채의 정도가 크지 않다.	2	OI HO	아동이 원가정외 보호하는 기간(3년) 동안 약 3천만원
4 ■ 4	■ 소득 : 평균 300 만원 ■ 부채 : 6천만원	5 >	거	갚았고 현재 6천만원 남아 있음(모의 수입 전부와 부의
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여부	>		소득 일부를 부채 갚는데 사용)

202E 이토니스 IJULA	어ㅁ	пп С

떲	평가항목	亩	평가 ∨	특0从啓
വ	부모에게 심각한 알콜중독, 약물남용, 도박 등의 문제가 있다 □ 알콜중독 □ 약물남용 □ 도박 ■ 기타()	ਲ	어구,	모는 술을 끊고 운동하며 건강회복, 그 이후 마트에서 일하게 됨. 술은 남편이랑 함께 있을 때 마신다고 함
9	부모의 거주지가 일정하다. □ 자가 □ 전세(보증금:) ■ 월세:40만원(보증금:4,000만원)	ਲ >	어나	주거지는 일정하며, 부채 갚으며 1년 뒤 전세로 옮길 계획임
7	부모의 거주지의 안전 및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거주예정 가정환경조사 내용 특0사항 기재)	ਲ >	전 기	방 2개 중 1개를 0동방 사용계획, 부부가 0동과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만날 때 좋0하는 것 등을 확인하여 사전에 이동물품을 구입하여 방을 꾸몄다고 함
_∞	부모는 01동의 분리보호 기간 중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 연락 주기:월 1회 정도	ਲ >	전 기	분리보호 초기에는 모의 알콜치료로 6개월 간 연락을 취하지 못했다가 모의 상태가 호전된 뒤로 평균 월 1회 만남, 아동도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즐거워함
0	부모는 아동과 재결합하는 것을 원한다.	ਲ >	전 기 시 0	가족과 분리, 모의 알콜중독으로 인한 충격으로 1년 정도 심리치료를 받았고, 모의 알콜치료 완료 후 정기적으로 만남을 통해 부모에 대한 인식 전환되어 함께 살기 원함
10	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다.	ਲ >	전기상	모는 병원 입원 6개월, 통원 6개월 후 일상생활 가능했으며, 이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및 모임에 3차례정도 참여함. 경제활동 및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아동을 양육할 준비를 함
원) (0분	소견 (아동의 원가정 복귀 적합성 여부)	고 남면	하기 위해 S 상담지원 및	알콜치료에 집중하며 완치 후 부모교육 및 경제활동까지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필요할 것임.

작성예시 종결심사서

종 결 심 사 서

관리번호	T2017030103821	보호유형	가정위탁	
보호조치일	2018년 4월 3일 (월)요일	종결심사일	2022년 2월 17일 (목)요일	
보호종료일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종결유형	□ 원가정 복귀□ 연령도래어□ 기타(□ 기타(따른 퇴소 [] 입양성립	
구분		평 가 영 역		
개별보호·관리계획 목표 및 달성정도	〈개별보호·관리계획, 재사정 등 과정· ・ 아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심리: ・ 위탁부모 및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보 성적 약 20%로 상승	치료(1년) 후 회복됨		
부모의 양육환경변화 (원가정복귀 시)	 부는 재혼하였으며, 아동양육에 대한 고민 중 계모가 아동의 가정 복귀에 찬성하여 정기적 만남(분기별 1~2회 정도),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참여, 가정방문하여 가정환경을 점검함 부(설비기사)와 계모(보험설계사)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부모교육도 참여함. 양육환경점검 결과 긍정적 평가항목이 8개로 원가정 복귀 가능하다고 판단함. 또한 아동과의 만남 시 위탁 부모로부터 아동의 특성 및 자녀양육태도 등을 상담받음 위탁부모가 지속적으로 멘토 역할을 해주시기로 함 			
	《서비스 제공과정, 양육환경 조사 결과 • 가정위탁 배치 시 아동용품구입비료 • 아동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해결을	로 아동가구, 의류, 위하여 1년 동안 심	학용품 등 구입함 리치료 받음(위탁부모와 상담원이	
종결사례평가	교대도 함께 참여함) 특이자형 발견 경우함 • 위탁부모는 부모교육 참여 및 가정위함(연 3회 이상) • 00기업후원으로 아동에게 매월 5만함(종결 시 약 200만원) • 아동이 분리보호되어 위탁가정에서 부모의 아동양육에 대한 의지를 확인	탁 캠프, 나들이, 송 원씩 결연지원금을 성장하는 동안 개별	위탁부모는 아동통장에 모두 저축 보호·관리계획 95%달성되었으며,	
종결사례평가 사후관리계획	양육함 • 위탁부모는 부모교육 참여 및 가정위함(연 3회 이상) • 00기업후원으로 아동에게 매월 5만함(종결 시 약 200만원) • 아동이 분리보호되어 위탁가정에서	탁 캠프, 나들이, 송 원씩 결연지원금을 성장하는 동안 개별 I하여 원가정복귀기 아동 가정환경 조시 한 만족도 점검, 다	년의 밤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위탁부모는 아동통장에 모두 저축 보호·관리계획 95%달성되었으며, · 기능하다고 평가함 나 및 부모의양육태도 점검)	
	양육함 • 위탁부모는 부모교육 참여 및 가정위함(연 3회 이상) • 00기업후원으로 아동에게 매월 5만함(종결 시 약 200만원) • 아동이 분리보호되어 위탁가정에서 부모의 아동양육에 대한 의지를 확인 • 원가정 복귀 7일 뒤 가정방문예정(() • 아동과의 상담하여 현재 생활에 대한 아동의 통장관리 및 용돈관리 점검	탁 캠프, 나들이, 송 원씩 결연지원금을 성장하는 동안 개별 Ì하여 원가정복귀기 아동 가정환경 조시한 만족도 점검, 다	년의 밤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위탁부모는 아동통장에 모두 저축 보호·관리계획 95%달성되었으며, · 기능하다고 평가함 나 및 부모의양육태도 점검)	



Q&A

종 결



보호대상아동을 연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와 25세 이상의 경우 추가 연장을 위한 증빙서류(대학입학증명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증명서 등) 확인 후 내부 회의(연장사유 충족여부 검토)를 통해 연장사유 충족 여부 등 사전 검토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서면·사후심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및 자립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연령도래로 인한 종결 시 원가정복귀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대상(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기준 충족한 경우)
- 15세 이후 조기종료된 자의 경우 18세가 도래하는 시점부터 5년간(22세까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조기취업, 대학 조기진학)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급 가능
 - * 예시) ①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②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하였으나 가정학대 등으로 타시설에 재입소한 경우, ③ 보호 조기종료된 자로서 법 시행('24.2.9) 이전에 만 18세가 되었으나, 조기 입학·취업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④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 되었으나 만 18세 이전(보호종료 직후 포함) 지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사례이관 받은 시·군·구는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 어떤 서류를 발송해야하나요?



구분	원가정 외 보호기관 발송 서류			
보호조치 후 발송	• 접수(초기)상담지 • 아동·친부모상황점검 결과 • 개별보호·관리계획	 아동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결과 아동카드 아동보호동의서		
보호변경 후 발송	• 아동카드	• 변경된 개별보호·관리계획		
보호종료 후 발송	• 전달 서류 없음 * 소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례이관을 받았는지 확인			

• 보호결정, 변경, 종결 과정에서 사례이관이 진행되는 경우 이관받은 시·군·구는 아동정보를 원가정 외 보호기관과 공유



연장아동으로 보호종결 후 군입대 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보호종결하는 당해연도 자립정착금은 신청하며, 자립수당은 군입대중에도 수령가능



연장아동의 보호조치 변경(위탁가정 변경, 시설변경 등)이 가능하나요?



• 연장아동의 보호조치 변경은 가능(사후심의 가능)



종결심사 시 사후관리 계획서, 사후관리 동의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관할 보호종료 예정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종료예정일 3주전까지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동의서 확보 절차를 거치고, 관련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함
-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사례결정위원회 종결심사 시까지 해당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에 재요청하되, 종결심사 진행 후 사후 제출 가능



아동보호팀으로 보호의뢰된 아동의 미혼모자시설 입소 시 원가정 복귀와 타 법시설 입소 중 어떻게 종결해야 하나요?



- 1) 미혼모의 아동이 보호의뢰된 경우
 - 미혼모가 원가정 양육 결정 후 아동과 함께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경우, 원가정 복귀로 종결 후 사후 관리(1년) 실시
 - * 단, 중장기 보호중인 아동에 한하여 사후관리 실시(일시보호 제외)
- 2) 만 18세 미만 등 미혼모가 보호의뢰된 경우
 - <u>임신 또는 출산한 미혼모가 보호 의뢰되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타 법상 시설입소' 결정 및</u> 종결 된 경우 사후관리(5년) 실시



재보호조치 후 종결시에도 보호종료점검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재보호조치 후 종결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보호종결하되, 사후관리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수립까지 진행하며,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종료점검회의만 개최
- 재보호조치 후 종결 시에도 해당 사실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안내해야 함



타 법시설 입소로 조기 종료 후 원가정 복귀한 경우 자립지원이 불가하나요?



• 보호종료 사유가 타 법상 시설 입소인 경우, 추후에 원가정 복귀해도 원칙적인 조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대상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불필요)



조기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면 어떤 지원을, 얼마동안 지원하는 건지?



- ① (자립수당·의료비 지원) 원칙 조기종료아동 요건(예외적 대상자도 심의 거친 경우 가능) + 보호종료 시점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요건^{*}까지 충족 시
 - * 단, 자립수당·의료비 지원 지침(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에 따라 2년 이상 연속 보호 요건 미 충족시에도 예외적으로 사결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지원기간) 18세부터 22세까지 5년간 지급(60개월)
- ② (전담기관 사후관리*) 원칙 조기종료아동 대상자 요건 충족 시(예외적 대상자도 심의 거친 경우 가능)
 - * 일반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초기상담을 거쳐 자립지원통합서비스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18세부터 22세까지 5년간 지원
- ③ (자립정착금) 지방이양사업이므로 지자체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자립수당과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권고



조기 보호종료아동 지원 관련 시·군·구 아동보호팀과 자립수당 담당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 (아동보호팀)
 - (조기종료사유-타 법상 시설입소) 타 법상 시설입소로 종료된 경우 15~17세까지 연 1회 사후관리 → 18세 도래 시점에 ①자립지원전담기관 명단 통보, 사후관리 연계 및 ②자립수당·의료비지원 신청 안내
 - (조기종료사유) 원가정복귀 원가정복귀로 종료된 경우 1년간 4회 사후관리 → 18세 도래 시점에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결위 안건 상정·심의하여 ①자립지원전담기관 명단 통보, 사후관리 연계 및 ②자립수당·의료비지원 신청 안내
 - * 17세 원가정 복귀한 경우 사후관리 기간(1년) 중 아동보호팀이 판단 가능하겠으나, 이보다 이른 나이에 원가정 복귀한 경우에는 본인이 자립수당 신청한 경우 판단 가능
- (자립수당 담당자) 조기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의료비지원 신청 시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 결정
-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보호팀에서 18세가 도래한 조기 보호종료 아동 명단을 통보하면 사후관리 실시



조기종료아동 대상자에 해당하나, 18세 이후에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신청하는 경우 지원 기간은?



- 신청 시점부터 22세까지만 지원 가능
- 장래에 18세 도래하는 조기종료아동(원칙적 대상자)의 경우 18세부터 전체 5년 기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신청 안내 등 철저



일시쉼터·단기쉼터 입소 시에도 타 법상 시설 입소로 종결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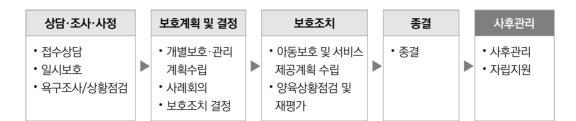


- 최초 보호조치 시 3개월 미만 보호 필요 등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단기쉼터 입소 가능(이 경우에도 사후관리 5년 실시)
- 단,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임에도 입소할 시설 부족, 업무회피 목적 등의 이유로 단기 타 법 시설 입소 및 종결 금지

Ⅵ 사후관리

01

개요



보호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연령 초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일정기간 적응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참고 🏿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아동복지법 제16조의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 입양이 성립된 후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진행

참고 🧿 사후서비스 제공(입양특례법 제25조)

-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 ②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 ③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02

연령 초과 전 종료되어 원가정 복귀한 아동



가 수행주체

- 아동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하되 보호아동이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기타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아동 등 점검대상자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동행하여 방문 권고
 - 해당 아동의 원가정에 대하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또는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에서 사례관리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 사례관리 실시기관과 협력하여 실시
 - 아동(사례)별 특성에 따라 통합 사례회의 등 기관 간 충분한 논의·협조를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연계(중복 서비스 제공 방지)
- 읍·면·동,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보호 담당자
 - 방문 동행, 자료 제출 등 사후관리에 협조(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후관리 전 기간)
 - ※ 입양된 아동의 경우 입양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기관 사후관리 현황 모니터링 실시(본 매뉴얼 35p, 보호자가 입양으로 의뢰한 아동 참조)



수행시기

- 원가정 복귀 후 일주일 이내 가정방문을 포함하여 1년간 4회 사후관리 실시
 - ※ 원가정 복귀 후 일주일이내 가정방문 실시 및 1개월 이내 추가 1회 이상 모니터링(가정방문, 유선), 원가정 복귀 후 6개월 이후부터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사후관리 기간 연장

수행방안

- 아동 원가정 복귀전에 작성했던 양육계획서(서식 22) 및 가정복귀 점검표(서식 17), 가정복귀 점검 체크리스트(서식 18) 등을 참고하여, 사후관리(보호종결 사유별 사후관리 점검표 서식 28) 실시
 - 필요시 사례회의를 거쳐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워단 등으로 서비스 연계

03 연령 초과로 종료된 아동(자립지원)

71

수행주체·시기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 전담인력
 -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대상자에게 연 1회 이상 사후관리(자립수준평가)와 생활, 주거, 진로·취업 등 전 분야 자립지원을 실시하되, 가정위탁지원센터·시설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원가정 외 보호기관과 지속적 협력체계 유지
 - 분기별 익월 20일 이내 시도에서 제공받은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에 대상자별 사후관리 실시 현황(사후관리 유무, 날짜 또는 연락두절여부 대상자 특이사항)을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아동과 함께 수립한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
 - ※ 대상자 주소지가 타 시·도로 변경되는 경우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사례이관
-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관내 거주중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보 누락 등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상자 연계 실시
 - 시·군·구 보호종료예정아동 및 사후관리 대상자(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 대한 보호종료 신청 내역 통보(보호조치 종료(퇴소)신청서 접수 직후)
 - ※ 보호종료예정일 3개월 전 보호종료 신청서 접수 및 사례결정위원회 종결 심의 직후 전담기관 통보
 - 사후관리 대상자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전담기관의 사후관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를 확인 및 사후관리 점검표 작성 ※ 시·군·구-자립지원전담기관 간 협의를 통해 유선 또는 공문 협조 방식으로 사후관리점검표 항목에 관한 아동 현황 요청하여 작성
 - 대상자가 전담기관과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아동과의 연락 시도, 아동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 공유하는 등 전담기관 협조 필요

-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 ※ 전담기관과는 연락두절이나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후관리 연락에는 응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대상자에게 향후 전담기관 사후관리에 응하도록 안내
 - ※ 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대상자의 보호 중 이력 확인, 시·군·구 복지서비스 연계 등 협조 요청 시에도 상시 협조체계 유지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대상자의 거부로 인한 사후관리 종료 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지자체 아동보호팀에 사후관리 종료(해지) 보고서 송부
 - ※ 지자체 자립 업무 담당자는 5년간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급 현황 지속 관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연 1회 연락 시도 및 아동 상황 모니터링 실시(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모니터링 제외)

참고 5 15세 이후 타 법시설 입소 조기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 수행시기

- 보호종료 후 최초 1주일 이내 시설 방문을 포함하여 5년간 연 1회 이상 정기 사후관리 실시(단. 아동이 18세 도래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종료)

• 수행방법

- 연 1회 이상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기술평가 실시
 - ※ 자립지원업무매뉴얼 〈서식2〉/〈서식3〉, 〈부록1〉
 - ※ 자립지원계획: 자립기술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이나 희망 진로, 희망 주거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 자립기술평가: 일상생활, 자기보호, 지역사회 자원활용, 돈 관리, 진로탐색, 사회적 기술 등 영역의 자립 준비 정도 평가
 - ※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전까지 상담, 자립수당 및 정착금 사용 현황, 자립에 필요한 자원 연계 등 지원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관할 지자체 내 거주하는 보호 조기종료 아동이 18세가 된 때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
- ※ 지원 제외: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참고 5 자립지원 대상자별 담당자 및 역할

구분	보호아동 (15세~연장아동)			보호종료아동 (5년 이내)			
下正	담당자	소속	역할	담당자	소속	역할	
아동양육 시설	종사자, 시설장,	아동양육 시설	• 보호아동 자립지원				
공동생활 가정	위탁부모, 상담원 등 +	그룹홈 (지원센터)	• 종료 이전 전담 기관·아동 관계 형성 지원	기관·아동 관계	자립지원 전담인력	자립지원 전담기관	• 종료아동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가정위탁	ㅜ 자립지원 전담요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 자원연계 • 전담기관과 협력 등			시구한다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38조)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 자립지원전담요원은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계획 수립
 - 18세 이상 보호종료 후(최대 5년)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 사후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발굴 연계 등 지원
 - 취업, 직업훈련, 주거, 진학, 경제, 생활, 의료 등 관련하여 자립준비 수준 점검
 - 취업형과 진학형으로 구분하여 사회초기 적응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연 1회 자립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
 -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협조요청 시 아동의 상담 내역 등 정보제공

참고 5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대상	사후관리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초기상담을 거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수시 선정)
내용	(절차) 초기상담 → 욕구사정 →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 실행 → 점검 및 평가 → 종결 (지원) 생계·주거·진학·취업·의료 등에서 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민관 자립지원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비(긴급생계비, 임대료, 자격증 취득비 등) 지원
방법	각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초기상담 진행 후 대상자로 선정 ※ 시·도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자 인원(예산) 배정

〈표 10〉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제공주체
통합사례관리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통합서비스(생활·주거·취업·교육·의료 등 맞춤형 사례관리)	
소득지원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 디딤씨앗통장(CDA, 아동발달지원계좌)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긴급지원(위기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주거지원	청년 전세·매입 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보호종료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앙정부
취업지원	 창업성공패키지(전국 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의 전 과정을 일괄지원) 내일배움카드 대학재학생 직무체험,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학업지원	• 국가장학금(I , II 유형) • 국가근로장학금(교내, 현장) • 학자금 대출 • 대학진학 시설아동 기숙사 우선배정 • 폴리텍대학(우수 기능인력 양성)	
자립지원금	• 자립정착금(보호종료 당해 연도 지급, 1,000만원 이상) • 대학입학금 등 지원(지자체별 지원액 상이)	각 지자체
심리정서지원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중앙정부
기타지원	•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보북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표 11〉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주요비교

구분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대상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 근거하여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지급(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아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지원내용	• '24년 기준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권고(지자체별 상이)	• '24년 기준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지급시기	• 보호종료 시에 지급원칙(당해년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최대 60개월) * 60개월 지급대상은 2018년 8월 이후 적용		
제출서류	• 자립정착금사용계획서 • 아동 본인 명의 통장사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사이버 강의 이수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참고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여성가족부)

• 개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지원대상

9세 이상 ~ 18세 이하 위기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접수·처리

• 추진 체계





•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생활·건강지원은 65% 이하)

• 지원기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 생계비 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건강지원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연 200만원 내외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자립지원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①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가능	월 36만원 이내
법률지원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상담지원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청소년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지원 그 밖의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① 수련활동비② 문화활동비③ 특기활동비④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등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04

아동복지법 외 타 법상 시설에 입소한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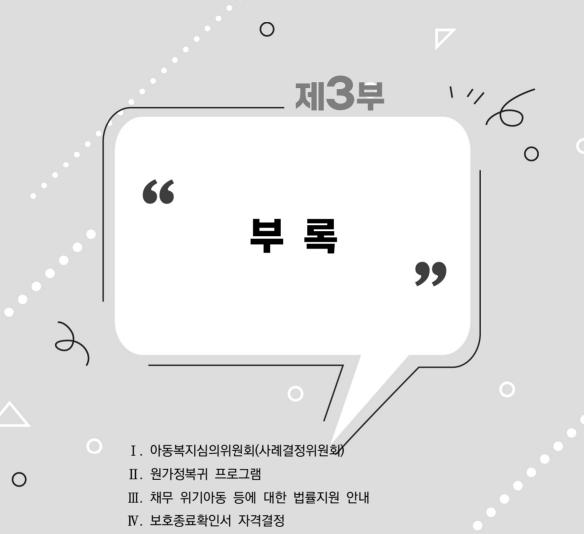
수행주체·시기

- 아동 거주지(타 법상 시설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함
 - 아동이 타 법상 시설로 입소 후, 최초 1주일 내 시설 방문을 포함하여 5년간 연 1회 사후관리 진행
 - ※ 단, 사후관리 도중 아동이 18세가 도래한 경우, 사후관리 종료
 - 기존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 중에 15세 이후에 타 법상 시설로 전원하여 보호가 종결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로 신규 포함되므로, 사후관리 기간 중 18세가 도래할 시, 반드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하여 적절한 자립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군·구 타 법 시설 담당자(장애인, 청소년시설 등)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원활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연계를 위해 아동의 현황 파악,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시설 방문 등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협조



수행방안

- 타 법 시설 입소에 따른 사후관리(보호종결 사유별 사후관리 점검표 서식 28) 실시
 - 필요시 사례회의를 거쳐 아동보호체계로 재진입(전문가정위탁 등) 검토
- 기존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 중이던 아동이 15세 이후에 타 법상 시설로 전원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중 18세 도래 시점에 아동에게 자립지원 제공(이후, 3.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로 연계)
 - 조기종료된 아동의 18세 도래 1개월 전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후관리동의서 확보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자립지원대상자 연계 의뢰 공문과 함께 과거 실시한 사후관리점검표(타 법시설입소)를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송부
 - ※ 이후 지자체의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조기종료아동의 사후관리계획 및 사후관리 동의서 지자체 공유
- 타 법 시설 입소 후에도 시설 종사자, 담당부서 공무원, 아동과의 연락체계 유지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른 보호를 위해 필요시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함



V. 입양기관 현황

0

VI.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현황

VII.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안내서

제3부 부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0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요

● 지역 아동복지정책의 전문성·충실성을 제고하고,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아동복지 및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기구(아동복지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주요 기능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 (1호) 지역의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한 사항
 - (2호)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법 제15조)
 - (3호)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법 제16조)
 - (4호) 법 제18조에 따른 개별 아동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5호) 법 제19조에 따른 개별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 (6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7호)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 해체 위기에 있는 고위험 아동 가구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기간 연장, 지역 내 아동 정책 수립 및 시행·변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아동학대 예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발굴·심의(또는 보고)할 수 있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구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위원

-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시·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함)
-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 (1호)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자격을 가지거나, 시·도 교육청 (시·군·구의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 (2호)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 사람
 - ※ 아동에 대한 친권제한 일시정지 청구 등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관련 분야 경험 있는 변호사
 - (3호)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이동의 장애 여부·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정신건강과 등(권장) 아동 분야 경험 있는 의사

- (4호)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 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 ※ 팀장급 이상으로, 현장 실무에 능한 사람
- (5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호)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7호) 그 밖에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의 임기

-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함
 - ※ 위촉 위원 중 교육청(교육지원청), 지방노동관서 등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 전출, 퇴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다른 위원을 재위촉함
- 위원 연임 여부, 기간은 지자체 조례 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

◎ 위워의 해촉

- 주체: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사유: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 손상·비밀 유지 준수 의무 위반, 기타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 ※ 해촉 사유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르되, 조례에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만들거나 동 지침을 참고하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해촉 절차 진행

◎ 기타 사항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직·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아동복지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조례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다음 지침을 참고

● 위원회 회의 개최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심의·보고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경우 적시성·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활용
 - ※ 사례결정위원회를 제외한 소위원회(아동급식 관련사항 심의 등)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계속 운영할 수 있음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다만 법령에 정한 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위원회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위원장 직무 대행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은 반드시 민간 위원일 필요는 없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0

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보고 (법 '17.9.19 개정, '17.12.20 시행)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년도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3)
- ◎ 보고 사항
 -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사례결정위원회('21.6.30.~) 02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 결정을 중심으로 서술함



- ◉ (의의) 아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성·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
- ◉ (시행 배경)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장 및 유관 기관의 장 중심으로 구성. 아동 보호 관련 전문적 사항을 적시에 심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무가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를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 '20.12.29 공포, '21.6.30. 시행)



주요 기능

- ◉ (아동 보호) 사례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하여 보호대상아동에 관련한 아래의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 심의의 효력을 갈음한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정책 시행계획 등 지역 아동정책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심의기구로 활용 권고
 - 보호조치 : 아동을 원가정과 분리하여 가정위탁, 시설, 입양 등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
 - ② 퇴소조치 : 보호자의 신청 또는 아동의 연령도달(18세) 등의 경우 아동의 보호조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종결 결정
 - ③ 치권제한 및 후격인 선임 청구 : 부모의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 등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성 검토
 - ₫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시항,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항 등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워(시·도는 소속 4급 이상 공무워)
 -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자체장이 위원장인 관계로 개최가 원활하지 않은 한계가 있어 지자체 과장급 공무원으로 정함

- -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보호 관련 실무경험이 많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위촉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 ◎ (운영)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아동보호팀 등)에서 운영함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장기 보호조치 결정·변경·보호종료 외의 일시보호 연장 등 안건상정이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워 또는 드림스타트 등 관련 담당자가 사례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함
 -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일시보호)에 해당하는 피해아동의 일시보호 연장, 서비스를 종결하거나 원가정 복귀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또는 드림스타트 등 관련기관)이 직접 안건작성 후 상정
 - ※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조치 중 연장. 원가정 복귀 등 심의자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접 작성
 - ※ 아동보호전담요웍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제6호(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입양 등)에 해당하는 아동의 사례안건 상정 담당(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해당하는 피해아동의 일시보호. 연장, 원가정복귀 등 안건 상정 제외)
 - 해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해당 회의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음
 - 사례결정위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심의 보류·재심의 의견 등)
- ◉ (개최주기) 사전심의 의무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함

참고 🤊 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 의무안건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보호조치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2호~제5호의 보호조치된 아동의 보호목적달성· 연령도달로 인한 보호조치 종료·퇴소조치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2호~제4호의 보호조치된 아동이 보호자의 가정복귀 신청에 따라 원가정 복귀하는 경우*
- * 아동 및 보호자의 가정복귀 의사확인, 양육환경 점검,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등 가정복귀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필수 심의
- 아동복지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제52조) 외 타 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 입소로 인한 종결

- 사례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
-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실무자는 안건설명을 위해 참석할 수 있음
- (심의방식) 아동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전·대면 심의 의무안건"외 안건은 지자체가 심의 방식(사전·사후/대면·서면) 결정
 - '사전·대면 심사 원칙'인 안건의 긴급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 중심으로 참석 범위 조절하여 개최 가능(대면 심의가 원칙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 가능)
- (심의단위)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아동 주소지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함
 -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시·군·구와 아동 주소지 시·군·구가 상이하거나 아동의 보호장소를 타 시·군·구로 변경하는 등 시·군·구간 역할 조정 및 총괄 기능이 필요한 경우 시·도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
 - 시·도 사례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시·군·구는 먼저 시·군·구 간 협의 등 자체적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시·도와 사전 협의하여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함
 - 시·도는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시·군·구와 협의하여 시·도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
- (심사서류) 개별보호·관리계획(서식 11)은 공통 필수로 작성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확정하되, 기타 추가로 첨부하는 서류는 아동의 특성 및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운영함
 - (보호조치 결정) 욕구조사표(서식 4), 아동 상황 점검표(서식 9), 친부모 상황 점검표 (서식 8), 건강검진·심리검사 결과서, 사례회의 회의록 등
 - (보호조치 변경) 양육상황 점검표(서식 15)
 - (보호조치 종결) 종결심사서(서식 20)
 - ※ 원가정 복귀인 경우, 아동 및 보호자의 가정복귀 의사확인, 양육환경 점검,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등 가정복귀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필수 심의(가정 복귀 점검표(서식 17), 가정 복귀 의견서(서식 19), 양육계획서 (서식 22),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서식 59) 등 활용)
- (후속조치)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이 있은 후, 보호자 및 보호기관에 사례결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보호조치 결정(변경) 통지서(서식 25)), 회의록 등 관련자료 시스템 등록 필요



세부 운영기준

일시보호조치의 경우

- 피해(의심)아동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서 일시보호 중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의 보호조치 결정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실시하며, 부득이하게 일시보호(즉각분리)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시보호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필수 심의대상임 (일시보호연장 심의시 가정복귀 및 장기보호 전환 여부도 검토해야 함)
 - ※ 최초 일시보호조치 결정 및 일시보호(3개월 미만) 후 추가적 분리보호가 아닌 원가정복귀인 경우 심의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필요시 학대메뉴얼에 따라 학대전담공무원이 사례결정위원회 직접 안건 상정

● 중장기 보호조치의 경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 의무 사항임
- 즉각분리(일시보호) 중인 피해아동의 상담·조사, 건강검진, 보호계획 수립 등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보호조치 결정이 된 피해아동의 사례관리를 담당함
 - ※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지도(제1호) 또는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제2호) 보호조치를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하는 경우, 그밖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대상이 아닌 피해아동 보호조치 심의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안건 설명함
 - ※ 아동복지법 외 타 법(장애인·청소년시설, 성폭력·성매매 피해지원 시설, 한부모지원시설 등)상 시설 입소조치를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애인, 청소년, 한부모 등 담당)에 아동의 기본정보(학대피해아동 여부, 부모의 접근금지명령 여부를 비롯한 원가정과의 관계 등) 및 입소상황, 향후 아동 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 필요성을 명시한 공문을 발송하여 사례이관하며, 사례이관 이후에도 해당 부서, 보호한 시설 및 아동과 연락체계 유지하여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참석 등 사례관리 협조함
 - ※ 입양에 필요한 조치(제6호)를 하면서 가정위탁(제3호)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조치(제4호)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함께 상정·심의함

◎ 중장기 보호조치 변경의 경우

- 아동의 가정형 보호조치 위배(예:가정위탁→시설) 또는 아동 생활반경 변경 등 아동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는 보호조치 변경은 사전·대면심의 의무안건
- 가정형 보호 전환(예: 시설→가정위탁), 연령도달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시설 전원조치 등 보호조치 변경은 사후·서면심의 가능
 - ※ 동일 위탁가정에 대한 위탁유형 변경(일반가정위탁↔전문가정위탁)은 사후 서면심의 가능하며, 위탁가정 내 주 양육자 변경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위탁부모 자격요건 확인 후 사례결정위원회 사후·서면 심의 통해 결정)

- 보호중인 아동이 면접교섭 지원 계획 외 시·군·구와 상의 없이 타 시설·가정 등에서 실거주하여 보호시설(가정)에서 실질적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하여 보호유형 변경 및 종결 검토 실시
- 단순한 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제외(시·군·구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 ※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 해당 사유 확인 후 보호계획 변경 또는 서비스 제공 계획변경

◎ 보호조치 종결의 경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호조치를 종결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가 의무사항임
- 연장보호아동 및 재보호아동의 종결심의도 사후·서면심의 가능하나,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적기능에 해당하는 아동(지능지수가 84 이하)의 종결 심의 시 사전·대면 심의를 거쳐야 함.
- 이런 경우 보호종료로 심의결정 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등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
- 입양동의 철회에 따른 원가정 복귀의 경우 사후·서면심의 가능하며, 입양 성립에 따른 보호조치 종결은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제외(법원 결정사항 단순 보고)
 -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4호와 제6호 병행 조치되었던 경우, 종결심사 시에도 함께 보고
 - ※ 원가정에서 양육중인 입양대상아동의 입양 동의 철회로 인한 종결 시 사후 서면 보고 가능

H

기타사항 및 참고자료(서식)

- 아동복지법 제19조에 따른 개별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은 사후·서면심의 가능하며 아동복지법령 및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함
 -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시 필요에 따라 서식 1~8호 활용



서식 1 심의·의결시 체크리스트(사례결정위원회 위원)



번호	주요 항목	확인	비고
1	심의에 따른 첨부서류가 충실히 제공되었는가 (추가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비고란에 기재)		
2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아동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면 비고란에 기재)		
3	아동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 등이 적절한가		
4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었는가		
5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결정되었는가		
6	원가정보호 우선 원칙을 최대한 고려하였는가		
7	아동에 대한 안전확보(점검)가 제대로 수행되었는가		
8	아동의 질병 등 특성에 따른 보호가 반영되었는가		
9	아동 및 원가정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10	(비고)		

서식 2 가치충돌 상황 및 확인사항(예시)



	내 용	확인사항
1	아동의 안전을 위해 원가정복귀가 어렵다고 판단하나 아동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안전평가 실시 양육태도 검사 실시
2	아동이 분리조치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거나,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	아동 의사 확인 권고 (전학 갈 학교 사전방문)
3	아동이 분리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아동 의사 확인 권고 종합심리검사 실시 재사정 실시
4	보호조치의 결과로 해외입양을 가게 될 경우	친생부모 재면담
5	전문가의 판단 시, 아동의 의견이 보호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이는 경우	아동 의사 확인 권고
6	분리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나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가정복귀를 요구하며, 아동도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안전평가 실시 양육태도 검사 실시
7	가정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보호자의 양육의지가 없는 경우	양육태도 검사 실시 종합심리검사 실시
8	아동이 보호조치의 과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정서적 건강이 악화될 경우	종합심리검사 실시 재사정
9	아동이 시설(가정위탁)에 부적응할 경우	종합심리검사 실시 아동 의사 확인 권고
10	아동이 시설에서 가출, 비행 등으로 시설(가정위탁)에서 퇴소를 요구하는 경우	종합심리검사 실시 아동 의사 확인 권고 재사정 실시
11	적정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경우	타 시도·시군구 의뢰 여부 확인 타 보호체계(청소년 등) 검토



서식 3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요청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요청서

	심의 번호	2025-00호	□ 사전 □	사후	□ 대면 □서면
ŧ	관리번호		□ 상담/지원(1호) □ 보호조치 변경 □ 종결(원가정복귀) □ 후견인 선임·변경 등	□ 종결(연령	면장) □ 재보호조치 도래) □ 종결(기타)
	심의 안건	• 세부 심의 내용 적시 (예 ; 학대피해아동으로 전문가정위탁 보호조			정위탁 보호조치)
		아동명	(□남/■여)	생년월일	
	아동	주소		00시 00	구 00동
	사항	학교		학년	
		보호현황		보호일자	
가?	정환경 및 성장과정				
		욕구	목표		서비스내용
_	MHU =				
	개별보호 관리계획				
현	아동				
현 상 황	보호자	보호조치 중인 경우	에는 칸 추가하여 시설	, 가정위탁에서의	현 적응 상황 등 적시
	아동				
	보호자				
의 견	시설장	아동양육시설, 가전 시설의 의견	정위탁지원센터, 공동 [,]	생활가정 등 아동	등이 생활하고 있거나 생활하게 될
견	관계기관	관계기관 의견 (드림스타트, 학교	,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보호전문기·	관 등)
	관계자	상담사, 의사, 심리	리치료사, 친인척, 위'	탁가정 등 의견	
	담당자	심의요구안에 대한	! 담당자 의견		
첨부서류 ·					
		위와 같이	00시 사례결정위원	회에 심의를 요	2청합니다.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025	•	

서식 4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F	- 1
=	= 1
_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심의 번호	2025-00호	□ 사전 □ 시	수	□ 대면 □서면		
관리 번호		 상담/지원(1호) 보호조치 변경 종결(원가정복귀) 후견인 산임·변경 등	□ 친족보호(2□ 연장(추기□ 종결(연령□ 찬란제한 등	ŀ연장) □ 재보호조치 경도래) □ 종결(기타)		
심의 안건	• 세부 심의 내용 적시	• 세부 심의 내용 적시 (예 ; 학대피해아동으로 전문가정위탁 보호조치)				
심의	□ 원안가결 □ 조건부승인 □ 수정가결 □ 심의보류 □ 재심의 □ 심의의뢰 □ 부결					
결과	· 심의결과 세부내용 적시 (조건부 승인시 조건시항, 수정가결시 수정된 시항 등)					
심의 번호	2025-00호	_ 02,	□ 친족보호	□ 보호조치		
관리 번호		□ 보호조치 변경 □ 원가정복귀 □ 친권제한 등		□ 추가연장□ 보호종료사항		
심의 안건	· 세부 심의 내용 적시 (예 ; 학대피해아동으로 전문가정위탁 보호조치)					
심의		건부승인 □ 수정가결 의의뢰 □ 부결	! □ 심의보략	-		
결과	• 심의결과 세부내용 작	적시 (조건부 승인시 조건사	l항, 수정기결A	l 수정된 시항 등)		

※ 안건 수에 따라 서식 추가하여 사용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일괄 의결합니다.

위원장 000 (서명)

위 원 000 (서명)

000F 01EH ± 11111 A	

위 원 000 (서명) 위 원 000 (서명) 위 원 000 (서명) 위 원 000 (서명) 위 원 000 (서명)

2025. . .

00시 00구 사례결정위원회위원장

서식 5 사례결정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양식



사례결정위원회 심의결과(회의록)

심의일	(정기/수시)	□ 사전	□ \	후		대면	□서면
심의번호	2025-00호		변경	□ 연장□ 종결	보호(2호) (수가연장) (연령도래) 한 등		보호조치(3~6호) 재보호조치 종결(기타) 1 밖의 시항
심의안건							
	아동명	(□=	[/□여)		생년월일		
아동	주 소						
사항	학교				학년		
	보호유형				보호일자		
주요논의 사항	0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조 □ 재심의 □ 실	.건부승인 의의뢰		결 □ ⁻	심의보류		
심의결과 세부내용							
특이사항 등							
작성자 (작성일)		소속	직 2024.	성명		(서명)	



서식 6 회의개최 시 필요서류 체크리스트(참고용)



	구분	첨부자료	비고
공통	· - - - - - - - - - - - - - - - - - - -	회의개요, 이전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 자료, 회의 안건 설명자료, 심의·의결서 양식	
	상담지도	욕구조사표, 아동상황 점검표, 친부모상황 점검표	
	친족보호	아동상황점검표, 친부모상황점검표, 보호할 친족의 가정환경조사서(가 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양식으로 갈음)	
보 호 조	시설보호	개별보호·관리계획, 피해아동보호계획(변경)서, 건강검진・심리검사 결과지, 사례회의록.	
치	가정위탁	개별보호·관리계획, 피해아동보호계획(변경)서, 건강검진·심리검사 결과지, 사례회의록,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입양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입양동의서,	
보호	호조치변경	개별보호·관리계획, 피해아동보호계획(변경)서, 양육상황 점검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보	일시보호연장	피해아동보호계획(변경)서, 건강검진·심리검사 결과지, 사례회의록	
호 연	연령도래	양육상황 점검표, 자립지원 계획서	
장	추가 연장	양육상황 점검표, 자립지원 계획서, 추가연장 사유 관련 증빙서류	
보	아동학대	가정환경조사서, 사례회의록(내부/통합), 종결심사서 아동·보호자 심리검사 결과지, 양육상황 점검표	
호 종	입양동의 철회	입양동의철회서, 양육계획서, 아동상황점검표, 친부모상황점검표	
료	그 외	가정복귀의견서, 양육계획서, 가정복귀점검표, 종결심사서, 양육상황 점검표, 면접교섭 결과보고서	
퇴소조치		양육상황점검표, 자립지원 계획서	
친권제한, 상실		청구서, 양육상황 점검표, 친부모상황 점검표, 면접교섭 결과보고서	
후견인 선임·변경		청구서, 양육상황 점검표, 친부모상황 점검표, 면접교섭 결과보고서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		아동상황 점검표, 친부모상황 점검표, 욕구 조사표	
보호·지원서비스를 위해 필요한사항		(일반)아동상황점검표, 친부모상황점검표, 욕구조사표 (학대)아동학대판단 체크리스트, 사례회의록(내부/통합)	

위촉 승낙서

성 명:

소속(직):

생년월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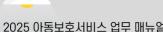
위촉기간 :

상기 본인은 아동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기간 동안 000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 위원회) 위원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활동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5. 00. 00

위 본인 (서명)

000시장 귀하



서식 8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동복지법」제65조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사례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취득하게 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인)

00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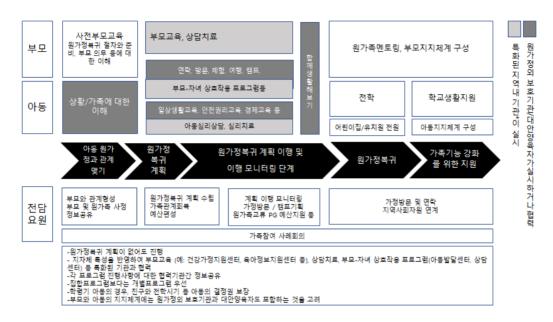
01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개요

- (목적) 아동보호서비스 전 과정에서 원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서 보호자의 역량강화 및 아동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안정적으로 아동을 원가정 복귀시키기 위함
- ◎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
- ◎ (시기) 초기상담부터 원가정복귀되어 사후관리하는 전 과정
- (수행주체) 시·군·구 및 원가정 외 보호기관
- ◎ (대상) 원가정복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자
 - (기본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제5호에 의해 보호조치 된 아동이 동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가정 복귀하는 경우
 - ※ 일시보호 등 보호아동의 분리보호 기간에 따라 축약 적용 가능
 - (선택적용)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청소년쉼터, 성폭력 쉼터, 장애인 쉼터 등 타 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선택 적용 가능 ※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아동학대대응업무매뉴얼 2권 참고)
- ◎ (주요내용) 아동 및 보호자 상담, 부모교육, 가족프로그램, 가정방문, 지역사회(학교) 탐방 등
- (사업비) 시·군·구별「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지원」사업비-서비스 연계 제공비 활용

□ 179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02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세부 절차



〈원가정복귀 지원 프로그램의 개요〉

상담·조사·사정 단계 (보호조치 전)

- (개요)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조사·사정과정(욕구조사, 아동·친부모상황점검)에서 원가정보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워을 연계하거나 추후 원가정 복귀 계획에 대한 상담 실시
- (주요내용) 욕구조사. 아동·친부모 상황점검 과정에서 워가정보호·유지 가능성 확인 및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원가정복귀 계획(원가정복귀 시점 및 노력) 점검
 - (욕구조사) 가족관계, 경제, 생활환경 등 보호자(아동)의 원가정 복귀 관련 내용 점검
 - (아동상황점검) 원가정 복귀 관련 욕구(부모와의 정기적인 만남 희망정도) 점검 (아동상황점검표 분리보호 관련 문항에서 확인)
 - (친부모상황점검) 가정환경, 양육태도 등 원가정 복귀를 위한 계획·노력 점검
 - (원가정 복귀계획 수립) 상담·조사·사정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원가정 지원(복귀) 계획 작성
 - (공개강좌) 취약계층 보호자. 양육기관 등 종사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내 공개 부모교육

양육상황 점검 단계 (보호조치 중)

- (개요) 보호조치 중인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 상담·조사·사정단계에서 수립되 원가정 복귀계획 이행지원 및 모니터링
- (주요내용) 양육상황점검(보호조치 목적 달성여부 및 워가정 점검) 실시 및 부모(양육기술) 교육, 가족상담, 가정방문, 가족프로그램 등 원가정 복귀를 위한 면접교섭 프로그램 지원
 - ① 양육상황 점검: 아동의 시설 적응정도 및 서비스 만족도 확인, 원가정(보호자) 가정복귀 (양육 의지, 태도 등) 상담 실시(분기별)
 - ※ 분리보호 된 후에도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 유선, 문자, 편지쓰기, 만남 등으로 정기적으로 아동근황 확인
 - ※ 원가정 외 보호기관: 사진, 동영상 등으로 아동의 일상기록 및 부모와 공유
 - ② 부모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가족 재결합(부모의 의무, 아동정서 다루기 등) 및 양육의지 등 소규모 집합교육(역할극 포함, 반기별)
 - ③ 가족상담(가족참여회의) : 보호종결 전 보호자 및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상담·가족참여회의
 - 부모·아동에 대한 이해.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 상실에 대한 심리상담 등 ※ 가정방문 또는 가족 외식지원 시 병행 가능
 - ④ 가정방문: 보호종결 전 보호자로부터 양육계획 및 가정복귀 점검(가정 복귀 의견서, 가정 복귀 점검표 활용)을 통해 아동의 가정 복귀 의사 및 보호자의 양육태도 확인
 - ⑤ 가족프로그램 : 보호자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숙박 및 가족외식 지원
- 부모(양육기술)교육 이수 및 원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보호자 대상

종결 및 사후관리(보호종료)

- (개요) 원가정 복귀로 보호조치 종결된 경우, 아동의 가정생활 적응정도, 보호자 양육태도 등 모니터링
- (주요내용) 사후관리 실시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 ① 가정방문(점검) 및 연락: 원가정 복귀 후 아동·보호자의 가정생활 점검(생활환경 및 아동의 만족도 등)
 - ※ 아동보호전담요원: 양육계획서. 아동·친부모상황점검, 사후관리 점검표(보호자 양육태도, 보호자의 자립정도 등) 등 활용
 - ※ 원가정 외 보호기관: 가정방문 협조, 아동·부모상담(상시) 등
 - ② 학교생활지원 : 원가정 복귀로 바뀐 교육환경(전학 등)에 대한 아동의 지지체계 확보 및 지역사회 서비스 및 자원 연계



03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표준내용(예시)



가 상담·조사·사정(보호조치전)

◎ 공개강좌

구분	내용
목적	• 분리보호 예방, 빈곤이나 이혼이 분리사유가 되지 않도록 원가정보호 유지 및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 원가정보호 및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함
대상	• 보호자(취약계층 포함) 및 양육기관 등 종사자 * 아동의 분리보호를 희망하거나,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양육자(한부모가정, 취약계층, 일시보호 및 분리보호 경험 등) *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서비스 제공받는 대상 포함
주요내용	 아동복지 관련 주요정책 안내(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맞춤형, 보호대상아동 관련 등) * 해당 사업별 대상 및 지원서비스 안내(해당 부서 협조를 받아 진행) 어린이주간 등 지자체 대규모 행사기획 시 해당 부스 운영 * 아동복지 관련 정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등 * 양육기술, 아동특성을 다룬 공개강좌 - 부모의 의무, 아동의 정서 다루기, 아동안전/권리 교육 등



양육상황점검(보호조치 중)

◉ 부모와의 관계형성

구분	내용
단계	• 아동 원가정과 관계맺기,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 원가정복귀 계획 이행 및 이행 모니터링, 원가정복귀,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종결 단계
대상	• 원가정 부모
목적	• 조사, 사정(아동, 가정, 원가정복귀 가능성 등),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 원가정복귀 추진 등의 과정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 형성
목표	 원가정 부모가 실무자를 신뢰하고 속마음을 이야기한다. 원가정 부모가 조사, 사정, 원가정복귀 계획 및 추진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변화'에 대한 부모의 내적 동기를 강화한다. 원가정 부모가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한다.

Ę	P분	내용
	18년	1. 원가정 부모에 대한 조사 및 사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 아니오' 형식의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2~3회 정도(1회 30~50분) 상담하여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자는 상황에 대한 부모의 시각을 이해한다. 상담자가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부모 스스로가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이끌어준다. 2.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1) 개방형 질문하기, 2) 반영적 경청하기(내담자의 말을 잘 듣고 마음을 읽어주는 반응을 하기), 3) 칭찬하기(물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요 관점), 4) 요약하기(내담자의 말을 정리하기)가 아래의 4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2-1. 관계형성하기 단계(engagement): 부모가 앞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계속 만나고 협력하고 싶다고 느끼도록 상호 신뢰하며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부모가 자신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임을 인정하며 최대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부모가 말하게 하고 이를 반영적으로 경청하며 부모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감정적 하소면에 그치지 않고 부모가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방향 등을 이야기하게 한다. 부모를 설불리 비난하기는 단점해결방법을 지시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이후 부모와 협력적 관계 형성이 어려워진다. 부모가 상담자를 편안하고 지지적으로 느끼며 속마음을 이야기한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되, 스스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면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반응해준다. 2-2. 조점 맞추기 단계(focusing): 현재 상황의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싶은지, 혹은 무엇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부모가 결정하도록 한다. 부모가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요청받은 경우 정중하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되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도록 한다.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허락 없이 부모에게 지시하거나 끼어들지 않는다. 2-3. 유발하기 단계(evoking): 부모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이슈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부모가 스스로 변화에 대한 배역(*하고 싶어요), 능력(*호 수 있어요), 이유(이런 점이 좋을 거예요), 필요(*해야 해요)를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헌신(*할 거예요. *하기로 약속해요), 행동(*하도록 준비가 되었어요), 실행(*했어요)의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러한 표현을 많이 할수 위로 전하는 되어 있다. 부모의 행동은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4. 계획하기 단계 (planning): 부모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계형성(engaging), 초점 맞추기(focusing), 유발하기(evoking)가 이루어지며, 계획의 실행을 위해 격려하고 지지하는 과정이 지속된다.
인	총괄	• 아동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력	협력	• 원가정외 보호기관
유의 사항		 상담자는(아동보호전담요원) 자신이 전문가라는 생각과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교정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내담자(부모)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임을 인식하고, 모든 행동 변화는 스스로가 이루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부모의 내면에 자녀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동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이끌어내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동기부여면담기법이다. 그러한 동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4가지 단계에서 개방형 질문, 칭찬, 반영적 경청, 요약을 적절히 활용한다.



구	분	내용
단	계	•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 원가정복귀 계획 이행 및 이행 모니터링, 원가정복귀, 가족기능 강회를 위한 지원 단계까지
대	상	• 자녀를 원가정외 보호에 맡긴 부모 • 자녀와 원가정복귀하여 생활하는 부모
목	적	•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을 강화한다.
목	·Ħ	1. 부모가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2. 원가정복귀 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학습한다.
내용/방법		 자녀에 대한 이해, 자녀양육코칭, 아동발달, 감정코칭, 의사소통방법, 아동양육방법 등의 주제로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이나 재활분야 등의 치료프로그램에 의뢰할 수 있다.
	총괄	• 아동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안양육자, 원가정외 보호기관
인력	협력	• 해당 주제의 부모교육 전문가(아동발달상담사, 임상심리사, 아동분야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가족상담사, 중독치료전문가 등), 지역사회 내 관련 전문기관
유의사항		 부모교육은 전문가가 수행할 수도 있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대안양육자나 시설이 수행할 수도 있다. 강의보다는 역할극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상황대처 역량을 키운다. 가능한 집합교육보다는 개별가족별로 진행한다. 가정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아동양육과 관련되어 일반적인 내용은 지역사회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부모의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건강, 재활 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프로그램에 의뢰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치료프로그램은 검증되고 공신력 있는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진행한다.

가족참여회의

	1-14	
구	분	내용
단계		• 아동 원가정과 관계맺기,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 원가정복귀 계획 이행 및 이행 모니터링, 원가정복귀, 가족기능유지를 위한 지원, 종결 단계
대	상	• 부모, 아동, 기타 가족구성원
목	적	• 가족이 원가정복귀 준비 및 결정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함께 수립한 목표의 이행 정도를 성찰한다.
목표		 상담, 조사, 사정 단계 및 보호계획 수립단계에서 원가정복귀 계획에 대해 부모, 아동, 가족구성원이 의사를 표현한다. 1-1. 원가정외 보호기관 종류, 원가정외 보호 이후 상호 연락빈도, 방법 등에 대해 선호하는 의견을 표현한다. 1-2. 부모는 자녀가 생활하게 될 원가정외 보호기관과 생활방식,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의견을 표현한다. 보호계획 수립 및 결정단계에서 아동은 원가정복귀 계획을 통해 부모가 제공받을 서비스와 변화목표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표현한다. 보호조치 이행단계에서 부모와 아동, 가족구성원이 서로의 원가정복귀 준비 이행 정도 및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표현한다. 원가정복귀 시점 및 사후관리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부모와 아동, 가족구성원이 의견을 표현한다.
		 이동보호전담요원과 부모와 초기 상담 및 사정을 마친 후, 보호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와 아동, 기타 가족구성원이 모두 아동이 어디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미리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지 않더라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달하여 가족중심실천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부모, 아동, 가족구성원의 가족참여회의) 원가정외 보호기관이 정해지고 원가정복귀 계획이 수립된 이후, 부모, 아동 및 가족구성원은 함께 앞으로 원가정복귀를 위해 각자 혹은 공동으로 노력해갈 부분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서로에게 지지를 제공하며 또한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아동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주도하에 부모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원가정외 보호기관 담당자도 함께 사례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보호조치 단계 동안 최소 분기별 1회에 걸쳐 부모, 아동, 가족구성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원가정복귀 준비 이행 상황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점검할 수 있는 가족참여사례회의를 진행한다. 이 때, 아동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주도하에 부모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원가정외 보호기관 담당자도 함께 사례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원가정복귀 시점에 대한 결정과 이후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결정도 가족참여회의에서 함께 논의한다. 원가정복귀 시점에 대한 결정과 이후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결정도 가족참여회의에서 함께 논의한다. 원가정복귀 이후 단계에서도 가족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중심으로 가족, 지역사회 유관기관(드림스타트 등)과의 가족참여회의를(첫 3개월 1회, 이후 6개월 1회) 통해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이해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부모, 아동, 가족구성원의 가족참여사례회의+부모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례관리자 참여 추천)
	총괄	• 아동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	협력	• 보호자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원가정외 보호기관, 원가정외 보호 지원기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드림스타트 등) 등

202E 이론터후 IIII Y	어ㅁ	пиц	. c

구분	내용
유의사항	 부모와 자녀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존중받는 느낌을 가지고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담당자들과 가족의 관계형성 및 가족참여사례회의를 주도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부모, 아동 및 가족구성원이 시간을 가지고 결정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때, 실무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가족사례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가족들이 의견을 형성하고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그동안 실무자들은 관련 논의를 진행하거나 기다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 가족방문(가족과 생활해보기)

-	갼분	내용		
단계		• 원가정복귀 계획 이행 및 이행 모니터링 단계부터 원가정복귀 전까지		
	대상	• 원가정외 보호조치 되는 모든 아동과 가족		
목적		1. 아동과 가족의 관계를 회복한다. 2. 보호조치 동안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와 대안양육자의 협의를 통한 아동양육 파트너쉽 형성한다.		
목표		 아동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아동이 안전한 장소에서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한다. 방문을 준비하며 부모와 아동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대안양육자와 논의한다. 		
내용/방법		 방문 전 아동에게 사전준비와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과 원가족 방문을 위한 약속을 잡는다. 아동에게는 방문시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미션(편지쓰기, 요리하기, 사진찍기) 등을 제시하고 수행된 미션을 원가족과 공유한다: 선택사항 방문전 부모와 대안양육자는 일관된 양육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의 생활규칙 등을 공유하고 합의한다. 부모가 아동 방문하기: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부모가 방문한다. 아동이 부모 방문하기: 부모가 생활하고 있는 곳이나 친인척의 집 등을 방문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방문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다음 방문 일정을 계획한다. 		
인	총괄	• 대안양육자, 원가정외 보호기관 : 필요한 경우 아동과 함께 동행한다. • 원가정외 보호 지원기관		
력	협력	아동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 방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유의사항		 아동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이나, 주말, 명절, 방학 등의 기간을 활용한다. 사전에 아동과 부모와 일정과 방문기간 동안 함께 할 일 등을 합의하여 결정한다. 방문하기는 특별한 경우(예: 부모의 입원)를 제외하고 부모가 아동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동의 부모방문은 반나절, 하루, 1박 2일 등의 순서로 점차 시간을 늘려가도록 한다. 방문일정이 길어질 경우, 숙제, 위생관리 등 규칙적인 일과 등에 대해 아동과 부모가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대안양육자가 계획과정을 지원한다. 부모가 데리러 올 수 없거나, 아동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대안양육자는 아동과 동행하여 안전하게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결 및 사후관리(보호종료)

◉ 가정방문 및 연락

구	분	내용				
 단	계	• 원가정복귀 이후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단계				
대	상	• 부모 및 아동				
목	적	• 원가정복귀 이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	П	1.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목	. III.	2. 아동 및 가족이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한다.				
		1. 원가정복귀 준비과정에서 가족참여사례회의를 통해 원가정복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아동의 적응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부의 지원체계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 합의한다.				
내용/	/방법	2.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 및 부모는 비대면/대면 연락의 빈도와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하되, 원가정 복귀 7일 이내 1회 가정방문, 8일에서 30일 이내 2회 연락(1회 가정방문 포함), 31일에서 60일 이내 1회 연락, 61일에서 365일 이내 2회 연락(1회 가정방문 포함)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한다.				
		3. 연락 및 만남에서는 아동의 근황,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학교 및 지역사회 적응 등을 살핀다.				
인력	총괄	• 아동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협력	• 아동 소재 지역사회 내의 주 사례관리자, 원가정외 보호기관, 원가정외 보호지원기관				
유의사항		 부모와 형성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원가정복귀 이후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비대면, 대면 연락을 지속하며, 부모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닌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또 하나의 가족(원가정외 보호기관)으로 남기 위해서임을 공유한다. 연락이나 방문을 부모나 아동이 거부하는 경우 그 자체로 원가정복귀 준비가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으며, 부모 및 아동과 관련자들의 지금까지의 신뢰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 원가정복귀 이후 학교생활지원

구분	내용
단계	• 원가정복귀단계
대상	• 학령기 아동, 부모, 원가정 소재지 학교 담당자
목적	• 학령기 아동이 원가정복귀 과정에서 학교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하며, 아동의 학교생활을 가정 및 사례관리자가 공유하고 지원한다.
목표	 원가정복귀 아동을 위한 학교 내 지지체계(담당 교사)를 구축한다. 학교내 지지체계-부모-사례관리자가 연계하여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지망을 구성하고 지원한다. 아동이 원가정복귀 과정에서 학업수행,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한다.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구	분	내용					
내용,	/방법	 원가정복귀 약 1-3개월 전부터 원가정 소재지 지역사회 사례관리자는 원가정 소재지 학교에서 아동의 적응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며 사례관리자와 협력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찾는다. 학교 내학교사회복지사, 상담교사, 담임교사등이 가능하며 원가정외보호 및 원가정복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아동에 대한 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람직하다. 학교 내 담당자를 발굴한 이후 사례관리자는 부모와 함께 담당자를 만나 아동의 원가정복귀와 전학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아동이 준비할 것과 학교에서 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부모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준비하고 지원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논의 및 공유한다. 아동의 원가정복귀 직전에 아동이 학교 담당자, 부모, 사례관리자를 함께 만나 전학과 이후학교생활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로 모임을 진행하여 아동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로 모임을 진행하여 아동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이 학교를 돌아보고, 이후 생활할 환경과 분위기를살펴보도록 하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지체계가 있음을 인지하도록 한다. 아동의 원가정복귀 이후, 숙제, 수업참여, 교우생활에 대해서 부모와 사례관리자, 학교 담당자가 공유하도록 하며(온라인 연락체계와 오프라인 만남 병행) 세 주체 간 오프라인 만남 빈도는원가정복귀 시점과 직후에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점차 느슨하게 진행한다. (온라인 및 비대면연락은 보다 빈번하게 가능). 가족참여사례회의를 활용하여, 학교 담당자가 가족참여사례회의에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다. 					
인력	총괄	• 아동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닉	협력	• 원가정 소재지 지역사회 사례관리자, 학교 내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등					
유의사항		• 학교 내 담당자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아동 및 가정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학교 내 지정된 담당자를 비롯한 최소의 학교관계자에게만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함					

채무 위기아동 등에 대한 법률지원(상담·소송) 안내

01 지원 체계

- 채무 위기아동 등 위기가구에 대한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운영(아동권리 보장원-대한법률구조공단)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 관련 전문성을 공유하고, 아동복지현장과의 유기적 연계·소통을 통한 채무 위기아동 적극 발굴
 - (대한법률구조공단) 위기아동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적극적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하고, 공단 일선기관과 아동복지현장 연계 추진

02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 (대상자)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법률지원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아동*
 - * 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의 지원대상아동
- (대상사건) 상속채무 방지, 법정대리인 선임, 친권남용구제 및 신분관계 소송 등 법률상담및 공익소송 필요 사건

2) 지원절차

- ① (현장) 사업대상자 법률상담 안내, 위기아동 발굴, 신청서 취합(대상자→현장 종사자) 및 제출(현장 → 보장원)
 - 사례관리 및 양육상황 점검 시, 상속채무, 법정대리인 공백, 친권남용 피해 등을 점검(서식 5 체크리스트 참조) 하여 위기아동 조기 발굴
 - 위기아동의 신청서, 지원대상(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련 증명서 등 법률구조 관련서류 작성·제출(서식 6 참조)

- - ② (보장원) 채무 위기아동 법률지원 체계 안내, 신청서 일괄 취합·검토(현장→보장원) 및 공단 송부
 - 각 사업 담당자(현장)에게 서비스 개요, 체크리스트, 필요서류 등 안내
 - 현장에서 송부한 대상자 정보를 취합하고 공단으로 인계
 - ③ (공단) 사건 접수 및 사실조사, 구조결정, 소송수행, 소송종료 안내
 - 인계사건을 '민원사무'로 접수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종결대상', '법률구조회부 사건'으로 구분 처리
 - *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접수를 위한 추가서류 징구 등 실시
 - '법률구조회부사건'은 사실조사(대상자, 대상사건,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 및 구조결정
 - 보장원 및 아동복지현장담당자에게 구조결정 여부, 소송결과 등 인계사건 처리결과 통보

〈아동권리보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 위기아동 법률지원 절차(안)〉

위기아동 발굴	법률상담 신청		인계사건 접수		구조결정		Ą	상담·소송수행, 종료안내
아동복지현장	아동복지현장		법률구조공단		공단 소속기관			공단 소속기관, 법률구조공단
	(안내) 발굴아동 대상 법률 상담 신청 및 구비 서류 안내 (서류 구비) 신청서, 증명서 등				(법률 상담) 제출서류 토대로 대상자, 사건 등 법률상담 실시 ※ 현장·대상자와의 법률상담 진행		① 종결 대상	(결과 공유) 소송대리가 불가한 대상 종결상황 공유 (공문)
(조사·발굴)	취합 (서류 제출)		(접수) '민원사무'로 접수 (소속기관 연계) 접수대상의 거주지와 인접한 공단 소속기관 연계	: 1	(구조여부 결정) 상담·조사결과			공단 소속기관
사례관리, 양육상황 점검 시 상속채무 등 채무위기아동 발굴	한장→보장원(공문) 아동권리보장원					토대로 ① 종결대상, ② 법률구조회부		2
	(서류 검토) 제출서류 취합, 지원				사건으로 구분 ※ 소송대리 불가시, 종결		법률 구조 회부	법률구조공단
	대상 관련 증명서 검토 등 사업대상 확인				(결정통지) 인계사건 처리결과를 보장원, 현장담당자		사건	(진행상황 공유) 진행상황 또는 사건 종결 시, 종료 공유
	(대상 인계) 보장원→공단(공문)				에게 통지(공문)			(공문)

03 (참고) 법률지원 필요사례

1) 친권남용

- (사례1) 아동(가정위탁, 시설)의 친부, 계모 등 원가족구성원이 아동명의로 휴대폰 또는 인터넷 다수 개통, 요금 연체 및 미납부 등의 사유로 인한 채무 주로 발생
 - * 일부 사례의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친모)에게 한정승인 절차 안내하였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 부족
- (사례2) 시설보호아동 친모(신청)·큰아버지(보증)의 '교통사고 피해가족 유자녀 장학금' 부정수급*으로 변제 상황 발생
 - * 시설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불필요한 사항
- ◎ (사례3) 가정위탁아동의 친부가 아동명의 통장의 수급비 강탈

2) 상속채무

- (사례1) 시설보호아동의 친부 사망에 따른 채무 상속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채무청산 필요
 - * 일부 사례의 경우, 상속 채무 우려가 있으나 정확한 금액 파악 불가

3) 기타

◎ (사례1) 시설보호아동의 가족 친척 재산분할에 대한 재산세 납부독촉

IV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

01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업무 개요

- (배경)「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월)」세부 과제에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절차 개선이 포함되어 '22년 3월부터 행복e음 아동보호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 업무 개시
 - (기존) 각종 자립지원 제도 이용 시 보호종료확인서를 통한 증명이 필요하나, 보호조치 및 종료 결정 주체인 지자체가 아닌 민간(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 발급기관이 멀거나 시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확인서 발급 포기 사례 발생
 - (개선)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주체를 민간에서 지자체(시·군·구 자격결정 → 읍·면·동 발급)로 일원화하고, 온라인 발급(정부24)도 추진 예정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팀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Rightarrow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보호종료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발급 추진 중

- (수행주체) 시·군·구 및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향후 신규 보호종결되는 아동의 경우 보호종결을 결정한 시·군·구에서 자격결정 수행하되, 기존에 보호종결되어 사례이관된 경우 사례이관 받은 시·군·구에서 자격결정
- (시기) 보호종결 결정 이후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 수행
 - 종결심사 후 종결관리 저장과 동시에 발급 자격결정 업무를 수행하여, 종결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자격결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함
 - * 보호종결 직후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
- (대상) '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대상자 중 18세 이상 연령도래 사유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대상자
 - *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시점 이후 행복e음상 보호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
- (주요내용) 보호종결 후 시·군·구 아동보호팀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이 결정된 대상자에 대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복지로, 정부24)에서 확인서 발급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 세부절차



02

가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대상자

- (발급대상 원칙)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로 ① 가정위탁 및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다가 ② 18세 이후 연령도래(또는 원가정복귀)로 보호종료된 자
- (자격결정 대상) 위 조건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해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행복e음 아동보호서비스" 시스템상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이 가능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전산화해서 관리 중

참고 🔊 행복e음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가능 조건

- ①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대상자 중
 - *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시점 이후 행복e음상 보호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
- ②-1 보호결정/관리(탭)의 보호유형이 가정위탁 또는 시설보호에 해당하고
- ②-2 보호종결(탭)의 종결사유가 연령 도래에 따른 퇴소 또는 원가정복귀(종결 당시 18세 이상) 또는 기타(종결 당시 18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시·군·구 담당자(아동보호전담요원)는 보호종결 대상자에 대한 자격결정 시 위의 발급대상 원칙을 고려하여야 함
- (발급대상 원칙에 해당함에도 자격결정 대상자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보호유형이 '입양전 보호'로 되어 있거나 시설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종결사유가 '타 시·군·구 보호시설 전출'로 되어 있는 경우 확인서 발급을 위해 정보 보정 필요
- (발급대상 원칙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격결정 대상자에 조회되는 경우) 아동보호치료시설 입·퇴소 아동의 경우 자격결정 대상으로 조회되더라도 자격결정을 하지 않도록 요청
 - 단, 가정위탁·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던 아동이 보호치료시설로 전원 후 연령 도래로 퇴소한 경우 또는 보호치료시설로 최초 보호조치 된 후 가정위탁·아동양육 시설·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되었다가 연령도래로 보호종결된 경우에는 보호종료확인서 발급대상으로 자격결정 필요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시 확인사항

- (확인사항) 대상자별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시 아동정보, 보호종료 정보, 담당자 정보 등이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전자결재 요청 및 자격결정 완료
- ◎ (보호종료 정보) 보호결정/변경 및 종결에 입력된 해당 아동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
 - (입소일) 보호결정/변경(탭)의 최초(1차수) 보호조치 일자가 자동 연동됨
 - * 최종 보호종료된 시설에 입소한 일자가 아니라 해당 아동이 최초로 보호조치된 일자를 의미함
 - ** 1차수 조치일자가 최초 보호조치된 일자가 아닌 경우(행복e음상 등록일자, 전원조치 일자, 사례이관 일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아동카드 확인 등을 통해 정확한 최초 보호조치 일자로 변경한 후 자격결정
 - (퇴소일) 종결(탭)의 종결일자가 자동 연동됨



● (문의사항)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절차상 문의사항, 시스템상 오류 발생 시 행복e음 복지광장으로 무의

Q&A

보호종료확인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데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 대상자 현황에 조회가 안 되거나 자격결정 대상자가 아니라고 팝업이 뜨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사례1) 아동보호서비스관리 보호결정/변경(탭)의 보호유형이 "입양-입양 전 보호"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대상자의 어느 한 차수의 보호조치결정 정보가 입양으로 되어 있다면 보호유형을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로 변경한 후 자격결정 가능
- (사례2) 아동보호서비스관리 종결(탭)의 종결사유가 "타 시·군·구 보호시설로 전출"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18세 이후 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되었어도 시스템상 자격결정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사유를 원가정복귀, 연령도래에 따른 퇴소 중 해당되는 사유로 변경한 후자격결정 가능
- (사례3) 아동보호서비스관리 보호결정/변경(탭)에 시설 정보가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시설명, 시설유형(아동복지시설)을 입력한 후 자격결정 가능
- (사례4) 아동보호서비스관리 보호결정/변경(탭)과 종결(탭)에 관련 정보가 모두 저장 처리되어 있어야 함. 임시저장만 된 경우 자격결정이 불가하며, 반드시 저장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발급 자격 결정 가능
- (사례5) 타 시·군·구에서 사례이관된 대상자 정보가 행복e음 아동보호서비스통합대상자관리 시스템 상으로 이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이관받은 시·군·구에서 자격책정이 불가. 이 경우 ① 기존 시·군·구에서 자격결정을 완료하거나 ② 시스템상 정보 이관 후 자격결정 가능



입소일, 퇴소일이 잘못 기입된 상태로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을 완료했거나, 대상자가 아님에도 자격결정을 한 경우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 (전자결재 신청~완료 전) 전자결재 완료 전이라면 개별 대상자 자격결정 화면의 '전자결재 취소' 버튼을 통해 결재 상신 취소 가능
- (전자결재 완료 후) 이미 자격이 책정된 경우 자격결정 대상자 현황 화면에서 '중지' 버튼 선택 후 전자결재 절차를 완료하면 기존 가격결정 정보 삭제됨
 - ⇒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 화면에서 입소일, 퇴소일 등 정보 수정 후 다시 자격결정 절차 진행 가능



자격결정 화면에서 시설 정보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발급 자격결정 화면에서 시설검색 시 공란, 대문자, 소문자까지 구분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설명 입력 필요
 예) 정확한 시설명: '세종보건복지부의집' ○ → '세종 보건복지부의 집' 입력 시 검색 X



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주소가 잘못 연동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담당자 기관주소 검색, 수정 기입이 가능하므로,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주소가 잘못 연동된 경우 주소 검색 팝업을 통해 정확한 주소로 입력



보호종료확인서의 입소일(보호시작일), 퇴소일(보호종료일)이 반드시 정확해야 하나요?



- 대상자의 전체 보호기간이 특정 지원 사업의 자격조건과 연관되는 경우, 보호종료확인서로 대상자가 해당 자격에 부합하는지 일차로 확인됨
- 다만, 현 시점에서 보호기간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원 사업은 자립수당과 병무청 병역 면제(시설 보호 5년 이상)가 있으며, 보호종료확인서와 무관히 ① 자립수당은 시·군·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지급하며, ② 병무청 병역 면제의 경우 병역법 시행규칙상의 별도 서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대상자 현황에 자격상태는 '책정'이나 전자결재 여부는 '미처리'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이 경우 사례이관된 이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다른 시·군·구에서 해당 대상자에 대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업무를 완료한 상태임
- 대상자의 자격상태가 "책정"인 경우 별도로 자격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됨



보호종료확인서의 정보를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과 자립수당은 관리 시스템이 상이하므로 자립수당은 확인서 발급 자격결정과 무관히 시·군·구에서 지급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여 별도 지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정·지급



조기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보호종료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 조기보호종료아동은 보호종료확인서 자격 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시스템 상 보호종료 확인서 발급이 어려움
- 따라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정보(보호기간 등) 조회 후 보호종료확인서 수기 발급 필요
 - * 보호종료 확인서 내에는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 직인 필수
 - ** '20년 이전 보호종료로 인한 시스템 미등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기관장 명의의 직인 필수

V

입양기관 현황

(2025년 4월 현재)

			(20201 4)	/	
기관명	B	주소	전화번호	비고	
	홀트아동복지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02-331-7033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20-5	051-468-4576		
홀트아동복지회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59, 2층	053-756-0183		
	충청사무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329	042-586-1983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간석동) 홀트인천복지센터 3층	032-424-0145	보	
	대한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1	02-552-7420	건 복	
대한사회복지회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 62	051-621-7003	지 부	
네인사외국시외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06	053-756-1392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4	062-222-9349	허 가	
	동방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02-324-0862	기 관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 81, 304호	051-469-5586	_	
동방사회복지회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478번길 8-7, 1층	032-502-2226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8, 2층	042-526-3129		
	경기지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883번길 70	031-442-7750		
성가정입양원	_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242	02-764-4741		
광주영아일시보호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6	062-222-1095	시 · 도	
꽃동네 천사의 집	_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12-47	043-879-0290		
제주국내입양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근내길 42	064-758-0845	허 가 기 관	

^{*}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는 국내입양, 국외입양 업무를 모두 수행하며, 나머지 입양기관은 국내입양업무만 수행(한국사회봉사회, 자비아동입양위탁소, 한빛국내입양상담소 - 입양알선 업무 중단)



VI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현황

(2025년 2월)

			(2025년 2월)	
시·도 (수행기관)	주소	연락처	이메일	
서울특별시 (서울아동복지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02-2226-1524	sjarip@sjarip.or.kr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아동복지협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제로27번길 34, 3층	051-441-7006	busanjarip@hanmail.net	
대구광역시 (대구YWCA)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1길 22, 3층	053-243-0090	dgyjarip@hanmail.net	
인천광역시 (한국아동복지협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601호	032-204-4279	injarip@inchild.org	
광주광역시 (광주아동복지협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62-2, 1층	062-672-1930	gj1930@naver.com	
대전광역시 ((사)대전광역시()동복지협회)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8,(선화동, 에이스퀘어) 305호	042-242-5726	djjarip5726@naver.com	
울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 봉석재단)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41, 대공원코오롱파크폴리스 상가 208호	052-265-5636	jarip5636@naver.com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자법인 누리온복자재단)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성로 239	044-867-2056	sjjarip@daum.net	
경기도	(남부)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21, 태보빌딩 4층	1566-2714 031-346-6994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북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42번길 31-13, 4층 * '24.3월~4월경 이전 예정	031-522-6491	ggjarip@ggjarip.or.kr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사비스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25, 2층	033-261-2340	gwjarip@gangwon. pass.or.kr	
충청북도 (한국아동복지협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407호	043-238-5393	cbjarip@daum.net	
충청남도 (충남아동복지협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2층 217호	041-541-6553	cnjarip21@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65, 301호	063-714-3329	jeonbukjarip@gnk.or.kr	
전라남도	(순천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길 21, 5층	061-742-4908	iniarin@daum nat	
(전남아동복지협회)	(목포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41번길 9, 5층	061-282-4908	jnjarip@daum.net	
경상북도 (경북아동복지협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7, 상가동 306호	054-441-9942	kbjarip@naver.com	
경상남도 (굿네이버스 경남중부지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45, 현대썬앤빌 C동 209호	055-265-7942	changwon1@gnk.or.kr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 삼인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5	064-759-0846	jjadongjarip@hanmail. net	

VII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안내서

01 위탁아동의 친권 및 후견

기 친권

1) 친권의 의의(「민법」 제911조, 제913~916조, 제920조)

-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갖게 되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이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재산의 보전을 위해 아동의 복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의 친권을 행사해야 함
-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 신분상 행위에 대한 대리권 및 동의권
- 자녀 재산의 관리권 및 법률행위의 대리권

2) 친권의 상실 및 제한

- 친권의 상실 및 제한 사유(「민법」 제927조의2제1항,「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친권자의 친권 남용, 아동학대,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을 상실 또는 제한시킬 수 있음
 - 친권자의 이익을 위한 자녀의 재산 처분 행위
 - 자녀에게 적절한 음식이나 의복 등 방임
 -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을 포함하는 아동학대
 - 친권자의 행방불명, 장기 의식불명, 중병 등 친권 행사가 불가능한 중대 사유
 -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거부
 - 자녀 취학거부
 - 자녀를 범죄나 성매매 등으로 유도
 - 자녀와 친밀한 유대관계에 있는 제3자와의 만남 금지

- ◎ 친권의 상실 및 제한 종류
 - ① 친권의 상실(「민법」제924조)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
 - ② 친권의 일시정지(「민법」제924조제1항)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자의 친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
 - ③ 친권의 일부제한(「민법」 제924조의2)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친권자의 친권 중 거소지정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 일부 권한에 대한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
 - ④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민법」 제925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키는 것
 - ⑤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사퇴(「민법」제927조제1항) 친권자가 장기간의 국외 체류, 중병 등으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것



1)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민법」 제928조, 제932조, 「아동복지법」 제19조)

● 미성년 자녀의 보호·교양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인 친권자에게 부여되지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제한으로 보호 공백이 생겨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를 위해 미성년후견제도를 둠

2) 미성년후견인 선임 방법

- 미성년후견인 인원은 한 명으로 제한(「민법」 제930조제1항)
 - 「민법」상 유언에 따른 지정후견인
 - 「민법」상 선임되는 후견인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상 후견인

3) 미성년후견개시 사유(「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제927조 제1항, 제928조)

- 친권자 사망
-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제한 선고
- 친권자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4) 후견인의 대리권(「민법」 제938호제1항)

● 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가정법원은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음

5) 후견인의 결격 사유(「민법」 제937호)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및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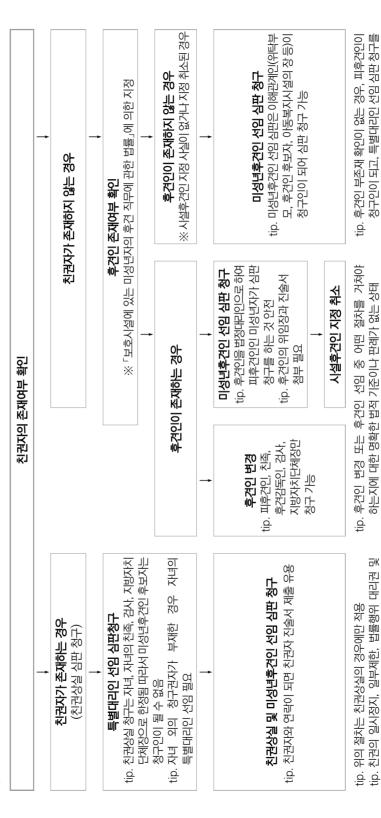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사건 진행 절차

K K

진행 절차 개요

※ 본 미성년후견인 절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1) 세부진행 절차



tip. 심판 중 시설후견인 지정사실이 확인되면, 새로이 심판 청구 진행 필요

하는 것이 안전

재산관리권 사퇴의 경우, 절차 상이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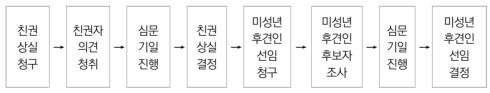
2) 친권자 존재여부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친권자의 친권행사 의사 확인, 청구절차 및 유형과 관할 법원 결정 등을 위해 친권자 소재 파악 우선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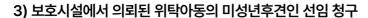
- 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친권자의 친권행사 의사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친권상실 청구는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청구인이 한정됨
 - ① 친권자 소재 파악이 가능한 경우
 - 친권자의 현주소지 관할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과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 친권자의 진술서 제출은 절차상 유용
 - ② 친권자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 장기간 미성년 자녀를 유기한 사실을 면밀히 확인
 - 위탁아동의 현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친권자의 현주소지 확인(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이송으로 인한 소송기간 장기화)
 - ③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 병합형



- ※ 미성년자가 청구인인 경우, 후견인 후보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함께 진행
- ※ 소송기간 단축 등의 사유로 병합형으로 주로 진행
- 분리형



- ※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일방이 사망하고 친권이 상실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생존한 부 또는 모가 친권자 지정 청구가 가능한 기간 이후 미성년후견인 선임 가능(「민법」제927조의2)
- ◎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보호시설 입소 후 후견인이 미지정된 사례, 시설 간 이동이 잦은 사례 등 상황에 따라 예외사례가 존재하므로, 과거 입소했던 보호시설을 통해 후견인 지정여부 필히 확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상 보호시설의 유형에 따라 후견인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미성년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후견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	흐겨 진무에	과하 번류〉
-------------	---------	--------	--------

보호시설의	종류	미성년후견인	지정여부 확인 방법	지정취소 방법
국가나	고아인 미성년자	보호시설의 장 (법 제3조제1항)	위탁아동의 기본증명서에 지정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입소한 적 있는 모든 보호시설마다 확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취소 (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	보호시설의 장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조제3항, 시행령 제3조제2항)	위탁아동의 기본증명서 후견인 기재사항 확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허가의 취소를 청구 (법 제7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고아인 미성년자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 (법 제3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1항)	위탁아동의 기본증명서에 지정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여부 확인 ※ 보호시설의 소재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불일치하는 경우 유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취소 (법 제7조)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여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조제3항,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위탁아동의 기본증명서 후견인 기재사항 확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허가의 취소를 청구 (법 제7조)

- 시설후견인 지정 취소 및 허가 취소와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 후견인이 있는 경우 ①미성년후견인 지정 취소 또는 허가 취소 후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②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③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지정 취소 또는 허가 취소 3가지의 절차에 대해 각 법원의 견해 차이가 있음
 - 입법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판례가 누적되어야 그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임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3가지 절차를 진행한 사례들이 있으며, 해당 미성년후견인 선임사건은 모두 인용되었음

4) 미성년후견인 선임사건 구비서류

- 최대한 명확하고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의 보정명령 최소화 및 소송기간 단축
- 지자체, 아동보호시설,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 필요

번호	구분	작성자 및 발급대상자	발급기관	비고
1	법률구조신청서 1부	위탁부모 (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위탁부모 (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 법률구조기관에 서식 문의
3	소송구조계약서 1부	위탁부모 (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4	본인 진술서 1부	위탁부모 (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위탁아동 양육 에피소드 중심으로 행복했던점, 힘들었던점, 후견인이 꼭 되어야 하는 사유 등 감동적이고 생생하게 작성(최소 10줄 이상) 후견인 후보자와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각 1부 작성 하단에 이름 명시 및 막도장 날인
5	후견인 보수 포기서 1부	위탁부모(후견인 후보자)	직접 작성	• '(후견인 선임, 입양, 성변경)과 관련한 모든 보수를 포기합니다.'를 자필로 작성 • 하단에 이름 명시 및 막도장 날인
6	증인 진술서 1부	후견인 후보자의 배우자, 사례관리자 등		 후견인후보자를 후견인으로서 적절한 이유등을에피소드 중심으로 생생하게 작성(최소 10줄 이상)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7	사건본인 의견서 1부	13세 이상인 위탁아동		 후견인후보자가 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 작성 자필 작성 학생증 사본 첨부
8	친부모 동의서 각 1부	친부모(상대방)		 후견인후보자가 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 작성 친부모의 친권상실, 친권사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필히 안내 친부모 양쪽 각각 구비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수감 중일 경우, 수감시설 통해 수감증명원 및 무인증명서, 신분증 앞뒷면 사본 제출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위탁부모 (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위탁아동(사건본인), 친부모(상대방)	시(구)·읍· 면 사무소	• 후견인 후보자와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각 1부 구비 • 친부모 연락두절로 친부모 및

번호	구분	작성자 및 발급대상자	발급기관	비고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위탁부모 (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친부모(상대방)		
11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위탁부모 (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위탁아동(사건본인), 친부모(상대방)		위탁아동 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추후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보완
12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주소변동내용 포함)	위탁부모 (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위탁아동(사건본인), 친부모(상대방)		가능 ・입양사건의 경우, 위탁부모 양쪽 각 1부 구비
13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주소변동내용 포함)	위탁부모(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위탁아동(사건본인), 친부모(상대방)		
14	가정위탁확인서 1부	위탁아동(사건본인)		• 후견인 후보자명을 포함하여 발급
15	수급자증명서 1부	위탁아동(사건본인)		
16	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위탁부모 (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배우자	한국 신용정보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발급
17	범죄경력조회서 각 1부 (생략가능)	위탁부모 (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배우자	경찰서	
18	기아발견조서 1부	위탁아동(사건본인)	경찰서 및 시(구)·읍·면 사무소	 무연고 아동인 경우만 제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받아 제출 기아발견조사가 없는 경우, 무연고를 증빙할 수 있는 아동카드 등으로 대체 제출
19	이전에 지정된 후견인의 소송위임장	이전에 지정된 후견인	직접 작성	• 소송진행 이전 후견인 지정취소하지 않는 경우 구비
20	후견인 지정확인서	위탁아동(사건본인)	시(구)·읍·면 사무소	• 가정위탁지원센터가 후견인에게 발급 요청하여 제출 • 소송위임장은 현후견인이 변호사에게
21	후견인 변경동의서	이전에 지정된 후견인	직접 작성	소송을 위임하고자 작성 • 후견인변경동의서는 아동의 후견인이 후견인후보자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 작성 • 후견인의 인감도장 및 시설 직인 날인
22	후견인 지정취소서	위탁아동(사건본인)	시(구)·읍·면 사무소	• 소송진행 이전 후견인 지정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

번호	구분	작성자 및 발급대상자	발급기관	비고
23	후견인 진술서	이전에 지정된 후견인	직접 작성	 가정위탁지원센터가 후견인에게 발급 요청하여 제출 후견인 진술서는 후견인을 취소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인사 이동, 아동 퇴소 등) 후견인의 인감도장 및 시설 직인 날인
24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후견인 후보자	가정법원 또는 전자후견등 기시스템 (http://egdrs .scourt.go.kr)	
25	막도장	위탁부모(후견인 후보자)		• 재판 관련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법률구조 사례

※ 미성년후견인 선임 법률구조 사례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1) 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 양육을 회피한 친부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8년간 실질적으로 양육한 위탁부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

진행과정

위탁부모는 2009년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아동(남, 18세)을 위탁받아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다. 위탁아동의 친부모는 2000년 이혼하였고, 이혼 후 각자 재혼하였으며, 친권자로 지정된 친부는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위탁아동의 양육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위탁아동은 조부모에게 맡겨졌으나 조부모의 아동학대로 결국 위탁가정에 위탁되었다.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며 많은 사랑을 쏟았고, 위탁아동 또한 위탁부모를 친부모처럼 따르고 의지하고 있다. 위탁아동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하거나 핸드폰을 개통할 때에 친권자인 친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친부와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친부에 대한 친권의 상실과 위탁부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여 인용되었다. 본 사건은 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 연락 두절된 친모의 친권을 일부제한하고 위탁모인 외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진행과정

위탁모(여, 45세)는 위탁아동(남, 7세)의 외조모이다. 위탁아동의 친모는 위탁아동을 임신했을 때 위탁아동을 입양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출산 후 생각이 바뀌어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친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위탁아동을 홀로 집에 유기한 채 집을 나갔고. 휴대폰 번호까지 바꿨다. 외조모는 그날로 위탁아동을 집으로 데려와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3월에는 위탁아동의 위탁모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모가 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아동의 용돈통장 개설 조차 할 수 없었다. 친권자 마저 연락 두절되어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향후 위탁이동의 양육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결과] 하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친모의 친권 중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에 관련된 권한의 제한과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키고, 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줄 것을 신청하여 인용되었다. 본 사건은 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1년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2)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소재불명으로 친권이 상실된 친부모 대신 5년간 실질적으로 양육한 위탁모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한 후 시설미성년후견법상 후견인 지정취소

진행과정

위탁부모(남 50세. 여 47세)는 직장에서 후원하는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위탁아동(9세)과 만나게 되었다. 위탁아동의 친부모는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이미 친권이 상실되었고, 위탁아동은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다. 위탁부모는 2014년부터 위탁아동과 인연을 맺은 후 5년째 양육하고 있으나. 법정대리권이 없어 아동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병원치료를 받는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위탁부의 해외발령이 예정되어, 여권 발급을 위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결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던 중, 친부모의 친권은 이미 상실되었으나 입소했던 보호시설의 장이 시설미성년후견법상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우선 위탁모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다. 이후 해당 시설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존 시설미성년후견법상 후견인의 지정취소를 요청하여 절차를 완료하였다. 본 사건은 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6개월간이 소요되었다.

● 무연고 아동의 시설퇴소로 시설후견인이 종료된 후, 보호 중인 위탁부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진행과정

위탁아동(여 8세)은 무연고 아동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였다. 위탁모(여, 46세)는 영아원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동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2014년 11월, 아동이 시설을 퇴소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위탁모가 가정위탁을 하게 되었다. 시설 퇴소로 시설미성년후견법상 후견인은 종결되었고, 위탁부모는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결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줄 것과 위탁모를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다. 본 사건은 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6개월이 소요되었다.
-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던 시설보호 아동을 위탁책정 후, 시설후견인에서 위탁부모로 후견인을 변경

진행과정

위탁아동(남 4세)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어 아동일시보호소에 보호되었다. 일시보호소 봉사자였던 위탁모 (여, 48세)는 아동을 40일정도 가정양육하였다. 일시보호소를 떠난 아동을 잊지 못한 가족들은 아동을 가정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중에도 후견인은 여전히 보호시설장으로 되어있어. 응급수술, 해외여행 등에 불편이 많았다.

결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을 시설미성년후견법상 후견인으로 지정된 시설장에서 위탁부모로 변경하여 선임해줄 것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다. 본 사건은 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6개월이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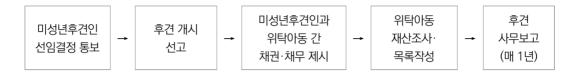


미성년후견인 선임결정 이후 절차



03

기 미성년후견인 선임결정에 따른 임무 및 절차



1)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문 수령

- 법원이 미성년후견인 결정문을 후견인(위탁부모) 주소지로 송달
- 이후 절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개별 안내

2)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

- 미성년후견인이 선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후견개시 신고서, 판결문(심판문) 등본 및 확정증명원(법원 민원실에서 발급)과 함께 후견개시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 제80조, 제82조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2018.10.23. 발령, 2018.11.16. 시행) 양식 16]
- 이후, 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에 등재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3) 미성년후견인과 위탁아동 간의 채권·채무 제시(「민법」 제942조제1항, 제2항, 제944조)

- 미성년후견인과 위탁아동(피후견인) 간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재산목록의 작성 완료 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
-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위탁아동(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 또한 채권·채무 제시

4) 재산조사와 목록 작성(「민법」 제942조 제1항, 제943조, 제944조)

-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2개월 이내 피후견인(위탁아동)의 재산 목록 작성
- 법원의 허가를 통해 기간 연장 가능
-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필요

- 재산목록은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www.gov.kr) 또는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http://www.fss.or.kr) 조회결과를 활용하여 제출
- 미성년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 긴급상황 이외 재산에 관한 권한 행사 불가 및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5) 후견사무보고

- 후견개시 심판확정일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피후견인(위탁아동)에 대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상황을 법원에 보고
-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시. 법원이 엄격한 감독 이행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https://pro-se.scourt.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사건 번호와 피후견인 이름으로 기본 사건정보를 조회하여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후, 직접 법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에서 첨부파일로 제출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홈페이지에서 후견사무보고서 항목별 용어, 작성법, 작성사례 등에 대한 동영상 및 가이드 확인 및 서식 다운로드 가능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

- 미성년후견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후견사무 처리 의무 부여(「민법」 제681조. 제956조)
-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 보호를 위해 후견사무 감독

1) 미성년자(위탁아동)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친권 상실 등)

- 미성년자(위탁아동)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거소지정권, 징계권 등 법정 대리인으로서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

2) 친권자는 있으나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946조)

- 친권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한정하여 미성년에 대한 후견 권한을 행사

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민법」 제945조, 제950조)

- 친권자가 정한 교육·양육방법 또는 거소 변경,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 취소·제한,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 위탁하는 행위
-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 부담하는 행위, 소송 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현 권리의 득실 변경 목적의 행위
-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 포기 및 상속재산 분할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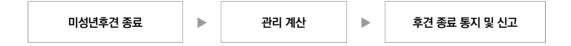


■ 미성년후견 종료

1) 미성년후견 종료 사유(「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제928조, 제939조, 제940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 피후견인의 사망 또는 성년 도달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피후견인의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 피후견인이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 미성년후견인 사망, 사임, 변경

2) 미성년후견 종료 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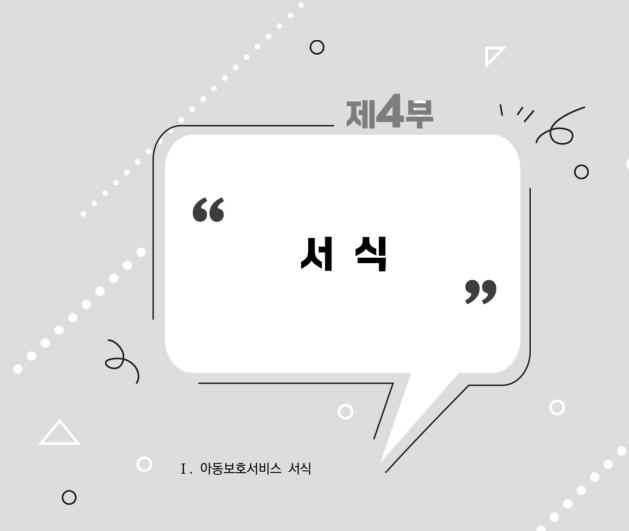
- 관리 계산(「민법」제957조 제1항, 제958조 제1항, 제2항)
 -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임무가 종료 1개월 이내 피후견인(위탁아동)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 연장 가능
 - 미성년후견인(위탁부모)과 피후견인(위탁아동) 상호 간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 부가
 - 미성년후견인(위탁부모)이 자신을 위해 피후견인(위탁아동)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위탁아동)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

- ◎ 후견 종료 시 긴급사무의 처리(「민법」 제691조 및 제959조)
 -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 처리 지속할 의무가 있음
- ◎ 후견 종료 통지 및 신고
 - 후견 종료 1개월 이내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와 함께 미성년후견 종료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2018. 10. 23. 발령, 2018. 11. 16. 시행) 양식18]
 -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 제외
 -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법률구조신청서〉

		법 률 구	구조 신	청 서			
	성 명	※ 위탁부모 성명	연령		직업		
	주 소						
신		본인 (핸드폰)					
청		(집)		(이메일)			
0	전 화	비상연락망1.					
인		비상연락망2.					
		비상연락망3.					
	자 산				월수입		
상 대	성 명	※ 친권상실되는 친권자 성명	연령		직 업		
방	자산 및 월수입		주소 혹	은 연락처			
비	신청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 선임' 혹	은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	인 선임'기	재	
고	특이사항	※ 추가 참고사항 기재					
법률	구조를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인)
한국기	·l정법률상담소	귀중					





제4부 서 식

○ 아동보호서비스 서식

01 아동보호전담요원 필수 서식(작성방법 포함)

구분	서식NO	서식명	관련법-호
	서식 1	접수상담지(접수상담)	
	서식 2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2-1	입양대상아동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3	일시 보호 의뢰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
	서식 4	욕구조사표	
	서식 5	위기아동 조기발굴 체크리스트	
	서식 6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서(친권 관련)	
	서식 6-1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서(상속 관련)	
공통	서식 7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8	친부모 상황 점검표	
	서식 9	아동 상황 점검표	
	서식 10	아동보호동의서	
	서식 10-1	분리보호(저원)에 관한 설명확인 및 아동동의서	
	서식 11	개별보호·관리계획서	
	서식 12	아동카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4호
	서식 13	서비스 제공 계획서	
	서식 14	면접교섭 일지(결과보고서)	
	서식 15	양육상황 점검표	
	서식 16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구분	서식NO	서식명	관련법-호
	서식 16-1	보호연장아동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	
	서식 16-2	재보호조치 신청서	
	서식 16-3	재보호조치 신청 위임장	
	서식 17	가정 복귀 점검표	
	서식 18	가정복귀 점검 체크리스트 〈참고용〉	
	서식 19	가정 복귀 의견서	
	서식 20	종결심사서(사례결정위원회 상정)	
	서식 21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연령도래)	
	서식 21-1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비학대/조기종료)	
서식 22 양육계획서(보호자용) 서식 23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양육계획서(보호자용)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서식 24	사례회의록	
		재보호조치 의견서	
		보호결정(변경, 종료) 통지서	
	서식 26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의3
	서식 27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의4
	서식 28	보호종결 사유별 사후관리 점검표	
	서식 29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 30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
	서식 31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
	서식 32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
	서식 33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
가정	서식 34	위탁부모 추천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1호
위탁	서식 35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2호
	서식 36	소재불명조사복명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2-1호
	서식 37	가정위탁가족 동의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3호
	서식 38	아동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 정보조회 동의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3의1호
	서식 39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의2
	서식 39-1	가정형 보호 추진 기록지	
양육	서식 40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1호
시설	서식 41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2호

구분	서식NO	서식명	관련법-호
	서식 42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5호
	서식 43	입양동의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8호
	서식 44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2022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7호
0101	서식 45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2022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8호
입양 아동	서식 46	입양 상담 후 원가정양육 결정 아동 모니터링 결과	2022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8-1호
*10	서식 47	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조치 현황	
	서식 48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2022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13호
	서식 49	입양동의 철회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9호
	서식 50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2022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20호
	서식 51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	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 52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2호
유기 실종	서식 53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2호의2
아동	서식 54	실종아동등 인수확인서	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4호
	서식 55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령 별지 1호
	서식 56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령 별지 3호
	서식 57	피해아동 보호계획(변경)서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2 서식1호
	서식 58	가정복귀 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피해아동)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2 서식5호
학대	서식 59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아동보호전담요원용)	
피해	서식 60	가정환경 조사서(아보전용)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2 서식9호
아동	서식 60-1	가정환경 조사서(일시보호)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2 서식14호
	서식 6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의심 체크리스트	아동분야사업안내2 서식23호



05

아동보호전담요원 필수 서식

서식 1 접수상담지(접수상담)

TAY THE								
0,01		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프	(왕0) 흑#		
실거주지					어디서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²² (보호자)	(+	
그 의뢰자 정보								
의뢰자 성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후대번호		
삮					대상자와의 관계			
□ 쨤 잳								
접수구분	마단순안내 마요청접수	정접수	접수일자		접수유형			
신원	미신원확인 미신윤	미신원불명 182신고	라 샹 건	발생일자		발생장소		
2구수형	ㅁ부부중심가구 ㅁ ㅁ공동체가구	미혼모부가구 미조손가구 미기타()		ㅁ한부모가구 ㅁ소년소녀가구	산	ㅁ장애인가구	마다 하기	ㅁ북한이탈주민가구
주거구분	ㅁ자가 ㅁ전세	ㅁ월세 ㅁ임	미임대주택 미무상임대	개 기타				
	마유기 미미혼부	ㅁ미혼부모·혼외자 ㅁㅁ	미미아 미가출 마	ㅁ비행·부랑 ㅁ0동학대		ㅁ보호자 빈곤·실직 ㅁ	ㅁ보호자 사망	미보호자 질병
	ㅁ보호자 수감 ㅁ	ㅁ부모 이혼 등 ㅁ보호출산	그보호출산 미기타					
바 되는 어디	* 재보호조치로 인	한 상담 시에는 7	인한 상담 시에는 기타(재보호-대학 재학 및 준비, 직업훈련·교육, 장애·질병, 심리·정서·경제·주거 어려움 등, 지능지수가 71이상	학 및 준비, 직업훈련	·교육, 장애·질병,	심리·정서·경자	il·주거 어려움 등	 지능지수가 71 이상
	84이하인 경우 택1)로 작성	랙1)로 작성						
주요문제	□안전(학대, 방임, □사회적 관계(친인	기타 안전)의 문 착, 이웃, 동료관	ㅁ안전(학대, 방임, 기타 안전)의 문제 ㅁ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ㅁ일상생활유지 문제 ㅁ가족생활 문제(가족관계, 보육 간병 ㅁ사회적 관계(친인척, 이웃, 동료관계 등) ㅁ경제적 문제 ㅁ교육 및 학습의 문제 ㅁ취(칭)업 및 직무수행 ㅁ생활환경 문제	건강 문제 ㅁ일상 라제 ㅁ교육 및 흐	t생활유지 문제 1습외 문제 ㅁ취(기가족생활 문제 청)업 및 직무-	(71족관계, 보육 수행 미생활환경	· 간병 등) § 문제
	ㅁ법률 및 권익보장 문제	강문제 미기타						
접수내용								
접수결과	ㅁ아동보호서비스 집 ㅁ타 서비스 및 사	· 접수 (ㅁ일시보호필요) 사례관리 연계 (ㅁ읍·면·동 서비스		ㅁ통합사례관리(희망) ㅁ아동통합사례관리(드림) ㅁ아동학대(의심))	ㅁ아동통합사례	과리(드림) ㅁ(가동학대(의심))	
접수자 의견								
개인정보활용동의	ㅁ동의 (ㅁ동의서 침	첨부 ㅁ유선/구두)	두) 미동의					
접수상담번호	A 나			쉬	巜			
ر بر	차			짞	담당자			

◎ 작성방법

작성 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작성시기	- 보호자 의뢰 등 보호대상아동 발굴 시(1일 이내)
작성목적	- 아동과 가정의 문제를 통해 보호 필요 및 필요 서비스 여부 파악
작성방법	- 전화상담, 내방, 가정방문 등 통하여 접수상담 작성(복귀 후 시스템 입력) ※ 읍·면·동 및 드림스타트, 원가정외 보호기관에서 초기상담을 실시 후 시·군·구에 의뢰 가능
활용방법	- 아동의 보호조치 여부, 보호유형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항목	작성내용
대상 아동 정보	대상자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아동, 보호자), 전화번호, 주소	• 대상아동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을 기록 * 주민등록주소지와 다를 경우 실거주지도 함께 기록 *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관리 전산번호 기입
의뢰자 정보	의뢰자 성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휴대번호, 주소, 대상자외의 관계	• 아동보호를 의뢰한 사람의 정보 기록(사례이관 전 담당자의 정보 등)
	접수구분, 접수일자, 접수 유형	• (단순안내) 단순서비스, 읍·면·동으로 이관 • (요청접수) 아동보호서비스 접수결과와 연관 • 지역사회기관 방문, 가정방문, 내방, 전화 선택
	신원, 182신고, 발생일자, 발생장소	• 유기아동일 경우 해당 정보 기록(아동카드 정보)
접수 정보	가구유형	현 거주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가구유형을 선택
	주거구분	• 자가, 전세, 월세, 임대주택, 무상임대, 기타 선택
	보호의뢰 사유	• 유기, 미혼부모/혼외자,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빈곤/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 선택(중복체크 가능) ※ 보호출산으로 의뢰된 아동은 보호의뢰 사유 자동 선택

•• -	
항목	작성내용
주요문제	 주요문제에서 아동의 보호자 관련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 안전(학대, 방임, 기타 안전)의 문제(가족구성원 또는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기초적 신변보호 상의 문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타 가족 내외로부터의 안전의 위협이 있는 경우 기타 가족 내외로부터의 안전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로 인한 생활상의 문제) 심각한 건강문제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신건강, 자살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얼상생활유지 문제(기능적 및 수단적 일상생활유지상의 문제) 일상(식사, 용변처리, 옷 입기, 세탁, 몸 씻기, 시장보기 등)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변관리나 일상생활유지 기능(전화걸기, 교통수단이용, 복약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보통의 외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족생활 문제(가족관계, 보육, 간병의 문제) 부부 부모 자녀 간 갈등이 있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 가지증생활 문제(가족관계, 보육, 간병의 문제) 부부 부모 자녀 간 갈등이 있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 자석양육 및 보육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돌봄 및 간병 관련 보호부담의 문제가 있는 경우 사회적 관계(친인척, 이옷, 동료관계 등) 문제(친지, 이옷 및 소속집단 내에서의 관계형성 및 유지상의 문제) 천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형성에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 비공식적 지지망이나 지역사회 지지체계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비공식적 지지망이나 지역사회 지지체계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술적 육구(의식주)의 충족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 및 자산관리상의 문제) 기초적 육구(의식주)의 충족에 필요한 가원부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자산취득 및 관리(저축, 부채 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자산취득 및 관리(저축, 부채 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자산함을 및 권구수행상의 문제(원) 참업상의 문제 취(창업 및 직무수행상의 문제(원) 참업상의 문제 의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초교육 습득상의 문제 위(창업 및 직무수행상의 문제(취업·창업상의 문제) 기술, 경력, 능력부족 등으로 취(칭)업에 부담이 있는 경우 자녀양육, 돌봄, 건강문제 등으로 취(칭)업이 어려운 경우 구직 및 직업 활동의 불안정, 비정규성 등의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생활환경 문제(거주지의 내외부적 환경 및 권익보장상의 문제) 주거 및 주거환경의 문제가 있는 경우 나 등의 등과 관련하여 권리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비용 및 전역보장 문제(가족구성원의 권익보장상의 문제) 법률 및 권익보장 문제(가족구성원의 권리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항목	작성내용
접수내용	• 의뢰자 및 대상아동이 요청하는 주요 호소하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기록 * 피면담자가 하는 말을 중심으로 기록 (예 : 친생모는 아동을 입양보내고 싶다고 함)
접수결과	 아동보호서비스(분리보호필요아동), 서비스 및 사례관리 연계(읍·면·동 서비스,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아동통합사례관리대상(드림스타트), 피해아동) 선택 타 서비스연계·사례관리 연계일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례의뢰 단순 정보제공으로 문제 및 욕구해결이 가능한 경우 또는 서비스 거절, 상담 거부 등으로 초기 상담이 어려운 경우 단순 안내로 종료
접수자의견	• 일차적으로 대상자 유형 분류의 사유를 기술하고, 향후 사례관리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상담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기술
개인정보활용동의	• 서식2에 대한 여부 기록(접수 유형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여부 체크)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2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관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아동보호서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전화번호, 주소, 개인이력,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상황내용(주거사항, 경제상황), 가족구성, 가족관계, 보호연장정보(실거주 주소, 계좌정보), 아동점검정보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의 보호 서비스 종결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복지대상자 선정 및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기관명 :)	아동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가족구성원 정보 (성명, 연령, 동거여부, 연락처) - 사례관리 정보 (가족력, 개인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로 보호서비스 종결 후 5년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공공기관
- *2. 동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관·법인·단체·시설
- *3. 7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건강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자활 사례관리, 중독 및 정신건강사례관리) 수행기관 및 시설
- *4.「아동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처리 안내]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민감정보(건강정보)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수집 대상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수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ļ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칸 추가 등 서식 변경 가능

○○○ 시·군·구청장 귀하

※ [법정대리인의 동의 관련]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5호)



서식 2-1 입양대상아동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입양대상아동 관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입양 절차 관리 및 사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생년월일, 국적, 주소 및 연락처, 직업, 종교, 재산, 범죄경력, 가족사항, 건강정보 등 입양 특례법 제9조(양자가 될 자격), 제10조(양친이 될 자 격)·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입양 정보의 제공) 에 따른 정보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	입양절차의 진행 및 관리	영구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입양기록 및 전자기록의 보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양대상아동의 입양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양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입양특례법」에 의거 입양절차의 진행 및 관리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법」제10조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절차의 진행 및 관리 아동의 보호 아동·양부모 결연 사후서비스 제공 입양정보공개청구 대응 등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및 연락처, 고유식별정보(주민등 록번호) 등 상기 수집에 동의한 항목	영구 (입양특례법 시행 규칙 제25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입양아동관리 업무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고지 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처리 안내]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입양절차의 진행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8조(민감
관리	외국인등록번호),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양정보의 제공 안내]

제공 기관	제 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제 공 근거
입양 기관	아동권리 보장원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정보, 성별, 건강정보 등) 친생부모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양사유, 입양의 동의에 관한 사항,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등) 양부모정보(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연락처 등)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정보	영구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입양 특례법 시행 규칙」 제23조 (입양 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 수집 대상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수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년 월 일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칸 추가 등 서식 변경 가능

○○○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3 일시 보호 의뢰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일시 보호 의뢰서

u= 0131	성명				주민	<u>l등록</u> 번호		
보호 의뢰 아동	주소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1	주소					전화번호(휴대	대전화번호)	
보호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휴대	대전화번호)	
그 밖의 사항								
「이 동복 지밥	법 시행령」 저	1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기	제8조에 따라 위 아동	통에 [대한 일시 보	<u> 호를</u> 의료	일합니다.
						년	워	일
		٨		시·도지사 수·구청장	인 			
수탁보호	호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피해아동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기	- 상담·조사·사정 과정 중 긴급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목적	-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호자로부터 긴급 분리보호하기 위함 (아동학대, 보호자 부재 등)
작성방법	- 접수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일시보호는 대면 상담 후 결정)
활용방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참고자료

항 목	작성내용
보호의뢰 아동	 아동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아동의 주소 기재 ※ 아동이 일시보호시설로 주소를 옮겼어도 아동의 원 주소지 작성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모두 기재 [확인 가능한 경우 작성]
보호자	-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 기재 예) 친부, 친모, 외조모, 이모, 삼촌 -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과 현재 직업 기재 - 보호자(부, 모 모두 기재)의 주소(실거주지) 기재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기재
그 밖의 사항	-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시설(또는 위탁부모) 기재 - 일시보호가 필요한 구체적 사유 작성 예) 보호자 없이 아동이 가정내에서 방치되어 있어 긴급분리 보호 필요 - 아동의 특이사항(질환, 복용해야할 약, 장애 등)이나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예) 아동이 00질환으로 취침 전 00약 복용해야함

욕구조사표

	0 办分() 办	ф ц П		口怪孙口野对	-		무선생물 마다	연락처										
		미가스:기름보일라	n 연단·화목보일러 n 전기매트·전7 온돌	- 있음 - 기타()		년 개월	'무 ㅁ북한이탈주민7구	四 20 0年										
			羅 隓		- Ku	거주기간	ㅁ장애인가구					휴대전화						
		HZ()	F() F()	()개 왕 광	ㅁ악취/불결		<u> </u>	장애				바						
		台	- 거실 - 구방 - 화장실	미욕실 미화장살·육실	ㅁ협소한공간		07年(AL SD										
벼			사 (라		낊										
	전하다	청 건 바 (만원) 월세 만원)		ㅁ채광부족	0사계획	가구 미공동체7구	결혼상태										
육 구 조 사	연락처		만원) 만원, 월세 급 만원,		il약 ㅁ환기부적절		다 마촌모부/다	동거여부				되 되 보	아동과의 관계					
		가(소유주 :	- 자가(소유주 :	구상임대 기타(무상임대 기판(무상임대 기타(무상임대 기타(라상임대 기타(장임대 (편(무상임대 기타(무상임대 기타(무상임대 기타(- 한바취약	사 선 다 다		전한번호	[0] (NSJ)
		K		미폭염취9 기타(중심가구	중심가구	<u>유</u>			-									
	주민등록번호		를 아 스	(金)	ㅁ노후 미긴급보수필요	마유흥가 마대로변 대	마한부모기무 마부부	수민변호										
		마다	마시대주택·연립마자트마무하가, 움막, 비닐하우스	미여관, 고시원, 쪽방 미기타()	<u>형</u> □	선	0소년소녀7구 (소0 묘0			▶구성원 세부정보	장	주민등록번호					
		_	사고 플		주거상태	주거환경	마산	바게			▶구성원	~~	수					
		H		주거사항			7구유형			가족사항								

									서비스상태			
	<u>——</u>		마						제공기관			
	학교명/학년	생활수준	다음음력	건강상태					제공주기			
									서비스유형			
실거주지주소	ᆙ	월평규 소득	기혼/미혼 사유	미동거 사유	실행상류				급여·서비스명			
									개시일~종료일			
소수	정	전	결혼여부	동거여부	장애유형	디뮤	등록기준지	가정환경 (성장과정)	수혜자			
								대상아동		AHI VOIB		

	3				NE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지	원인제공	立		1	<u> </u>
יוי	₹Г 50 1-	전 당 당 당 당 다 당 다 ()	내양사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02	제공자3	원인3	DI III 전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사
		ᄠ									
		성추행/성폭력								마수대제 10	
	#I¥I_€	- - - - -								양물 오남용 표명적 쇼熊	
	양화 기	靐								의 국	
	! !	후								京 14	
o 웘		<u> </u>								7. 부기력감 15. 송교분세 8. 성격차이 16. 이유 없음	
		ᄠ									
	②7季 <u>2</u> 9年	상 개 기명									
	부의 양	œ박· 교학·								3. 진인적 간 물화 1. Folip 분화	
	방	亦									
		착취									
		신체장애								유전적(선천적)원인 9. 운동 부족	
		일시적 질병 및 상해								사고 10	
	(1) (1) (1) (1)	만성질환								사해 11	
	건강유지	희귀·난치성 질환								한대 13. 정보 부족	
		싊									
		80 80 50 百 1 1								/. <u>스트레스</u> 15. 현긴 비영 8. 잘못된 식습관	
_ <u></u>		환청/환각/망상								1. 음주문제(주정, 알콜중독 등)	
, , ,		자해(자살)행위								2. 약물 오남왕·중독 3. 소트레스	
		약물오남용·중독									
	②정신적	식사거부) (((((((((((((((((((
	건강유지	수면문제								6. 신경증(공활장애·PTSD) 7. 기타 저시진화 이시	
		음주문제								/: 기기 OCE급 기미 8. 치패	
		(수성·과도한 음수· 알콜종독)								9. 성격장애 10. 시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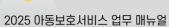
BL BO 다 장			į		Κľ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원인제공	六			자 아
		상 당 당 나	H 公 公 公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수하면	- 사
		상격적 행동 (100년 발표								11. 불안감	
		(씨굼글/!'인녹식 민원제기·폭력행동)								12. 이성문제 13. 과다화 이터네/레이 몸에 미 조토	
		대인기피								<u> </u>	
		은둔/칩거									
		의사소통장애									
		위생관리문제									
		이상한 행동	1								
		불안감									
	-√Γ	식사 및 준비 곤란								1. 신체질병/장애	
		의복착용 곤란								2. 정신질환	
①의식주 관련	뷞	외출 곤란								. 3. 시작상에 1. 시체하야/나호	
일상생활 2년	剪	여물복용 간단	1 1 1 1 1 1 1 1 1 1 1 1							- 국. 단일이기/ 보는 5. 무기력감/의지없음	
		위생관리 곤란								6. 교육 학습 부족	
		(용변처리 등)								상해	
	기	긴급상황 대처 곤란								보호자의 부재(가출 및	
-		여가활동 부족								시간 부족 4.	
②978		비전전하 여기하다									
여 여 여	<u> </u>	[세임 도박 등)								7속의 통제 및 교육 7. 미흡 8.	
		부부강등								실업 12	
		부모자녀 갈등								개 13	
ď		고부갈등								달신 및 /출 14 성격차이 15	
기족 ①관계형성		형제(자매)갈등								배우자 외도 16	
나 지	. `	가족간 관계소원								자녀양육 갈등 17 	
	' `	가족간 관계단절								. '송교 강등 18. 경제적 민관 7고로양보다 10 정보보조	
		가족간 갈등								다문화7구 20	

#나영목 수보면상 내장사 다양물본 고란 노인돌본 고란 한자들본 고란 한자들본 고란 한자들본 고란 한자들본 고란 한자 등로 고리 한다. 그레 현상 이웃간 갈등 이웃간 관계산원 이웃기초생활 어려움 그다 사회생활의 어려움 이기초생활 이 이웃다 바로족 이부비 부족 의부비 부족 의부비 부족 의라의 제납	10分	10대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등등	⊹		· 사 I 아
(2) 작동점 이 (2) 한 전 및 이 (2) 한 전 및 및 사회생활 해결 해결									
(2) 주동됨 (1) 찬인척 및 이웃 간 일소속된 집단 (2) 구청생활 해결 해결						k I			
(소) 1 = 1						10. 시간대까 11 표하요할 .	. 가그의 27. 상대	-	
() 전 생활						 어 보 다 다 다	IJ 		
() 찬인천 및 이웃 간 관계형성 및 사회 등 사회 등 생활 등 생						-			
() 찬인척 및 이웃 간 관계형성 및 사회형성 및 사회생활 및 사회생활 해결 해결 해결 해결 함께 하는데 되다.							(
() 전인 첫 년						1. 신인적 무양무님	n io:	쓰레기 망지	
(2)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2. 내인기피). 성신실반 0 0 0 N 미필	다 다 다	
②소속된 집단 및 사현생활 ① 7 조생활 해결						3. 사건:고급	xi o	마시 기타	
②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1) 조생활 해결						4. 마건/네 5. 외청무 반	بر	7.E.	
②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미기 조생활 해결							_	0	
②소속된 집단 및 사현생활 (1) 조생활 (2) 조생활 (2) 2 (2)						1. 정신질환		- TIT	
						2. 지적장애 2. 디전장애		<u>대전</u> 건수앭 대진	
						5. 독인/포 전에 전 제 제 표		의구영 구선 서밀 7季	
						5. 지원 개		레스 반 레주 반	
						6. 叮逅吕 7. 뫶랰		13. 시호적 지자처계 부족 14. 시간 없음	
						-			
							· 00		
						2. 中位 2. 中位 2. JOEH	9. 저임금/수입		
						3. 신하되다 시 사기 미 한테	10.	10. 부양의무자의	
						. 시간 곳. . 이시전 진.	산래		
						(11.	음을 하다. 	
3 기 의료비 부족								(사망/기출/실종)	
자산관리 능력부재							9.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	/후圃면	
() () ()						3. 3. 4. 3. 9. 4. 3. 9. 4. 4. 9. 9. 4. 4. 9. 9. 9. 9. 9. 9. 9. 9. 9. 9. 9. 9. 9.	10: 전원 11: 작년	S 로 라 로 라	
						바라 바라 사이 사이	도박 12. 의료비과다 쿠재 13. 교육·학습 ¹	. 이료비과다 . 교육·학습· 부족	
과소비·낭비						(소년소년) 7. 근로능력자	7정) 14. FP 1 무재 (명.	1에 의한 세금체납 의도용 등)	

非 20 30 31	5	i i i	1		ĸF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원인제공	江		C C F	아
	5C	장 겨 나	134	제공자1	원이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수쇼현인	사
(-	임기·쓰기·								어어느릭 부족 4	
<u> </u>	(1) / 조시식	파이기 교세								시체적·정시적 작애 5	
√ [□ ;	뺢	수리계산 능력 부족								5. [건지 OCT OST OST TANK AST AST	
iió0	<u></u> ₹0	그 얼 사 대 지 지 지								Г - О	
		유민이 다음									
9		수업료・따스비									
야		이 나가									
(105174	매가르게 대세									
# *	(人) (人) (人) (人) (人) (人) (人) (人) (人) (人)	상급학교 진학의								구시	
₹ 		바									
		무단결석								보오스의 인식/ S. 므과시/이지브좌	
		학업성적 부진									
		실업·실직								1 1 1 1 1 1 1	
		열악한 근로환경								신제·상산적 건성판세 10. 보채	
		저임금								가족 간병부담 12.	
<u> </u>	701	비정규직								자녀 양육부담 13.	
(F ⊝	(영) (교육(영) 원	구직의 어려움	1							사시에게 무시이 다 <u>내</u> 의	
		창업의 어려움								경험 및 경력 부족 16.	
		기술교육의 필요								8. 직업기술/훈련 부족 17. 신체적 장애 O 편한편	
~ 연		취업동기 부족								<	
		잦은 직장 이동								신체·정신적 건강문제 10.	
		반복적인 재취업/								무재 가족 7월 대다	
		장업 실패								/파 신장구급 17. 13. 13. 13.	
(S)	②고용유지	실업상태에 의숙해짐								시시 64十8 - 13. 카시시시 조직생활 부적응 14. 잦은 실패경 때독리 15. 146 기조기	
		취업동기 부족								시키리 경험 및 경력 부족 16.	
		사업체 유지의 어려움								부족 17.	

#공자3 원인3 주요원인 1. 시설부족 3. 시설위력 3. 시설위력 5. 연절시설 4. 시설부재(장애인 편의시설 3. 공장 밀집지역 7. 유 4. 자연자해 다발 지역 8. 스 5. 우범지역 1. 법률자식 및 정보 5. 년 부족 (장애·미성년 등) 3. 목력/범죄 6. 전 1. 고용기열 차별 8. 건 1. 고용기열 차별 8. 건 1. 고용기열 차별 3. 부당한 철거나 이주 요구						NE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원인제공	Ŕ			작. 아
한성실 열악 1. 시설득족 수 시설 영악 (한경기/년 시설 열악 2. 시설득증 (상실 등 전 등 전 등 전 등 전 등 전 등 전 등 전 등 전 등 전 등	Яr	50 -L	사 영 성 성	대상자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수 양년	· 사 이 다
한경개나 구청나설 열악 1. 시설부족 한경개나 선상수도 시설 열악 3. 시설위점 한경개선 성수도 시설 열악 4. 시설부제경에인 편의사기업을 자방노후(누수 등) 보기가는 시설 열악 2. 시설부제 경에인 편의사기업을 자방노후(누수 등) 보기를 등 소설 등 전체기 방치 3. 소설 등 전체에 대한 지원 자방노후(누수 등) 보기를 하고 있다 3. 조선 밀접자역 소설 등 경우 보기를 지원 3. 조선 밀접자역 사생활 경기선 최자 등 22 부족 등 전체에 대한 지원 5. 수명자에 대한 지원 항제 목발 사용환경 열악 1. 밥률자식 및 정보 항제 목발 사용환경 열악 1. 밥률자식 및 정보 사업물 환경 열악 1. 밥률자식 및 정보 5. 수명자데 대한 지원 사업물 환경 열악 1. 밥률자식 및 정보 5. 수명자데 등 사업물 등 문제 사고보상 첫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화장실 열악									
한경개서 도배·3판 열악 1 시설부족 환경개선 전기가스 시설 열악 3 시설의력 사업보호(수 등) 4 시설부재정에인 편에서 지병교학(수 등) 4 시설부재정에인 편에서 지병교학(수 등) 2 유흥업소 밀전지역 지병학교 이 전 3 공장 밀전지역 이번률적 지원 2 유영업소 밀전지역 이번률적 지원 4 지연제에 대발 지역 8 이번률적 지원 4 지연제에 대발 지역 8 지역보이 4 지연제에 대발 지역 8 학원 등 경우 4 지연제에 대발 지역 8 학원 등 경우 5 유럽지역 기타 1 교통지대생선 기타 1 교통기업 지원 1 교통 전문 등 1 교통 전문 등 1 교통 전문 등 1 교통 전문 등 2 교육 기업 3 급성 대용 조용 명 2 교육 기업 3 급성 대용 조용 명 3 급성 대용 조용 명 1 교통 기업 지원 3 급성 대용 조용 명 1 교통 기업 지원 3 급성 대용 조용 명 1 교통 기업 지원 3 급성 대용 조용 명 1 교통 기업 기업 3 급성 대용 조용 명 1 교통 기업 기업 3 급성 대용 조용 명 1 교통 기업 기업 3 급성 대용 조용 명 1 교통 기업 기업 3 급성 대용 조용 기업 1 교통 기업 3 급성 대용 조용 기업 2 급성 대용 기업 3 급성 대용 조용 기업 3 급성 대용 조용 기업 3 급성 대용 기업 3 급성 대용 기업 4 대통 기업 3 급성 대용 기업 5 급성 대용 기업 3 급성 대용 기업 6 급성 대용 기업 3 급성 대용 기업 <			주방시설 열악									
한자시바무 도배·경판 열악 1 시설부축 한천시바무 3 시설부축 전상수도 나설 열악 4 시설부계(경에인 편의사) 지원노후(수) 등의 4 시설부계(경에인 편의사) 지원노후(수) 등의 4 시설부계(경에인 편의사) 지원보수 성 열악 5 쓰레기 방치 한환경 열악 3 공장 밀진지역 기 성급취수 3 공장 밀진지역 기 상급취수 3 공장 밀진지역 기 상급취수 3 공장 밀진지역 기 상급취수 3 공장 밀진지역 기 사제 이전 화재·후보 양활경 열악 1 비율자식 및 정보 사람 등 문제 (경에 미성년 등) 소변사 등 문제 (경에 미성년 등) 소변사 등 문제 (경에 미성년 등) 소변사 등 문제 (경에 미성명 등) 소변사 등 문제 (경에 미성명 등) 소변사 등 문제 (경에 미성명 등) 소변사 등 문제 (경례 원리 등			위생환경 열악									
교환경개사부 전기가는 서설 열악 3 시설위 점임 설심기 방기 4 시설부제(30에인 면의사) 사상활 공간 부족 등 쓰레기 방기 수택 내 이동 고란 수택 내 이동 고란 사생활 공간 부족 등 소례기 방기 교통적근상 열악 등 소례기 방기 교통적는성 영악 의사 등 공공수용 환경개선 가수지 이전 함께 가톨탈 생활한경 열악 1 . 도서산간자역 대한 지역 중 등 전체 대한 지원 등 등 상황한경 열악 한 기가 사고 있는 경우 등 경우 등 전체 대한 등 상황 경기 대한 기관 등 보통자원 기관 등 사고 있다. 대한 기관 기관 등 보통자원 기관 등 기관에 대한 기관 기관 등 보통자원 기관 등 기관에 대한 기관 등 기관 등 기관에 대한 기관 등 기관			도배·장판 열악								1. 人설부족	
환경개선 전기/가스 사별 열악 3. 시설부제(경에인 편의시 보증 명시) 사생활 공간 부족 수 시설부제(경에인 편의시 보증 명시) 5. 스레기 방치 사생활 공간 부족 수 시설부제(경에인 편의시 보증 명시) 1. 도서산간자역 등 명시 모든 명임 보증 명임 명임 보증 명임 보증 명임 보증 명임 보증 명임 보증 명임 명임 보증 명임 명임 보증 명임 명임 보증 명임	(-	HILL	자유 유무								2. 시설낙후	
한 상수도 시설 열악 4. 시설부재(30세인 편의사 기본) 지본노후(수 등) 5. 쓰레기 방치 학원 경임 2. 유흥업소 말입지역 산업 전 등 교통점근성 열악 2. 유흥업소 말입지역 상업 전 등 공공수용 4. 자연재해 다발 지역 8 양경개선 기자 이전 화혈광 영영 4. 자연재해 다발 지역 8 생혈환경 영악 5. 수범지역 이번률적 자원 사고보상 처리 교육시대사산 1. 법률자식 및 정보 등 부분 학생 환경 2. 법적추건인 부재 교육시대 3. 폭력/범죄 교육보장 3. 폭력/범죄 기타 3. 부명한 철거나 이주 요 기타 3. 부명한 철거나 이주 요	<i>></i>	구시네구 화경개서	전기/7산 시설 열악								시설위험	
한주거외부 부터 등 노후 5. 소예시 명지 사생활 공간 부족 1. 도서산간지역 6 소현점수 2. 유흥업소 밀집지역 7 교통점구성 열악 3. 공장 밀접지역 7 화장개선 가수시 이전 화재·폭발 위험물에 노출 4. 자연재에 대발 지역 8 사업물적 지원 사고보석 처리 1. 법률자식 및 정보 등 연애·미성년 등) 전에 대발 지역 8 1. 보험소리(자산/ 영물량 2. 법적추건인 부재 6 1. 전문성설 1. 법률자식 및 정보 등 전에 대성년 등) 중에 대성년 등) 중에 대성년 등) 중에 대성년 등) 경우 대보조 전문제 1. 대용기업 기별 1. 고정민전에 1. 대용기업 기별 1. 대용기업 기별 1. 기타 1. 교육 대한 철기나 이주 요.		[1] - - -	상하수도 시설 열악								시설부재(장애인 편의시설	
한국가의부 수 대 이동 교로 수 없고 한 교로 수 있다. 1 도서산간지역 등 6 유흥업소 말집지역 기업 등 유흥업자 및 전보 및 전체에 대한 지역 및 전체 가수지 이전 회재・폭발 위험물에 노출 위험물에 노출 위험물에 노출 위험물에 노출 기원로 등 모세 기업 위치로 등 모세 기업 위치로 등 모세 기업 위치로 등 모세 기업			지붕노후(누수 등)								5. 쓰레기 방치	
수생활 공간 부족 1. 도서산간지역 6 교통점근성 열악 2. 유흥업소 밀집지역 7. 유명지계 7. 지연자례 대발 지역 8. 공자 밀지지역 9. 의 교통자계 9. 의 교통자계 9. 의 교통자계 9. 의 교통자계 1. 대통자세 및 정보 6. 수범지역 9. 의 교통자세 및 정보 6. 수범지역 9. 의 교통자세 및 정보 6. 수범지역 9. 의 교통자세 및 정보 6. 수범지계 6. 수범지계 9. 의 교통자세 및 정보 6. 수범지계 6. 수범지계 9. 의 교통자세 및 정보 6. 수범지계 6. 수범지계 9. 의 교통자세 및 정보 6. 전체·기성별 9. 의 교통자세 및 정보 6. 전체·기성별 9. 의 교통자세 및 정보 8. 국제주인제 7. 의 교통자세 및 정보 9. 의 교통자세 및 정보 9. 의 교통자세 및 정보 7. 의 교통자세 및 정보 7. 의 교통자세 및 정보 7. 의 교통자세 및 정보 9. 의 교통자세 및 정보 7. 의 교통자세 및 정보<	<u></u>		벽/담 등 노후									
사생활 공간 부족 1. 도서산인지역 6 교통점근성 열악 2. 유흥업소 밀집지역 7 실수점수 3. 3-89 밀집지역 7 환경개선 가수시 이전 3. 3-89 밀집지역 7 환경개선 가수시 이전 5. 우범지역 9 행활한경 열악 4. 자연자에 다발 지역 8 9 생활환경 열악 4. 자연자에 다발 지역 8 1 이치료 등) 문제 수보상실 (30에 미성년 5) 사고보상 처리 3. 폭력/범죄 7 국적문제 1. 고용기회 차별 가별대우 1. 고용기회 차별 기타 2. 관련 법률조환의 문제 기타 3. 부당한 철거나 이주 요	ջ		주택 내 이동 곤란									
학습환경 열악 1 도서산간지역 6 교통접근성 열악 2 유흥업소 밀접지역 7 상납침수 3 공장 밀접지역 1 화재·폭발 사전자이전 5 우범지역 1 행활경 열악 1 비틀자식 및 정보 5 사교상실 사고보상 처리 1 비틀자식 및 정보 6 한연보상실 1 기타 1 기용기회 처별 기타 기타 1 1 교통기회 처별	전 전 0 万		사생활 공간 부족									
교통접근성 열악 1. 도시안간시역 8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합하여 명								<u>1</u>	
한국거외부 철거 등 공공수용 3. 규동 타고 필시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되통접근성 열악								노시산간시작 이흥얼 시민지되면	
©주거외부 철거 등 공공수용 4. 이혼 리비기 위임 환경개선 거주지 이전 회재 폭발 위험물에 노출 생활환경 열악 1. 법률자식 및 정보 부족 비를자리(재산/의료를 1. 법률자식 및 정보 부족 이법률적 지원 사고보상 처리 고적문제 (정에・미성년 등) 가별대우 3. 폭력/범죄 기타 1. 고용기회 처별 기타 2. 관련 법률조형의 문제 기타 3. 부당한 철거나 이주 요구			상습점수								#0000 1000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환경개선 거주지 이전 회사·폭발 위험물에 노출 생활환경 열악 1. 법률자식 및 정보 등 부족 신분상실 2. 법적추건인 부재 등 (3 대학 년 등) 지보내우 3. 국적/범죄 기타 1. 1. 198기의 차별 기타 2. 2. 2. 2. 2. 2. 2. 2. 3. 2. 3. 2. 3. 2. 3. 2. 3. 4. 3. 3. 4. 5. 3. 4. 5. 3. 4. 5. 3. 4. 5. 5. 3. 4. 5. 5. 3. 4. 5. 5. 3. 4. 5. 5. 3. 4. 5. 5. 3. 4. 5. 5. 5. 4. 5. 5. 5. 4. 5. 5. 5. 5. 4. 5. 5. 5. 4. 5. 5. 5. 5. 5. 5. 5. 5. 5. 5. 5. 5. 5.	(2)	구거외부	철거 등 공공수용									
화제·폭발 화제·폭발 위험물에 노출 생활환경 열악 비멸하기(재산/ 위자료 등) 문제 그년분상실 시고보상 처리 파산/신용불량 국석문제 3 격실 버죄 7 가별대우 교건이나장 기타		환경개선	거주지 이전								스타시에 고매 스타	
생활환경 열악 1. 법률자식 및 정보 등 부족 부족 부족 부족 부족 부족 보통 등 보자를 하는데 한다. 1. 법률자식 및 정보 등 부족 부족 부족 등 (중에・미성년 등) 등 (중에・미성년 등) 등 (중에・미성년 등) 등 (중에・미성년 등) 로 보고			화재·폭발									
생활환경 열악 내별조시식 및 정보 등 위치로 등) 문제 1. 법률자식 및 정보 등 부족 부족 부족 부족 부족 등 보수 경기 등 보자를 보고 되었다. ①법률적 지원 시고보상 처리 2. 법적후견인 부재 등 (중에·미성년 등) 원 (경에·미성년 등) 원 (경에·미성년 등) 원 (경제·미성년 등) 원 (위험물에 노출								(강제철거·퇴거)	
비료를 차리(지사산/ 위자료 등) 문제 1. 법률지식 및 정보 등 부족 이법률적 지원 사고보상 처리 2. 법적후견인 부제 등 (30개·미성년 등) 등 3. 폭력/범죄 고적문제 3. 폭력/범죄 7 과본대우 1. 고용기회 차별 2년 1. 고용기회 차별 기타 3. 부당한 철거나 이주 요개			생활환경 열악									
이번째로 등) 문제 부족 보석하는 성실 이번째로 지원 시고보상 처리 (장애・미성년 등) 등			법률처리(재산/								법률자식 및	
신분상실 신분상실 2. 법석후견인 부새 6 6 미반상 처리 (장애·미성년 등) 3. 폭력/범죄 3. 폭력/범죄 7 국적문제 4. 이혼 8 8 (강관의보장 권리침해 1. 고용기회 차별 기타 3. 부당한 철거나 이주 요개			위자료 등) 문제								바 :	
************************************		7 1 1 1									법적하견인 부재 6	
교건/신용불량 3. 녹덕/日郊 7. 국적문제 4. 이혼 8 차별대우 1. 고용기회 차별 ②권익보장 권리침해 2. 관련 법률조형의 문제 기타 3. 부당한 철거나 이주 요:) [집률석 시원									(상애·미성년 등) 표표/표절	
국적문제 가별대우 1. 고용기회 차별 ②권익보장 권리침해 2. 관련 법률조형의 문제 기타 3. 부당한 철거나 이주 요.	⊟ıK		파산/신용불량								지하는 기계	
차별대우 기타	다 다 다		국적문제								<u>√</u>	
(2)전식모상 권리침해 기타		<u>.</u>	차별대수								1. 고용기회 차별 6. 그것 내리포함은 미래	
	(5	선식무상	권리침해								.2. 관련 밉듈소앙의 문세 3. 부당한 철거나 이주 요구	
	-	<u></u>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역 나 상	요청 서비스 내역	첨부파일		
			섞	品品
파 다- 여r				
아 산 아				
구용요주	종합이건	사회적 지지자원	관리번호	(요 라 자



☑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시기	- 상담·조사·사정과정 중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목적	-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욕구(아동과 보호자)를 파악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함
작성방법	- 접수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과 보호자를 상담하여 작성 ※ 욕구조사, 친부모상황점검, 아동상황점검 중 반드시 1회는 가정방문하여 실시
활용방법	- 아동의 보호조치 유형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등

항 목	작성내용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욕구조사대상자의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차수를 기재
주거사항	• 대상자의 주거 형태, 가옥구조, 주거구분, 난방방법, 화장실, 주거상태, 주거환경, 이사계획, 거주기간 등을 기록함
가구유형	 현 거주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가구유형을 선택 (부부중심가구) 부부 중심으로 부모 또는 자녀 등으로 모(부)─자녀로 구성된 가구 (미혼모부가구)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모(부)─자녀로 구성된 가구 (조손가구) 부모세대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한부모가구) 편부・편모와 자녀 등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소년소녀가구) 부모나 친인척이 없이 형제자매만 살고 있거나, 소년소녀 1인만 살고 있거나, 부양능력 없는 친인척과 형제자매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공동체가구) 혈연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구 (기타) 위 분류 이외의 가구유형인 경우 구체적인 가구 형태를 기록 (장애인가구) 가구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타 가구분류와 중복 체크 가능 (다문화가구) 국제결혼 등을 통하여 외국인 가구구성원이 있는 가구유형으로써 기본가구 유형과 별도로 체크 (북한이탈주민가구) 탈북자 가구
가족사항	• 욕구조사 대상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정보(가구주와의 관계, 성명, 연령, 동거, 학력, 직업, 장애유형, 질병 등)를 기록함 ※ '동거여부'에서 함께 거주 하지 않을 경우 주소 기록함
대상아동	• 아동의 등록기준지, 가정환경 등 기록 ※ 아동을 입양대상아동으로 할 경우 등록기준지 필수입력
서비스 이력	※ 시스템 내에서 해당 정보 자동 연계 출력 가능
욕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	 사례관리 후보자에게 10대 욕구영역 세부 20개 욕구 항목을 순차적으로 질문하여 사례관리 후보자 및 가족구성원이 보유한 문제영역이 누락이 없도록 조사하여 기입함 세부욕구 영역별의 각 주요현상에 해당하는 대상가구원을 파악하여 욕구조사표의 '대상자 칸'에 기입(※ 시스템에서는 기 입력한 가구구성원이 대상자 리스트로 조회) 대상자가 노출되어 있는 각 주요현상별 원인을 파악하여 중요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주요원인'의 해당항목 번호를 '원인 1, 원인 2, 원인 3'에 기입함

-1 -	- 1111.70		
항 목	작성내용		
	- 각각의 원인을 야기 시키는 원인제공자를 파악하여 최대 3개까지 '원인제공자1 ○○○/원인제공자2 ○○○/원인제공자3 ○○○를 기입함(※ 시스템 입력 시에는 원인제공자리스트 중에서 해당항목을 체크) ※ 현상에 따라 원인제공자 및 원인이 없거나 불분명 할 시, 별도로 기입하지 않아도 무방 - 욕구조사 후, 욕구 별 우선순위를 가장 시급한 문제 순으로 파악하여 기입함		
	• 욕구 영역(10대 욕구영역)		
	- (안전 욕구) 가족구성원 또는 외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야기되는 기초적 신변보호의 욕구 - (건강 욕구) 가족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문제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문제		
	- (일상생활유지 욕구)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행위 또는 신변관리와 여가활용 및 개선욕 - (기족관계 욕구) 가족구성원의 갈등완화 및 긍정적 관계형성 욕구와 보육·간병 등의 가족 보호 욕 - (사회적 관계 욕구) 가족구성원을 제외한 주변인물 및 사회적 집단 내에서의 긍정적인 관계 성과 유지를 위한 욕구		
	 (경제 욕구)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해결 및 기본적 자산관리 욕구 (교육 욕구)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습득에 관한 문제와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학습과 관련된 문제 		
	− (고용 욕구) 취업/창업에서의 어려움 또는 직업(무)기능 수행상의 문제 − (생활환경 욕구) 거주지의 내외부적 환경 및 안정상의 문제 − (법률 및 권익보장 욕구) 법률적 지원 및 권익보장과 관련한 욕구		
	※ 상속채무 및 법정대리인 공백, 친권남용 피해 등 아동의 위기상황점검(서식 5 활용) • (주요현상 대상자 및 원인제공자) 각 욕구영역별 현상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와 현상에 대한 원인제공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기입		
	〈주요현상 대상자 및 원인제공자〉		
	가구구성원(본인, 처, 남편, 아들, 딸, 부, 모, 조모, 조부, 장인, 장모), 사실혼 관계의 대상자 배우자와 그 자녀 및 기타 동거인(삼촌, 고모, 시동생, 시누이 등 친인척 및 기타 동거인), 가구구성원 전체(가구구성원 모두가 대상자일 경우)		
	가구구성원, 부모, 친인척, 이웃, 학교친구, 학교선후배, 친구, 직장동료·상사, 내연남(녀), 전남편, 전부인, 교사(교직원), 보육시설(유치원)종사자, 학원·학습지 교사, 제공자 종교관계인, 채권자, 채무자, 임대주·임차인, 폭력배, 복지지관 종사자, 공공기관, 불특정인, 해당없음(기타)		
	• (강점) 문제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예, 취업의지 강함, 신체건강 등) • (장애물) 문제해결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예, 무기력, 신체건강 불량, 자녀와의 갈등 등)		
종합의견	 '주요욕구'는 '욕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에서 우선순위로 정해진 10개의 욕구 항목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 6하 원칙하에 구체적으로 기술함 종합의견은 대상자가 진술한 표현된 욕구를 기반하되, 사례관리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욕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에게 이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법에 대하여 작성함 		
사회적 지지자원	• 야기되고 있는 주요문제를 완화하거나 욕구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활용가치가 있는 개인의 내적자원, 가족이나 지역사회 유형 혹은 무형의 자원을 파악하여 기록함		
요청 서비스 내역	• 사례관리 대상자가 상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요청한 서비스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서식 5 위기아동 조기발굴 체크리스트

구분		문항	결과
1 tiz	덩대리인	선임 여부	
	친권지	가 있다.	□ 예 □ 아니오
	('예'리	t고 답한 경우 : 1−1~3번 해당)	
	1-1	친권자 유형 선택	□ 부모 □ 부 □ 모
1	1-2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부재로 통장개설 등 양육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 예 □ 아니오
	1-3	아동의 친권자(부모)가 6개월 이상 연락두절 상태이다. (예 : 아이를 친척이나 시설에 맡긴 후 단절 상태에 있는 경우)	□ 예 □ 아니오
	('아니	오'라고 답한 경우 : 1-4번 해당)	
	1-4	아동의 후견인이 법적으로 선임되어 있다.	□ 예 □ 아니오
		친권자 연락두절로 법정대리인 부재하여 양육과정에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친권 제한 및 담 연계·지원	후견인 선임을
2 친	권남용 0	부	
1	보자녀	보호·양육과 재산관리에 어려운 상황이 수개월 간 지속되고 있다.	□ 예 □ 아니오
2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양육자)가 아동의 복리실현에 현저하게 반하는 방식으로 친권을 가실이 있다.	□ 예 □ 아니오
	(예 : 0	가동의 재산 부당처분, 아동명의 핸드폰 사용요금 체납 등 부당 채무부담)	니 어디エ
3	친권지	의 행위가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예 □ 아니오
		t) 1개 이상 해당 시, 친권 남용에 따른 구제소송 청구를 위한 법률상담 연계·지원 · 친권 제한·상실 청구 가능	
3 상=	속채무 0	부	
1	상속차	무와 관련하여 법정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거나,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다.	□ 예 □ 아니오
2	아동으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여 생존 배우자와 아동이 상속인이 되었다.	□ 예 □ 아니오
3	아동을	대상으로 한 채무독촉장 또는 민사상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소장을 받은 적이 있다.	□ 예 □ 아니오
4	상속자	산과 관련하여 상속포기신고서 및 한정승인신고서 제출절차 및 기한을 알고 있다.	□ 예 □ 아니오
• (1~	3번 문형	ያ) 1개 이상 해당, (4번 문항) '아니오'로 답변한 경우, 법률상담 신청	
소견			

◎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친권자 사망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
시기	- 상담·조사·사정 과정 중 부모의 채무 등 확인될 경우
작성목적	- 아동의 친권자(부모)의 사망·연락두절로 아동에게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지원
작성방법	- 욕구조사 및 위기아동 조기발굴 체크리스트를 통해 작성
활용방법	- 법률상담 및 지원,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참고자료

• 법률지원체계

- (위기아동 발굴)사례관리자,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등의 정기적인 사례관리 및 양육상황 점검 시해당 사례 적극 발굴
- 상속채무, 법정대리인 공백, 친권남용 피해 및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 부재 등에 따른 아동의 위기상황 점검(체크리스트 참조)

사업분야	점검시점	점검횟수
아동보호서비스	① 초기상담	최초 1회 (보호대상아동 의뢰·발굴 시)
(아동보호전담요원)	② 양육상황점검	분기별 1회 (보호조치 후)
드리스타트	① 초기상담	최초 1회 (대상아동 의뢰·발굴 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② 재사정	사례등급별 3~12개월 이내 1회 * (위기) 3개월 이내, (집중) 6개월 이내, (일반) 12개월 이내
	① 초기상담	최초 1회 (대상 의뢰 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② 욕구 및 위기도 조사	1회 이상 (욕구조사 단계에서 실시하고 대상자의 위기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시 수시 시행)
(6합시테린터시)	③ 종결 심사	1회 (대상자 사망, 거절 및 포기, 3개월 이상 연락두절 등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시)
아동학대사례(아동보호	① 초기면접	최초 1회 (사례연계 후 1주일 이내)
전문기관 상담원)	② 사례점검	분기별 1회 (사례관리 점검표 작성 시점)
보호종료아동	① 자립지원계획수립	연 1회 (15세 이상~보호종료 시점)
(자립지원전담요원)	② 사후관리	연 1회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서(친권 관련)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서(친권 관련)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조사)기간 : 20일 (연장 가능)
아래와 같이 팀	법률상담(구조)	를 신청하니 구	시 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구	구칙 제55조(에 따라 처리	하여 주시기 ㅂ	l랍니다.
	사건본인 성 명	아동성명 기	I T I			생년월일	아동의 생년월일
사건본인 겸	주 소	아동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 기재			전 화 E-mail	아동과 연락가능한 전화, 메일 기재
겸 신 청 인	송달장소	가정위탁, 보	년호시설 등의 주소 기 지	H			
	직 업 (대상자)	보호대상아등	동, 한부모가족아동 등 2	기재			시지 수신동의 편 수신동의
	보 호 자 성 명	보호자(현장 * 서류준비 등 * 현장담당자	담당자, 주양육자 등) 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보호 를 보호자로 지정하는 경	성명 기재 자로 작성 P, 소속기관	함께 기재	생년월일	기재 불요
보 호 자 (보호시설)	주 소	보호자(현장 * 현장담당자	담당자, 주양육자 등) 격 는 소속기관 주소지 기재	5소 기재		전 화 E-mail	보호자 전화 메일 기재
(!=/			방법(중복선택 가능)	문자	☐ E-	Mail 🗆 서	신
	법률상담 희	망 방식		□ 전화	□ 면접	₫ <u></u> E-	·Mail 🗌 서신
신청사실의 요 지	사건본인은 사망하여 초 등(사례1), 발생(사례2) 되었는 바, 후 요금 은 사건본인을 (사건본인의	친부 ○○○ 1부의 양육을 E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 사건본인의 친 1체는 치권을 위하여 □□□	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라 친모 ⟨x<\> 사이에서 받고 있던 중 친부 감○○○ 친모(신청) 근아버지(보증) 동의 친부가 아동명의 통 경 부 김○○는 연락두절 상태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본인과 관계, 주소, 계, 현재 거주현황 등 사정 시오)	00년 00월 I 아동명의로 의 '교통사고 당 의 수급비 네이고, 친권자 바, 친부 : 생년월일) 을	휴대폰 또는 피해가족 : 강탈(사례3) 김〇〇가 (김〇〇에 대 후견인(특별	: 인터넷 다수 2 우자녀 장학금' 의 사유로 사건 가동명의로 휴대 한 친권상실 5 대대리인 선임포	#통, 요금 연체 및 미납부, 부정수급*으로 변제 상황 본본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I폰 또는 인터넷 다수 개통 단는 일시정지의 선고 및 함)으로 선임하고자 함
제출서류	2. 아동의 3. 고지서(통 4. 상대방0 (법정대리 5. 특별대리 주민등록	기본증명, 가족 통신료 등), 소 있는 경우 성 인이 있는 경 인 또는 후견' 표 초본	상아동 사실확인서, 한부5 관계증명, 주민등록표 등 장부본 등 상대방의 인적사항(성명, 주 경우 고지서 외에 다른 서류 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특) 외 서류는 발급가능한 2 필히 제출하되 발급이 어려	본 및 초본 :민번호, 주4 류를 발급받 <i>7</i> 별대리인 또:	<u>></u> , 전화번호 어려울 수 = 후견인 <u>으</u> :	등)을 확인할 : 있음) 로 선임될 자의	수 있는 서류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대한법 률구 조	년	월 일	위 사건본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신청확인	신청담	당직원	고객지원부(팀)장	지	부 장		
			전 결			조사담당	
						210mm	×297mm[일반용지 60g/m²]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서(상속 관련)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조사)기간 : 20일 (연장 가능)	
아래와 같이 법	법률상담(구조)	를 신청하니 구	시 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규	칙 제55조에 따라 쳐	: 리하0	후 주시기 바	랍니다.
	사건본인 성 명	아동성명 기	재		싣	l년월일	아동의 생년월일
사건본인 겸	주 소	아동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 기재		전	화 E-mail	아동과 연락가능한 전화, 메일 기재
신 청 인	송달장소	가정위탁, 5	보호시설 등의 주소 기재				
	직 업 (대상자)		동, 한부모가족아동 등 7	재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i>=</i>	
□ = 뒤	보 호 자 성 명	* 서류준비 등	자(현장담당자, 주양육자 등) 성명 기재 부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보호자로 작성 장담당자를 보호자로 지정하는 경우, 소속기관 함께 기재			J년월일	기재 불요
보 호 자 (보호시설)	주 소		<mark>담당자, 주양육자 등) 주</mark> 자는 소속기관 주소지 기		전	화 E-mail	보호자 전화·메일 <i>7</i> 재
	접수 및 진형	행상황 통지병	방법(중복선택 가능)	□문자□	E-M	ail □서	신
	법률상담 희						
신청사실의 요 지							
제출서류	2. 망자의 기 3. 아동의 기 4. 상속재산되 5. 특별대리인 주민등록표 ※ 보호아당	본증명서, 가족 본증명, 가족판 목록 등(부채관 ! 또는 후견인 I 초본 통증명서 외 시	t아동 사실확인서, 한부모가 유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 관계증명, 주민등록표 등본 ! 련 서류 : 소장, 고지서, 금원 ! 선임이 필요한 경우 특별 대류는 발급가능한 경우에 침 필히 제출하되, 발급이 어려	천양자관계증명, 주 및 초본 읽기관발행 부채증명, 렵대리인 또는 후견연 병부	민등록 서 등) 1으로	말소자초본 선임될 자의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대한법률구조		월 일	위 사건본인의	사건본인 보호자			또는 인) 또는 인)
						# 11Crcr +	-1 01
시청확인	신청담	당직원	고객지원부(팀)장	지 부	장	조사담당 작	닉 현
L'07L			전 결			조사담당변	호사

서식 7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법률구조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견	<u>가</u>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직업(대상자 정보)	법 률구 조신청	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를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동 의	
이용하여 귀하에게 상소심구조신청 등을 위하여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동의 거부 가능, 해당항목에 √)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무료대상자 소명 정보 □ 송달장소 □ 연락처(이메일) □ 계좌번호	법률구조신청사건처리	1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동의 일부동의(항목선택)	
그러나 중의을 기구할 경구 시미스 제중에 제인을 얻을 구 있답니?	이용이는 내 등의이십니까!	미 동 의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법률구조신청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사실에 민감정보가 포함된	「법률구조법」 제8조,
사건의 처리	경우 그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본인의 년	의 권리에 월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격	덕	제공하	는 항목	보유	기간
출연기관 *	소송비용성	낭환	성명, 사건번호,	대상자, 소송비용	5է	1
	· 공단「무료법률구조/				동 의	
	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 ·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본	인의 권리에 대히	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귀중

^{※ [}법정대리인의 동의 관련]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5호)

친부모 상황 점검표

친부모 상황 점검표

<u>영</u> • 보호대상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친부모 상황 점검표

* 원가정 복귀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쎭	ılol	평가항목		명가 ∨		특이사항
	-	부모는 동거중이다.	ਲ	전기성	마 내 제	
	7	부부관계는 원만하다.	ਲ	전시성	마 씨 내	
	က	부모(최소 1인)는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ਲ	어니어	불년영화	(부) 직업: 근로시간: (모) 직업: 근로시간:
	4	가정의 소득이 안정적이다.	뮹	어나	불 분 분 명 하	소득 : 평균
羟	വ	가정의 부채가 없거나 크지 않다.	ਲ	전기성	마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부채: 만원
<u>예</u> 기 소	9	부모의 주거가 자가 주택이거나 전·월세 이어도 지불능력이 있다.	ਲ	아니오	불 분 분	전세 (보증금 만원) 월세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7	부모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ਲ	어니어	불년영화	(부) 질병 또는 장애유형: (모) 질병 또는 장애유형:
	∞	부모에게 알코올이나 약물문제가 있다.	ਲ	어구	마 내 교	(부) 종류 : 치료여부: (모) 종류 : 치료여부:
Ŧ	6	과거 사회복지서비스(희망복지지원단 등)를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	쪵	아니오	불분명함	종류: 01용기간:
다 자	10	조부모·친척 등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퓽	전기성	교 된 문 대 교	
<u>1</u> 7 .0	=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부모를 도와주었던 지인들이 주변에 있다.	퓽	전기성	마 내 내	

	변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평가항목 아동학대(신체, 정서, 성적)나 가정폭력 경험이 있었다. 부모는 음식 제공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부모는 아동에게 지지적이며, 이해심이 많다. (예) 아동에게 공감을 보여준다. 아동의 언어적인 신호나 비연어적인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아동을 돌보는 데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부모가 학교 등에서 아동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예) 아동심리, 아동건강, 진로, 진학 등 부모는 아동의 학교생활, 친구관계에 대해 관심이 있다.	ਲ ਲ ਲ ਲ ਲ	> ★ 억 억 억 억 억 이러공 억 억 억 억 억 억 ○ </th <th></th> <th>학대 등 내용 : 발충분 시 필요한 돌봄 내용 : 친한친구: 좋아하는 음식: 반 / 번호: • 희망자 : (예) 부모 모두 희망, 부모 중 1인 희망 (부 또는 모) 나고 당 1인 희망 (부 또는 모) • 희망보호형태 : 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시설보호(그룹홈, 양육시설), 입양 등</th>		학대 등 내용 : 발충분 시 필요한 돌봄 내용 : 친한친구: 좋아하는 음식: 반 / 번호: • 희망자 : (예) 부모 모두 희망, 부모 중 1인 희망 (부 또는 모) 나고 당 1인 희망 (부 또는 모) • 희망보호형태 : 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시설보호(그룹홈, 양육시설), 입양 등
	18	과거에도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를 한 경험이 있다.	ਲ	전시성	교 된 된 표	기간: , 보호형태:
떠	19	부모는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할 경우 아동과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	ਲ	정기상	돌 된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そ 足 そ 足 そ	만남 주기 :
전 쀪	20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 의뢰하기 전 주양육자가 부모 본인이었다.	ਲ	어나	마 내 내	부모가 아니었을 경우, 주양육자: 사유 :
	21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싶어한다.	ਲ	정기성	마 내 제	
	22	부모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자신들의 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변화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ਲ	전기선	파 내 양	
	23	부모가 예상하는 원가정 외 보호기간은 개월 이다.			개월	
⊀	삵					

• 부모가 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경우, 원가정 유지를 위하여 읍·면·동(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서 복자서비스 연계 강화하도록 조치 •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 능력 및 의지가 없는 경우, 아동을 시설 등에 보호조치하고, 부모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조치

♡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고유 업무)
И 7	– 상담·조사·사정 과정 중 분리 <u>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u> 경우
자성목적	– 친부모 상황(기정 및 주변환경, 양육태도, 보호조치)을 파악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함 – 보호역량 및 보호자(부모)의 강점을 파악
작성방법	- 상담・조사・사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욕구조사, 친부모・아동상황 점검 중 1회 이상 반드시 가정방문하여 실시) -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추측성으로 작성금지
활용시점 및 방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원가정 복귀 가능성, 아동과의 정기적 만남, 원가정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항목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 우선 체크되어야 하며, [불분명함] 답변할 경우 추가 조사하여 확인필요 - 평가항목에서 [아니오]가 대다수이거나, 8번[예] & 12번[예] & 13번[아니오] & 17번[예]를 체크한 경우 분리보호 적극 검토 - 친부모상황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의심 상황 발견(관찰, 보고)시 즉시 신고
7時	친부모·보호자 부재, 연락두절되거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생략 가능

		占約	작성내용
	—	부모는 동거중이다.	- 이혼, 별거, 서별, 한부모가정, 미혼모부가정 등의 경우 '아니오' 체크
	7	부부관계는 원만하다.	- 잦은 싸움, 가정폭력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이혼, 별거, 미혼부모, 한부모가정 등 '아니오' 체크
기정환경	ო	부모(최소 1인)는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 부모 중 해당되는 경우 모두 기재, 무직일 경우 특이사항 기재
	4	가정의 소득이 안정적이다.	-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한 경우 '아니오' 체크 및 사유 기재 ※ '소득이 안정적'이라 함은 정기적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വ	가정의 부채가 없거나 크지 않다.	- 부채가 없거나 소득에서 일정부분 탕감이 될 경우 '예', 부채가 많거나 소득으로 해결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아니오', 보호자가 부채가 있으나 명확하게 말하지 못할 경우 추가 조사하여 사실 확인하여 기재

		바	작성내용
	9	부모의 주거가 자가 주택이거나 전·월세 이어도 지불 능력이 있다.	– 자가, 전·월세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 '예', 없는 경우 '아니오', 보호자가 지불능력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못할 경우 추가 조사하여 사실 확인하여 기재 ※ 전·월세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용(월세) 비율 검토
		부모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아니오', 보호자 명확하게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거나 대답을 꺼려할 경우 집안환경 체크(예:약봉지, 병원 관련 영수증 등) ※ 부모의 질병 또는 장애유형 강도에 따라 주변지지 자원 수준 반드시 파악, 필요시 분리보호 적극 검토
	∞	부모에게 알코올이나 약물문제가 있다.	- 알코올이나 약물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를 소지하지 않은 부모의 아동보호 능력, 의지 등을 고려 분리보호 필요성 검토 본 항목 답변을 꺼려할 경우 추가조사 필요하며, 가정방문 시 환경 체크(예 : 술병, 안주류 종류의 봉지, 술 냄새, 본드 등) ※ 알코올이나 약물문제를 현재 상태 중심으로 기재, 문제가 있음에도 치료를 거부할 경우 면밀히 검토 필요. 다만 과거시점 문제일 경우 특이사향에 기재(예) 알코올 문제로 치료받아 완치됨.
	0	과거 사회복지서비스(희망복지지원단 등)를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	- 서비스를 이용여부에 따른 문제해결여부 등을 특이사항으로 기재 ※ 과거 이용이력에 대해 해당 담당자 확인가능 할 경우 서비스 종류 및 이용기간 확인
주변환 경	10	조부모·친척 등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 조부모, 친인척과 지속적으로 긍정적 관계 유지할 경우 '예', 조부모·친척 계시더라도 관계가 안 좋은 경우, 조부모·친척 안 계실 경우 '아니오' ※ 되도록 조부모·친척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기본정보 확보(분리보호 시 대리·친인척 가정위탁 가능성 확인을 위함)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부모를 도와주었던 지인들이 주변에 있다.	※ 도움사례, 이름이나 연락처 등 기본정보 확보(분리보호 시 일반가정위탁 가능성 확보하기 위함)
양승대단	12	아동학대(신체, 정서, 성적)나 가정폭력 경험이 있었다.	 과거 학대 상황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경우 신고 재발생위험이 감지되거나 우려가 높은 경우 분리보호 또는 복지서비스 연계 ※ 본 항목은 보호자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간접질문방법을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추가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 필요

		<u>D</u>	Ollhyx
		ļr so	JOHO T
	13	부모는 음식 제공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 음식제공 및 돌봄 둘 중 하나라도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경우 '아니오', 둘 다 충분히 제공할 경우에만 '예'라고 체크
	4	부모는 아동에게 지지적이며, 이해심이 많다. 예) 아동에게 공감을 보여준다. 아동의 언어적인 신호나 비언어적인 신호에 적절 하게 반응한다. 아동을 돌보는 데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 보호자가 체벌, 강압적인 훈육방식을 하거나 주장할 경우 '아니오' 아동상황점검 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교차 확인 필요
	15	부모가 학교 등에서 아동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예) 아동심리, 아동건강, 진로, 진학 등	-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아동양육에 대한 경험내용, 횟수 등 기재
	16	부모는 아동의 학교생활, 친구관계에 대해 관심이 있다.	– 관련 질문 외 항목을 아는 경우 기재 ※ 아동상황점검 시 교차 확인 필요
	17	부모는 아동의 원가정 외 보호를 희망한다.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아동을 위해 안전한 선택한 경우인지, 부모가 아동양육을 기피하는 경우인지를 기재. 특히 부모가 학대경험, 질병, 근로수입 등 모든 상황을 판단할 때 키울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양육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특이사항에 기재
	18	과거에도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를 한 경험이 있다.	- 원가정외 보호 경험이 있을 경우 기간 및 보호형태, 사유 등 기재 ※ 원가정 외 보호 경험이 있을 경우 추후 장기보호에 대해 가능성 고려
D K K	19	부모는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할 경우 아동과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	- 아동과 만남을 희망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장기보호 가능성 고려)하며, 정기적 만남을 희망하더라도 만남 주기가 너무 길 경우 사유, 상황 등 기재
(- -	20	아동을 원7정 외 보호 의뢰하기 전 주양육자는 부모 본인이었다.	- 부모가 주 양육자 아닌 경우 사유 기재
	21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싶어 한다.	- 보호자의 아동학대 경험, 체벌방식의 훈육, 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양육하고 싶어 할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가정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 사유 기재 ※ 보호자의 현재 상황(예 : 직업특성상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수감) 확인 ※ 분리보호에 대한 보호자의 태도 확인(추후 원가정 복귀에 대한 의지, 방향 등)

<u> </u>		

		뺩	작성내용
	22	부모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자신들의 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변화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본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질문하기 보다는 보호자가 아동을 분리 보호해야하는 사유에 대한 해결의지(경제활동 재개, 부모교육 참여 의지, 아동에 대한 애정정도 등) 고려하며, 보호자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 구체적이고 근거바탕으로 이야기 할 경우 '예', 분리보호 이후 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분리보호에 대한 불만 또는 인지부족, 아동 양육 의지가 부족할 경우 '아니오' 체크 ※ 변화시키려는 구체적인 사유 확인하여 기재
	23	부모가예상하는 원가정 외보호기간은개월이다.	-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분리보호 기간이 너무 길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보호기간이 짧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분리보호 조치 해결기간 등을 고려
소			- 친부모 상황 점검표는 평가향목에서 '아나오'(8, 9, 12, 17, 18번의 경우 '예'의 개수) 체크가 많을수록 아동의 분리보호조치 검토 필요 예) 친부모 상황 점검한 결과 23항목 중 18개가 '아니오'로 평가항목에 체크했으며, 특히 가정폭력 경험이 수시로 발생, 부의 수입 불안정과 알코올 중독, 모의 정신적문제 등 고려하여 분리보호조치를 고려

아동 상황 점검표

아동 상황 점검표

• 보호대상이동을 워가정에서 부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아동 상황 점검표 활용**

Carlow Carlow			
5			
5		담당자	보호자성명(성별)
5			
5		소속(직급)	생년월
작성일 이동 성명(성별)		00.00.000	
	0.00	작성일	아동 성명(성별)

라		평가항목		87.		특이사항
<u> </u>	-	아동에게 중증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성장발달 지연, 제한된 신체기능, 인지영역 문제, 시각 또는 청각의 문제).	ਲ	러니	발 연 연	장애유형 : (예)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발달장애 등
. 성	2	만성질환이나 1주일 한번 이상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 있다(응급실을 분기별 1회 이상, 질병으로 1주일 이상 입원, 잘 움직이지 않고 활동량 부족하다).	ਲ	전기0	눌	질병명 :
유구	က	주의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과잉행동을 보인다(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산만해지며 지루해한다, 기만히 있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ਲ	전거	마 내 제	
	4	향정신성 약물(기산, 본드 등) 혹은 음주 및 흡연경험이 있다(IT매체(인터넷, 스마트폰)에 과의존하여 일상생활이 어렵다).	ਲ	전기0	눌 남 양	
사회적.	ſΩ	성인이나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성인이나 교사의 말을 잘 따르고, 자신에 관한 이야기나 자신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잘한다,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다.)	ਲ	전기성		
년 양 양 잔 다	9	긍정적 교우관계를 형성한다(또래와 비교적 잘 어울리고, 또래가 갖고 노는 장난감에 관심을 표현한다).	ਲ	전 기사 이	로 어크 아라	

콵		평가항목		四八 /		특이사항
	7	연령에 적합한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모와의 분리 상황에서 심하게 떼쓰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ਲ	전시	마 연 교	
	∞	자아존중감이 높다(아동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한다).	ਲ	전기/0	라 내 대	
	0	정학·유급·퇴학 경험이 있다(학교폭력의 문제, 사회적 규칙을 위반한다).	ਲ	전140	로 지 지 지	
		학업성취도가 높다(학습에 대한 의욕 및 동기가 높다).	ਲ	전구성	마 내 제	학업 외 기타 교육적 욕구:
	10	어려운 단어를 잘 읽는다. 학업과제를 이해하는 것을 기뻐하며, 학업수행에 대한 보람과 유능감을 느낀다.				
	1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퓽	전110	불부명함	
		섭식 문제가 있다.				
	12	(예) 지나치게 먹지 않아 하루에 한끼 먹이기도 힘들다. 구토할 때까지 먹는다. 제대로 된 식사보다는 간식으로 끼니를 때운다.	ਲ	51년	개 어머 이라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보이고, 공격성, 사회적인 부적응을 보인다(분노표현이나 공격적, 반항적 행동, 행동통제의 어려움이 있다).				
에 교	13	(예) 집, 학교 등에서 말을 안 듣고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어른에게 대든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잘 속인다. 가출이나 무단결석을 한다.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거나 따돌림을 당한다.	ਲ	아니오	마 어 당 아라	
		위축되거나 불안한 행동을 한다.				
	14	(예) 눈 맞춤이 잘 안 된다. 어떤 동물이나 상황, 장소에 대해 지나치게 검을 내고 무서워한다. 슬파하거나 우울해 한다.	ਲ	51년0	개 어머 아마	
	15	아동의 연령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가 의심된다.	ਲ	전기	마 내 내	

뫔		평가항목		평가 ∨		특이사항
		(예) 5세 이상이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8세 이상이나 의사소통, 혼자 옷입기·밥먹기, 집 전화번호 암기하기 등 독립적 활동이 현저하게 서툴다.				
	16	학습의욕이 저조하다.(학습 정애 포함, 새로운 개념을 습득하는 게 어렵거나, 숫자를 다루거나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ਲ	어나	불는영학	
	17	아동이 연령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가 의심된다(지능이 낮거나(경계선급 지능수준) 적응행동에 문제가 있다).	ਲ	어니ろ	불분명함	
교 씨	29	0동은 원가정 외 보호를 희망한다.	ਲ	어나이	발 면 연하	희망보호유형 : (예) 친인척, 가정 위탁, 시설, 입양 등
뀌	19	0동은 원가정 외 보호할 경우 부모와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	ਲ	어니ろ	불분명함	만남 주기:
선 전						

◎ 작성반법

자 성 자	- 아동보호전담요원(고유 업무)
N 7	– 상담·조사·사정 과정 중 분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목적	– 아동을 보호자(친부모)로 부터 분리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 보호자(시설관계자, 위탁부모 등)가 알아야 할 아동의 상황, 치료해야할 부분 등을 알기위한 점검표로 현재 상황에 맞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 – 아동의 욕구와 강점 및 문제행동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호유형을 결정
작성방법	– 상담·조사·사정과정 시 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욕구조사, 친부모·아동상황 점검 중 1회 이상 반드시 가정방문하여 실시) – 해당 아동(취학아동) 또는 미취학아동의 경우 보호자(친부모)를 대상으로 본 상황 점검 실시 –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추측성으로 작성금지
활용시기 및 방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0동의 원가정 복귀 시(원가정 복귀 가능성, 0동과의 정기적 만남, 원가정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항목에 대하여 1~4번 [예], 5~8, 10번 [0H으], 9, 11번 [예], 12~17 [예]의 경우 분리보호 또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 검토 [불분명함] 답변할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필요

		하고	작성내용
	<u></u>	아동에게 중증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성장발달 지연, 제한된 신체 기능, 인지영역 문제, 시각 또는 청각의 문제).	-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경우 체크 및 해당 장애 또는 질환 기재 예)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발달장애 등
· 성상	7	만성질환이나 1주일 한번 이상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 있다 (응급실을 분기별 1회 이상, 질병으로 1주일 이상 입원, 잘 움직이지 않고 활동량 부족하다).	- 병명에 따른 치료 주기 기재 예) 품행장애로 주1회 병원상담
유 나 사	т	주의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과잉행동을 보인다(영유아·초등)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산만해지며 지루해 한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 주의집중, 과잉 행동 여부에 따라 체크 및 새로운 양육자(양육시설)가 알아야 할 특이사항 등 기재 ※ 아동 면담 시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불분명함'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아동양육에 관심이 없는 보호자의 경우도 '불분명함'이라고 응답 하는 경우 아동의 비언어적 행동 관찰함.

		바	작성내용
	4	향정신성 약물(가스, 본드 등) 혹은 음주 및 흡연경험이 있다(T매체 (인터넷, 스마트폰)에 과의존하여 일상생활이 어렵다).	 - 경험이 있는 경우 체크 및 음주, 흡연량 정도 기재 - 영유아의 경우 IT매체 이용시간 정도 기재 ※ 본 항목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환경 관찰(재떨이, 담배냄새, 술병, 양육자가 상담 시 아동 행동 등)
	Ŋ	성인이나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성인이나 교사의 말을 잘따르고, 자신에 관한 이야기나 자신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잘한다.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다).	-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사유, 특징 기재,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해당 사람의 주요 특징, 이유 등 확인
	9	긍정적 교우관계를 형성한다(또래와 비교적 잘 어울리고, 또래가 갖고 노는 장난감에 관심을 표현한다).	-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사유 기재(집단따돌림의 가해자, 피해자, 어린이집에서 놀이시간에 다른 아동과 어울리지 못함 등),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해당 사람의 주요 특징, 이유 등 확인
사 <u>희</u> 적.	7	연령에 적합한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모와의 분리 상황에서 심하게 떼쓰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자기통제력이 안되는 경우(상황) 기재 예) 원하는 것을 얻고자할 때 떼를 쓰고 목소리가 쉴 때까지 운다.
를 예 사 나	∞	자아존중감이 높다(아동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한다).	- 자아존중감이 높다(낮다)고 평가하는 이유 또는 자아존중감 검사한 경우 해당 결과 주요 특징 기재
	0	정학·유급·퇴학 경험이 있다(학교폭력의 문제, 사회적 규칙을 위반한다).	- 경험이 있는 경우 횟수, 기간 등 기재
	10	학업성취도가 높대(학습에 대한 의욕 및 동기가 높다).	- 높다(낮다)의 학업성취도의 근거, 학업점수, 등수 등 기재, 별도의 재능이 뛰어난경우 해당 내용 기재예) 교과목 시험에서 전과목 80점 이상 받음. 영어수업을 좋아하며, 영어시험에서는향상 90점 이상이다.
	7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 필요한 특수교육 및 사유 기재
문제행동	12	섭식 문제가 있다. 예) 지나치게 먹지 않아 하루에 한끼 먹이기도 힘들다. 구토할 때까지 먹는다. 제대로 된 식사보다는 간식으로 끼니를 때운다.	- 섭식문제 있는 해당항목 체크 및 특이사항 있을 경우 기재
	13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보이고, 공격성, 사회적인 부적응을 보인다(분노 표현이나 공격적, 반항적 행동, 행동통제의 어려움이 있다).	- 해당 항목에 해당될 경우 '예', 해당 없는 경우 '아니오', 이 외 기타 특이사항 있을 경우 기재

		자	작성내용
		예) 집, 학교 등에서 말을 안 듣고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어른에게 대든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잘 속인다. 가출이나 무단결석을 한다.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거나 따돌림을 당한다. 인터넷 등 게임에 몰입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향정신성 약물(가스, 본드 등) 혹은 음주 및 흡연경험이 있다.	
	4	위축되거나 불안한 행동을 한다. 예) 눈 맞춤이 잘 안 된다. 어떤 동물이나 상황, 장소에 대해 지나치게 겁을 내고 무서워한다. 슬퍼하거나 우울해 한다.	- 해당 항목에 해당될 경우 '예', 해당 없는 경우 '아니오', 이 외 기타 특이사항 있을 경우 기재
	72	아동의 연령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가 의심된다. 예) 5세 이상이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8세 이상이나 의사소통, 혼자 옷입기·법먹기, 집 전화번호 암기하기 등 독립적 활동이 현저하게 서툴다.	- 해당 향목 있을 경우 '예', 없는 경우 '아니오', 이 외 기타 특이사항 있을 경우 기재
	16	학습의욕이 저조하다.(학습 장애 포함, 새로운 개념을 습득하는 게 어렵거나, 숫자를 다루거나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해당 항목에 해당될 경우 '예', 해당 없는 경우 '아니오', 학습의욕이 저조하다는 사유 기재
	17	이동이 연령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가 의심된다(지능이 낮거나(경계선급 지능수준) 적응행동에 문제가 있다).	- 해당 항목에 해당될 경우 '예', 해당 없는 경우 '아니오', 지적정애가 의심되는 사유 기재
는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8	0동은 원7정외 보호를 희망한다.	-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은 경우 이유 등 기재(부모와의 애착정도) ※ 아동이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지 따라 개별보호·관리계획수립 시 반영 예) 조부모, 친인척, 가정위탁, 시설, 입양 등
17 17	19	0동은 원가정외 보호할 경우 부모와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	- 아동과 부모의 애착정도에 따라 희망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사유 기재필요 정기적 만남 희망과 주기가 너무 길 경우 이유, 상향파악 기재
성		- 아동상황점검표는 평가향목에서 1~4번 [예], 5~8, 10번 [아니오], 9, 11번 [예], 12~17 [예]의 경우 분리보호 또는 복자서비스예) 아동상황 점검한 결과 정신건강·의료적 욕구에서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교육적 욕구에서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충돌조절에 어려움, 학습의욕의 문제가 체크되었음. 이에 분리보호가 결정될 경우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보호·관리계 분리보호가 안될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함.	아동상황점검표는 평가항목에서 1~4번 [예], 5~8, 10번 [아니오], 9, 11번 [예], 12~17 [예]의 경우 분리보호 또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 검토예) 아동상황 점검한 결과 정신건강·의료적 욕구에서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교육적 욕구에서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문제행동으로 충돌조절에 어려움, 학습의욕의 문제가 체크되었음. 이에 분리보호가 결정될 경우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되거나 분리보호가 안될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함.

		0	卡동보	호동	의서			
아동	성 명				성별			
인적사항	생년월일					(만	세)	
	성 명				성별			
보호자 인적사항	아동과의 관계							
	연락처	핸드폰 :	_	_	집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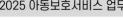
본인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의 분리보호조치에 대해 동의합니다. 아동복지를 위한 귀 기관의 조치 및 아래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피해아동은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서식 19〉활용

- 1. 보호아동 보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 결과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 보호자의 희망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함
- 2. 보호자는 아동의 분리보호 기간동안 면접교섭을 적극 이행함
- 3. 보호자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상담 및 원가정 점검 등에 적극 참여함
- 4. 보호자는 아동의 이익을 위한 친권 행사(친권자의 동의 등)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함
- 5.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에는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따라 상담, 가정 방문,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등 원가정 복귀 절차를 진행함

20 년 월 일 보호자: (인)

○○시·군·구청장



서식 10-1

분리보호(전원)에 관한 설명 확인 및 아동 동의서(신설)

분	¦리보호(전	[원)에 관한 설명 확인 및	아동 동의서
아동	성 명	성	별
인적사항	생년월일		(만 세)
분리보호 (조치		년 월 일	시 분
조치	기자		
근거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저 □「아동복지법」」제15조제6항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저	
아동 인도((보호시설			
분리보호의	취지와 목적 및	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호조치(내용에 관한 사실은 아동의 연령, 장애유무, 있는 언어로 조치자에 의해 설명되었습니다	언어발달 수준 등을
아동 (해당되는 내용에 모드 날((분리보호에 동의하는	F 체크 및 서명 또는 인)	□ 분리보호(전원)에 관한 계획 및 설명을 이해 □ 분리보호(전원) 되는 시설의 종류, 생활 형태, 이해하였습니다. □ 분리보호(전원)에 동의합니다.	=
체		아동 :	(서명 또는 인)
조치지 (서명 또는 해당되는 내용이	날인 필수,	 ○ 아동의 연령 및 발달 수준 등에 따른 특성상 0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됨에 따라 분리보 ○ 아동은 동의하지 않았으나, 아동을 보호하여 분리보호(전원)를 실시합니다. 	호(전원)를 실시합니다.
		조치자 :	(서명 또는 인)

분리보호에 대한 설명 시 유의사항

- 1. 아동의 연령, 특성 등에 따라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및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안내합니다.
- 2. 분리 보호가 필요한 상황 및 이유, 보호 절차를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3. 아동의 보호조치 계획과 예상되는 보호기간, 보호시설의 종류, 특징,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합니다.
- 4. 예상되는 아동의 환경 변화(학교, 가족관계 등) 및 지원계획을 설명합니다.
- 5. 보호될 시설의 위치 및 생활환경(함께 지내는 아동 수, 방 구조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6. 휴대폰 사용 제한, 취침·식사 시간 등 시설 내 생활 규칙 준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7. 보호기간 동안 시·군·구 아동보호팀 및 보호기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양육상황점검과 사례관리 진행에 대해 설명하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8. 면접교섭 희망 여부 및 주기, 방식 등에 대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9. 아동이 원하는 서비스 지원 내용(교육, 건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 10. (피해아동)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조치 사항과 지원계획을 설명합니다.
- 11. 아동의 안전 우려 등 보호를 지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 12. 보호종료 및 가정복귀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서식 11

개별보호·관리계획서

개별보호·관리계획서(피해아동보호계획서)

보호의뢰 사유 (※ 중복 체크 가능) □유기 □미혼부모·혼외자 □미아 □가출 □비행·부랑 □아동학대														
	''근 '' '' '' '' '' '' 곤·실직 □'보								□기타			사진		
신원 ※ 신원	불명시「실종(아동법」 신		작성		18	32{	<u> </u>						
□ 신원 확인	인 □ 신원	불명	ı] 유 🗆	무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아동	주소							전화번호(휴	대전화번호)					
	실거주지													
니스키	관계 성명 □남 □여 생년월일													
보호자 (원가정)	주소								전화번호(휴대	전화반	<u> </u>		
(セパ3)	실거주지													
	□소년소녀기	□소년소녀가구 □한부모가구 □부부중심가구 □조손가구 □미혼모부가구												
가구유형														
	□장애인가구 □북한이탈주민가구 □다문화가구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ni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가능여부			
	וויכוכ	성명		년	\		-	직업	두게어버	면접교섭가능여부				
가족관계	관계	66		생년월일 년	(나이) 월 (일 ()	역합	동거여부			교십기 등 어무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가능여부				
	NEOL 07/	(0.114.01)		_			_							
	아동의 욕구(L OTI		_	기조기계			. I I T -l	1 7171		
	□안전 □경제	□건강		□일상생활	를 퓨시	_		가 <u>족</u> 관계 생활환경				관계 및 권익보장		
	□기타()	□고용				ö철된'8		اللا	급절 :	* G173		
	관찰된 (피해)아도이 5	,											
욕구 조사		MO-1 -	70.											
결과	보호자의 욕	구(우선순	위)											
	□안전	□건강		□일상생	활 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5	및 권익보장		
	□기타()											
	관찰된 보호	자의 특성	:											

	보호조치(아동	등복지법 제15조)										
	□상담·지도(1호)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2호)	□가정위	· 나탁(3호)					
	□아동복지시	설(4호) 🗆]전문치회	로기관·요양소(5호	<u>₹</u>)	□입양(6	6호)					
	재보호조치(0	사동복지법 제16조의	44)									
	□가정위탁(제	네15조제1항3호)	□아동	복지시설(4호)		□전문치	료기관·요양소(5호)					
보호계획	타 법에 의한	<u>.</u> 조치										
	□아동학대처	벌법 47조()		□소년법	□소년법 32조()						
	타 법에 의하	H 설치된 시설										
	□청소년복지	 시설 □장애(인복지시·	설 □기E	¥()						
	보호조치		0.1		기관(/	· 설)명 :						
	일자	년 월	일	보호의뢰 기관	· 기관(시설)종류 :							
	0700			TUCH			LINIA LIIO					
	욕구영역	단기목표		장기목표			서비스내용					
아동 서비스												
계획												
		□기능 □불기	'능	□비대면 가능	(대면 불기	')						
		※ 면접교섭 불가능	사유									
	면접교섭	□면접교섭대상 모두 사망 □면접교섭대상 모두 연락두절 □유기 □미아										
면접교섭	가능 여부	□법적 처분 및 학대 고위험군 □기타 ()										
지원계획		※ 비대면만 가능(대										
(재보호조치	HHOL	□보호자 수감 □보호자 질병 □보호대상아동이 영아 □기타()										
미작성)	면접교섭 주기	□월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기타()										
	지원내용											
	(원)가정복귀	□가능 □불7	능									
원가정 점검	가능 여부	※ 원가정복귀 불가	※ 원가정복귀 불가능 사유									
계획	710 91	□보호자 사망 □]보호자	연락두절 □입	양대상아동	등 □유기	□미아 □기타()					
계획 (재 <u>보호조</u> 치	원가정	※ 중복체크 가능										
미작성)	지원방법	□상담 □사례관	난리 연계	□금품지급	□기타()						
1 10/												
	지원내용											
담당자 의견												
수립	님일	년 월	일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07mm[인바요지 60a/m²]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고유 업무)
시기	- 상담·조사·사정 과정 완료 후(접수상담, 욕구조사, 아동·친부모상황점검) - 보호유형 변경, 위탁가정 변경, 타 시·군·구 사례이관 시 보호계획 변경
작성목적	 접수상담 및 아동·친부모상황점검 등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아동을 보호하게 될 보호기관(가정)에서 제공할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서 사례관리 계획
작성방법	 아동 및 친부모(보호자), 주변인 상담 내용, 욕구조사 결과, 아동 및 친부모상황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 원가정지원(복귀)계획의 경우 보호자의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 중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작성한 피해아동보호 계획으로 갈음 아동·친부모상황점검, 욕구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변경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조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부터 확인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 「관찰된 보호자 특성」란에 기입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함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아동의 월령에 따른 운동기능, 미숙아 출생, 신체성장발달 지연, 신체적 질병, 장애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등 칸에 작성 예) 출생 시 몸무게 2.5 이하,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신체기능의 장애, 정신적 장애, 만성적질병으로 빈번한 입원, 치료, 알레르기, 지속적 약복용, 아토피, 비언어적, 언어적 의사 표현불가, 주 양육자와 의사소통 어려움 등 아동복지법 개정('21.12.30.)으로 이전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한 보호대상아동은 차기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면접교섭지원계획을 수립 후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변경
활용방법	- 원가정외 보호기관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아동 양육상황점검,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 등 아동의 보호 종료(원가정 복귀)시점까지
기타	- 단순한 개별보호· 보호관리계획 변경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제외(시·군·구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항목	작성내용							
	보호자, 가구유형, 사항, 욕구조사 결과	 접수상담, 욕구조사 내용과 동일(시스템 자동 연동)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아동의 월령에 따른 운동기능, 미숙아 출생, 신체 성장발달 지연, 신체적 질병, 장애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찰된 (피해)아 동의 특성」등 칸에 작성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관찰된 보호자 특성」란에 기록 							
= = 11 = 1	상담·지도,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 체크 후 드림스타트로 사례이관 ※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대상 제외							
보호계획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요양원, 입양	- 양육상황점검 및 사후관리대상 ※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대상							

	항목	작성내용				
	기타	-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쉼터, 장애인거주시설로 보호조치 시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해당 부서로 사례이관(아동보호팀에 이관하지 않 으며, 시스템에서는 심의결과까지 입력 후 종결)				
	보호조치일자, 보호의뢰기관	- 시설입소 날짜 등, 해당 원가정외 보호기관명 및 시설종류 기재예) 기관(시설)명 : 하늘 천사원기관(시설)종류 : 양육시설				
아동 서비스 제공계획	욕구영역, 단기목표, 장기목포	-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아동의 월령에 따른 운동기능, 미숙아 출생, 신체 성장발달 지연, 신체적 질병, 장애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찰된 (피해)아 동의 특성」등 칸에 작성 ※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에 2021년 건강검진사업 안내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계획 등				
면접교섭 지원계획	면접교섭 가능여부	 면접교섭 가능여부 체크(불가능 체크 시 반드시 사유 확인) ※ 면접교섭이 가능한 가족범위(민법 779조) : 친부모, 양부모, 계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 면접교섭은 '대면'이 원칙이며, 보호의뢰 사유에서 보호자 수감, 보호자질병 및 아동이 영아인 경우 등에 한하여 비대면만 가능(대면불가) 면접교섭지원계획은 가족관계에서 면접교섭가능여부 확인 후 해당 가족구성원의 연락처 확보 ※「아동학대처벌법」제46조, 제52조에 의해 보호조치된 아동의 분리 보호가 지속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종결하고 「아동복지법」 15조에 의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면접교섭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면접교섭 이행 여부 결정 				
	면접주기	면접교섭 대상자의 면접주기 체크				
	지원내용	- 지원내용 등 작성 예) 격월 1회 외조모댁에 가정방문(외출) 필요 월 1회(첫째주 금요일) 친모집에 외박(1박) 필요				
	원가정 복귀 가능여부	- 원가정 복귀 가능여부 체크(불가능 체크 시 반드시 사유 확인)				
원가정 지원 (복귀)계획	상담, 사례관리 연계, 금품지급, 기타	- 욕구조사, 친부모상황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원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기재예) 분기별 상담 및 취업정보(국비지원 미용자격증 취득과정) 제공 - 입양아동의 경우 작성 제외				
	담당자 의견	- 아동과 보호자와 종합적인 보호계획 의견 정리				
	수립일	- 심의날짜가 기준이나, 사후심의 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확정된 날짜				



서식 12 아동카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아 동 카 드

※ []에는 해당	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보호의뢰 사유 (※ 중복 체크 가능)	[] 유기 [] 미혼부모·혼외자 [] 미아 [] 가출 [] 비행·부랑 [] 아동학대 [] 보호자 빈곤·실직 [] 보호자 사망 [] 보호자 질병 [] 보호자 수감 [] 부모 이혼 [] 기타 발생 당시 사진												
신원 확인 여부	[] 신원 확 * 신원 불의 182 신고	명 시,「실종아동	신원 불명 5법」제6조에 무	따른 신상카	드 작성								
	성명					주민등록	루번호						
	등록기준지					나이							
			서	([]추정	[]확실)							
아 동	주소				,								
	학교명			기타									
	-0	학교	학년										
	발생 일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월수입	생활 -	수준			주거							
		원	[]상 []중	[]하[]수급자		[]자가 []전세 []월세			
	관계	성명		생년월일	0.1	a. /		직업					
				년	월	일 (세)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 1 –1 (2.11				년	월	일 (세)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년	월	일 (세)						
	1 1-111	1 -1	01 7) I									
= '	날짜	년		일									
보호조치	보호조치	[]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설 입소	[] 입잉	[의뢰					
사항	유형	[] 전문치료기	기관 또는 요영	1									
	보호시설	명칭		주소									

				((뒤쪽)
가정환경 (성장 과정)					
상담자 의견					
지도·판정					
금품 지급사항					
		작성일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 인)

297mm×210mm[백상지(120g/m²) 또는 백상지(80g/m²)]



◎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기	- 상담·조사·사정 과정 완료 후(접수상담, 욕구조사, 아동·친부모상황점검 완료)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분리보호 확정된 직후
작성목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위함
작성방법	- 아동 및 친부모(보호자), 주변인 상담 내용, 욕구조사 결과, 아동 및 친부모상황점검 결과, 개별보호· 관리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 보호조치 변경 시 현행화 됨
활용방법	- 보호대상아동의 필수서식으로 아동 보호조치 시, 사례이관 시 기초자료

	항목	작성내용
보호의뢰 사유	유기, 미혼부모·혼외자, 미아, 가출, 비행·부랑, 아동학대, 보호자 빈곤·실직, 보호자 사망, 보호자 질병, 보호자 수감, 부모 이혼, 기타	보호의뢰 사유 해당 항목 확인
신원	신원확인, 신원불명 182신고 유, 무	- 아동의 신원확인 유·무 - 실종아동 신고 유·무
아동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나이, 주소, 학교명, 기타 발생일시, 발생장소	- 신원확인 유에 해당 시 관련 내용 기록 - 유기된 아동일 경우 해당
보호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월수입, 생활수준, 주거	- 보호자 상담을 통해 해당 내용 확인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u>보호조</u> 치 사항	날짜, 보호조치 유형, 보호시설명, 주소	- 보호조치일 - 보호유형 예)가정위탁, 양육시설, 입양 등 - 보호시 설명 및 주소 기재
	가정환경(성장과정)	- 가족관계, 형제·자매관계, 경제적상황 등 기록
	상담자 의견	- 보호자 상담을 통해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종합적 의견
	지도 판정	- 가정환경 및 상담자 의견을 통해 주요 욕구 등을 반영한 최종 내용
	금품지급사항	- 이전에 받은 지원 내역 확인
	작성일, 소속, 직위, 성명	- 시·군·구 담당자 정보 기재

서비스 제공 계획서

		-	-	. –		•	•								
사례(관리	네)번호														
아동	Ē.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916	•	00	02 1					OLZZ							
	관계	성명	생년월일 (니 년	이) 월	일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동의여부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니 년	이) 월	일 (직업	동거여부	면집	면접교섭동의여부					
	관계	성명	·이) 월	일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동의여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아동 상황	아동의 욕구에 관한 사항														
	아동의 욕구에 관한 사항														
	욕구영역	서비스 저	I고H요			방밭	н	메고	기고난	담당지	1)				
	7107	VIII N	10110		•	O E	3	71107	12(1	201	,				
아동 서비스 계획															
- 11-7															
		□가능 □불가능 □비대면 가능(대면 불가)													
		※ 비대면만 가능(대면불가)사유													
	면접교섭	□보호자 수감 □보호자 질병 □보호대상아동이 영아 □기타()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가능 여부	□월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기타()													
계획 (재보호조치		※ 면접교섭 불가능 사유 □면접교섭대상 모두 사망 □면접교섭대상 모두 연락두절 □유기 □미아 □법적 처분 및 학대 고위험군 □기타()													
미작성)	지원내용														
	 ※ 보호시설 주소지 노출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피해아동의 경우 작성)														
원가정 지원계획 (재보호조치 미작성)	※ 상담, 사려	관리 연계, 금품지급	디딩												
아동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서비스 제공 기	계획 수립일														
소속		직위	l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시기	- 아동 배치 후 1주일 이내 ※ 일반위탁(친인척 외) 및 전문위탁의 경우 2주 이내, 일반위탁(친인척)의 경우 2개월 이내 수립
작성목적	- 개별보호관리 계획에 맞게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작성방법	- 아동의 가족관계, 아동 상황, 아동 서비스 제공 계획,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 원가정 지원계획(재보호조치 미작성), 아동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 상세히 작성
활용방법	- 아동 양육상황점검 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적절성, 목적달성, 아동의 변화 등의 점검 근거로 활용
기타	- 개별 보호·관리 계획 변경 시 현행화

서식 14 면접교섭 일지(결과보고서)

면접교섭 일지(결과보고서)

관리번호 :										즈	t성일 :	년	월	일
아동 정보	아동명, 선	생년월일	Į											
면접	□친부	□친모 □양부		□양모	□계부	□계모	□형제	□형제 □자매		□친조모	. □외조부	□외조모	□7 E	()
대상자	(성명)													
면접 대상자 외 참석자	아동복지시설담당자, 위탁부모,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사 등 면접 대상자 외 타인의 참석 여부													
	면접님	찰짜	시작시간	<u> </u>		장소				면접 병	뱀			
							□ (대	면)			□ (비대면	1)		
면접 개요	yy.mm.dd ~yy.mm.dd		00:00	00	0:00		□ 외출□ 외부□ 위투□ 제	설(센터) 나 출(원가정 년 《원기정 병 차가정 방문 3의 장소 주활동프로 나(방문/무빅 문/1박 아 문 만남	생)	□ 문사(SNS 포함) □ 서신 □ 기타()
면접 내용														
면접 사유	정기 면접	접, 기념	일, 학교형	낽사 등										
취소 또는 중단 사유	해당 시	작성												
아동 소감	면접을 さ	하며 좋?	았던 점, 9	엠미가 있	l던 점,	다음 면접	시 희밍	하는 것 :	등을 중심	심으로 직	성			
작성자 의견	면접이 0	아동에게	미친 영향	향(면접 /	시 분위기	'l, 아동과	면접 대	상자 간 성	상호작용	등)				
다음 면접 계획	면접 예성	낭 날짜·	장소·방법	l, 참석 (예정자 등	5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u> </u>		1 7 11			00							(· 10		

☑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시기	- 면접교섭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면접교섭 결과보고서 작성 ※ '서비스제공 계획서'에 계획된 정기적 면접 이행 직후
작성목적	- 면접교섭 내용 평가 및 다음 면접 계획 수립
작성방법	- 면접 대상자, 면접 개요, 면접 내용, 면접 사유, 면접 취소 또는 중단 사유, 아동 소감, 작성자 의견, 다음 면접 계획 등 상세히 작성
활용방법	- 양육상황 점검 시 면접 이행 여부 모니터링의 기초 자료로 활용
기타	- 면접 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

항목	작성내용
아동정보	- 아동명, 생년월일 작성
면접 대상자	- '서비스 제공 계획서'의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참석자 체크 및 성명 작성
면접 대상자 외 참석자	-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위탁부모,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사 등 면접 대상자 외 타인의 참석 여부 작성
면접 면접날짜, 시작시간, 개요 종료시간, 장소, 방법	- 면접날짜, 시작시간, 종료시간, 장소 작성 및 면접 방법 체크 ※ 비대면 면접의 경우 시작시간, 종료시간, 장소 생략 가능
면접 내용	- 아동과 원가정이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함께 한 일 등에 대해 작성 예) 아동 유치원 행사에 친모, 외조모가 참관 후 함께 저녁 식사/아동의 사진 등을 담은 서신을 친모가 수감 중인 교도소에 전달 / 입원중인 친모에게 영상통화로 아동이 생활하는 모습 등을 보여줌
면접 사유	- 정기적 만남(면접), 기념일(생일), 입학식/졸업식 등 사유 작성
면접 취소 또는 중단 사유	- 계획된 면접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여 작성(연락없이 만남을 취소, 술에 취해있어 중단, 교통문제, 불규칙한 근무로 인한 취소, 면접 대상자 병세 악화로 통화 불가 등)
아동 소감	- 면접을 하며 좋았던 점, 의미가 있던 점, 다음 면접 시 희망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영아의 경우 아동 소감 생략 가능
작성자 의견	- 면접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정서안정, 즐거운 감정 표현, 자신감 회복, 정체성 확립, 양가강점, 퇴행, 화내기, 우울감표출 등) 작성
다음 면접 계획	- 면접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면접의 예상되는 날짜, 장소, 방법, 내용, 사유, 참석자 등을 작성

양육상황 점검표

점 검 일	13	년 월 일(점검		□대면		관리번호							
2 2 2	딘	5 5(차)	방법		□유⁄	선	개팀	별보호	·관리계획	수립일		년	월	일
	성명		성별			1		람	□여	생년	월일 년		월	일	
아동정보	보호2 (아동복지	•							보	호기관					
	보호조	치일	년			월	일		보호기관 담당자						
			목표											게 따른	
	육구영역		스 내	내용 서비스 욕구점검 ! 제공기관 (서비스 적절성 아동의 !			절성,	목적달							
개별보호· 관리계획															
점검															
아동의 상황 (적응상태, 변화정도, 만족도 등)			보호조	치의 만족	여누	분, 구성	성원고	라의	관계, 🗸	서비스 만족,	등〉				
	가족 돌봄 여부 미해당 미해당														
	돌봄 대성	ş 🗆	□ 조부모 □ 외조부모 □ 친모 □ 친부 □ 형제·자매 □ 기타					기타 친	<u></u>						
가족돌봄 현황 돌봄 주기			연 1호			월 1 기타	+(분기 1회	이상	□반	기 1	회 이 _'	상
	돌봄 유형	3	□ 가사 도움(집안일) □ 병원 동행 등 의료 지원 □ 함께 시간보내. □ 자기관리 돕기(목욕, 식사 등) □ 이동 지원 □ 생활비 등 경제적												

2005 01511411111	_

		(대면)	(대면) □이행 총 ()회 □미이행			- ※ □면접교섭 이행불가			
	면접교섭	(비대면]) □이행 []미이행			뜨급 이영출기		
면접교섭 이행 점검	이행 여부	□연락되	교섭 미이행 사유 두절 □병리적 문저 주기 미도래 □기타		문제(근	'로) □금 [;])	전적 문제		
	이행 내용	〈정기면집	접, 기념일 축하 등〉						
	의기저	□점검	□미점검		* □	원가정점검	불가		
	원가정 점검 여부		※ 원가정 미점검 사유 □연락두절 □병리적 문제 □직장문제(근로) □기타()						
점검 방법		※ 중복체크 가능 □방문()회 □내방()회 □유선()회 □외부()회 □기타() 총()회							
원가정점검			※ 중복체크 가능 □상담 □사례관리 연계 □금품지급 □]기타()						
지원 내용		〈원가정	지원계획 대비 작성〉						
점검 후 조치계 ^호	[] 보호 [] 보호	보호 유지 호계획 변 호조치 변 호종결 ([경(·정 복귀 []기타	·()))		
점겸결과 총평		가동에게 ㅁ	기친 영향, 아동소감, 원	가정 점검 결	과 등 '	담당자의 종합	·적 의견〉		
소속			직급(직위)			성명	(Д-	명 또는	: 인)
						0.4	0007 [0111	OTL CO	, / al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고유 업무)
시기	- 아동 분리 보호조치 1차(1개월 이내) 이후 3개월 주기로 실시 - 보호 중 아동의 다른 욕구 발생 시(서비스 변경) - 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 -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거나 보호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목적	-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원가정외 보호기관에서의 제공서비스 및 아동 변화 정도 점검 - 원가정 점검을 통한 가정복귀 시점, 가족 변화 정도 파악
작성방법	 아동, 친부모(보호자), 원가정외 보호기관 담당자 상담(유선, 대면 등)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항목 기록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계획 수립 및 제공여부 등 ※ 필요시 아동, 친부모 상황점검표 활용 면접교섭 이행점검은 면접교섭결과보고서(원가정외보호기관 수행)를 바탕으로 점검 원가정 점검은 보호자(친권자후견인)가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원가정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작성된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의 변화상황을 반드시 작성 예) 알레르기 완치, 주 양육자와 의사소통 향상, 치수별 영유아건강검진 수검결과 등
활용방법	- 보호계획 변경,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 보호종결 등

	항목	작성내용
개별보호 :	관리계획 수립일	- 심의날짜가 기준이나, 사후심의 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확정된 날짜
아동복기	기시설 담당자	- 원가정외 보호기관에서 아동 담당자(상담원, 생활복지사) 성명 기재
	성명, 성별, 생년월일	- 접수상담, 욕구조사 내용과 동일(시스템 자동 연동)
	보호조치	-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아동의 보호(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3호~6호 해당)조치사항
아동정보	보호기관	- 아동이 보호되는 기관명 예) 00가정위탁지원센터, 00보육원
보호조치일		- 시설입소 날짜
	점검일	- 아동을 보호조치이후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날짜
	욕구영역 및 목표	- 욕구조사 결과(시스템 자동 연동)
개별보호·관리 계획 점검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에 따른 욕구점검 및 평가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수립한 아동서비스 제공 계획에 맞게 받는 서비스 내용 및 제공 기관 기재 아동 및 양육자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적절성, 목적 달성, 아동의 변화(신체변화, 심리·정서 상황, 교육 상태 등) 등을 기재
아동의 상황 (적응상태, 변화정도, 만족도 등)		 - 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적응상태, 변화정도, 구성원과의 관계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 등을 기재(아동의 실제 욕구 등 파악) -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작성된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의 변화상황을 반드시 작성 예) 알레르기 완치, 주 양육자와 의사소통 향상 등

항	목	작성내용			
면접교섭 이행	면접교섭 이행 여부	- 시설관계자가 작성한 면접교섭 일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접이행여부, 횟수 체크 ※ 면접교섭계획이 있으나 미이행한 경우 미이행 사유 체크 ※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면접교섭 가능여부에서 불가능으로 체크한 경우 면접교섭 이행불가에 체크			
점검	이행 내용	 면접이행 내용(대상, 방법) 작성 예시) 친모가 아동 생일을 맞이하여 외박(1박, 3월 5일) 아동면접 결과(아동소감)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및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재 			
	가족돌봄 여부	아동이 중증질환, 장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는 경우 체크(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			
가족 돌봄 현황	돌봄 대상	아동의 가족 돌봄 대상 확인			
점검	돌봄 주기	아동의 정기적 가족 돌봄 주기 및 누적 돌봄 기간 확인 ※ 누적 돌봄 기간이 24개월 이상 길어지는 경우 가족 돌봄에 대한 아동의 의견 청취 및 서비스 지원, 보호조치 변경 등 검토 필요			
	돌봄 유형	구체적인 돌봄 활동 및 유형 확인			
	원가정 점검 여부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원가정점검 이행여부 체크 - 미점검 시 미점검 사유 체크 ※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불가능한 경우 원가정점검 불가에 체크			
원가정점검	점검 방법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방문, 내방 유선, 외부 기타 등 각각의 횟수를 기록하고 최종 횟수 기록			
	지원내용	-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수립했던 원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의 달성 정도 부모의 양육환경 변화 정도 기재			
점검 후 조치계획		-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점검 후 종합적인 양육상황 결과 기재 ① 현 보호 유지: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제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아동의 변화가 긍정적인 경우 ② 보호계획 변경: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 되지 않았거나,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원가정외 보호기관 해당 사유 확인 후 보호계획 변경 또는 서비스 제공 계획 변경 실시(시·군·구 사례회의(내부회의)를 통해 결정(사례결정위원회 심의제외가능) ③ 보호조치 변경: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 되지 않았거나,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아동이 부정적이거나, 아동이 현 보호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경우 보호조치변경 실시(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해야함) ④ 보호조치 종결: 아동이 원가정 복귀하거나 연령도래로 종결할 경우(사례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종결함)			
담당자	· 의견	- 양육상황점검 결과에 따른 담당자(아동보호전담요원) 종합적 소견(객관적 사실, 구체적으로 작성, 추측성 작성 금지)			
소속, 직	급, 성명	-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의 소속, 직급, 서명 기재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상아동	현재 주소	
	변경 주소	
	연락처	
대상시설 (위탁부모)	시설명(이름)	
	주소	
	연락처	
	보호 연장기간	[] 만 24세까지 연장(별도 사유 불필요) [] 만 25세 이상 보호기간 추가 연장
연장신청 정보	보호 연장사유	(만 25세 이상 보호기간 추가 연장 시 첨부하는 증명자료 참조)
	연장기간 거주 예정지	[] 시설(위탁가정) 내 거주 [] 시설(위탁가정) 외 거주

「아동복지법」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신청자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16-1

보호연장아동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

보호연장아동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

변겨 ○청ㆍ시서 내 → 바 거ㅈ [] 시서 바 → 내 거ㅈ []

	린	F8·시절 내 → 밖 기구 [] 시절 밖 → 내 기구 []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실거주지 변경(예정)일	연락처					
인적사항	주민등록상 주소						
	실거주지 주소 대학 기숙사[] 직장	기숙사[] 공공임대주택[] 기타[]					
대상자 계좌정보	은행명/예금주명	계좌번호					
	시설(기관)명	시설(기관)장 성명					
시설 (기관) 정보	시설(기관) 주소						
	시설(기관) 연락처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위 대상자의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아동복지시설의 장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첨부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보호연장아동 개인명의 통장사본 서류

서식 16-2 재보호조치 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

재보호조치 신청서

※ 색상이 어덕	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	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심의	의 후 2일
	성명		주민	민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1		
	연락처				
※ 아래 대리연	※ 아래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관계	주민	민등록번호	
대리인	주소				
	연락처				
	시설명 또는 위탁부5	 기 성명	부	 호조치의 종료 또는	
보호이력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00		- 연월일	-
	주소(시설 또는 위탁:	 가정 소재지)			
	[] 아동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 아동일시보:	 호시설	
보호구분	[] 자립지원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가정위탁	[] 그 밖의 아동	복지시설
 재보호	[] 대학 이하의 학교	1 재학·진학 준비	[] 직업 관련	 련 교육·훈련	
사유	[] 장애·질병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2조의2저	1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2		보호조치를 신청합니다.
			-101)	년	월 일
==	UT	신청인(대리	리인)		(서명 또는 인)
시 · 노시사	또는 시장·군수·	구정상 귀하			
대리인 제출서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서		
대리인(친족일 경우만 해당)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친족)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대	리인의 범위)		
2. 아동복지전	1.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배우자) 2.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재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종사자 및 위탁가정의 부모				



☑ 대리인 증명 서류

공통	- 위임장(서식62)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종사자	- 재직증명서
위탁가정의 무모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Ť ×

인

재보호조치 신청 위임장

	성명	생년월일
재보호조치 대상자 본인 (위임자)	주소	
(110,4)	연락처	
내용	보호를 받게 되는 재보호조치에 대	나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한 신청 호 주소지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본인과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 (수임자)	주소	
	연락처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본인)는 위와 같이「아동복지법 시행령」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재보호조치 신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서식 17 기정 복귀 점검표

가정 복귀 점검표

00.00.000	생년월일(연령)	보호예정	거주지 주소
작성일	보호자성명(성별)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연령)	보호기관(연락저)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아동 성명(성별)	평0 야 어 머	보호조치일

떲	평가항목	명가 ∨	>	특이사항
~	가족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이 있다. □ 언어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부부싸움 □ 심각한 갈등	ਲ	전기	
2	부모에게 심각한 정신장애, 신체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	ਲ	5 기사	
ო	부모 중 최소 1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지역업:	ਲ	어구	
4	부모의 소득이 안정되고, 부채의 정도가 크지 않다.	ਲ	전기-V0	

3	[1 7 2	Ī		1000
티	사연사	~ 사 음	>	투이사양
വ	부모에게 심각한 알콜중독, 약물남용, 도박 등의 문제가 있다. □ 알콜중독 □ 약물남용 □ 도박 □ 기타(ਲ	어나	
9	부모의 거주지가 일정하다. 지자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ਲ	어고	
	부모의 거주지의 안전 및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거주예정 가정환경조사 내용 특이사항 기재, 사진 필수 첨부)			
	(사진)	ਲ	전기상	
∞	부모는 아동의 분리보호 기간 중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 연락 주기 :	ਲ	전고	
<u></u>	부모는 아동과 재결합하는 것을 원한다.	ਲ	전 사	
10	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있다.	ਲ	어나	
(0동. 조 도구	소견 (아동의 원가정 복귀 적합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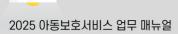
	Z		
	-		

자성반 지

작 성 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N 7	- 분리 보호된 아동이 원가정복귀로 종결하고자 할 경우(피해아동이외 아동) - 친생부모가 입양철회 시
<u>사</u> 성무적	– 부모의 양육환경을 조사하여 원가정 복귀의 적합성 여부 판단 – 친생부모가 입양철회 시 미혼모 한부모 서비스 및 드림스타트 등으로 연계하기 위함(필수)
작성방법	– 친부모 면담(가정방문) 등 통해 기재 –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운영, 원가정외 보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 자료(원가정 만남, 지원내용,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점검 – 친부모 연락 및 점검사항에 대해 필요시 원가정외 보호기관 협조
	– 본 점검표는 피해아동이외의 아동이 원가정 복귀시 활용 ※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원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며, 본 점검표는 해당사항 없음 – 친생부모 대상 가정복귀 점검표 작성 시 항목에서 '예'라고 한 경우 관련 서비스 연계

	자	작성내용
_	가족 구성원 건에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이 있다.	 해당 항목 체크 및 특이사항에 정도 및 강도 등 기재 ※ 해당항목의 횟수, 강도가 높을 경우 원가정 복귀 여부 고려해야 함. 특히 피해아동 으로 분리보호 조치된 경우 면밀히 검토 아동이 분리보호 조치된 사유 중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면밀히 검토
7	부모에게 심각한 정신장애, 신체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 지적장애(), 우울(), 기타() 신체장애 : 장애종류()	- 해당항목 체크 및 해당 장애의 등급 또는 강도, 해당 장애로 인해 이동 양육 기능여부를 기재(사후관리 시 해당 문제로 아동양육 확인) - 해당항목의 강도가 높을 경우 원가정 복귀 여부 고려
ო	부모(최소 1인)의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부 직업: 근로시간 모 직업: 근로시간	- 아동양육 계획서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 근로시간이 길 경우 아동양육 공백시간에 대한 계획에 기재

	뺩	작성내용
4	부모의 소득이 안정되고, 부채의 정도가 크지 않다. 소득 : 평균 만원	- 부모의 총소득금액 기재, 소득은 안정적이나 부채의 정도가 클 경우(부채탕감 방식 확인) 특이사항 기재, 소득이 불안정이나, 부채비율이 없거나 낮을 경우 '아동양육 계획서' 확인
വ	부모에게 심각한 알콜중독, 약물남용, 도박 등의 문제가 있다 □ 알콜중독 □ 약물남용 □ 도박 □ 기타(- 해당 항목이 아동양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가정 복귀 여부 고려, 해당 문제에 대해 치료계획 여부 확인, 아동이 분리보호 조치된 사유 중 해당 내용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
9	부모의 거주지가 일정하다. □ 자가 □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소득대비 월세비율확인, 부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부 고려
7	부모의 거주지의 안전 및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거주예정 가정환경조사 내용 특이사항 기재)	- 거주지 안정, 위치, 해당 층수, 위생상태, 아동의 독립공간 등 확인(양육계획서 참고) - 거주지가 안전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이전 계획 등 확인
∞	부모는 아동의 분리보호 기간 중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 분리보호 시점이후 아동과의 만남 정도 체크(활동 내역), 만남이후 아동의 태도 등확인(아동이 친부모 만남 이후 아동태도 변화는 담당 상담원(위탁부모) 확인) - 서식 15 '양육상황점검'에서 원가정과의 만남 및 지원 등 확인 - 분리보호조치 후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경우 사유 작성
O	부모는 아동과 재결합하는 것을 원한다.	- 재결합 사유 확인
10	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다.	-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물품, 아동의 독립 공간 여부 등 확인 - 아동물품 구입 필요성 및 구입계획, 아동의 독립공간이 없을 경우 주거지 활용계획, 이사 계획 등



서식 18 가정복귀 점검 체크리스트 〈참고용〉

1) 가정복귀 점검 체크리스트(아동용)

영역	문항	평가점수
OF EOIYI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다.	
아동인식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 더 행복할 것 같다.	
아동준비	주관식) 보호조치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가족(친인척 포함) 면접교섭에 참여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 (예) 월 1회 시설방문(조모, 모), 격월 가정방문(부, 고모, 조부모) 전화통화(주1회, 조부, 삼촌, 이모)	
	주관식) 본인이 가정으로 돌아간다면 언제쯤 돌아가고 싶은가요? ()
원가정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한 사람은 없다.	
평가	주관식) 가족원 중에서 본인과 관계가 가장 좋고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환경평가	가족/가정의 주거환경은 내가 함께 지내기에 편하다고 생각한다.	
문제해결 능력	주관식) 가족과 함께 살면서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기관이나 선생님을 (도움을 요청할 기관:) (선생님 이름과 연락처 :	알고 있다.)
<u>2</u> 4	나는 가족들과 잘 지내기 위한 방법들을 알고 있다.	

2) 가정복귀 점검 체크리스트(보호자용)

영역	문항	평가점수
보호자	아동과 함께 사는 것은 나와 가족 모두(분리보호의 이유와 관련된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가 원하는 일이다.	
인식	아동과 함께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나와 가족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부모 외 가족 및 동거인 포함)	
	아동과 함께 같이 살게 되면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나와 가족들은 아동과 잘 지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준비해왔다.	
보호자	함께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도움을 요청할 선생님이나 기관, 서비스를 잘 알고 있다. (도움을 요청할 기관:) (선생님 이름과 연락처 :)
준비	주관식) 보호조치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가족(친인척 포함) 면접교섭에 참여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 (예) 월 1회 시설방문, 격월 가정방문(고모) 전화통화(주1회)	
	현재 우리 가족/가정 내(분리보호의 이유와 관련된 가족구성원을 포함하여)에 폭력이나 방임의 위험성이 없다.	
하기때기	가족/가정은 경제적 상황이 좋은 편이다.	
환경평가 	현재 우리 가족/가정은 가족들끼리 관계가 좋다.	
	주관식) 현재 가족기능과 가정환경 관련하여, 본인이 가진 염려사항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해당적어주세요.(내용을

영역	문항	평가점수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내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준다.	
	나는 아이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한다.	
역량평가	아이가 나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위협적이지 않게 차분히 설명하고 지도할 수 있다.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주관식) 아동을 키우는 것과 관련하여 본인이 가진 염려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적어주세요.(해당 내용을

3) 가정복귀 점검 체크리스트(실무자용)

영역	문항	평가점수
	아동은 원가족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다.	
 아동관련	아동은 재결합을 원하고 있다.	
1022	주관식) 아동과 보호자 등 가족원들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졌다. ((예) 월 1회 시설방문(조모, 모), 격월 가정방문(부, 고모, 조부모) 전화통화(주1회, 조부, 삼촌, 이덕) 코)
	주양육자는 신체 및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다.(음주 및 약물의 문제 포함)	
	주양육자와 아동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다.	
 보호자	주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할 의지가 충분하다.	
포로시 관련	주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할 역량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주양육자는 아동의 재결합을 원하고 있다.	
	주관식) 주양육자와 관련하여, 실무자가 가진 염려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해당 내용을 적어주세요. (
	(결합할) 가정의 주거환경은 아동을 양육하기에 안전하다.	
 가족기능과	(결합할)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	
기숙기등의 가정환경	(결합할) 가정은 가족들끼리 관계가 좋다.	
	주관식) 가족기능 및 가정환경 관련하여, 실무자가 가진 염려사항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해당 내용을 (적어주세요.
	분리보호의 주원인이었던 위험요인이 감소 또는 해소되었다.	
제보호 가능성과	가족들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방법을 알고 있다.	
대처능력	도움이 필요할 때, 아동과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주변의 지지체계나 자원(기관, 학교, 친인척, 이웃, 종교단체 등)이 있다.	
재결합	(종합적으로) 원가정 복귀는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련	(종합적으로) 원가정 복귀는 아동과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믿는다.	



☑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작성 * 실무자용의 경우 원가정외 보호기관과 회의를 통해 작성
시기	- 분리보호된 아동이 원가정복귀로 종결하고자 할 경우(비학대아동)
작성목적	- 아동의 원가정복귀 적합성을 판단
작성방법	- 각 문항에 대해 평가점수 1점(매우 아니다). 2점(아니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작성
활용방법	 피해아동이외의 아동이 원가정 복귀시 활용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판단하되,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 필요시 관련 서비스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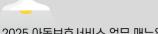
서식 19 가정 복귀 의견서

원가정외 보호기관 공통서식(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환경 조사서' 별도 작성)

○○○○기관

수 신∶○○ 시장

가정 복귀 의견서									
	아동명				ļ	성별			
 아동	생년월일(연령)		بر)		보호	조치일	0000. (00. 00	
VI S	주소								
	보호시설명								
	성명				,	성별			
보호	거주상태	자가	/전세/월세		아동고	바의 관계			
예정자	보호예정 거주지 주소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	학교	비고	
가족									
관계									
	아동의 의사(부모외	의 관계 포함	할〉						
	아동에 대한 서비스	: 제공내역							
의견	아동-보호자 면접교	1섭 실시내역							
	보호자의 양육 능력	및 태도〈거	주예정 가정	J환경 <u>-</u>	모함〉				
	원가정외 보호기관(아동보호, 양육시설 등) 의견								
〈종합 으	〈종합 의견〉								
			작성일	0000.0	00.00				
	<u> </u>	스속	직위		직급	성명			
		•			. —				



☑ 작성방법

작성자	- 원가정외 보호기관 담당자
시기	- 분리 보호된 아동이 원가정복귀로 종결하고자 할 경우(비학대아동)
작성목적	- 원가정의 점검 및 아동의 복귀 의사 확인
작성방법	- 원가정외 보호기관 담당자는 보호예정자의 면담(가정방문)을 통해 작성 - 가정 복귀에 대한 아동 의사 확인
활용방법	- 가정 복귀 점검표, 종결심사서 등 ※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원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본 의견서는 해당사항 없음

	항목	작성내용			
아동	아동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조치일, 주소, 보호시설명	- 아동 정보 기재 - 시설입소 날짜 등			
보호예정자	성명, 성별, 거주상태, 아동의 관계, 기타	- 보호예정자 정보 기재			
가족관계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비고	- 함께 거주하게 될 가족구성원의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등 기재			
	아동의 의사	- 가정 복귀를 원하는지, 부모와의 관계 및 감정 등을 상담 후 기재			
	거주예정 가정환경	- 방개수, 크기, 위치(안전여부, 층수), 아동물품 등 준비상황 등 기재			
의견	보호자의 양육 능력 및 태도	 양육계획서 또는 친부모상황점검표 내용 확인(직업, 수입, 근로시간), 아동 양육태도(양육태도 점검리스트 질문 확인) 			
	원가정외 보호기관(아동보호, 양육시설 등) 의견	- 아동과 부모의 변화정도 및 원가정 복귀에 대한 담당자 의견 기재			
	서비스 제공 최종 평가	- 아동이 원가정외 보호기관에서 받은 서비스 내용 및 최종 평가를 기재			

종 결 심 사 서

관리번호					보호유형				
보호조치일	년	월	일		종결심사일	년	월	일	
보호종료일	년	월	일						
종결유형	□ 원가정□ 기타(성 복구		연령도리	래에 따른 퇴소)	□ 입(양성립		
구분				평	가 영 역				
개별보호·관리계획 목표 및 달성정도		〈개별보호· 관리계획, 재평가 등 과정 등 종합하여 작성〉							
부모의 양육환경변화 (원가정복귀 시)									
종결사례평가			〈서비스 제공고	남정, 양욱	숙환경 조사결과 등 중	통합하여 작성	 >		
사후관리계획									
기타									
	1				작성일	년	월	일	<u> </u>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기	- 분리보호 된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결하고자 할 경우
작성목적	- 사례결정위원회 상정하여 아동의 보호종결을 심사하기 위함
작성방법	- 양육상황점검, 가정 복귀 점검표, 가정 복귀 의견서, 양육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 - 원가정 외 보호기관 담당자(상담원), 친부모를 대상으로 전화, 면담을 통해 작성
활용방법	- 사례결정위원회 회의자료, 사후관리 시 참고자료

항목	작성내용
관리번호, 보호유형 보호조치일, 종결심사일	관리번호 자동 연동현재 보호되고 있는 유형 기재 예) 가정위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시설입소 날짜, 심사일 기재
종결유형	- 원가정 복귀, 연령도래, 입양성립 등 기재
개별보호·관리계획 목표 및 달성정도	-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 목표 및 원가정외 보호기관에서 수립한 서비스 제공 계획 및 제공의 일치성, 재사정 단계(개별보호·관리계획 점검 및 평가) 확인 후 작성 - 아동이 장기 보호되었다가 종결할 경우 최종 개별보호·관리계획 목표, 서비스 제공 계획 및 제공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부모의 양육환경변화 (원가정복귀 시)	- 원가정 복귀하는 아동의 경우만 작성(가정 복귀 의견서, 양육상황점검표 참고)
종결사례평가	- 원가정외 보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과정(원가정외 보호기관), 가정 복귀 의견서, 양육계획서, 양육상황점검표, 가정 복귀 점검표 등을 바탕으로 작성
사후관리계획	- 원가정 복귀하는 아동의 경우 1년 이내 4회 사후관리 계획 등 내용 포함 - 연령도래로 종결하는 아동의 경우 사후관리 계획(5년) 등 포함(자립지원정착금, 디딤씨앗통 장, 주택마련, 취업, 학업 등) 작성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앞면)

○○○○ 자립지원전담기관장 귀하

					ELUTES IIM			
ITHAHT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	보호종료예정일		연락처					
원가정외 보호기관	기관명		기관주소					
개인정보 공개 및 관리	본 동의서는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 사후관리 진행내용은 내부자료로 보관된다. 사후관리 담당자는 개인의 정보가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대상자는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자립지원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3자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목적에 한하여 대상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및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사후관리 동의 획득을 본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대상자와 사례관리자의 의무	자립준비청년 대상자는 보호종료 후 5년간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립수준 평가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자립상태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신상의 어려움이나 변동이 있을 경우 사후관리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사후관리 담당자는 자립수준평기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각종 자립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과정에 대한 사실과 기록을 대상자와 함께 공유해야 하며, 대상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비고	본 동의서는 사후관리와 계획에 대하여 본 기관과 대상자가 상호 협의한 내용이다. 사후관리의 방식과 주기,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대상자와 사후관리 담당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동의확인	사후관리에 관한 내	내용을 상기와 같이 동의 동의획득자(자립: 동의획득자(자립:	동의권자 : 지원전담요원)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사후관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뒷면)

○○○○자립지원전담기관장 귀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30. 1	1220-10	_0 11-1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아동복지법」시행령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자립지원통합기타 자립지원대상자 현황 대한 기가구발굴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자립수준평가 실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 및 서비스 제공 기타 자립지원 정보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 현황 파악, 서비스 효과성 평가 등을 위한 통계데이터 수집 및 처리 위기가구발굴시스템 등에 따른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서비스 제공 내역 파악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 및 처리 						
수집·이용할 항목	기관명, 보호 기초생활수급 [관련 정보통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보호기관명, 보호기간, 보호종료일, 가족관계, 주소, 주거 현황, 취업 및 진학 현황,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자립수당·자립정착금·CDA 지원 여부, 건강정보[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수혜이력, 민간사회서비스 수혜이력						
보유기간	서비스 종료일	로부터	5년					
	개인정보 수	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	까? 🗆	동의함	□ 동의하	디 않음
고유식별정보(주	민등록번호) 수	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	까? 🗆	동의함	□ 동의하	디 않음
민감정보	보(건강정보) 수	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	까? 🗆	동의함	□ 동의하	디 않음
2. 개인정보 3자 제공 내	격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 • 자립지원전담	원, 한국	사회보증	·정보원	나선정 등에 침	여하는 자문	위원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통합 기타 자립지원 대상자 현황 대상자 현황 위기가구발굴 사후관리 및	서비스 대 월 정보 및 IP악, 서비 시스템 등	상자 적2 자립지 스 효과성 에 따른 2	격 여부 판단 및 원 서비스 제공 성 평가 등을 위 자립지원통합사	서비스 제공 궁 한 통계데이트 비니스 지원 대	ქ 수집 및 처 상 여부 확인		처리
제공되는 개인정보항목	[1. 개인정보	수집·0	용에 관	반한 사항] 경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용의 수집·이용	당할 항목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	정보주체의 등 단, 사회서비 사회보장정보	스정보시	시스템(호	희망이음) 통			해 보건복지	부, 한국
변경에 관한 사항	위 사항의 변	경내용0	l 있을	시 변경 내용	응을 당사자	및 법정다	리인에게 안	내합니다.
	개인정	성보 3자	제공0	∥ 동의하십니	니까? □	동의함	□ 동의하	지 않음
3.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	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아동복 제공에 동의합니다.	지법」, 「사회보	상급여법」	에 의	거하여 상기	본인은 우	와 같이	개인정보 수	집·이용·
	20		년	월	일			
	본인 성	명 :			(인)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OIE	성명			생년월일					
아동	소속			연락처					
사후관리 담당자	성명			직위					
사후관리 방법	□ 전화 □ e-mail(사이	□ 전화 □ 아동(가정)방문 □ 시설·기관 내방 □ e-mail(사이버) □ 기타							
사후관리 기간	□ 5년 □ 3개월	□ 1년 □ 기타	□ 1년 사후관리 □ 연1회 □ 6개월마다 □ 3개월마 □ 기타 주기 □ 월1회 □ 기타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38조(자립지원)								
	본 동의서는 보호종료 후 5년(1년)간 사후관리(아동복지법 16조의2, 제38조) 하는 것에 대한 동의 [*] 를 말하며, 사후관리 진행 내용은 내부 자료로 보관됩니다. 사후관리 담당자는 대상자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공개	※ 원가정 복귀로 보호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1년, 그밖에 사유로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 조치가 종료된 경우 5년간 사후관리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합니다.								
및 관리	※ 대상자는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퇴소 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자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대상자 거주지 관할 시·도 (시·군·구) 및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상자 정보 및 사례관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사후관	아동은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에 응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신상의 어려움이나 변동이 있는 경우 사후관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위험(필요)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리 담당자의 의무	※ 담당자는 아동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필요로 하는 도움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아동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욕구 또는 문제해결을 위해 본 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 관련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비고		후관리와 계획에 대형 1움이 있을 시 아동고	— .–						
		후관리에 관한 설명 ⁰ 기관의 조치에 대한		로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동의확인				아동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이공 . (신청인) :		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자(소속) :		서명 또는 인)			

서식 22 양육계획서(보호자용)

양 육 계 획 서 ※[]중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시늘 입				아동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빌		의 관계			
_	주소					연락처			
대상	성명		생년월일	빌		교육기 관명			
아동	주소 (시설명 등)					연락처			
				주거					
	형태	□ 자가	□ 자가 □ 임대 (전세 / 월세) □ 기타()						
	아동과 함께 거주할 곳 주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 (신청인 포함)	아동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아동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아동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	소득	•				
양육	고용형태	□ 정규직	□ 계약직] 일용직	□ 자영업		기타()
계획	직업				월 소득				
	출·퇴근 시간								
	취업 준비 중인 경우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Ī	교육 및	돌봄				
	주양육자				부양육자				
	교 육(돌봄)기관								
	교육기관 이용 전·후 돌봄 계획								
	기타 (치료계획 등)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3항에 의거하여 아동 가정복귀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로 본 양육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제4부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회의 일자		회의 장소			대면(영상회의 포 서면	함)
회의종류	□ 보호조:	치 결정 [□ 보호조치 변경	□ 보호종료 결정	□ 기타	
안건						
참석자	이름(소속)				<u>ج</u> ّ	명
회의내용						
	보호조치 결정					
의결사항	보호조치 변경					
	보호종료 결정					
특이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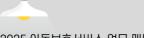


작 성 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 기 - 아동을 분리보호조치 시, 아동의 보호조치 변경 시, 보호종료 시						
작성목적	- 심의 결과를 기록하기 위함					
작성방법	- 심의 과정 작성					
활용방법	- 분리보호조치, 변경, 종료의 결정 근거자료					

항목	작성내용
회의일자, 회의장소	- 사례결정위원회의 일자 및 장소 기재
회의종류	- 아동별로 해당사항에 체크 ※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은 아동별로 기재
안건	- 회의 종류에 따른 상세 안건 기재 예) 가정위탁보호 중 아동 비행으로 인해 위탁부모와의 잦은 갈등 발생, 위탁부모 소진 으로 가정위탁보호 종결 요청하여 아동을 양육시설로 보호조치를 변경하고자 함
참석자	- 사례결정위원회 명단 기재
회의내용	- 안건에 대한 과정 및 주요내용 기재
의결사항	- 회의내용의 결과 기재
특이사항	- 회의내용 이외 특이사항 발생 시 기재

사 례 회 의 록

회의 일자		회의 장소		
업무단계	□ 접수상담 □ 조사사 □ 양육상황점검/재평가			결정/변경
안건				
참석자	이름(소속)		충	во
회의내용				
특이사항 등				



☑ 작성방법

작 성 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 기 - 시·군·구 사례회의 시(아동보호 모든 단계)							
작성목적	- 내부 사례회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함						
작성방법	- 사례회의 과정 작성						
활용방법	- 아동의 보호관련 모든 과정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항목	작성내용
회의일자, 회의장소	- 사례회의 일자 및 장소 기재
업무단계	- 아동별로 해당사항에 체크 ※ 사례회의록은 아동별로 기재
안건	- 회의 종류에 따른 상세 안건 기재 예) 보호자가 수감됨 이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 계획 논의
참석자	- 사례회의 참석 명단 기재
회의내용	- 안건에 대한 논의 과정 및 주요 결과 기재
특이사항	- 회의내용 이외 특이사항 발생 시 기재

		가동 재보호조치 의견서					
	성 명	성별					
아동	생년월일	(만 세)					
인 적 사 항 (아동보호팀 작성)	재보호 신청사유	. []대학재학 2. []직업 교육 훈련 3. []장애· 질병 I. []심리·정서·주거·경제 어려움 등 5. [] 지능지수가 71이상 84이하인 경우					
자 립 관 련	사후관리 기간	(시작일) ~ (마지막 사후관리 실시일)					
지 원 내 역	대상자구분	. []일반사후관리대상자 2.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2. []사립시원통합서비스 내상사 1. []신청에 따라 필요 2. []심의 필요 3. []필요 없음 필요 의견 4. []기타 [그외 기타의견]							

년 월 일

자립지원전담기관 담당자

000 시·군·구청장 귀하

_

서식 25 보호결정(변경, 종료) 통지서

		보호결정(변 경	형 , 종화	료) 통계	지서			(앞쪽)	
								심의	후	7일	
CH	<u></u>	성명	생년 ⁻	월일	(남, 여)	전화번호					
아	상동	주소				1					
보시		보호유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입양									
(7)	_	시설(기관)명 (피해아동의 경우 대	미기재)							
결정(변경) '	일자		조치 일	자						
۲	아동복	지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3	같이 0	동보호를	결정(변경	, 종료)하였음;	을 알려	드립니다	•		
						Ę	<u> </u>	월	일	ļ	
	시장·군수·구청장 인										
아동	·보호	호자·기관 귀하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유의사항

- 1. 보호기간 동안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시설 주소지로 주소지 변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2. 전입신고 처리 시 현재 가정 내 지원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이 중지 또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 3. 시설입소 후 시설과 근접한 교육기관으로 전학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설 적응 등으로 인해 전학처리가 지연될 경우 일시적으로 시설과 근접한 교육기관에 교환학습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4. 아동은 입소한 시설 내 생활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활규칙은 시설마다 상이)
- 5. 시설 입소 후 보호자의 아동면회가 아동의 시설 부적응 및 정서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6. 시설에서 보호되는 기간 동안 아동에게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의 동의를 통해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7.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입소한 시설에서 지속적인 보호가 어려운 경우 아동에게 적합한 시설을 재확인하여 전원조치 될 수 있습니다.
- 8. 추후 보호자가 아동의 가정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따라 아동의 가정 복귀 절차가 진행되며, 동법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에 근거,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합니다.

※ 사후관리 주기 및 방법 안내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원가정 복귀 후 일주일 이내 가정방문을 포함, 1년간 4회 사후관리 실시 원가정 복귀 후 일주일 이내 가정방문 실시 및 1개월 이내 추가 1회 이상 모니터링(가정방문, 유선), 원가정 복귀 후 6개월부터는 정기 모니터링 실시
 - *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험 요인 발견 시 사후관리 기간 연장
- 9.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26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21.6.30.〉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심의 후 2일		
117101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상 아동	가정위탁 또는 입소	연월일	보호조치	의 종료 또는 퇴소 예정 연월일			
	시설명		전화번호				
대상 시설	주소(소재지)		1				
퇴소 사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m²]

서식 27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신청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21.6.30.〉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심의 후 2				
11=101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51111 015	성명				주민등록번	호			
대상 아동	입소(가정위탁) 연월	[일		퇴소(가정	복귀) 예정	연월일			
en 11 - 1114	시설명				전화번호(휴	대전화번	호)		
대상 시설	주소(소재지)								
가정 복귀 사유									
「아동복지 [†] 가정 복귀를	법」제16조제2항 시청한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5제3항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710 7112	00199.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5	드는 인)	
시·도지사 !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	하는 서류					수수없		
			안내사항						
	H행위자가 거주하는 기 료에 참여해야 합니다.		h는 경우 아동	학대행위자	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시 장이 제	공하는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검토 도 또는 시·군	→ [결재	→	통보		

(사례결정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서식 28 보호종결 사유별 사후관리 점검표

사후관리 점검표(원가정 복귀)

						사우판	디얼	닌	결	길	(]^[
	아동명(성별)			(□남	□여)	생년월	일(연령)				()세
	연락처			ō	[교((대학)	()ġ	학교(어린	이집)()학년((과)
아동	주소	시	·도	시·군·구	읍.	면·동		로				
	아동 주요 특징	(장애여부,	피해아동,	질환 등)								
	성명(성별)				생년월일(연령)				()세			
	아동과의 관계				,	거주상태 자가,			l/전세	/월서	/기E	ł
보호자	주소	시	·도 시	·군·구	읍·면·등	5	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여부	마수	글 □□	수급		월소득			민	원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Н	고	
가족												
관계												
	보호자의 양육태도											
	아동학대 의심상황		□언어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141	U건제역	네 L	16 =		 				
아동 면담	아동 외 가족 갈등상황											
신급 	10 1 11 2000	□언어폭력 □신체폭력 □부부싸움 □심각한 갈등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 (직장생활 및 사회적 관계)											
	자립지원 점검											
니는지	아동과의 관계	아동에 대	한 감정, 영	양육참여, 성	방호작용 등							
보호자 면담	아동양육의 어려움 유무											
	기타	필요 서비	스(부모욕-	P, 아동 욕	P), 출퇴근시	l간 등						
	종합의견											
				년 달	월 일							
	○○○시·군	구	소속	_ 직		성명 :		(인)				

		사후관리	점검	표 (인	연령 5	도래에	따른	종	결(자	립))		
							사후관리	1일	년	월	일	()차
		아동명(성별)			(□남	□여)	생년월일	(연령)				()세
		연락처			ē	교((대학)	():	학교(어린	<u></u> 린이집)()	학년(과)
	아동	주소	J	√ 도	시·군·구	나 읍.	·면·동		로			
		아동 주요 특징	(장애여투	보, 피해아동	등, 질환 등)						
		성명(성별)				생년 [.]	월일(연령)				()세
시스	보	아동과의 관계				7-	주상태		자:	가/전세/	/월세	/기타
<u>유</u> 템	호	주소	ر	l·도 시	√군·구	읍·면·	동	로	_			
확 인	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여부		∃ □□	수급	C	월소득			만	원	
사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	교)			비	고
항	가족											
	관계											
			□ 자립정착금 (□ 지급 □ 미지급)									
	Χ	H립 지원 현황	□ 자립수당 (□ 지급(지원기간: 00.00.00. ~ 00.00.00.) □ 미지급)(* 누적 지급금액: 원)									
 자		H 중 까기	□ 이행 (가장 최근 이행 날짜:)									
립		사후관리 이행 여부	□ 미이행 (□ 연락두절 □ 미실시)									
지			□ 이행불가 (□ 사후관리 거부 □ 사망)									
원 전	자립	입지원통합서비스 	□ 대상 □ 비대상									
전 담 기 관 확 인 사 항	남 											
()	레스 연	등합의견 1계 등 후속조치 2사항 등)										
	년 월 일 ○○○시·군·구 소속 직급 성명: (인)											

			사후	관리	점:	검표(엽	입양	성립)					
)	나후관리일	년	월	일	()차	
		아동명(성별)			(□'	남 □여)		생년월일(연령)				()세	
		연락처		학교			바 학)	()학교(어	린이집)()학년(과)	
	아동	주소	,	시·도 시·군·구				= 5	로				
		아동 주요 특징	(장애여부	(장애여부, 피해아동, 질환 등)									
		성명(성별)						날일(연령)		()세			
	보호 자	아동과의 관계						거주상태			자가/전세/월세/기타		
		주소	시·도 시·군·구				년·동	로					
		성명	성별	연령	관	계	직업(학교)				비	고	
	가족												
	관계												
		아동 적응 및 발달 등 상태 확인	여	□ 아니오									
	점검 내용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예	□ 아니오									
		수시 상담 가능한 연락처 제공	□ 예	□ 아니오									

월 일 직급

성명 :

(인)

년

소속

○○○시·군·구

		사후괸	리 점검	표(타	법	시설 입소	<u>~</u>)				
						사후관리일	년	월	일	()차	
	아동명(성별)		(□남	□여)	ļ	생년월일(연령)				()세	
	연락처			학교((대학))	():	학교(어린(기집)()ē	¦년(과)	
아동	주소	시·도	시·군·구	나 읍.	면·동	로					
	아동 주요 특징	(장애여부, 피	니해아동, 질환 등)							
	성명(성별)			싱	ii년월일	실(연령)			()세	
	아동과의 관계				거주상태			가/전세	/월세/	/기타	
보호자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	동	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여부	□수급	□수급 □미수급			월소득			만원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Н	고	
가족											
관계											
		□ 정신장(개 : 정신분열증	등(), 지적	장애(), 우울(),	기타()				
	건강·의료		개 : 장애종류()			
		□ 질환명	□ 질환명 :()								
	교육	□ 재학(중	□ 재학(중/고) □ 졸업(초/중/고) □ 학교밖청소년								
	ılāl	문제행동	등 🗆 음주	□ 흡연	□ 성	l범죄 관련 [] 폭력 [] 절도		기타()	
	사회	부채현황 🗆 무 🗆 유(기관명: / 금액:)									
점검 내용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용	• 아동의 • 서비스	• 진학/취업 여부, 취업준비/직업훈련 내용 • 아동의 주거 및 안전 • 서비스 제공내용 • 사회적 지지자원(가족, 친척, 동료 등)								
	향후 계획	□ 원가정	복귀 🗆 진호	낚 □ 취업		직업훈련 🗆	검정고시		기타()	
종	합의견(총평)										
년 월 일 ○○○시·군·구 소속 직급 성명: (인							(인)				



작 성 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기	- (원가정 복귀) 원가정복귀 후 1개월 이내 1차 이후 분기별 점검 - (타 법시설 입소) 타 법시설 입소 후 최초 1주일 내 시설방문 포함하여 5년간 연 1회 점검
작성목적	- 아동이 가정복귀·자립·입양·타 법시설 입소 후 안정적으로 생활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함
작성방법	- 가정방문, 시설방문, 유선 등 진행 후 작성
활용방법	- 사후 관리 중 타 서비스 필요시

	항목	작성내용
	0동	- 아동의 기본 정보 및 현재 학교 정보 기재
	보호자	- 보호자 기본정보 기재, 양육계획서와 변경된 사항 확인 ※ 자립 등으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미기재
	가족관계	- 가족구성원의 기본 정보 기재, 양육계획서와 변경된 사항 확인
	보호자 양육태도	- 아동 면담을 통해 부모(보호자)의 양육태도를 작성 예) 모는 아동의 자기 전에 아동과 대화를 함
야동	아동학대 의심상황	- 부모(보호자)가 아동학대 의심행동을 하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아동학대 발견 시 즉시 신고) 예) 부가 아동의 귀가가 늦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함
면담	아동 외 가족갈등상황	- 보호자 이외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여부 등 작성 ※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이 아동양육이 부정적영향이 있는지 확인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 (직장생활 및 사회적 관계)	- 아동이 학교(어린이집)생활 및 친구와의 관계의 어려움 등을 확인하여 작성 - 자립아동의 경우 직장생활과 사회적 관계 작성
	자립지원 점검	- 자립수준평가 등 관련 내용 작성
	아동과의 관계	- 보호자가 가정복귀 후 아동과의 관계정도(아동에 대한 감정, 양육참여, 상호 작용 등)를 작성
보호자 면담	아동양육의 어려움 유무	- 아동 양육의 어려운 점 확인하고 작성, 보호자가 양육교육 등 원할 경우 해당 정보 제공
	기타	- 필요 서비스(부모욕구, 아동욕구), 출퇴근시간 등 작성
	종합의견	- 아동과 보호자 면담을 통해 종합적 의견 작성

서식 29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6.30.〉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예상 접수번호	3되는 눗에	√ 표시들 압	^{니다.} 접수일				처리	기간		7일		
		성명	015				생년			· L		
	부	주소					전화	번호(휴대	전화번	호)		
신청인		직업					월수	입				원
(가정위탁 보호자)		성명					생년	월일				
	모	주소					전화	번호(휴대	전화번	호)		
		직업					월수	입				원
	부동산 [대지 :	: m²]	[건물 :	m²]	[기타 :	']		
가구·재산	동산				거주	가 []	전세 []	<u>.</u> 월세 []	
	관계		성명		생년월	월일			직업			
기조라게	관계		성명		생년동	월일			직업			
기독단계	관계							직업				
	작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위탁 이동과의 관계	 [] 친	!척 ([] 친조부 !인척 외 :민법상 8촌 0				2 []	조부 <u></u>	고 외(관계	:))		
위탁유형		실반가정위탁	[<u> </u>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제1힝	<u></u>	다라 위의	라 같() 가정 :	위탁보호	 호를
									년	월		일
			신청인(기	 정위탁보호	자) 부 모						또는 인)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10 -		
				처리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신청	청인 가정 조시 시	·도 또는 시	심의 ·군·구		→	결재	→	통보	
					'		n×210	mm[백상지(80g/m	°) 또는 중	질지(80g	g/m²)]



서식 30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6.30.〉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 []에는 하	당되는 -	곳에 "√" 표시를 협	합니다.			(앞:	쪽)			
		성명			생년월일					
	부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모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관계	[]동	성명 생년월일 직업							
가족	관계	[]동	성명 거		생년월일	직업				
관계	관계	[]동	성명 거		생년월일	직업				
	관계	[]동	성명 생년월일 직업]동거				ļ			
가정위탁보	호 동7	(사회적 이타심,	가족체계 강화, 종	교적 이념	실천 등)					
가정환경(가	~관계,	가족분위기, 물리	니적 양육환경 등 전	전반적 가정	환경)					
가구소득(아	동을 양	육하기에 적합한	소득수준)				충족	미충족		
양육 및 교	육환경((위탁아동의 종교	의 자유 인정 여부	등)			충족	미충족		
가정위탁보.	호자 니	이(모두 25세 0	상,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기	H 60세 미만)		충족	미충족		

		(뒤쪽)
자녀 수(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4명(위탁아동 포함) 이내, 단 18세 이상 자녀 제외)	충족	미충족
가구원 전력(가구원의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마약·알코올·약물중독·정신질환 전력 여부)	충족	미충족
저무기저이타 기즈 초조어법/저무기저이타요 시험한 거요에마 테다!	취다	 항목
전문가정위탁 기준 충족여부(전문가정위탁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목(1)~7)),
	다목 중	등 표기)
※ 필요서류 별첨		
※ 별표 1 제1호에 따른 전문가정위탁의 기준 중 해당 항목 별도 표기(예: 별표 1 제1호가목)		
특이사항	'	

조사자 의견	충족	미충족		
조사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 ,	l명 또는 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한 가정에 대한 조사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 년 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31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3.19.〉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성명		즈	위				
요청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아동복지법」제1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정 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요청인 제출 서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 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대상자 확인 (범죄경력 유, 무) ►	통보								
요청인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서식 32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3.19.〉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성명	(한글)		(자국어)
	00	(한자)		(영문)
대 상 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 과 여권번호 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화:

본인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아동복지법」제1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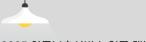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귀하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서식 33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3.19.〉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성명			직위		
요청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한글		자국어		
	성명	한자		영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약 여권번호 또 등록번호		
	주소					
아동 대상 성범죄		[] 있음	[] 없음	
성인 [대상 성범죄	[] 있음	[] 없음	
가정폭력 관련 범죄		[] 있음	[] 없음	
아동학대	대 관련 범죄	[] 있음	[] 없음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한함)		[] 있음	[] 없음	

「아동복지법」제1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년

월 일

위탁부모 추천서

위탁부모	성명(부)	생년	¹ 월일	
	성명(모)	생년	¹ 월일	
	성 명	생년	¹ 월일	
	자택전화	휴대	폰번호	
	주 소		관계	
추천자	추천사유			

본인은 위탁부모와 년 개월 동안 알고 지내고 있으며, 상기 위탁부모는 위탁부모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가정위탁지원센터장) 귀하



서식 35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주소	
	아동과의 관계	
	연락처	

		710 5151 7171-1		74 7 1011 551 7 51		TU4 O T TU4 = 1\
1.	위탁기간: 위탁보호기	간은 남당 시사저	l 사례결성위원회	결성에 따든다.	(아농복시밉 /	세12소세1양)

2. 위탁유형 : □ 일반위탁가정 □ 전문위탁가정 □ 일시위탁가정

본인은 아동복지법에 제15조에 의하여 아동 ()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 기간 동안 아동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귀 센터에 위임하며, 기타 아동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인)

시·군·구청장(가정위탁지원센터장) 귀하

소재불명조사복명서

1. 조사일시						
2. 조사대상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2. 소시대경시	(성명)			이승파의 전계		
	• 아동이 친	권자와 연락이 !	닿은 지 2	주 이상 경과 여부		
	• 주소지 방문 및 개인 전화·직장 통한 연락에 무응답 여부					
	• 기타 접촉 조치사항 아래 기재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						
5. 조사자	직급		성명			

본인은 아동 ()의 친권자의 소재불명 사실 및 친권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상기 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복명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가정위탁지원센터장) 귀하



서식 37 가정위탁가족 동의서

가정위탁가족 동의서

우리 가족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리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함에 있어 가족 전원이 전적으로 동의하며, 아동이 친가정에 복귀할 때까지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위탁 양육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
1	본인			
2				
3				
4				
5				
6				

20 년 월 일

신청인 :

시・군・구청장(가정위탁지원센터장) 귀하

아동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 정보조회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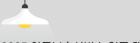
연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1	본인				
2					
3					
4					
5					

본인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및 가족구성원으로서,「아동복지법」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제2호의 아동학대 판단 정보 확인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 39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1.6.30.〉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10111—— 12 1							
	성 명	3	주민등록번호						
위탁아동	주 소	<u> </u>							
	자택전	화							
		성명	생년월일						
가정위탁	부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모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위탁유형	[]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 일시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결정일		년 월 '	일						
위탁아동과의	[] 친인척 ([]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조부모 외(관계:)) [] 친인척 외								
관계	[] 전인적 외 * 친인척: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발급용도			(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1개월)						
5 <u>10</u> 7	※ 본 확인서는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위 아동은 [「] 아동임을 확인		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	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접	<u>DI</u>						

297mm×210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서식 39-1 가정형 보호 추진 기록지

가정형 보호 추진 기록지							
	성 명		성별				
아동	주민등록번호						
정보	장애유무		쿠				
	보호대상아동 행복이음 등록일						
1차	가정위탁 의뢰일						
추진 기록	미연계 사유, 특이사항 등 기술						
2차	가정위탁 의뢰일						
^{2시} 추진 기록	미연계 사유, 특이사항 등 기술						
최종의견							

년 월 일

담당자 OOO 시·군·구/소속 직급 성명 (인) **협조자** OO 가정위탁지원센터 직급 성명 (인)



☑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기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회의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 연계 의뢰 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시 첨부)
작성목적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에 따른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조치 결정(변경)보호조치 과정에서의 아동의 가정형 보호 추진 및 가정위탁 연계 가능성 검토
작성방법	 시설보호(4호) 결정(변경) 시 시·군·구(위탁아동 주소지)는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의 가정위탁(친인척 외) 연계 의뢰 후 필수 작성, 상호 확인 진행 ※ 가정위탁 연계 시 작성 불필요, 일시보호 시 작성 제외 ※ 2차 수 이상 가정위탁 연계 추진 시 서식 칸 추가하여 누적 작성 가능 보호조치 결정(변경) 시 내부(통합) 사례회의를 통한 아동의 가정위탁 연계 가능성 검토 및 작성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또는 아동의 상황·의사 등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연계 의뢰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사례회의 필수 진행, 내부(통합) 사례회의록으로 갈음 가능
활용방법	- 아동의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조치 결정(변경) 등

	항목	작성내용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대상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아동 정보	장애유무	- 접수상담, 욕구조사 시 확인된 아동의 장애 유/무를 기재		
	보호대상아동 행복이음 등록일	- 접수일자(행복이음 상 접수상담 등록일자)		
1차 호지	가정위탁 의뢰일	-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 연계 의뢰 요청일자		
추진 기록	미연계 사유, 특이사항 등 기술	- 아동의 신체/정서 건강상태 및 특성, 위탁가정 미연계 사유 기재		
2차	가정위탁 의뢰일	-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 연계 의뢰 요청일자		
추진 기록	미연계 사유, 특이사항 등 기술	- 아동의 신체/정서 건강상태 및 특성, 위탁가정 미연계 사유 기재		
	최종의견	- 가정형 보호 추진 결과에 따른 담당자(아동보호전담요원)의 종합적 소견 기재(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 추측성 작성 금지)		

서식 40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체기간 10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시설입소(전화번호	
신청인	0	0		(외국인등록번호)			대상자와의	l관계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01	성 명			주민등록반 (외국인등록:				희망((이용)			
시 설 입 소 (이용)	01	주 소							희망입 기	입소 간		
대상자	02	성 명			주민등록반 (외국인등록:				희망((이용).			
	02	주 소							희망입 기	일소 간		
	노	<u>-</u> 인복지	시설	① 양로 ④ 노인	시설 요양공동생활가	정	② 上 ⑤ 7	인공동생활기 타(정)		③ 노인요영	·당시설
	0	l동복지	시설	④ 자립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전용시설 (3) 공동생활가정 (3) 이동전용시설 (8) 기타(설)	③ 아동보호⑥ 아동상담	
입 소 (이용) 시 설	장애인 복지시설			③ 청각⑤ 중증⑦ 장애	① 지체장애인거주시설 ②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 ④ 지적장애인거주시설 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⑥ 장애영유아거주시설 ⑦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⑧ 장애인단기거주시설 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⑩ 기타()							
안 내	1	한부모/ 복지시		② 부자③ 미혼	가족복지시설 ([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 복지사 지원 복지시설] 기본생	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 자립성			
	여성복지시설		시설	① 성매	매피해지원시설	(② 기 타()			
	노:	숙인복자	시설	① 노숙인재활시설 ② 노숙인요양시설 ③ 7		③ 기	타()				
		기	타									
입 소 (이용) 사 유												
통 지 방 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위와 길	이 시	설입소(이	용)를 신청합니다	ł.		년	월	일		
							신청인	:		(서	명 또는 인)	
특별기	자	지기	사·	시장·군	수·구청장	귀히	}					
구 비 서 류		건강진단 기타, 관		. – –	설 및 노인요양공	공동생활기	가정에 입소	하고자하는 경	우에 한함))		

서식 41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

입원 (입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뢰 아동	주소		
보호	시설(기관) 명칭	시설(기관)의 장 성명	
시 설 (기관)	소재지		

입원(입소) 의뢰 사유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 아동을 귀 시설 (기관)에 입원(입소)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전문치료기관·요양소의 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서식 42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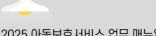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일				
	시설명			대표자					
신청인	주소			(전	<u> </u> 화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	주소			보호 개시일					
	공고기관		공고번호		공고 연월	월일			
공고 사항	공고 결과	과 부양의무자 출현	[] 있음		(의견)				
	01		[] 없음						
「입양특례! 기 바랍니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조에 따라 위와 같0	입양대상	아동임을 회	학인해 주시		
기 미립되	Ч.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정장	귀하 					
위의 내용	이 사실임을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NO.								
점부서류 	없음								
유의사항									

공고사항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서식 43 입양동의서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입 양 동 의 서

	성명	주민등록변	주민등록번호							
아동	등록기준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자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변	<u> </u>						
동의자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입양특례법 동의합니다.	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0조제1형	방에 따라 톤	년인은 위 () 동의	입양에				
	EOITI HE	н	년	1	월	일				
	동의자 성명	5			(서명 <u></u>	또는 인)				
	귀하									
	법」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l에 동의합니다.	제1항에	따라 본인	<u> </u>		에게				
				년	월	일				
아동 성명 (서명 또는 인) ☞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불명을 증명하는 서류 1부(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모의 동의를	를 받을 <i>:</i>	수 없음				
				210mm×207mr	「내사비	2Ωα/m²l				

210mm×297mm[백상지 80g/m²]

서식 44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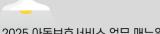
※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사례번호						
상담의뢰처			상담정	소					상담일	<u>ا</u> لاا				
내담자			상담치	수					상담	<u> </u>				
Ŧ	1 분				친	모			친 부					
	0	름												
	생년	월일												
	출성	생지												
	현거	주지												
	연락	낙처												
	종	교												
인적사항	결혼상태		①미혼 ②기혼 ③별거 ④사별(배우자사망일:) ⑤이혼(이혼일:)				①미혼 ②기혼 ③별거) ④사별(배우자사망일:)) ⑤이혼(이혼일:)							
	가족관계		관계	성명	연령	직업	동거	여부	관계	성명	연령	직업	동거	여부
	최종학력													
교육 및 직업	직업(임신당시)		재학 중이면 '학생'으로 기재											
	향후 학업 또는 직업계획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	체중	cm / kg				cm / kg							
신체특성	머리색/	/피부색	/				/							
	혈액형		RH / 형				RH / 형							
	기타 신	l체특성												
	성장시	병력												
병력 및 건강상태	현재 건	건강상태												
L:0041	가족의	병력												

2005 015 4 + 1111 4	_

	구 분	친 모				Ä	친	₽	
	취미								
취미 및 심리특성	특기								
	성격특성								
	가족관계	가족구성 및 가족과의 관계 기록							
성장배경	형제자매 관계	형제자매의 구성 및 각 구성원과의 관계 기록 (가장 친한 형제자매 등)							
	가족의 경제적 상황	성장과정에서의 경제적 상황 변화 기록							
	최초 만남 시기								
친모와	만남의 계기								
친부의 관계	동거여부 및 기간								
	현재 교제 및 연락여부								
	분만경험	무/ 유 ()명	분만아동 성	황	양육 ()명,	입양 ()명	
	이전 분만형태	자연분만 ()회, 제왕절개 ()회							
	산전진료	시기와 횟수를 기록							
	산전진료 결과	예상되는 위험상황 기록							
		병명							
	임신기간 중 질환	발병시기							
임신 및 출산 관련		치료여부							
			복용여부	브 빈도	<u> </u> 종	류 및 복	용량	현재 복용여부	
	임신 중 음주 및	음주							
	흡연, 약복용	흡연							
		약복용							
	임신기간 중 건강상태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체중증	가 상황 등	<i>⋽ 기</i> :	<u>ਵ</u>	

구 분		친 모							
	최초 인지시기	임신 ()주							
	임신 인지 후 아동 장래에 대한 의사								
임신인지 및 아동장래	본인 외 알고 있는 사람	아동 장래에 대한 의견							
	직접 양육가능성	매우 가능() 가능함() 잘 모르겠음() 불가능함() 절대 불가함()							
양육 관련	경제적 자원	자산 ()원, 월소득()원 (취약계층 구분 등)							
	양육도움 자원	양육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지 등							
입양 관련	입양진행 시 바람								
H6 TT	입양정보 공개동의								
기타 사항									



서식 45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아동	성 명		생년월일							
내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아동과의 관계							
	성명		총 상담횟수		회					
	ᆺᄼᄼᄀᄓ	소속기관	상담일자	1차	상담횟수만큼					
상담원	소목기판			2차	기록하며					
	TI			3차	4회 이상인 경우					
	직급			4차	복사하여 사용함					

본 내담자는 입양특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제시된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충 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1.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 2.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 3.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 4. 입양절차
- 5.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청구
- 6. (원가정 양육 결정시)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위한 방문 계획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괄호 안에 친생부모가 자필로 밑줄 친 내용을 똑같이 옮겨 적도록 함)

년 월 일

친생모(부) 서명 (인)

서식 46 입양 상담 후 원가정양육 결정 아동 모니터링 결과

※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Ç	입양 상담	후 원가	정양육 :	결정 아동 .	모니터링 결과
아동	성 명			생년월일 (출생월일)	
716	시·군·구명				
친모	성 명			생년월일	
신도	시·군·구명				
	t담 시·군·구 남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연락처	및
원가정 양	육 결정일				
모니터	링 일시				
		경제적			
모니터링	ᄌᄋᆝᆘᄋ	심리적			
포니니딩	구최 대중	신체적			
		기타			
	h에 따른 조치 여부				
(위기임신출산	타 긴급지원 사업 여부)				
연계서비스 관	련기관 연락처				

서식 47 전생부모 상담 및 보호조치 현황

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조치 현황

생년월일 등록주소지 실거주지 ᇲ 생년월일 등록주소지 실거주지 뭒 기본인적사항 천 편 등록주소지 실거주지 (시·군·구) (시·군·구) 출생예정일 (필요시) 생년월일 뗞 제출일

	상담결과	상담원 성명/ (입양집행, 서비스 연락처 연계 등)							
		상담원 성명/ 연락처							
		상담일시							
: 발생)	첕	상담장소							
지자체 상담(입양의뢰 친생부모 상담 및 요보호 아동 발생)		상담 시·군·구							
뢰 친생부모 상담		상담원 성명/ 연락처							
제 상담(입양의	머	상담일시							
刀刀持	体	상담장소							
		상담 시·군·구							
	최초상담기록지	상담의뢰처 입양기관 인수 일자 일자 성구							
		상담의뢰처							

	입양기관/	니양적시를 3 (소재지)							
고	입양기관/	니중퓩시를 아동인계일자							
아동보호조치	사결위								
	사결위								
	사결위	시·군·구명							
	일시	표본시를 3 (소재지)							
	일시보호 형태	(급정, 급, 타 시셀)							
III	일시보호	흲							
양동의 및 아동일시보호	일시보호	5 () F (S)							
입양동의 및	양동인수	수·규·구							
	쌍	인수일자							
	너 작성일	位							
	입양동의서 작성일	位							

① 상담 및 보호조치현황표 누적관리를 위해, 기존 연번내용 삭제하지 말고 누적해서 작성 ② 지자체 상담 항목 중, 상담의뢰처와 입양기관 인수일자는 입양기관을 통해서 의뢰된 경우에 한해 작성 ③ 상담일시, 일시보호일시 및 보호형태, 사결위 등 차수추가가 필요한 경우 최종일자 및 최종 내용으로 수정하고 메모기능 활용하여 기존 일자 및 내용 작성하여 이력관리

		입양대상아동 상황	. 변경 보고서	İ
아동	성 명		생년월일	
<u> </u>	주 소			
ā	구 분	[] 배치결정 [] 보호방식는		
L	# 용	· 입양대상아동의 상황 변경에 관	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	
٨	나 유	ㆍ 상황 변경 발생 사유를 상세히	기록	
7	계 획	· 향후 조치 계획을 상세히 기록		
「입양특	·례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입양대상아동의 성	·황 변경에 관한 사항	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입양기관장	[인]
시장·군	!수·구청장 구	ੀ ਰ ੋ}		



서식 49 입양동의 철회서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입양동의 철회서

	성명		주민등	등록번호			
아동	등록기준지		1				
	주소						
E 0171	성명		주민등	등록번호			
동의자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철회합니다.	제10조제3항에 때	다라 본	부인은 위	아동의	입양에	
				년		월	일
	<u>.</u>	동의 철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입양기관 보관용 시·군·구 제출용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000 아동의 부모인 000, 000는 *가정방문/면담(으)*로 xx(입양기관), 000(으)로부터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아동 적응 및 발달 등 상태 확인 ()
-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 수시 상담 가능한 연락처 제공 ()

년 월 일

부: ○○○ (인)

모: ○○○ (인)



서식 51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

[별지 제1호서식]

			섵	실종아동	5등	의 신	고	접수.	서			
	성명					성별		남·여	Ç	견령		
실종	소재지											
아동 등	연락차	l										
	중요특정	S				1						
	신장	Ā	체격	얼굴	형		두詰	발	:	착의사형	<u>}</u>	그 밖의 신체특징
신체 및		1. (1. 둥근형				1. 곱슬	상의	하의	신발	
외적사항	cm	2. E		2. 긴형 3. 삼각형			_	2. 파마 3. 카트				
	0111		_0	4. 역삼각		0. 11		, —				
N T				5. 네모형								
신고 내용												
처리												
결과												
		Ş	성명									
		4	스속									
신고자		7	소									
		연	락처									
실종아동 등과의 관계												
	년 월 일											
				접수자	소속							
				직급	급(위)							
					성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경찰관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52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7.31.〉

(앞쪽)

							신	싱	7	ŀ	드								
	성	명			성별	(<u>번호</u>)	1.남	2.여	주민	등록번	호	(당시	세,	추정/회	활 실)			
	발견	일자		년	월	일		년지역 [조] [조]									사	진 누	착
인적	발견 장소	번호 ()	9. 터미	사트 2. 빌 기널 역 1 6. PC빙	0. 종교	시설(교	4. 놀이 회 성당	터 5. 당절 5	⋚) 11.	공원	12. {	. 타인 <u>의</u> 산 13.	의 집 7. 버스정 ^투)	학원 루장 1	8. 상7 4. 병원	l(시장) 년 15.	(3	cm×4	cm)
사항	부호	.장소	시설(기	관)명:				번호 (아동독 부랑인	일시자 시자본 <u>!</u>	설 2. 시설 5.	장애인 노인복	복지시 지시살	설 3. 설 6. 정	정신요 신의료	양시설 기관		
및			연락처	:				주소				-							
기본 사항		<u> </u>	최	초입원일	[자				진료 ² (전화:) 전로조 정기관명				
	응급	진료		병 명	d				응급진	료사				- 01	0, 150	<u>, </u>			
	무연 확	고자 인		확인일지	ł				확인기	기관									
	행려 선	병자 정	5	보장기관	경				선정 일자			행려: 번 <u>호</u>				의료 종	급여 별	() 종
	え	아	번호 ()	1. 정성 8. 때:	당 2. 틀 ² 이빨	니 3. I 9. 임플	베드링! 닭라트 ^	ー 4. 10. フ	 옹니 5 IEI(5. 금니	- 6. 1	은니 7	7. 의치	치이	부 특징	서술:			
	눈 5	고 양	번호 ()	1. 특정	당 없음	 2. 쌍까	물 있 _는	음 3.	쌍꺼풀	없음	4. 7	IEK()					
	얼글	굴 색	번호 ()	1. 보통	통 2. 검	은 편 (3. 흰 :	면 4.	기타()								
	ਲੈ	터	변호 ()	1. 머리 9 발	l 2. 얼굴 10. 기명	굴 3. 필 화()	4. 손	5. 등	6. 몸	통 7.	둔부 8	8. 다리	모	양	서술:				
	수술	자국	변호 ()	1. 머리] 2. 얼 ^보 8. 다	굴 3. [:]	딸 4. i 박 10	손 5. 기타	등 6.	몸통			모	양	서술:				
신	7	덬	변호 ()	1. 머리	- 0. 1 1 2. 얼 ⁴ 8. 다	굴 3. :	딸 4. i	손 5.	등 6.	몸통			모	양	서술:				
체	문	신	(/ 번호 ()	1. 머리	- 0. ㅋ 2. 얼 ^보 8. 다	굴 3. :	딸 4. i	손 5.	등 6.	몽 몸통			모	 양	서술:				
특 징	野の	력	변호 ()	1. 뇌질	실환 2. 밖의 내	심장질	환 3. 김	간질횐	-	등)	장애 유형	번호 (예)1-	2.) 3. 2 4.	자폐	_ 장애(1급 성장애(장애(1급 장애(1급, 2급	급, 3들		
	신 장	CM	체격	1. 비민 2. 건정 3. 보통	- - 	굴형	1. 삼2 2. 역산 3. 계란	각형 형	두발 색상	2. ¹ 3. ¹	흑색 백색 반백	두발 형태	4. 긴	곱슬	. 긴 생 머리 5. 머리 7.	짧은	곱슬머	리	리
	체 중	kg	번호 ()	4. 왜소 5. 특0 6. 기타	<u>-</u> 체형	번호 ()	4. 사2 5. 둥근 6. 갸튼 7. 기타	-형 - - - - - - - - - - - - - - - - - -	번호 ()	4. 5. 6. (갈색 염색 기타)	번호 ()	8. 단 10. 찕	발머리)은 스	미디 7. 9. 묶 포츠형 13. 7	음머리 11. 보			리)
	그 밖의	의 특징											유전자 (DNA)		번호 ()	1. ⊼	바취	2. 🗆	ll채취
													210mm	×297	mm[일반	용지 6	0g/m ²	(재활	용품)]

(뒤쪽)

		전체 옷차림	번호 ()	1. 정장차현 7. 캐주얼처 13. 알 수	차림 8. 속옷 차	3. 작업복차림 4. 림 9. 투피스 10. {	운동복차림 월피스 11.] 5. 가죽 교복차림	옷차림 6. 한복차림 12. 기타()
			번호 () 예)1-4	1. 긴팔2. 반팔	8. 유니폼 9		코트류 1	1. 티셔츠	6. 원피스 7. 투피스 12. 카디건(스웨터) 5. 알 수 없음	
	실종 (입소)	상 의	번호 ()	7. 녹색계통				통 11. 분	색계통 6. 갈색계통 홍색계통 12. 주황색	계통
	당시			8. 알수 (무늬 3. 체크무늬 4	. 민무늬 !	5. 물방울	무늬 6. 꽃무늬 7. 기	()
			상 :	표명						
옷	옷차 림		번호 () 예)1-4	1. 긴2. 짧은		2. 운동복 3. 잠옷 속옷 10. 통바지 1		. 유니폼	6. 면바지 7. 청바지) 12. 알 수 없	<u></u>
수 차 림		하 의	번호 ()	7. 녹색계통		l통 3. 회색계통 4. l통 9. 풀색계통 10. i() 15		통 11. 분	색계통 6. 갈색계통 불록색계통 12. 주황색	계통
· 소 지		-1	번호 ()	1. 가로줄 ⁵ 7. 기타(구늬 2. 세로줄	무늬 3. 체크무늬 4 알 수 없음			무늬 6. 꽃무늬	
품				표명						
ユ	실종	번호 ()	8. 단화 (9. 등산화 1	10. 털신 11.) 13.	알 수 없	_	mm
밖 의	(입소) 당시 신발	번호 ()	8. 노란식 14. 기타	계통 9. 풀 (브라색계통 11. 분홍			갈색계통 7. 녹색계통 통 13. 하늘색계통	5
			상 표 명	<u> </u>						
정 보	안경	번호 ()				테 5. 무테 6. 선글리				
_	모자	번호 ()	8. 녹색겨		·색계통 10. 풀	계통 4 회색계통 5. 풀색계통 11. 보라색;) 16. 알 수 입	계통 12. {			
	신체 장신	번호		2. 목걸이 3 6. 머리핀	3. 귀걸이 4. ! 7. 기타(팔찌)	소지품	번호	1. 휴대폰 2. 가방 4. 기타(3. 시계)
	구	()	상세설명()		()	상세설명()
	보호	간단하	게 서술							
	개요		당시 상황 :경위 등							
	보호	Ç	변월일	3	조치내용	보호시설명		주	소	비고
	아동									
	등 조치									
	사항									
	,0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작						TI 11 71	소속:			
성	작성		년	월 일	<u> </u>	작 성 자	직급 :			
자	일			_			연락처 :	·		
						관할경찰서명				

						•	신	상	카	드					
	인	성명				성별	! 번호 (호)	1. 남 2. 여	주민등	록번호	•	-	출생신고 사진 부	
	적	주소													
	•	출생 일자			년	월		일						(3cm × 4	lcm)
	사	ᄎᇪ	1. 지	택:				시(도	<u>=</u>)		구(군)		동(읍,	면)	
	항	출생	2. 병	원(병원	원명 :				담당의	:		전:	화 :)
	0	장소	3. 7	타()				
		치아		_	_			_	니 4. 옹니 님플란트 1		금니 6. 은 타(치아 특징	서술:	
		눈모양	번호 ()	1. 특	징 없	음 2.	쌍꺼풀	있음	음 3. 쌍꺼	물 없	음 4. 기타	()	
		얼굴색	번호 ()	1. 5	년통 2.	검은	편 3.	흰	편 4. 기E	計()			
		흉터	번호 ()						손 5. 등 기타(6. 돋	통)	모양	서술:		
아동		수술 자국	번호 ()						손 5. 등 기타(6. 돋	통)	모양	서술:		
VIO	신	점	번호 ()						손 5. 등 기타(6. 돋	l통)	모양	서술:		
	체 특 징	장애 유무	번호 ()	1. 4	유 2.	무	장유	·애 형	번호 (예)1-)	2. 자폐성	장애(1급 애(1급,	2급, 3급) H, 2급, 3급 2급, 3급) 급,) 급))	
		신장	CM	체 격	1. 비 2. 건 3. 보	!장	전에 다시 명이	2. 3.	삼각형 역삼각형 계란형	두 발 색 상	 흑색 백색 반백 	발형대	1. 삭발 2. 3. 짧은 생 [[] 4. 긴 곱슬[[] 5. 짧은 곱 _[6. 기 퍼머 [[]	_ () 커리 커리 늘머리	
		체중	kg	번호 ()	4. 와 5. 특(6. 기	소) 체형	번호 ()	5. 6.	사각형 둥근형 갸름한형 기타)	번호 ()	4. 갈색 5. 염색 6. 기타 ()	번호 ()	7. 짧은 퍼	H머리 9. 묶음머리 포츠형	4
		그 밖의 특징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관계	성명	주민번호		주	소		비고
부 모	부							
	모							
	성명			신고'	일자	٤	1	월 일
신고인	아동과의 관계	번호 ()	1. 부 2. 모	. 3. 동	등거친족	4. 기타()
	주소					전화번호		
	※ 육하	결칙에 따라 성	당세하게 기록		·			
÷								
출생신고								
기간경과								
사 유								
					성명 :		٨)	너명 또는 날인)
	작 성				소속:			
작성자	연월일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연락처	:		

서식 54 실종아동등 인수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실종이	·동등 인수확업	인서	
	성명			
	주소			
인수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실종아동 등과의 관계			
	성명		성별	남·여
실종아동 등의	주민등록번호			
관련사항	실종 년월일			
	발견일자			
	의 보호 및 지원에 관 함을 확인합니다.	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종
	년	월 일	빌	
		인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55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9.〉

		[호시설에 있	는 미성년	연자 후	호견인	지정	신청서		
		주소							
- וייום	ITI	보호시설명		보호	^호 경위				
미성년	! ^ }	성명		Ą	i 별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월)		
		주소							
후견인 <i>?</i> 신청자		직업		직장	당명		직위		
		성명		주민등	록번호		'		
		있는 미성년자의 : 따라 후견인의 지경			제3조자	네2항·제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년	월	일	
					신청인		(서당	병 또는 인)	
특별자	시차	장·시장·군수·구청	성장 귀하						
741	미서년	자이 가조과게기로』	나하에 과하 즈며	I 서(기조고	마계기로 N	나하에 과중	하 즈며서가	수수료	
1. 1	구비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56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1.19.〉

	부양	의무자 확인 공고	<u>1</u>			사진	
	성명		성별	남·여		3cm×4ci	n
미성년자	00		연령	J.	1		
인적사항	주소						
	특징						
부양의무자, 그 밖의 보호자	성명			미성년자와의 관계			
나 는 IIM	시설명			대표자			
보호시설	보호개시일	년 월 일		소재지			
후견인	성명						
千七七	주소						
참고사항							
	_	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련 ·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_	제4조에 따라	라 부양	의무자	확인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į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서식 57 피해아동 보호계획(변경)서

				피해이	동보호기	넦획(변	경)서			
					1. 아동 기	본 정보				
	ļ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피해아동	주민등	록주소지						연락처		
	실기	<u></u>						(집/휴대전화)		
	관계 성명 주민등록주소지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사례관리								연락처		
대상자	실거주지							(집/휴대전화)		
(보호자)	학력	및 직업		월수입		생활 수준			주거	
	/				[]상 []중		수급자		전세 []월서	
	[]일반		[]부자가정(사별		-, ,	[]부자가	•]부자가정(팀	_ "
가족유형		나가정(사별)	[]모자가정(이혼		정(가출) 		정(별거) []미혼부가정	
	[]미론		l,]미혼부모가정	[]친부+기	•	[]친모+7	•]친인척보호	5
		부동거녀]친모+동거남	[]가정위	탁 	[]입양가	성 []시설보호	
-1-11-1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동거여부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동거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동거여부	
				II.	1. 사건 및	조치 정보				
	1	닌고접수일시	.			신고접수경.	로 []1	12 []행정전호	화 [] 방문	신고
	1	닌고접수내용	2							
사건개요	아동	하대 조사	내용							
(피해아동)	,	나례판단결 교	ŀ	※ 해당하는 유		[]44 - 1511 [Інюі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Ⅱ. 사건 및 조치 정보						
	신고접수일시	신고접수경로 []112 []행정전화 [] 방문신고						
	신고접수내용							
사건개요	아동학대 조사내용							
(피해아동)	1 LHITHEF747L	※ 해당하는 유형 모두 체크						
	사례판단결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사례판단 소견							
학대 전력	기계 하네 파다이다니()청	※ 최근 5년(60개월) 이내 전력(본 사건 아동학대행위자와 다른 행위자에 의한 학대 포함)						
(피해아동)	과거 학대 판단일자/유형 00년 00월 00일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피해아동 조치							
]사례관리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명:						
	미 시네된다 단계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원단 []읍면동서비스 연계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원단 []읍면동서비스 연계						
	[]보호체계 유지							
	[]보호체계 유지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원단 []읍면동서비스 연계 []1호-제지 []2호-격리 []3호-보호시설 인도 []4호-의료기관 인도						
조치계획	[]보호체계 유지							
조치계획		[]1호-제지 []2호-격리 []3호-보호시설 인도 []4호-의료기관 인도						
조치계획	[]응급조치	[]1호-제지 []2호-격리 []3호-보호시설 인도 []4호-의료기관 인도 * (3호 관련) 보호시설·기관명(유형): ()						
조치계획	[]응급조치 (「이동학대처벌법」제12조제1항)	[]1호-제지 []2호-격리 []3호-보호시설 인도 []4호-의료기관 인도 * (3호 관련) 보호시설·기관명(유형): () ** (4호 관련) 의료기관 명:						
조치계획	[]응급조치	[]1호-제지 []2호-격리 []3호-보호시설 인도 []4호-의료기관 인도 * (3호 관련) 보호시설·기관명(유형): () ** (4호 관련) 의료기관 명: 조치일시: 조치자:						

	I	T							
		[]1호-상담·지도 []2호-친족	[]3호-가정위탁						
		[]4호-아동복지시설 []5호-전문치료기관	관·요양소 []6호-입양						
	[]보호조치	[]기타(「아동복지법」 외 타 법상 보호시설 등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	(21 00) 1044 01110							
		** (3~5호 관련) 보호시설·기관명(유형):	()						
		조치일시 :							
		[]1호-퇴거·격리 []2호-접근금지 []3호-전기통신금지 []4호-보호위탁						
	[]피해아동보호명령	[]5호-치료위탁 []5의2호-상담·치료위탁 []6호-가정위탁							
	(「아동학대처벌법」제47조) /	[]7호-친권 제한·정지 []8호-후견권 제한·정지 []9호-의사표시 길							
	[]임시보호명령	청구일자:	청구(결정)법원 :						
	(「아동학대처벌법」제52조)	결정일자 :	결정결과:[]인용 []기각						
		1	결정철파 : []건용 []기식						
	[]エルマルズト	사례관리대상자 조치							
	[]지속관찰	[]고발 []고소 []기타요청에 따른 수사							
]법적조치 및 관리	[]인지수사 (112 신고, 수사의로							
		사건처리결과:[]수사중 []입건 전 조사종							
	[]긴급임시조치 (「아동학대처벌법」제13조)	[]1호-격리 []2호-접근금지 []3호-전기	기통신금지						
		[]1호-퇴거·격리 []2호-접근금기	[]3호-전기통신금지						
		[]4호-친권·후견권 제한 및 정지	[]5호-상담·교육						
	[]임시조치	[]6호-의료기관 등 위탁	[]7호-유치장·구치소 유치						
	(「아동학대처벌법」제14조,15조)	요청(신청)일자 :	법원 :						
		결정일자 :	결정결과:[]인용 []기각						
	[]친권 제한·상실 (「아동복지법」제18조)	[]친권행사 제한 []친권상실							
	(104.18, 11102)	기타(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치하지	않은 경우)						
		[]타 법 시설 입소(시설명 :) []가출						
	[]기타	[]0 와()	, , , , , _						
		가정복귀							
		[]일시보호조치(「아동복지법」제15조제6항) 종료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종료						
	[]가정복귀	[]퇴소조치(「아동복지법」제16조)	[]피해아동보호명령(「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종료						
			. , , , , , , , , , , , , , , , , , , ,						
		Ⅲ. 대상자 지원 정보							
		아동의 욕구(우선순위)							
	[]안전 []건강 []일상생활 유지 []가족관계 []사회적관계						
FUAFTL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						
대상자 옥구	[]7 EK)							
(욕구조사		보호자의 욕구(우선순위)							
결과)	[]안전 [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						
	[]기타() Jrug []rug [10년년이 1 1년을 첫 연기부정						
	1 1/14(,							

2025 아도버츠 네비스	ᄾᅅᄆᇜᆫᅆ

	개입필요 옥구 ·문제	장기목표	단기목표	서비스명
대상자				
지원 계획				
	※ 해당하는 유형 모두 체	J크('기타'체크 시 시타 내용 작성(예시 : 복	귀 가능 가정 없음 등)	
가정복귀 지원계획		연계 []금품지급 []기타()	
- 10-11-1	지원 내용 :			

Ⅲ. 담당자 소견

 \times 가족 특성, 피해아동 및 사례관리대상자 외 사례관리 지원 필요 대상 및 지원 방향, 사례연계 안내 완료 여부 등

수립일				통보일(결	[재일)	
담당자	소속 :	시·군·구청	과	직급(직위):	성명 :	(서명 또는 인)
결재자	소속 :	시·군·구청	과	직급(직위):	성명 :	(서명 또는 인)

	가정	성 복귀 절	차 및 시	후관리 등	통의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1.91	주소					
대상 아동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410 40	주소					
	퇴소조치 등)(•「아동복지법 /	에 따라 아동의 가정 시행령」제21조의5	성 복귀 절차가 ? (보호대상아동	진행됩니다. 의 가정 복귀 결정)	에 따라 가정 특	16조(보호대상아동의 록귀 신청자는 아동보호
가정복귀	가정으로 복귀 - 가족관계 7 - 양육기술 형 - 아동학대 0 - 그 밖에 아 • 시·도 또는 人 치료한 의사의	시킬 수 없습니다. 개선을 위한·상담· 향상을 위한 상담 ፲ 계방을 위한 인식 ፲ 동의 복리향상을 위 나군·구의 사례결경	교육 교육 교육 심해 필요하다고 정위원회의는 0 호조치의 종료 <u>5</u>	. 인정하는 상담 J ·동보호전문기관 E는 퇴소조치가 0	교육 및 심리치 등 아동복지人	부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료 설의 장, 아동을 상담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절차 및 사후관리 안내	•「아동복지법」 시·도 또는 시 아동의 복지 증	제16조의2(보호다 ·군·구와 아동보호 ·진을 위하여 필요한	배상아동의 사후 전문기관은 가정 지도·관리를 제공	관리), 제28조(시 으로 복귀한 아동의 당하고, 아동 학대의	기가정방문, 전화 기재발 여부를 확	거하여 가정복귀 이후 화상담등을 통하여 해당 확인합니다. 이때, 아동 창목귀 결정을 취소할
	① 가장	정복귀 신청	② 세	부 절차 진행	3 7	가정 복귀 결정 및 사후관리
	아동이 위탁	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 중인 쉼터 ·재지 시·군·구에	요건 확인》 평가 및 면E 가정 복귀계	인 → 가정 복귀 기 • 양육환경점검(심 남, 가정환경조사) 획 수립 › • 가정 복 행 → 가정환경 조	리 시·군· 복귀 결 >> 조치 및 귀 ※ 단, 7	구 사례결정위원회의 경정에 따라 아동 귀가 ! 사후관리 가정 복귀가 피해아동의
	[구비서류] • 아동 가정 [‡] • 양육계획서			l·군·구 제출	가정으로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로 복귀하지 못하는 것으 될 수 있음
	□ 가정복귀	절차와 사후관리 내	용을 이해하였으	으며, 진행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및 대상아동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의	□ 가정복귀점	절차와 사후관리 내	용을 이해하였으	2며, 진행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아동	(서명 또는 인)
(○○시·도저	기사, 시・군・	구청장, 〇	○ 아동보호	전문기관	귀하

서식 59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아동보호전담요원용)

ଖ 202○ -	· ○○호				
	가정	정복귀 프로	르그램 이수	확인서	
□ 가정복급	리 프로그램 이 <u>수</u>	누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입소시설 소재지	입소시설명	비고
아동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아동과의 관계	비고
보호자					
□ 가정복	귀 프로그램 이	수 기간 및 결	과		
일자	대상	진행기관		프로그램 내용	
본 [내상자는 가정복	귀 프로그램 교	사정을 성실히 이수	-완료 하였음을 확	인합니다.
			년 월 일		
		001	TL ¬	テノナレ	직인
		OOX	l장·군수·구취	성상	

가정환경 조사서									
※ []에는 해당도	l는 곳에 "√" 표/	시를 합니다.							
담당자			제	출일자	+				
	성명		'			주민등록	록번호		
	연령 만 ()	세				전화번호	₹		
아동 (귀가대상자)	교육기관 명	학교 학년	기타						
(11/14/6/1)	보호조치 내용		보호조치 날	날 짜					
	보호시설 명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및	! 직업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귀가신청자)	소득(월수입)	생활수준 원 []일반 []차상위	[]수i			주거	[]]자가 []전세 []월세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 저거겨자 내요	에 따라 아래 꼭	 H당하는 란에 √ 체크							
× 9954 419	에 따라 이대 이 [1.아동]	16이는 단에 V 제그							
		및 면담 실시 결과 (심리정서)	상태)						
아동 및 보호자 심신상태			문항 체크큖	하지 않	음)				
				. , 10					

*			

	1-2. 심리치료 진행 결과
	 □ 실시 (아래내용 작성) - 치료기관명 : - 치료내용 : - 치료기간 : - 관련 심리치료 소견 작성(심리치료사 작성) : □ 미실시(사유기재)
	1-3. 신체건강상태 (질병 또는 장애 여부)
	□ 해당 없음□ 질병 (질병명 :)□ 장애 (장애유형 및 등급 :)
	1-4. 가정 복귀 의사
	□ 있음□ 함인불가 (사유)
	1-5. 보호시설에서 아동 적응상태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2. 보호자]
	2-1. 심리평가 및 상담 결과
	실시검사기관명:검사일자:관련 심리 평가자 소견 작성:□ 미실시 (사유기재)
	2-2. 심리치료 실시 여부
	 실시 (아래내용 작성) 치료기관명: 치료내용: 치료기간: 관련 심리치료 소견 작성(심리치료사 작성): 미실시(사유기재)
	2-3. 신체건강상태 (질병 또는 장애여부)
	□ 해당 없음□ 질병 (질병 명:)□ 장애 (장애유형 및 등급:)
	2-4. 가정 복귀 의사
	□ 있음 □ 없음

	[1. 보호자 요엔
	1-1.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내용 및 결과
	□ 이수 - 프로그램 진행기간 : □ 미이수 (사유작성)
	1-2. 가정복귀 프로그램 참여의지 및 태도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1-3. 검찰처분·법원 명령 결정에 따른 이행 결과
	□ 검찰처분 또는 법원 명령 결정 없음 □ 검찰처분 또는 법원 명령 결정 있음 - 결정내용 : - 이행내용 :
	1-4. 보호자가 학대가 발생했던 당시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변화된 내용
	- 긍정적 변화 내용 기재
양육 환경	1-5. 양육 계획
	- 교육계획 · 교육기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 · 등,하원(교) 계획 : · 방과 후 계획 : - 아동이 질병이 있는 경우 치료 계획 :
	1-6. 다른 보호자 여부
	□ 가정 내 아동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 양육자 있음 -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의사 확인 □ 가정 내 아동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 양육자 없음
	[2. 환경 요인]
	2-1. 가정 내 청결 상태(※ 사진 필수 첨부)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2-2. 양육 환경 조성 정도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종합 소견	- 공공연계 사례회의 결과 및 담당자 소견 (가정환경 확인 위해 파악 및 수집한 모든 자료 첨부)



서식 60-1 가정환경 조사서(일시보호)

가정환경 조사서 (일시보호)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연령 만 ()세					전화번호			
아동 (귀가 대상자)	교육기관명 학교 학년				기타				
	보호조치 내용				보호조치 날짜				
	보호시설 명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및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귀가 신청자)	소득(월수입) 생활수준 원 []일반 []수급자 []차상위 []저소					주거 []자가 []전세 []월세			
		득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_ "		OLEE	년	월	일 (세)	10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	.,,		
※ 점검결과 내용이	에 따라 아래 해?	당하는 란에 🗸 체크							
	[1.아동]								
	1-1. 가정복귀 의사								
아동 및 보호자 심신상태	□ 있음□ 확인불가 (사유)								
	1-2. 신체건강상태(질병 또는 장애 여부)								
	□ 해당 없음□ 질병 (질병□ 장애 (장애	명:) 유형 및 등급:)							

	1-3. 보호시설에서 아동 적응상태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2. 보호자]
	2-1. 가정복귀 의사
	□ 있음 □ 없음
	2-2. 신체건강상태(질병 또는 장애여부)
	□ 해당 없음□ 질병 (질병명:)□ 장애 (장애유형 및 등급:)
	[1. 보호자 요인]
	1-1.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내용 및 결과
	□ 이수 - 프로그램 진행기간: □ 미이수 (사유작성)
	1-2. 가정복귀 프로그램 참여의지 및 태도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1-3. 양육 계획
양육 환경	- 교육계획 • 교육기관(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 등·하원(교)계획: • 방과 후 계획: - 아동이 질병이 있는 경우 치료 계획:
	1-4. 다른 보호자 여부
	□ 가정 내 아동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 양육자 있음 -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의사 확인 □ 가정 내 아동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 양육자 없음
	[2. 환경 요인]
	2-1. 가정 내 청결 상태 (※ 사진 필수 첨부)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2-2. 양육 환경 조성 정도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종합 소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의심 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의심 체크리스트					
연번	체크항목	체크란(√)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	아니오 🗆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	아니오 🗆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	아니오 🗆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예 🗆	아니오 🗆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	아니오 🗆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	아니오 🗆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	아니오 🗆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	아니오 🗆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	아니오 🗆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	아니오 🗆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	아니오 🗆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예 🗆	아니오 🗆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	아니오 🗆		
15	"아동학대의심 체크리스트"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 의심 상황:	예 🗆	아니오 🗆		
1개 문항 이상 "예"로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발 행 월: 2025년 4월

발 행 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http://www.mohw.go.kr